# 국역 영영사례(嶺營事例) -존경각 소장본 및 규장각 소장본-

번역: 정병호(경북대 한문학과 교수) 윤문: 임덕선(영남문헌연구원 원장)

2017.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영영사례(嶺營事例)

### 성균관대 존경각 영영사례 해제

성균관대 존경각 영영사례는 1747년 이후 175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 감영의 사례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필사본 1책으로 분권되어 있지 않다. 행수와 자수가 일정하지 않고, 122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監營의 歷史, 地理, 官員
- 2. 京案附 軍摠, 道內 軍摠, 監營 軍摠, 改軍制節目, 吏奴作隊節目, 架山外城募民僧人等作隊僧倉節目, 松林寺僧倉及作領節目, 旗鼓節目
- 3. 營吏: 吏房色, 戶房色, 禮房色, 兵房色, 刑房色 工房色
- 4. 營人吏廳, 營庫, 工庫, 軍器, 軍需庫, 雇馬廳, 賑恤廳, 補膳廳, 藥房, 營繕, 南倉
- 5. 接倭事例, 啓草, 上樑文, 牒報, 庚子謄錄

영영사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경상감영의 사례책이다. 사례책은 관청에서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현황, 행정 업무 및 선례를 집대성한 행정편람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경상감영의 역사에서부터 첩보, 등록에 이르기까지 경상감영의 행정 및 재정을 비롯하여 경상감영의 실상 등 관련 정보가 대거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중반 경상감영의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서울대 규장각 영영사례 해제

서울대 규장각 영영사례는 1894년 의정부의 지시에 따라 경상감영에서 보낸 것을 의정부에서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의 용지에다 필사하였다.

필사본 1책으로 분권되어 있지 않다. 117면, 각 면 10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0항목으로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영고(營庫), 낙육재(樂育齋), 공고(工庫), 책고(冊庫), 보선고(補膳庫), 육고(肉庫), 지소(紙所), 군기고(軍器庫), 군수고(軍需庫), 고마고(雇馬庫), 영선고(營繕庫), 겸제고(兼濟庫), 약계(藥契), 절선소(節扇所), 진휼고(賑恤庫), 수성창(修城倉), 산산창(蒜山倉), 남창(南倉), 각양잡례(各樣雜例), 방채전(防債錢) 응봉응하(應捧應下)

경상감영의 지출을 항목별로 기록하였다. 각 고(庫)의 전체 수입 내역을 앞에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월별 지출 내역, 특정 시기의 지출 내역 등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19세기 경상감영의 재정 상태와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료이다. 아울러지방 행정의 구체적인 운용과 현황을 여실히 보여준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 성균관대 존경각 영영사례

- ◎ 경상도(慶尙道)는 본래 진한(辰韓) 땅이었는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所有)가 되었다.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통합(統合)한 뒤 동남도도부서사(東南道都部署使)를 두었고, 경주(慶州)에 기관[司]을 두었다. 충숙왕(忠肅王) 원년(元年, 1314년)에 경상도(慶尙道)로이름을 정하였고, 본조(本朝, 朝鮮)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 ◎ 중종(中宗) 조(朝) 정덕(正德)<sup>1)</sup> 14년 기묘(己卯年, 1519년) 6월 ○일에 본도(本道)의 업무가 많아지자 나누어 좌우(左右) 감사(監司)를 두었다. 낙동강(洛東江) 동쪽은 좌도 (左道)에 소속시키고, 서쪽은 우도(右道)에 소속시켰는데, 같은 해 12월에 다시 하나의 영(營)으로 합쳤다.
- ◎ 선조(宣祖) 만력(萬曆)²) 20년(1592)에 본도에 왜적들이 가득하여 도로(道路)가 통하지 않았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8월에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어 관찰사(觀察使)³)가 순찰사(巡察使)⁴)、절제사(節制使)⁵)、병사(兵使)⑥、수사(水使)ⁿ를 겸임하도록 하였는데, 좌영(左營)은 경주(慶州)에 설치하고, 우영(右營)은 상주(尙州)에 설치했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에 다시 하나로 합쳐 성주(星州) 팔거현(八莒縣)에서 개영(開營)하였는데,이곳은 총병(摠兵) 유정(劉綎)⑧이 진(陣)을 쳤던 곳이었기 때문에 영(營)을 둔 것이다.을미년(乙未年, 1595년) 2월에 지역이 넓어 다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좌우(左右)로 나누었다. 병신년(丙申年, 1596년) 다시 하나로 합쳐 달성(達城)에 영(營)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석축(石築)을 더 쌓았는데, 정유년(丁酉年, 1597년)에 전쟁으로 인해 다시 혁파(革罷)하였다. 기해년(己亥年, 1599년)에 감사(監司)९) 한준겸(韓浚謙)¹0)과 체찰사

<sup>1)</sup> 정덕(正德): 명(明) 무종(武宗)의 연호(年號). 1506~1521.

<sup>2)</sup> 만력(萬曆) : 명(明) 신종(神宗)의 연호(年號). 1573~1615.

<sup>3)</sup> 관찰사(觀察使): 조선조 때 외관직(外官職) 문관의 종2품 벼슬. 8도 또는 고종 32년(1895)의 23부(府), 1년 뒤의 13도에 있어서의 각 도의 지방 장관임. 각 도에 1명씩 두었으며 병마절도 사(兵馬節度使)의 무관직을 거의 겸하였고, 민정(民政)、군정(軍政)、재정(財政)、형정(刑政) 등을 통할하며 관하의 수령(守令)을 지휘 감독하였음.

<sup>4)</sup> 순찰사(巡察使): 난리 때에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는 임시 벼슬. 또는 조선조 때 도내(道內)의 군무를 순찰하는 벼슬.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함.

<sup>5)</sup> 절제사(節制使): 절도사(節度使)의 관리를 받는 거진(巨鎭)의 정3품 벼슬. 수령이 겸임함.

<sup>6)</sup> 병사(兵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준말. 병마절도사는 조선조 때 각 지방(地方)에 두어 병마를 통솔(統率) 지휘(指揮)하는 종2품의 무관. 경기도(京畿道) 1명, 충청도 2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을 둠.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세조 12년에 고친 이름.

<sup>7)</sup> 수사(水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약칭. 수군절도사는 서반(西班) 종2품 무관으로서 각도 수군 주진(主鎮)의 장(將)이며, 소속 수군의 거진(巨鎭)을 통제함.

<sup>8)</sup> 총병(摠兵) 유정(劉綎)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명(明)에서 파견된 장수 유정(劉綎)을 가리킴.

(體察使)<sup>11)</sup> 이덕복(李德馥)이 장계를 올려 대구(大丘)와 성주(星州)는 한 도(道)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전쟁의 상처<sup>12)</sup>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가시덤불이 뒤덮고<sup>13)</sup> 있기 때문에 우선 안동부(安東府)에 영(營)을 두고 양계(兩界)의 예(例)<sup>14)</sup>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해 주 길 청했다. 신축년(辛丑年, 1601년)에 체찰사(體察使) 이덕복(李德馥)이 다시 장계를 올려 대구(大丘)에 영(營)을 두어 감사(監司)가 부사(府使)를 겸임하도록 하고, 별도로 판관(判官)을 설치해 주길 청했다. 경자년(庚子年, 1660년) 하양(河陽)、경산(慶山)、화원(花園) 세 현(縣)을 분할하여 대구(大丘)에 합속(合屬)했다가 병오년(丙午年, 1666년)에 혁파(革罷)하였다.

- ◎ 숙종(肅宗) 강희(康熙)<sup>15)</sup> 병진년(丙辰年, 1676년)에 감사가 부사(府使)를 겸임하도록한 것을 다시 혁파하였다. 갑자년(甲子年, 1684년)에 다시 감사가 부사(府使)를 겸임하도록 하게 되자 이에 따라 설권(挈眷)<sup>16)</sup>을 허락하였고, 별도로 판관(判官)을 설치했다. 을축년(乙丑年, 1685년)에 성주(星州) 화원현(花園縣)과 밀양(密陽) 풍각현(豊角縣)을 대구(大丘)에 할속(割屬)시켰다.
- ◎ 동(東)으로 강원도(江原道) 평해(平海)의 경계(境界)까지 330리(里).
- ◎ 남(南)으로 대해(大海)까지 330리.
- ◎ 서(西)로 전라도(全羅道) 운봉(雲峰)의 경계까지 230리.
- ◎ 서북(西北)으로 충청도(忠淸道) 황간(黃磵)의 경계까지 160리. 충청도 단양(丹陽)의 경계까지는 300리.
- ◎ 북(北)으로 강원도(江原道) 삼척(三陟)의 경계까지 410리.
- ◎ 동서(東西)의 길이는 560리, 남북(南北)의 길이는 740리, 경도(京都)까지의 거리는 670리.
- ◎ 병사(兵使) 2, 수사(水使) 2, 우후(虞侯)17) 4, 영장(營將)18) 6, 부윤(府尹)19) 1, 대도

- 10)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익지(益之), 호는 유천(柳川). 서울출신. 아버지는 경성판관 효윤(孝胤)이며, 어머니는 예빈시정(禮賓寺正) 신건 (申健)의 딸이다. 인조의 장인이다.
- 11) 체찰사(體察使) :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총찰하는 임시벼슬. 재상이 겸임함.
- 12) 창이(瘡痍) : 몹쓸 병. 여기서는 전란의 고통을 말함.
- 13) 가시덤불이 뒤덮고 : 전란을 겪어 어수선하고 혼란함을 말한다.
- 14) 양계(兩界)의 예(例): 양계(兩界)는 동계(東界)와 서계(西界)를 가리키는데, 동계는 지금의 함 경도이고, 서계는 지금의 평안도에 해당함. 평안도와 함경도 양계(兩界)의 관찰사는 가족을 데 려가고 2주년을 기한으로 교체하였음.
- 15) 강희(康熙) : 청(淸) 성조(聖祖)의 연호(年號). 1662~1722.
- 16) 설권(挈眷) : 외직(外職)으로 나가는 관리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함.
- 17) 우후(虞侯) : 조선(朝鮮) 때 외직(外職) 무관(武官) 벼슬의 하나. 병마우후(兵馬虞候, 從三品)과 수군우후(水軍虞侯, 正四品)의 통칭(通稱).
- 18) 영장(營將) : 조선(朝鮮) 때 진영장(鎭營將)의 약칭(略稱). 조선(朝鮮) 때 지방군대(地方軍隊)의

<sup>9)</sup> 감사(監司) : 각도 관찰사(觀察使)의 이칭(異稱).

호부(大都護府)<sup>20)</sup> 2, 목사(牧使)<sup>21)</sup> 2, 판관(判官)<sup>22)</sup> 1, 부사(府使)<sup>23)</sup> 14, 군수(郡守)<sup>24)</sup> 10, 현령(縣令)<sup>25)</sup> 5, 현감(縣監) 34, 찰방(察訪)<sup>26)</sup> 11, 첨사(僉使)<sup>27)</sup> 7, 소모별장(召募別

주둔영(駐屯營)인 진영(鎭營)의 으뜸 장관(將官). 정삼품관(品官)으로 인조(仁祖) 때 설치하였음. 진영(鎭營)은 중앙(中央)의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진무영(鎭撫營)에 속한 것과, 각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 속한 것과의 두 가지 계통이 있었으나, 대상(對象)은 모두 지방군대의 관리(管理)이었음. 모두 겸직(兼職)으로, 중앙소속의 진영장(鎭營將)은 판관(判官)이나 중군(中軍) 및 부근(附近) 주(州)、목(牧)의 부사(府使)、목사(牧使)가 겸임(兼任)하였고, 각도 소속의 진영장(鎭營將)은 도내(道內)의 주(州)、군(郡)을 적당한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그 지방의 부윤(府尹)、부사(府使)、목사(牧使)、현감(縣監) 등이 겸하였음. 각도(道)의 진영(鎭營)은 원칙상 전(前)、후(後)、중(中)、좌(左)、우(右)의 5영(營)으로 구분(區分)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중영(別中營)、별전영(別前營)을 더 두었음.

- 19) 부윤(府尹): 조선(朝鮮) 때 지방(地方) 수령(守令)의 하나. 종2품의 외직(外職) 문관(文官).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전라도(全羅道) 전주(全州)、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의주(義州)에 각(各) 1원씩 있었으며, 그 도(都) 관찰사(觀察使)의 지휘감독(指揮監督)을 받았음. 다만 전주(全州)、함흥(咸興)、평양(平壤) 등 감영(監營) 소재지(所在地)의 부윤(府尹)은 관찰사(觀察使)가 예겸(例兼)하였음.
- 20) 대도호부(大都護府): 지방행정기관(地方行政機關)의 하나. ① 고려(高麗) 때 현종(顯宗) 9년 (1018, 戊午)에, 안남(安南, 全州)、안동(安東, 慶州)、안서(安西, 海州)、안북(安北, 安州)의 사 대도호부(四大都護府)를 설치하였으나, 후에 경주(慶州)가 동경(東京)으로 승격(昇格)됨에 따라,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는 지금의 안동으로 옮겼으며, 또 안남대도호부(安南大都護府)는 곧 폐지되고 그 대신 안변(安邊)이 대도호부(大都護府)로 되었음. ② 조선(朝鮮)에서는 안동(安東)、강릉(江陵)、영변(寧邊)、안변(安邊)에 두었음.
- 21) 목사(牧使) : 조선(朝鮮) 때의 지방관직(地方官職). 관찰사(觀察使) 아래서 각 목(牧)을 다스리던 정3품의 외직문관(外職文官) 벼슬.
- 22) 판관(判官): 조선 때 지방관직(地方官職).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던 벼슬의 하나였지만 후에 폐지되었음. 후기(後期)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除外)한 각도와 수원 (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음.
- 23) 부사(府使): 조선시대(朝鮮時代) 지방(地方) 관직(官職)의 하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와 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를 일컫는 말. 경주(慶州)와 같이 정2품관을 두던 부(府)의 수령(守令)은 부사(府使)라 하지 않고 부윤(府尹)이라고 하였음.
- 24) 군수(郡守):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던 지방장관(地方長官). 외관직(外官職) 문관(文官) 의 종사품(從四品) 벼슬. 말년에는 부사(府使)、목사(牧使)、현감(縣監) 등을 모두 폐지하고 군수(郡守)로 통일하였다.
- 25) 현령(縣令): 조선(朝鮮) 때 종5품의 외직문관(外職文官). 현의 수직(首職). 관찰사(觀察使)의 지휘감독(指揮監督)을 받았으며, 관내(管內)를 다스렸음. 조선(朝鮮) 때에는 대현에는 현령을 두고, 소현에는 처음에 감무를 두었다가 후에 현감(縣監)으로 고쳤음.
- 26) 찰방(察訪): 조선(朝鮮) 때 각도(各道)의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외직문관(外職文官) 벼슬. 품계(品階)는 종육품. 일명(一名) 우관(郵官)·역승(驛丞)·마관(馬官).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마필(馬匹)과 관원(官員)을 두어, 공문서(公文書)를 전달하고 공용여행자(公用旅行者)에게 숙소제공·마필공급 등 편리를 도모하는 기관(機關)을 역참이라 하였는데, 약간의 역참(驛站)을 1구(區)로 하여 이를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의 마정(馬政)을 맡아보는 관직(官職)을 마관(馬官)이라 하여, 교통로(交通路)를 이용하여 정보수집(情報蒐集)도 하였는데 고려후기(高麗後期)부터 역승(驛丞)이라고 하다가 중종(中宗) 30년(1535, 乙未)부터 찰방(察訪)이라고 개칭(改稱)하였음.

將)28) 6, 만호(萬戶)29) 18, 권관(權管)30) 5, 산성별장(山城別將)31) 2.

- ◎ 70관(官). 11역(驛). 30진포(鎭浦). 6소모(召募)32).
- ◎ 경○년 양전(量田)33) 때의 논밭은 모두 336,429결(結)34) 84부(負)35) 가운데,
  - ▷ 밭은 190,532결 74부 3속(束)<sup>36)</sup>.
  - ▷ 논은 145,897결 9부 7속.
  - ▷ 양기(量起)<sup>37)</sup>는 258,700결 34부 7속.
  - ▷ 양진(量陳)38)은 54,715결 2부 9속.
  - ▷ 속전(續田)39)은 5,468결 42부 3속.
- 27) 첨사(僉使): 조선(朝鮮) 때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正六品)와 첨절제사(僉節制使, 從三品)의 약칭.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는 외직무관직(外職武官職)의 하나. 절도사(節度使)의 관할에 속한 진(鎭)의 군직(軍職). 목(牧)、부(府)、군(郡)의 소재지(所在地)는 수령(守令)이 겸임(兼任)하고, 전임(專任)인 경우는 종4품으로 임명(任命)되었음.
- 28) 소모별장(召募別將): 별장(別將)은 지방(地方) 군영(軍營)에 두었던 무관(武官) 벼슬로 중군(中軍)의 다음이었다.
- 29) 만호(萬戶) : 각도(各道)의 진(鎭)에 딸린 종사품(從四品)의 무관직(武官職). 수군만호(水軍萬戶)의 약칭(略稱). 원래(元來)는 몽고(蒙古)의 병제(兵制)를 모방(模倣)한 고려(高麗)의 군직(軍職)이었음.
- 30) 권관(權管) : 변경(邊境)의 작은 진(鎭)에 둔 종9품 무관. 처음에는 그 능력의 유무를 가려 파견했으나 나중에는 아무 기준 없이 파견했으나 나중에는 아무 기준 없이 파견했으므로 군졸과 변경에 끼친 해가 많았음.
- 31) 산성별장(山城別將) : 산성(山城)의 수비(守備)를 맡은 무관(武官)으로 종구품(從九品)이다.
- 32) 소모(召募) :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관청이다.
- 33) 양전(量田): 고려·조선 시대에, 경작(耕作) 상황을 알기 위하여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 도(道), 군(郡)에 비치하였다.
- 34) 결(結) : 목이라고 한다. 토지면적(土地面積)의 단위, 토지의 비척(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다. 양전(量田) 곧 토지측량에 사용하는 전척(田尺)의 길이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 1 등전의 양전척(量田尺)은 주척(周尺)의 4척 7촌 5리이며, 2등전의 양전척은 주척의 5척 1촌 7푼 9리이다. 이러한 양전척에 의한 1평방척(一平方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이라 한다.
- 35) 부(負) : 전지(田地)의 면적과 수확량을 표준으로 하는 과세(課稅)의 단위(單位)이다.
- 36) 속(束): 뭇이라고 한다.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넓이의 단위이다.
- 37) 양기(量起): 새로 개간한 토지.
- 38) 양진(量陳) : 토질이 좋지 않거나 사정이 있어 묵히는 땅을 말한다.
- 39) 속전(續田) : 항상 경작(耕作)하는 것을 정전(正田)이라 일컫고, 혹 경작하다가 혹 묵히다가 하는 것을 속전(續田)이라 일컫는다.

## 경안(京案)<sup>40)</sup>에 딸린 군졸(軍卒)의 총수(總數) [京案附軍摠]

- ◎ 어영군(御營軍)41) 4,690명. 보(保)42) 14,415명.
- ◎ 금위군(禁衛軍)43) 3,989명. 보(保) 12,331명.
- ◎ 기병(騎兵) 1,790명. 보(保) 9,105명.
- ◎ 보병(步兵) 3,060호(戶) 5명. 보(保) 6317명.
- ◎ 포보(砲保) 6,882명. 각사잡색군보(各司雜色軍保) 도합 13,019명.

## 도내(道内) 군사(軍士)의 총수(總數) [道內軍摠]

- ◎ 봉수군(烽燧軍) 3,225명. 보(保) 6,256명.
- ◎ 속오(東伍)44) 47,207명. 보(保) 32,408명.
- ◎ ■병(■<sup>45)</sup>兵) 5,515명. 보 12,912명. [四]

【四】'속오(東伍) 47,207명'에서 '圖병(圖兵) 5,515명'까지46). 임자년(壬子年)에 어린도책(魚鱗圖冊)<sup>47)</sup>으로 군대(軍隊)를 만들었다.

<sup>40)</sup> 경안(京案) : 중앙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안(文案)을 말한다. 이와 대칭되는 외안(外案)은 지방에서 작성한 문안(文案)이다.

<sup>41)</sup> 어영군(御營軍) : 조선시대 오군영 중 왕을 호위하던 군대를 말한다. 경상·전라·충청·경기 ·강원·황해도 등 6도의 향군(鄕軍)이 번상하게 하였다.

<sup>42)</sup> 보(保) : 보인(保人)의 준말. 군보(軍保)로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상납(上納)할 의무(義務) 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sup>43)</sup> 금위군(禁衛軍) : 조선 후기에 국왕 호위와 수도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하였던 군대를 말한다. 경상、전라、충청、경기、강원、황해도 등 6도의 향군(鄕軍)이 주로 번상(番上)하였다.

<sup>44)</sup> 속오(東伍): 속오군. 조선후기의 지방군. 진관 중심으로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 양인 천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지휘권과 조련권이 각 영장에 속해 있었다. 선조 27년(1594)에 황해도부터 조직되어 1596년말에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다. 뒤에 왕성 중심의 5군영제가 실시되자 속오군의 양인은 쌀 10말, 천인은 15말을 바치게 되었고 영조 중엽에 이르러서는 천인만이 소속되어 군포를 바치게 되었다.

<sup>45) ■ :</sup> 원문이 마멸되어 알 수가 없으나, '마(馬)'자로 추정된다.

<sup>46) &#</sup>x27;속오(東伍) 47,207명'에서 '■병(■兵) 5,515명'까지 : 원문에는 '속오(東伍) 47,207명' 항목과 '■병(■兵) 5,515명' 항목 아래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공통적으로 관계된 내용 '어린도책(魚鱗圖冊)으로 군대(軍隊)를 만들었다(壬子魚鱗作隊)'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속오(東伍) 47,207명'와 '■병(■兵) 5,515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기술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함께 묶어서 부기한 내용을 표시할 때는 '○에서 ○까지'라고 번역문의 내용을 인용한 뒤, 관계된 내용을 기술한 것을 협주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하 동일하다.

<sup>47)</sup> 어린(魚鱗) : 어린도책(魚鱗圖冊). 토지대장을 일컬음. 전답의 구획이 물고기 비늘처럼 보인 데서 온 말.

- ◎ 좌(左)、우도(右道) 전선(戰舡) 66척 【전선 1척당 병선(兵舡)은 1척이며, 사후선(伺候舡)48)은 2척이
- 다. 12척은 각 영(營)에, 15척은 각 관(官)에, 33척은 각 진포(鎭浦)에, 6척은 소모(召募)49에 소속되어 있다.]
- ◎ 각 읍(邑)의 방군(防軍) 74,814명 가운데,
  - ▷ 양군(良軍)<sup>50)</sup> 47,072명을 기병(騎兵)、보병(步兵)으로 나누어<sup>51)</sup> 충순위(忠順衛)<sup>52)、</sup> 충장위(忠壯衛)<sup>53)</sup>、충익위(忠翊衛)<sup>54)</sup>에 모두 편입시킨다.
  - ▷ 사부(射夫)55)는 12,706명이다.
  - ▷ 사노(寺奴) 4,306명을 노(奴)에 첨입(添入)해 아울러 편입시킨다.
- ◎ 원회피(元會皮)56)와 잡곡(雜穀)은 도합 234,729섬 14말 8되[刀]57).
- ◎ 진색피(賑色皮)와 잡곡(雜穀)은 도합 140,656섬 10말 8되.
- ◎ 상청피(常廳皮)58)와 잡곡(雜穀)은 도합 410,220섬 2말.
- ◎ 훈국미(訓局米)59)는 1,250섬 10말 1되.
- ◎ 전선가미(戰舡價米)60) 벼[租] 8,027섬 3말.
- ◎ 사군유포(射軍留布)61) 1,214동(同)62) 30필 8자[尺].
- 48) 사후선(伺候舡): 염탐(廉探)이나 정찰(偵察)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군선(軍船)을 말한다.
- 49) 소모(召募) : 의병이나 임시 군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중앙에서 임시로 소모관을 파견하여 일에 대처했는데, 이 소모관들이 사용하던 배를 말한다.
- 50) 양군(良軍) : 양인(良人) 신분의 군졸을 뜻한다.
- 51) 획급(劃給) : 떼어 주다.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나누어 주는 것. 획하(劃下)라고도 한다.
- 52) 충순위(忠順衛) : 조선시대 왕족이나 관리, 또는 그들의 자손들로 조직한 군대를 말한다.
- 53) 충장위(忠壯衛): 조선(朝鮮) 때 전사(戰死)한 사람의 자제(子弟)들로 조직(組織)하여 궁중(宮中)에 번(番)들게 하던 군대(軍隊)를 말한다.
- 54) 충익위(忠翊衛) : 조선시대에 공신(功臣)의 자손들로 조직한 군대로, 궁중에 번을 들게 하였다.
- 55) 사부(射夫): 사수(射手). 삼수(三手)의 하나.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중국의 군제(軍制)를 따라 특수 전투군을 설치하였는데,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 등의 특기자로 조직하였다.
- 56) 원회피(元會皮) : 서울에서 관장하던 세곡(稅穀)인 원회곡(元會穀)의 껍질
- 57) 석(石)、말、도(刀)、되、사(夕): 모두 곡물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1섬은 10말, 1말은 10되, 1 되는 10홉, 1홉은 1/10되, 사(夕)는 움큼으로 한 줌 쥔 분량의 단위이다.
- 58) 상청피(常廳皮) : 상청(常廳)은 상평청(常平廳)의 약칭이다. 상평청은 토참(土站)、공수(供需)를 맡아보는 관아(官衙)로 인조(仁祖) 4년에 선혜청(宣惠廳)에 합하였다.
- 59) 훈국미(訓局米) : 훈국(訓局)은 훈련도감(訓練都監)을 가리키는데, 명칭은 '훈국미'지만 감영에서 관리하던 세곡(稅穀)의 일종이다.
- 60) 전선가미(戰船價米): 가미(價米)는 물품、용역 등의 대가(代價)로 주는 쌀을 말한다. 전선가미는 전선(戰船)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쌀이다.
- 61) 사군유포(射軍留布) : 사군(射軍)들의 급료로 지급하기 위해 저장해 둔 베를 말한다. 조선조에 의 환곡은 봄에 환자를 태우는 데, 이 때 재고(在庫)한 곡류의 반은 창고에 쌓아 둔다. 방출하는 반을 분(分)이라 하고, 쌓아 두는 반을 유(留)라 한다.
- 62) 동(同) : 볏집, 약초, 풀, 나무토막, 꿩의 깃이나 꼬리털 등을 100단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

- ◎ 군포작미(軍布作米)63) 20,051섬 2말.
- ◎ 유포작미(留布作米)<sup>64)</sup> 90,793섬 12말. [团]【团】 '군포작미'에서 '유포작미'까지. 기유년(己酉年)에 비변사(備邊司)<sup>65)의</sup> 관문(關文)으로 쌀로 냈다.
- ◎ 감영(監營) 별회(別會)66) 각곡(各穀) 663,025점 9말.
- ◎ 통영(統營) 별회(別會) 각곡(各穀) 196,740섬 2말 6되.
- ◎ 좌병영(左兵營) 별회(別會) 각곡(各穀) 7,868섬 7말 5되.
- ◎ 우수영(右水營) 별회(別會) 각곡(各穀) 9,648섬 14말.
  - ▷ 11개 우소(郵所)에 소속된 각 역(驛)은 152곳. 기마(騎馬) 중 상등(上等)은 125 필, 중등(中等)은 1,260필, 하등(下等) 325필.
- ◎ 마위전답(馬位田畓)67)은 도합 6.595결 58부 7속.
- ◎ 역리(驛吏) 28,711명 가운데 [137명은 일수(日守)68)고, 6,851명은 보인(保人)69)이다.]
- ◎ 노비(奴婢) 13,570명 가운데 [노(奴)는 9,802명이고, 비(婢)는 3,768명이다.]

## 감영(監營)의 군졸(軍卒) 총수(總數)[監營軍摠]

- ◎ 마군(馬軍) 1,200명 가운데 【오초(五哨)70)가 겨울 3개월 동안 번(番)을 선다. 오초(五哨)는 번(番)을 쉴 때에 쌀 2말을 바쳐 입번군(立番軍)의 양식으로 쓰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쌀을 바치거나 번을 선다.】
- ◎ 보인(保人) 2,310명 가운데 【1,210명은 원보(元保)로, 1명당 무명 1필씩을 거두어 군수(軍需)로 바친다. 1,200명은 자보(資保)기다.】
- ◎ 보군(步軍) 3,330명 가운데 【십오초(十五哨)가 겨울 3개월 동안 번(番)을 선다. 십오초(十五哨)는 번(番)을 쉴 때에 쌀 1말 5되를 바쳐 입번군(立番軍)의 양식으로 쓰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쌀을 바치거나 번을 선다.】
- ◎ 복마군(卜馬軍)72) 305명. 마보군(馬保軍)은 매(每) 대(隊)마다 각 1필이며, 입번(立

<sup>63)</sup> 군포작미(軍布作米): 쌀로 바꿀 수 있는 군포를 말한다. 흉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sup>64)</sup> 유포작미(留布作米) : 각종 세금으로 거둔 베[布]를 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sup>65)</sup> 비변사(備邊司): 조선(朝鮮) 명종(明宗) 10년(1555)에 설치된 기구로, 주사(籌司)라고도 한다. 중앙과 지방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도맡아 관할하는 곳이다

<sup>66)</sup> 별회(別會) : 서울에서 관장하던 세곡(稅穀)을 원회(元會)라 하고, 지방에서 관장하던 세곡을 별회(別會)라 한다.

<sup>67)</sup> 마위전답(馬位田畓): 역말을 먹여 기르도록 각역(各驛)에 떼어 준 전답(田畓)으로, 역정(驛丁) 이 직접 경작하게 하고 세금은 받지 않았다.

<sup>68)</sup> 일수(日守): 지방 관아에 딸려서 심부름하는 하노(下奴)의 하나.

<sup>69)</sup> 보인(保人) :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sup>70)</sup> 초(哨): 군편제의 일종으로 1초(哨)는 대략 100명 가량이었다.

<sup>71)</sup>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

番)과 휴번(休番)은 원군(元軍)과 같다.

- ◎ 보인(保人) 610명 가운데 【305명은 원보(元保)로, 1명당 무명 1필씩 군수(軍需)로 수납(收納)한다. 305명은 자보(資保)이다.】
- ◎ 기수군(旗手軍) 250명. 1번(番)당 6명씩 돌아가며 번(番)을 선다. 매일 2되의 요미(料米)<sup>73)</sup>를 받으며, 1년에 반(半) 필 옷감<sup>74)</sup>을 군수(軍需)에서 지급한다<sup>75)</sup>. 계사년(癸巳年)에 설립해 본부(本府) 군병(軍兵)들을 불시(不時)에 잡아오는 폐단을 없애게 했다.
- ◎ 보인(保人) 412명 가운데 【181명은 양보(良保)70로, 1명당 무명[木] 1필씩을 군수(軍需)로 수납(收納)하여 원군(元軍)의 옷감으로 삼는다. 181명은 겸역(兼役)으로, 1명당 쌀 5말씩을 군수(軍需)로 수납(收納)하여 원군(元軍)의 군량미(軍糧米)로 삼는다. 50명은 각 군뢰(軍牢)77)의 자보(資保)이다.】
- ◎ 군뢰(軍牢) 660명. 보인(保人) 100명. 원군(元軍)이 수포(收布)를 담당한다78).
- ◎ 당보군(塘報軍)79) 111명. 조련(操鍊) 때에 번(番)을 선다.
- ◎ 세악수(細樂手)<sup>80)</sup> 430명. 1패(牌)당 7명씩으로 구성하여 6패(牌)를 만든다. 보인(保人) 54명. 신해년(辛亥年)에 액수(額數)를 정했다.
- ◎ 별무사(別武士)81) 20원(員). 신해년(辛亥年)에 액수(額數)를 정했다.
- ◎ 재가출사군관(在家出使軍官) 100원. 마정(馬丁)82) 56명.
- ◎ 작령군관(作領軍官) 679인. 화병(火兵)<sup>83)</sup> 115명. 【군관(軍官)은 돌아가며 번(番)을 서고, 화병 (火兵)은 각자 관청(官廳)에 섶을 바친다.】
- ◎ 대솔출사군관(帶率出使軍官) 90원. 마정(馬丁) 55명.
- 작령군관(作領軍官) 211인. 화병(火兵) 54명. [四]【四】 '대솔출사군관'에서 '작령군관'까지. 출역(出役)은 재가출사군관(在家出使軍官)과 같다.
- 72) 복마군(卜馬軍) : 각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복마(卜馬)를 부리던 군졸(軍卒)을 말한다. 복마는 짐을 싣는 말을 가리킨다.
- 73) 요미(料米) : 관가의 하급 구실아치에게 급료(給料)로 내어 주던 쌀.
- 74) 의자(衣資) : 옷감, 또는 옷값.
- 75) 상하(上下): 차하.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
- 76) 양보(良保): 천민이 아닌 양민의 군보(軍保). 군보는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두는 조정(助丁). 조선의 군제를 보면 1명의 정병에 대하여 조정인 봉족(奉足) 2명을 두고 정병의 농작(農作)을 대신해 주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양병(養兵)의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에서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댓가로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였음.
- 77) 군뢰(軍牢):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사. 오늘날의 헌병에 해당된다.
- 78) 차지(次知) : 이두.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행위 혹은 그 주체를 가리킨다.
- 79) 당보군(塘報軍) : 적군의 동태와 형편을 살피어 알리는 임무를 띤 사람.
- 80) 세악수(細樂手): 군영(軍營)에서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북、피리、적(笛)、깡깡이를 연주하는 사람.
- 81) 별무사(別武士) : 훈련도감의 마병(馬兵)과 금위영 및 어영청의 기사(騎士) 가운데서 선발되어 윗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을 가리킨다.
- 82) 마정(馬丁): 군중에 키우는 말을 관리하는 군사.
- 83) 화병(火兵) : 군중(軍中)에서 밥 짓는 일을 맡아 보는 군사.

- ◎ 남창수첩출사군관(南倉守堞出使軍官) 20원. 신해년(辛亥年)에 액수(額數)를 정했다.
- ◎ 작령군관(作領軍官) 1,000인. 화병(火兵) 63명. 【군관(軍官)은 1인당 무명 1필씩 군수(軍需)로 수납(收納)하고, 산성(山城)에서 돌아가며 번(番)을 선다. 화병(火兵)은 각 관청에 섶을 바친다.】
- ◎ 성정군(城丁軍) 2,088명. 대(隊)를 만들어 초기(哨旗)를 정한다. 조련(操練)<sup>84)</sup>에 참여하는 것은 아병(牙兵)<sup>85)</sup>과 같다. 1명당 【무명[木] 1필씩 군수(軍需)로 수납(收納)하여 군교(軍校)<sup>86)</sup>의 삭포(朔布)<sup>87)</sup>를 지급하는데 쓴다.】
- ◎ 마보각색표하군(馬步各色標下軍)<sup>88)</sup> 800명 가운데 【400명은 각각 겨울 3개월 동안 번(番)을 선다. 400명은 번을 쉬면서 쌀 1말 5되를 바쳐 번을 서는 군사들의 군량미로 쓴다. 매년 돌아가며 쌀을 바치거나 번(番)을 선다.】
- ◎ 가산진마군(架山鎭馬軍) 334명 가운데【1초(哨) 반(半)은 겨울 3개월 동안 번을 선다. 1초(哨) 반(半)은 쌀 2말을 바쳐 번을 서는 군사들의 군량미로 쓴다. 매년 돌아가며 쌀을 바치거나 번(番)을 선다.】
- ◎ 보인(保人) 666명 가운데 【333명은 원보(元保)로, 1인당 무명 1필씩 남창(南倉)에 수납한다. 333명은 자보(資保)이다.】
- ◎ 보군(步軍) 2,400명 가운데 【10초(哨)는 겨울 3개월 동안 번(番)을 선다. 10초(哨)는 번(番)을 쉬는 대신 쌀 1말 5되를 바쳐 번을 서는 군사들의 군량미로 쓴다. 매년 돌아가며 쌀을 바치거나 번(番)을 선다.】
- ◎ 기수군(旗手軍) 176명. 매년(每年) 조련(操鍊) 때 번(番)을 선다.
- ◎ 마보각색표하군(馬步各色標下軍) 354명. 반(半)씩 나누되, 번을 쉬는 것과 쌀을 바치는 것의 규식(規式)은 위와 같다.
- ◎ 대포수(大砲手) 50명은 돌아가며 번(番)을 서면서 남창(南倉)을 지킨다.89)
- ② 이노(吏奴)는 5초(哨)로 대(隊)를 만든다. 임자년(壬子年)에 초(哨)를 고쳐 단(團)으로 하고, 겉옷[表衣]과 긴 창[長槍]을 지급했다. 매년(每年) 사맹삭(四孟朔)<sup>90)</sup>에 기예를 시험하여 논상(論償)하며, 별도의 절목(節目)이 있다.
- ◎ 승군(僧軍) 2초(哨)
- ◎ 모군(募軍) 2초(哨) [四]

[四] '승군(僧軍) 2초'에서 '모군(募軍) 2초'까지. 임자년(壬子年)에 액수를 정해 대(隊)로 만들었다.

<sup>84)</sup> 조련(操鍊) : 군대에서 야조(夜操), 성조(城操), 수조(水操)의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하는 훈련.

<sup>85)</sup> 아병(牙兵) : 조선시대 군졸(軍卒)의 하나로 대장(大將)에게 직속된 군졸을 말한다.

<sup>86)</sup> 군교(軍校) : 각 군영(軍營)에 속한 권무군관(勸武軍官), 별무관(別武官), 지구관(知彀官), 기 패관(旗牌官) 등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는 속역(屬役)의 총칭. =군관(軍官). 병교(兵校).

<sup>87)</sup> 삭포(朔布) : 잡직(雜職)이나 각 군문(軍門)·아문(衙門)의 장교와 원역(員役) 및 그 밖의 아전 들에게 급료로 주는 베를 말한다.

<sup>88)</sup> 마보각색표하군(馬步各色標下軍): 표하군(標下軍)은 어영청의 대장이나 각 장관에 딸린 수하 병(手下兵)을 가리킨다.

<sup>89)</sup> 수직(守直) : 당번을 섬. 맡아 지킴.

<sup>90)</sup> 사맹삭(四孟朔) : 봄·여름·가을·겨울의 각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통틀어 일컬음.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 군제(軍制)를 고친 절목(節目) [改軍制節目]

전(前)에는 본영(本營) 군총(軍摠)의 각 색(色)이 너무 많고, 또 파정(怕定)<sup>91)</sup>된 액수(額 數)가 없이 역(役)은 다른 지역의 군보(軍保)에 비해 수월하므로92) 고됨을 피해 투혈(投 歇)93)하는 간민(奸民)들이 본 열읍(列邑)에 무한정 투입되었으니, 한정(閑丁)94)들이 직무 를 맡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95). 계사년(癸巳年)에 영문(營門)에서 품계(稟啓)하여 액수(額數)를 정하고, 각각 그 이름과 액수를 군안(軍案)에 명시해 두었으니, '폐단을 없 애고 간악함을 막는 큰 거동'이라 할 수 있거늘% 오래지 않아 (액수가) 점차 증가하였 다. 수첩군관(守牒軍官)을 예로 들어 말하면<sup>97)</sup>, 800명이 정액(定額)이나 지금은 2800여 명에 이르렀으니, 다른 것은 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계사년(癸巳年)의 안(案)에는 없던 명색(名色)이 또한 많이 추설(追設)되어 어수선하고 혼잡하여 법도[紀極]이 없다. 이것은 임장(任掌)98)과 두목(頭目)의 무리들이 그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잘못을 덮어 주고 성안(成案)을 가려 거짓으로 고(告)했기 때문이다. 새로 도착해 생소(生疎)한 주장 (主將)들은 혹 긴요(緊要)하지 않은 명색(名色)을 별도로 설치(設置)하기도 하고, 혹 정해 진 액수(額數) 외의 나머지 수(數)를 더 모집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더해져 거의 한 량(限量)이 없었다. 심지어 통영(統營)、병영(兵營)、수영(水營) 및 각 진영(鎭營)에서도 또한 모두 잘못을 본받아 각각 모집하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도내(道內)의 한 정(閒丁) 과반이 투입되는 데에 이르렀고, 징족(懲族)99)、백골(白骨)100)의 폐단은 결국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의 한심(寒心)함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이제 성조(聖朝)가 재위하여 인족(隣族)、백골(白骨)의 폐단을 깊이 근심하여 조서[絲綸]를 낸 것이 진실 되고 간절하여 미천한 사물<sup>101)</sup>을 감동시키고 귀신을 울게 할 만했다. 그런데 도신(道臣) · 수신(帥臣)들이 필포(疋布)의 봉용(捧用)에서 이익을 취하느라 임금께서 홀 로 근심하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소굴[淵藪1021]을 척결해 근원을 잘라버릴 생각도 하지

<sup>91)</sup> 파정(怕定) : 미리 정해짂.

<sup>92)</sup> 을잉우(乙仍于): 이두. '으로 말미암아'의 뜻이다.

<sup>93)</sup> 투헐(投歇) : 수월한 신역에 투신함.

<sup>94)</sup> 한정(閑丁): 국역(國役)에 나가지 아니하는 장정(壯丁).

<sup>95)</sup> 시재여중(是在如中) : 이두로 '인 터에' '인 경우'의 뜻이다.

<sup>96)</sup> 시거을(是去乙): 이두로 '이거늘'이라고 읽으며, '이거늘'의 뜻이다.

<sup>97)</sup> 시량치(是良置): 이두로 '이라도'라고 읽으며, '이라도'의 뜻이다.

<sup>98)</sup> 임장(任掌): 원래 호적을 개정할 때 임시로 임명하는 하급 직책으로 서울에는 별문서(別文書) 나 별유서(別有司), 지방에는 면임(面任) 이임(里任) 감고(監考)가 있었다.

<sup>99)</sup> 징족(徵族): 도피자와 사망자의 세금을 친족들에게 징수하는 것.

<sup>100)</sup> 백골(白骨): 백골징포(白骨徵布). 이미 사망한 자에게 여전히 베[布]를 징수하는 것.

<sup>101)</sup> 돈어(豚魚) : 돼지와 물고기라는 뜻으로, 미천한 사물이나 동물을 가리킨다.

않으니, 이는 인심(人心)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의리와 도리 상 한 번 다스리지<sup>103)</sup> 않을 수 없으므로<sup>104)</sup> 한결같이 계사년의 정액을 준봉(遵奉)하여 크게 쓸어버려<sup>105)</sup>, 정수(定數)와 정액(定額) 외에는 가감(加減)을 하지 못하게 했다. 영읍(營邑)에 각각 군안(軍案)을 두고 빙거(憑據)하게 했으며, 대탈(代頃)<sup>106)</sup>、부표(付標)<sup>107)</sup>、수포(收布)<sup>108)</sup> 등의일은 모두 절목(節目)을 만들고 아래에서 조목을 나열한다<sup>109)</sup>. 지금 이 고친 제도는 비록 계사년의 액(額)을 위주로 했지만<sup>110)</sup>, 계사년의 액(額)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는 또한 조금 줄였다. 계사년 이후에 추설(追設)된 명액(名額)도<sup>111)</sup> 긴요한 일에 관계되어 혁파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또한 부득불 감액(減額)만 하고 남겨 두었으며, 각각 그 액하(額下)는 모두 주석(註釋)을 달았다. 통영(統營)<sup>112)</sup>、병영(兵營)、수영(水營)에<sup>113)</sup> 또한이런 뜻으로 명령을 내려<sup>114)</sup> 각자 다스리되 일체 이 법(法)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했다. 지금 이 정안(定案) 외에 또 하나를 만들어 도록(都錄) 1건(件)을 감사(監司)의 교귀(交龜)<sup>115)</sup> 시(時)에 얼굴을 대면하여 주고받아서, 이전처럼 가리거나[掩置] 농간을 부리는[瞞弄] 폐단이 없도록 한다<sup>116)</sup>.

일(一). 본영(本營) 각 색리(色吏)<sup>117)</sup>에게 모속(冒屬)<sup>118)</sup>된 무리들은 각 읍(邑)에서 각각 액수를 정하고, 다시는 가감(加減)하지 못하도록 한다.<sup>119)</sup>

일(一). 지금 비록 정액(定額)에 결원이 생겼더라도 대정(代定)120)할 때에는 일임(一任)된

102) 연수(淵藪): 소굴(巢窟). 못과 숲, 고기와 짐승이 모여드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든다는 비유.

103) 이정(厘正): =이정(釐正). 고증하여 바로잡음. 또는 정리하여 개정함.

104) 을잉우(乙仍于): 이두. '을지즈로'로 읽으며, '을 말미암아', '에 따라'의 뜻이다.

105) 사태(沙汰): =도태(陶汰). 척결함. 쓸어버림.

106) 대탈(代頃) : 탈이 생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정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107) 부표(付標) : 문서 따위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표지를 붙이는 일, 혹은 그 표지를 가리킨다.

108) 수포(收布) : 군역(軍役)이나 신역(身役) 따위에 내어야 될 베[布]를 징수함.

109) 위재과(爲在果) : 이두. '호견과'로 읽으며, '하거니와' '하지마는'의 뜻이다.

110) 시호내(是乎乃) : 이두. '이오니'로 읽으며, '이나' '이오나' '이지마는'의 뜻이다.

111) 단치(段置): 이두. '단두' '뚠두'로 읽으며, '것도' '일도' '딴도'의 뜻이다.

112) 통영(統營):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의 군영(軍營).

113) 양중(良中) : 이두. '아해'로 읽으며, '에' 혹은 '에게'라는 의미이다.

114) 지위(知委) : 명령을 내려 알려줌.

115) 교귀(交龜) :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겨 주고 받는 일, 혹은 그 일을 행하던 장소.

116) 위제(爲齊): 이두. '하제'로 읽으며, '한다' '하라'의 의미이다.

117) 색리(色吏) : 담당 아전이란 뜻이다. 주로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의 아전을 가리킨다.

118) 모속(冒屬) : 거짓말을 하고 입속(入屬)시킴. 또는 함부로 종속(從屬)시킴.

119) 시제(是齊) : 이두. '이제'로 읽으며, '이다' '이어라'라는 의미이다.

120) 대정(代定) : 결원이 생긴 것에 대해 대신으로 그 자리에 충원(充員)하는 것을 말한다.

등패(等牌)121)가 농간(弄奸)을 부리니, 이 읍(邑)에 빠진 액수를 저 읍에서 대정하고 저읍(邑)에 빠진 액수는 이 읍에서 대정한다. 정해진 액수는 더하기도 하고 덜 하니 끝내 난잡하여 이르지 못한 데가 없게 된다. 지금 이후론 도망가거나 죽어서 결원이 생기면, 해당 면임(面任)122)과 이임(里任)이 본관(本官)에 보고하여 알린다. 본관에서 영문(營門)에 전보(轉報)한 뒤 영문(營門)에서는 해당 등패(等牌)에게 분부(分付)한다. 등패(等牌)가 해당 읍에 가서 한정(閑丁)을 구하여 와서 영문(營門)에 알리면123, 완문(完文)124)을 만들어 해당 읍(邑)으로 발관(發關)125)한다. 해당 읍(邑)에서는 각각 영읍(營邑)의 군안(軍案)에 부표(付標)하고, 다른 읍의 남는 인원으로써 다른 읍의 결원을 충당하지 않도록 한다.

일(一). 수포(收布) 등의 일에 대해 등패(等牌)는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擧行)한다. 영하(營下)의 등패(等牌)가 도모하여 완문(完文)을 발급받고, 한통속의<sup>126)</sup> 간민(奸民)들이 이를 빙자하여 탈역(頉役)을 꾀하는 경가 있으면, 본 읍에 보고해 엄하게 추궁하게<sup>127)</sup> 한다.

일(一). 각 읍의 면임(面任)과 이임(里任)들이 혹 군병들과 한통속이 되어 도망가거나 죽은 것으로 모탈(冒頃)하면, 등패(等牌)들 또한 영문(營門)에 발고(發告)하여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도록 한다.

일(一). 도망가거나 죽은 것[逃故]과 관계되어 생긴 결원을 각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이 즉시 보고해 알리지 않거나<sup>128)</sup>, 본관(本官)에서 즉시 전보(轉報)하지 않거나, 수포(收布)할 때 애초에 도망가거나 죽은 것으로 칭탈(稱頃)하면, 해당 면임(面任)、이임(里任)및 감색(監色) 등은 엄한 추궁을 면하기 어렵다.

일(一). 어떤 색목(色目)을 막론하고 군제(軍制)의 정액(定額)을 채우지 못한 자는 각각 그 군안(軍案)에 주석(註釋)을 달아서 보낸다. 이후 각 읍의 등패(等牌)들은 그 소득(所得)에 따라 영문(營門)에 와서 알리고, 발관(發關)하여 기록을 첨가하고 액수를 채운 뒤에 그치게 한다.

<sup>121)</sup> 등패(等牌): 어떤 일이나 역(役)을 감독하는 사람.

<sup>122)</sup> 면임(面任): 지방의 각 면에서 호적(戶籍) 등의 공공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sup>123)</sup> 시거등(是去等): 이두로 '이거든'으로 읽으며, '이거든'의 뜻이다.

<sup>124)</sup> 완문(完文) : 조선조에 주로 부동산에 관한 관청의 증명서. 후기로 내려오면서 부동산은 물론 각종 증빙 서류로 활용되었다.

<sup>125)</sup> 발관(發關) : 상관이 하관에게 관문(關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관문(關文)은 상급 관청에서 동급 이하의 관청에 내리는 공문서 혹은 허가서를 가리킨다.

<sup>126)</sup> 부동(符同) : 그른 일을 하기 위하여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한통이 됨.

<sup>127)</sup> 중구(重究) : 심하게 허물을 추궁함.

<sup>128)</sup> 시거내(是去乃): 이두로 '이거나'로 읽으며, '이거나'의 뜻이다.

## 이노(吏奴)로 군대를 편성하는 절목(節目) [吏奴作隊節目]

본영(本營)은 평야에 처해 있어 험준한 성곽(城郭)이 없고, 감군(監軍)은 수륙(水陸)에 접 해 있으면서도 하수(下手)할 병졸이 없으며, 그 방어[禦侮]에 있어 지극히 탁 트여 있다 는 근심이 있다. 지난 계사년(癸巳年)에 이노(吏奴)를 가려 뽑아 대오(隊伍)를 삼초(三 哨)로 편성하고, 달마다 재주를 시험해 완급(緩急)에 따라 꼭 필요한 쓰임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 뒤엔 포기(抛棄)하고 단지 허안(虛案)만 남았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 비변사에서 관문을 보내 엄중하게 분부하여 열읍(列邑)에서 일체 거행하라고 하였다. 본 영(本營)에는 이미 구제(舊制)가 있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신졸(新卒)들은 추연(推演)하 지 않을 수 없다<sup>129)</sup>. 이 때문에 각 청(廳)에 소속된 제반인(諸般人)들을 뽑아 전(前)、좌 (左) · 우(右) · 후(後)의 초(哨)를 만든다. 또 궁시인(弓矢人) · 각 읍의 장인(匠人)들로써 중초(中哨)로 만드니, 이 또한 고제(古制)에 의거한 것이다. 옛날의 장군들이 용병(用兵) 할 때에 적을 막는 기계(器械)를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sup>130)</sup>에서도 필요에 따라 순식 간에 마련하였으니, 공장(工匠)이 없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합쳐 5초 (哨)를 만드니, 예전에 비해 2초(哨)를 증가한 것이고, 또한 단촐하고 약하다는 탄식을 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군대는 영하(營下)에서 생장(生長)하고 관문을 출입하였으며, 용맹함이 넘쳐나고 정예로우며, 힘써 윗사람과 친하고 대오(隊伍)와 잘 화합한다. 일반 군대와 비교해 보면, 비록 일당백(一當百)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그들의 힘을 얻는 것은 오로지 어루만지고[撫恤] 권장하는[勸課]131) 정치에 달려 있 다. 옛 절목(節目) 이외에 거행할 법식(法式)의 조목을 아래에 나열한다.

일(一). 각 초(哨)의 장관들은 무예가 뛰어나거나 박력이 있는 자를 택차(擇差)<sup>132)</sup>하여 본영(本營)의 장군에게 보내어 관청(官廳)의 모든 체모(體貌)를 일체 거행하게 한다. 기대총(旗隊摠)도 또한 각각의 우두머리를 맡은 이를 차례대로 승정(陞定)한다. 군병(軍兵) 중에 탈(頃)이 있는 자는 스스로 부표(付標)함을 허락하지 말고, 대탈(代頃)을 전보(轉報) 하여 예전과 같이 남잡(濫雜)한 폐단을 없게 한다.

일(一). 군장(軍裝)과 기계(器械)는 매우 정밀하고 예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계(器械)는 군기소(軍器所)에서 상등(上等)의 것을 것이고, 복색(服色)은 스스로 갖춘다. 그런데 가난해서 구입하기 어려운 자는 일시에 독촉하거나 꾸짖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수(數)는 먼저 방색(方色)의 겉옷을 마련하고 초대(哨隊)를 구별하고, 차례대로 갖추게 한다.

<sup>129)</sup> 시호등이(是乎等以): 이두로 '이온 등이'로 읽으며, '인 것으로'의 뜻이다.

<sup>130)</sup> 대루(對壘) :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거나 교전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sup>131)</sup> 권과(勸課) : 일을 맡기고 권장하는 일.

<sup>132)</sup> 택차(擇差) : 쓸만한 인재를 골라 벼슬을 시킴.

일(一). 이노(吏奴)가 비록 동반(同班) 관속(官屬)이라도 군문(軍門)에 있어서 기율(紀律)이 없을 수 없다. 군대를 모을 때에 범과(犯科)한 자가 있으면, 초관(哨官) 7대<sup>133)、</sup>기총(旗摠) 5대、대장(隊長) 3대씩이며, 각각 자단(自斷)하게 한다.

일(一). 시예(試藝)의 경우, 옛 제도에선 매달[逐朔]이었고 새 제도엔 사맹삭(四孟朔)<sup>134)</sup>이다. 매달은 너무 번거롭고 사맹삭(四孟朔)은 너무 느슨하다. 이와 같으면 반드시 흥기(興起)되지도 않고, 재주 익히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사맹삭(四孟朔)은 시열(試閱)<sup>135)</sup>을 모두 모아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하고 상(賞)과 벌(罰)을 논한다. 매달 삭망중에 만약 아일(衙日)<sup>136)</sup>에 점고(點考)<sup>137)</sup>하는 일이 있다면, 점고가 끝난 뒤에 중군(中軍)과 병비(兵裨)가 같이 모여 점고를 비교하고, 사방(射放)<sup>138)</sup>을 자원한 자 중에서 우수한 이를 뽑아 상을 준다. 가령 이들로 하여금 영문(營門)을 알고 군려(軍旅)의 뜻을 잊지 않게 한다면, 또한 용동(聳動)하여 흥기(興起)하는 일대 기회(幾回)가 되기에 충분하니, 헤아려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一). 이미 '장하친수(帳下親隨)'라 했으면, 친병(親兵)139)은 주장(主將)에게 수족(手足)의 군졸(軍卒)이 되고, 주장(主將)은 친병에게 체통(體統)의 관리가 된다. 완급(緩急)、사생(死生)에는 함께 감고(甘苦)하고 같이 행동해 모두 나라에 보답하고 진영(陣營)에서 죽음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장수된 자의 도리는 추위、배고픔、용감、겁냄[怯]을 관찰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병졸(兵卒)된 자의 법(法)은 단지 병기(兵器)를 연마하고 재주를 익히는 부지런에서 나오는 것이니, 활[弓]、칼[釰]、창(槍)、총(銃)을 막론하고 자신의 힘에 따라 정밀하게 익힌다. 매 시열(試閱)할 때 만약 합시(合試)에서 뛰어난자가 있으면, 격외(格外)의 상(賞)을 베풀어 격려(激勵)하고 권장(勸獎)하는 근거로 삼는다.

일(一). 기고수(旗鼓手)140) · 취타수(吹打手)141)는 만군(萬軍)의 이목(耳目)이 되기에 임무

<sup>133)</sup> 도(度) : 형률(刑律) 중 장형(杖刑)의 수를 뜻하는 양사(量詞).

<sup>134)</sup> 사맹삭(四孟朔) : 봄、여름、가을、겨울의 각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통틀어 일컬음.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sup>135)</sup> 시열(試閱) : 사열을 시험함.

<sup>136)</sup> 아일(衙日):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여 조회를 하고 정사(政事)를 보는 날. 여기서는 관청에 서 일을 보는 날을 가리킨다. 양아일(兩衙日)·사아일(四衙日)·육아일(六衙日) 등으로 지켜짐.

<sup>137)</sup> 점고(點考) : 명부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數爻)를 점검하는 일.

<sup>138)</sup> 사방(射放) : 활을 쏘고 포(砲)를 놓는 것을 말한다.

<sup>139)</sup> 친병(親兵): 임금이 몸소 거느리고 지휘하는 군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호위병을 말하는 듯하다.

<sup>140)</sup> 기고수(旗鼓手) : 기고(旗鼓)는 군기(軍旗)와 북을 가리키는 말로 군중(軍中)에서 호령하는 기구이다. 이를 담당하는 군졸을 기고수라 한다.

<sup>141)</sup> 취타수(吹打手) : 군중에서 징ㆍ나(鑼)ㆍ바라ㆍ북ㆍ솔발(率鈸)을 치는 군사와 나발ㆍ호적ㆍ대 각(大角)을 부는 군사를 말함. 주로 주장(主將)이 좌기(坐起)할 때, 군사를 조련(操練)할 때, 진 영(鎭營)을 열고 닫을 때 불거나 친다.

가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힘이 센 자가 정기(旋旗)를 잡고 용감한 자가 쇠북[金鼓]을 잡으면, 한 영(營)의 군대로 하여금 진퇴(進退)와 좌작(坐作)의 절도(節度)를 편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sup>142)</sup>. 본영(本營)은 칠색군(七色軍)들의 피로(疲勞)와 용렬(庸劣)이 더욱 심하고, 기수(旗手)들은 흑백(黑白)의 구분이나 눕히고 세우는[偃竪] 법에 완전 어두우며, 타수(打手)들은 완급(緩急)의 절도(節度)나 고저(高低)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는 우리 모든 군사들을 다 같이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에 더욱 한심(寒心)하다. 이후론 칠색군(七色軍)을 분정(分定)하여 기고수(旗鼓手)、취타수(吹打手)를 담당<sup>143)</sup>시키되, 담당할 업무를 먼저 익히게 한다. 색(色)은 언수(偃竪)・마동(磨動)이 있고, 소리는 완긴(緩緊)、고저(高低)가 있으니, 능력의 여부에 따라 선발하고 등급에 따라 시상(施賞)한다. 사수(射手)、포수(砲手)는 자원(自願)을 허락하되, 한결같이 경군(京軍)의 예(例)와 같이 한다.

일(一). 친병(親兵)을 설치하여 매달 권과(勸課)하는 것은 대개 병사들이 영하(營下)에 있어 갑자기 취합(聚合)하기에 편리(便利)하고 신속(迅速)하기 때문이 듯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만약 약속(約束)이 없다면, 급할 때에 필시 착란(錯亂)의 폐단이 있을 것이다<sup>144)</sup>. 각 병사들이 각자 지닌 기계(器械)는 항상<sup>145)</sup> 손으로 만지며, 부서지면 곧장 수리한다. 몸에 짝하여 서로 따르되, 밤이 되면 베개 곁에 둔다. 전투복[戎服] 또한 정돈(整頓)하여마치 적(敵)과 마주한 상황처럼 한다.<sup>146)</sup> 아문(衙門)에 만약 불시(不時)의 변고(變故)가 있으면 명령을 내기도 전에 혹 영각(令角)이나 호적(號笛)을 불거든, 입으로 전하고 서로 거느려 각자 기계(器械)를 지니고 아문(衙門)에 모여 한 편으로는 귀로 듣고 탐문하고, 한 편으로는 대(隊)를 정돈해 주장(主將)의 처분(處分)을 기다린다. 각 방(房)이 모이면 각 초(哨)는 스스로 해산하지만, 급할 때를 당해 해당(該當) 기초(旗哨)들이 잡아 전하기 어려우면, 이 대(隊) 저 대(隊)를 막론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서로 전한다. 모이면대(隊)를 나누는데, 임시로 편성하여 대(隊)가 어수하게 되는 근심을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행(擧行)하여 명령을 위반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一). 포수(砲手)가 시방(試放)할 때는 다섯 차례에 걸쳐 돌아가며 쏘는데, 이는 경외 (京外)에 통용되는 규범이다. (이 때) 영하(營下)의 이노배(吏奴輩)들은 대오(隊伍)의 모양(貌樣)을 이루지 못해 혹 다른 총을 빌려 쏘기도 하며, 혹 남의 손을 빌려 쏘기도 하여 어수선하고 혼잡하니, 먼저 좌작(坐作)을 정돈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가며 쏘는 절차는 10인씩을 소대(小隊)로 편성하여 열(列)을 이루도록 하여 절대로 차례를 잃지 말도

<sup>142)</sup> 시여호(是如乎) : 이두. '이다온'이라 읽으며, '이라 하는' '이라 하므로' '이라 하더니'라는 뜻이다.

<sup>143)</sup> 차지(次知) : 담당관.

<sup>144)</sup> 시치(是置): 이두로 '이도'로 읽으며, '인 것'의 뜻이다.

<sup>145)</sup> 상천(常川) : 항상. 간단(間斷)없이. 시냇물이 항상 쉬지 않고 흐르는 데서 이른 말.

<sup>146)</sup> 시여가(是如可) : 이두로 '이두가'로 읽으며, '이다가'의 뜻이다.

록 하며, 또한 필히 자신이 직접 쏘도록 한다.

일(一). 사맹삭(四孟朔) 시열(試閱) 때 상(賞)의 격식(格式). 【가장자리를 2번 적중하면[邊二中] 무명[末] 1필. 가장자리를 3번 적중하면[邊三中] 무명 2필, 가장자리를 4번 적중하면[邊四中] 무명 3필이다. 관통하면[貫] 매 분(分)마다 각각 반(半) 필을 더한다. 5번 적중하면 임시(臨時)로 품정(稟定)나가한다. 포상((砲賞)은 사수(射手)와 같다. 세 번의 발사에서 6번 적중하면 사수(射手)의 오중례(五中例)와 같이 시행한다.】 일(一). 매달 별도의 시예(試藝) 때 상(賞)의 격식(格式)은 이 예(例)에 구애되지 말고, 각각 우등(優等) 3인을 선발한다. 혹 분수(分數)에 따라 시상(試賞)을 참량(叁量)하여 격려와 권장의 밑바탕으로 삼기도 하는데, 쌀、베、돈、대[竹]을 막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 지급(148)하다.

## 가산외성(架山外城)에 백성들이나 승려 등을 모집해 군대로 편성하고, 승창(僧倉)을 설치하는 절목 「架山外城募民僧人等作隊僧倉節目]

일(一). 험하고 막힌 곳을 이용하여 성지(城池)를 설치하는 것은 나라의 보장(保障)이 되기 때문이다. 도읍(都邑)을 낀 양한(兩漢)149)을 문 안의 빗장과 자물쇠로 삼고, 열도(列道)의 여러 성을 문 밖의 병풍으로 삼는다면. 침입을 막는 것과 미리 대비하는 것에 있어 마땅히 내외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이 가산산성을 돌아보니 팔공산(八空山)의 정상에 근거하여 일로(一路)의 요충(要衝)을 감당하고 있어, 영남의 제일(第一) 관방(關防)이다. 절을 짓고 승려를 모았지만 양식을 저장할 창고[餉倉]가 없고, 창고를 지어 백성들을 모집했지만 지키는 군졸들이 없으니, 이것은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경우이다. 성중(城中)에 모집한 백성들은 한결같이 영하(營下) 이노배(吏奴輩)의 예(例)를 따라 초(哨)를 편성했다. 두 절의 승도(僧徒)들 또한 남북(南北) 양한(兩漢)의 예(例)를 따라 대(隊)를 이루어 사포(射砲)를 익히게 하여 평상시에는 맡아 지키면서 임란(臨亂)에는 대응할수 있는 군졸로 삼았다. 지금 또 별도로 비축한 쌀 450섬을 내 '승창곡(僧倉穀)'이라 명명하고, 봄에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거두어 그 중에 모미(耗米)150)를 취해 승초(僧哨)의급료(給料)와 상(賞)의 자본으로 삼았다. 모집한 백성들의 시상(施賞)은 남창(南倉)에서

<sup>147)</sup> 품정(稟定) : 품의(稟議)하여 결정하는 것.

<sup>148)</sup> 상하(上下) : 이두로 '차하'로 읽으며, 관에서 백성에게 지불 또는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sup>149)</sup> 양한(兩漢) : 남한산성(南漢山城)과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이름.

<sup>150)</sup> 모미(耗米): 환곡(還穀)、세곡(稅穀)의 이식미(利息米). 각 고을의 창고에서 환곡을 환상(還上)할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 자연 손실될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미라는 명목으로 1/10을 첨가하여 받았으며, 세곡도 이에 준함. 원래는 원곡(元穀)에 대한 이자지만, 보관 중에 생기는 감소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이식미라고도 함. =환모(還耗). 모곡(耗穀). 비모(費耗). 작서모(雀鼠耗).

마감(磨勘)<sup>151)</sup>하며, 기타 절목(節目)의 조목을 아래에 나열하니, 영구히 준행(遵行)하는 밑바탕으로 삼도록 한다.

일(一). 군사(軍士)는 있지만 우두머리가 없으면 이는 곧 산졸(散卒)이다. 백성을 모집하되 수첩병방(守堞兵房)을 좌우의 초장(哨將)으로 삼고, 승군(僧軍)은 여러 승려들 중에서일에 능숙한 자가 총섭(摠攝)하여 스스로 망차(望差)152)를 택한다. 일반적으로 권과(勸課)할 때에는 반드시 성적(成績)을 고찰하여 상을 주어야 격려(激勵)할 수 있다. 매 춘추(春秋) 사방(射放)153)을 시험할 때에 승도(僧徒)들 중 우수한 자는 각 산성(山城)의 승장(僧將)에게 천거(薦擧)해 쓰게 하고, 민간인들 중 뛰어난 자는 점차 기패관(旗牌官)154)으로 승진시켜, 서로 거느리고 재주를 익히는 밑바탕으로 삼도록 한다.

일(一). 이미 대오(隊伍)를 편성(編成)했으면 지남(指南)155)의 방법을 훤히 익힌 후에야 급시(急時)에 임해 쓰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들 중에서 영리하거나 글을 아는 자를 택해 기패관(旗牌官)으로 삼아 매 연습(練習) 때마다 눈으로는 형색(形色)의 깃발을 알게하고, 귀로는 금고(金鼓)의 소리를 알게하며, 손으로는 장단(長短)의 깃발을 알게하고, 마음으로는 상벌(賞罰)의 쓰임을 알게하며, 발로는 진퇴(進退)의 절도(節度)를 알게한다. 일(一). 모민(募民)들로 이미 대(隊)를 편성했으면 따르는 자와 통솔하는 자를 별도로 정한다. 평상시에 별장(別將)에게 불려 다니며 급료를 받는 자가 나졸(羅卒)이니, 그로 하여금 취타(吹打)의 절도를 익히게 한다. 혹 뜻하지 않은 변고가 있으면, 별장은 스스로호령(號令)을 주관하여 승도(僧徒)와 모민(募民)의 양색(兩色) 초관(哨官)을 지휘하고, 한편으로는 지키고 한 편으로는 급보(急報)하여 중영(中營)이 차례를 잃어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폐단을 없게한다.

일(一). 내·외사(內外寺)를 단속(團束)하는 승려가 변방을 지키는 군졸(軍卒)의 역할까지한다면, 그들을 위한 고휼(顧恤)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해야 한다<sup>156)</sup>. (이런 이유로)성(城)을 설치할 처음부터 잡역(雜役)으로 침탈(侵奪)하지 못하게 하고, 완문(完文)을 적수(積受)하였다. <sup>157)</sup> 세월이 오래되어 일이 변하는 것은 형세 상 필연적인 것이다. 더욱이 지금 대(隊)를 편성한 뒤에는 금령(禁令)을 조목으로 나열하고, 그 성(城)의 소속으로모입(募入)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지 않을 수 없다. 승군(僧軍)은 크고 작은 지물(紙物)

<sup>151)</sup> 마감(磨勘) : 성적을 매기는 일. 또는 우리나라 고유어로 끝을 맺음.

<sup>152)</sup> 망차(望差) : 망(望)은 어떤 업무나 관직의 후보를, 차(差)는 차정(差定) 즉,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sup>153)</sup> 사방(射放) : 활을 쏘고 포(砲)를 놓는 것을 말한다.

<sup>154)</sup> 기패관(旗牌官) : 각 군영에 속한 종 9품의 장교(將校). 주로 군기(軍旗)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sup>155)</sup> 지남(指南): 이끌어 가르치거나 가리킴. 교수(敎授)함.

<sup>156)</sup> 시호등(是乎等) : 이두로 '이온든'으로 읽으며, '인 것으로'의 뜻이다.

<sup>157)</sup> 시재과(是在果): 이두로 '이견과'로 읽으며, '인 것과', '이거니와'의 뜻이다.

과 비석(碑石)을 남한산성(南漢山城)·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운송[曳運]하거나, 승려가 부복(負卜)하는 역(役)은 일체 침탈하지 않도록 한다. 모민(募民)은 제반(諸般) 신역(身役)을 아울러 견감(蠲減)158)하여 오로지 성을 지키는 데만 뜻을 두게 한다.

일(一). 이미 승창(僧倉)을 설치했으면, 봄ㆍ가을에 환곡(還穀)을 빌려주고 거두는 일[糶糴]은 총섭(摠攝)하는 승통(僧統)이 입회하여<sup>159)</sup> 점검하되, 한결같이 남창(南倉)의 예(例)와 같게 한다. 성외(城外)의 송림사(松林寺)는 근처에 있는 좁은 입구가 있어 성창(城倉)의 외원(外援)<sup>160)</sup>으로 삼을 만하다. 그 참역(站役)<sup>161)</sup>들이 비록 대(隊)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급박한 일이 닥쳤을 때에 난(亂)에 달려감에는 마땅히 이동(異同)이 없으니, 그 명수(名數)를 기록해 둔다. 평소에는 남창(南倉)에서 분조(分糶)하고, 한가할 때는 통솔(統率)하여 성(城)을 지키게 한다. 그러나 혹 안정(顏情)에 구애되어 속인(俗人)에게 분급(分給)하거나<sup>162)</sup>, 균등하게 나누지 못하거나, 혹 봉상(捧上)하지 못하고 헛되이 남겨두는 폐단이 있으면, 그 일을 맡은 임장배(任掌輩)<sup>163)</sup> 및 총섭(摠攝)은 모두 군향미(軍餉米)를 농간(弄奸)하다가 적발되었을 때에 받은 군율(軍律)을 면하지 못한다.

일(一). 환곡을 수납할 때 말、되、섬은 한결같이 남창(南倉)의 예(例)를 따르되, 별도로 낙인(烙印)을 만들어 사용한다. 취모(取耗)<sup>164)</sup>는 승인(僧人)이 수납(收納)하고, 수납(收納)을 받아가서 스스로 그 안에 둔다. 원래 왕래하는 비용이 없으면, 각 읍의 분급(分給)과 동일하게 취모(取耗)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환곡(還穀)은 1섬당 1말씩 취모(取耗)하며, 보국사(寶國寺) 또한 이 예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일(一). 승군(僧軍) 중 1인、초관(哨官) 2인、기패관(旗牌官) 2인、서기(書記) 2인은 이미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군(軍)의 임무를 맡겼으니 잠시라도 손에서 뗄 수 없다. 급료(給料)를 참적(鏊的)하되<sup>165)</sup>, 1년간의 환곡(還穀)의 모곡(耗穀)<sup>166)</sup>에서 치러주는 법이 아예 없더라도<sup>167)</sup> 매년(每年) 사맹삭(四孟朔)마다 각각 3말을 지급하여 임무를 맡은 승려의 구별을 표시하며, 문서(文書)는 중영(中營)에서 마감(磨勘)한다.

158) 견감(蠲減) : 조세 등의 일부 세금을 감면하여 줌.

159) 안동(眼同) : 함께 입회(入會)함. 같이 데리고 감.

160) 외원(外援) : 외부로부터의 도움. 외구(外救).

161) 참역(站役) : 각 역참(驛站)에 동원되는 노역(勞役).

162) 시거내(是去乃) : 이두. '이거나'로 읽으며, '이거나'의 뜻이다.

163) 임장(任掌): 서울의 각방(各坊) 또는 지방의 동리(洞里)에서 호적 및 기타 공공업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들을 일컫는다. 서울의 각방에는 별문서(別文書)、별유사(別有司)가 있고 지방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등이 있었다.

164) 취모(取耗) : 환상(還上)의 모괵(耗穀)을 보충하려고 빌려 준 곡물의 10분의 1을 이자로 받는 일.

165) 위호의(爲乎矣): 이두. '하오되'라고 읽으며, '하되'의 높임말이다.

166) 모곡(毛穀) : 환곡(還穀)이나 세곡(稅穀)을 징수할 적에 쌓아두는 동안 축이 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을 말한다.

167) 시치(是置): 이두. '이두'라고 읽으며, '이다' '이더라도'의 의미이다.

일(一). 본성(本城)의 수첩군관(守堞軍官)168) 1,000인은 계사년(癸巳年)의 계문(啓聞)169) 으로 정액(定額)하여 번(番)을 배치(排置)하고 당직을 서게 되었다. 그 뒤 임장배(任掌輩) 들이 절목(節目)에 있지 않은 인원을 함부로 모집하여 많게는 2,800여 명에 이르게 되 었다. 이 때문에 정액(定額)을 따라 그 넘치는 수를 없애고 단지 1,000인으로 안(案)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1년에 3개월씩 번을 배치하면, 1번(番)당 7인이며 남은 수는 비록 100여 인이지만, 그 중 훈장(訓長)이 상(喪)을 당하거나 탈(頉)로 제외된 무리들을 모두 합치면 남은 수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에 의거하여 정해진 수를 가감하지 못하게 하 며, 또한 1년이 되지도 않아 2번 번(番)을 서서 원망하고 부르짖는 폐단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 봄ㆍ여름에 입번(立番)을 교대할 때에는 원읍(遠邑)의 군관(軍官)들이 양식을 싸 느라 빚을 내게 되어 영하(營下)가 그 이자를 배로 갚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므 로170), 지금의 번(番)은 별비미(別備米) 1,000섬을 3곳의 승창(僧倉)에 나누어 주고, 절 반은 조적(糶糴)171)한다. 그 중 300섬은 수첩청(守堞廳)에 떼어 주어 수직소(守直所)에 창고 하나를 별도로 세우고 병방군관(兵房軍官)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별장(別將) 과 같이 조적(糶糴)을 입회하게 했다. 성(城) 아래 군(軍) 70호(戶) 및 번(番)을 서는 군 관(軍官)의 양식으로 쓸 것 외에는 절대로 타인에게 분급(分給)하지 못하며, 또한 임무 를 맡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하게 했다. 매년 절반을 분급하여 간년(間年)<sup>172)</sup>으로 돌아가며 1말씩 취모(取耗)하고, 문서(文書)는 아울러 승창(僧倉)의 예와 같이 거행하게 한다. 만약 절목(節目)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양(兩) 병방(兵房)을 곤장에 처하여 강정 (降定)173)하고, 별장(別將)도 일체 논죄(論罪)한다.

일(一). 1,000섬 내에 천주사(天柱寺) 300섬, 보국사(寶國寺) 150섬, 송림사(松林寺) 250섬, 수첩청(守堞廳)은 300섬이다.

## 송림사(松林寺)의 승창(僧倉) 및 작령 절목(節目) [松林寺僧倉及作領節目]

가산성터[架山城址]는 그전부터 도내(道內)의 요충(要衝)이었으며, 또 순영(巡營)의 관할

<sup>168)</sup> 수첩군관(守堞軍官) : 조선조 때 수어청(守禦廳)、총리영(摠理營)、총융청(摠戎廳)에 딸린 군 관(軍官).

<sup>169)</sup> 계문(啓聞) : 임금에게 아뢰는 일.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또는 지방에 출장 중인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문서로써 아뢰는 일을 말한다.

<sup>170)</sup> 시여을잉우(是如乙仍于): 이두로 '이라지즈루'로 읽으며, '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의 뜻이다.

<sup>171)</sup> 조적(糶糴) :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sup>172)</sup> 간년(間年): 해를 거름.

<sup>173)</sup> 강정(降定) : 무관(武官)에 대한 징벌(懲罰)의 한 가지. 곧 벼슬을 강등하여 군역(軍役)을 시키는 일.

[句管]이었다. 그러므로 성내(城內) 두 절의 중들 가운데 장사(壯士)들을 뽑아 단속(團束)하고, 창(倉)을 설치하고 양식을 저장해 완급(緩急)의 쓰임으로 삼으면, 송림(松林) 한절은 비록 성외(城外)에 있어 나성(羅城)에 처하지만, 좁은 입구는 가산(架山)의 입술과이의 형세에 해당한다. 승도(僧徒)들이 번성(繁盛)하여 수초(數哨)의 군졸들을 선발할 수있지만, 본사(本寺)는 칠곡(柒谷)의 참역(役站)174)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신들이 왕래가끊이지 않아 곤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단속(團束)하여 연습(鍊習)175)을 맡기면, 고휼(顧恤)하는 뜻이 없는 듯하다. 그 형세를 살펴 성발(聲拔)하는 것이 마땅하니,기미(羈糜)176)하는 방법이 없을 순 없지만, 평상시에 은혜가 없으면 난(亂)에 임해 이들에게 의지할 방도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성사(城寺)에서 별비미(別備米) 250섬을 떼어주어[劃給] 본사(本寺)로 귀속시킨다. 승통(僧統)177)으로 하여금 승려들에게 적조(糴糶)하게 하고, 입호승(立戶僧) 100여 명을 장부에 기록하여 1/10을 정한다. 평상시에는 조적(糶糴)을 검찰하게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부역(赴役)을 맡기면, 곤폐(困弊)의 단서를 없앨 수 있고, 실제로 완급(緩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니, 절목(節目)의 조목을 아래에 나열한다.

일(一). 절이 성(城)에 있으면 불시(不時)의 수요(需要)를 버려둘 수 없다. 지금 이 쌀을 떼어 주어 외성(外城)의 별고(別庫)로 옮기되, 승통(僧統)이 그 곳에서 조적(糶糴)을 입회하게 한다. 각각의 영승(領僧)들은 영하(領下)의 승려들을 통솔하여 수납하되, 결코 속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와 함께 각각 곤장 20대로 처결한다. 비록 평지에 있어 군량미라 비슷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모(全耗)178)할수 없고, 또한 산창(山倉)의 예(例)를 따르지 말고, 한결같이 승창(僧倉)의 예(例)를 따라 1섬당 모곡(耗穀) 1말을 취하여 수성(守成)할 때에 본사 승려들의 군량미의 바탕으로 삼으며, 문서는 중영(中營)에 와서 마감(磨勘)한다.

일(一). 만약 완급(緩急)의 때를 만나 별장(別將)이 명령을 전달하면 승통(僧統)은 각 영 승(領僧)에게 번개같이 전달하여 일제히 외성(外城)에 모여 지휘에 따라 진퇴하게 하되, 어긋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결코 군법(軍法)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일(一). 승도(僧徒)가 이미 군향(軍餉)을 받았으면, 비록 사맹삭(四孟朔)의 연습(鍊習)은 없더라도 그들을 통솔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다. 각 그 10명 중에서 내력과 주소가 확실한[根着] 승려 1 명을 택해 영승(領僧)으로 삼는다. 평소의 조적(糶糴)과 급박할 때의수첩(守堞)은 영승(領僧)이 대(隊)를 통솔하여 거행(擧行)하게 한다. 곡물에 포흠(逋

<sup>174)</sup> 참역(站役) : 각 역참(驛站)에 동원되는 노역(勞役).

<sup>175)</sup> 연습(鍊習) : 군대의 조련(操練)이나 습예(習藝) 등을 가리킨다.

<sup>176)</sup> 기미(羈糜) : 기미는 굴레를 씌우듯 자유를 구속한다는 말로, 견제한다는 뜻이다.

<sup>177)</sup> 승통(僧統) : 승군(僧軍)을 통솔하는 승직(僧職)의 하나. 총섭(摠攝), 또는 섭리(攝理)라고도 한다.

<sup>178)</sup> 전모(全耗) : 전부 소모함.

欠)<sup>179)</sup> 있으면 영승(領僧)을 징벌하고, 도산(逃散)이 있으면 영승(領僧)에게 책임을 물어, 각각 계통이 있어 착란(錯亂)하지 않도록 한다.

일(一). 승안(僧案)과 거행절목(擧行節目)은 두 건(件)을 만들어 한 건(件)은 중영(中營)에 두고, 한 건(件)은 상사(上寺)에 두어 때마다 조검(照檢)의 밑바탕으로 삼되<sup>180)</sup>, 관속(管束) 이후에는 더욱 고휼(顧恤)의 도(道)가 있어야 한다.<sup>181)</sup> 남한산성(南漢山城)、북한산성(北漢山城)에 승려를 파견하거나 부복(負卜)의 역(役) 및 영(營) 본부(本府) 예운(曳運)의 역(役)은 일체 침탈하지 않도록 한다.

## 기고(旗鼓) 절목(節目) [旗鼓節目]

본영(本營)은 비록 관찰아문(觀察衙門)이 이미 수륙(水陸)의 장수(將帥)를 겸하고 있고, 또 친아(親牙)의 병(兵)을 설치했으니 집사(執事)를 맡을 사람이 없을 수 없지만, 군제(軍制)를 고칠 때에는 여기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182), 사맹삭(四孟朔)의 도사(都射)ㆍ권과(勸課)ㆍ칙려(勅礪)의 때에 기고(旗鼓)와 총령(摠領)을 담당할 사람은 마땅히 별도로 택해야 한다. 183) 전에 비해 액수를 더하되, 현지의 사정에 밝고 184) 통솔을 잘하는 이들을 별도로 택해 지고관(知鼓官)ㆍ기고관(旗鼓官)으로 삼아 각각 양원(兩員)을 둔다. 반드시 군문(軍門)에 오래 근무하여 진법(陳法)을 훤히 아는 자를 중영(中營)에서 천거(薦擧) 받고, 삼망(三望) 185)을 갖추어 대장소(大將所)에 보고하여 차출(差出)한다. 한결같이 전례(前例)에 따라 2년마다 교체(交替)할 것이며, 매달 기고관(旗鼓官) 2원ㆍ지구관(知敎官) 186) 2원을 삭(朔)ㆍ망(望)으로 나누어 2명씩 번을 서게 한다. 번(番)을 선 기패관(旗牌官)ㆍ능마아(能磨兒) 187)에게 각각 별도로 권장(勸獎)하여 번(番)을 들고 날 때 진법(陳法)을 강론하고 획지(畫紙) 188)를 중영(中營) 189)에

<sup>179)</sup> 포흠(逋欠) : 포(逋)는 조세 포탈, 흠(欠)은 관물을 사사로이 소비하여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sup>180)</sup> 위호의(爲乎矣): 이두로 '하오되'로 읽으며, '하되'의 뜻이다.

<sup>181)</sup> 시거호(是去乎) : 이두로 '이거오(온)'으로 읽으며, '인 것은'의 뜻이다.

<sup>182)</sup> 시여호(是如乎) : 이두로 '이던'으로 읽으며, '이던', '이더니'의 뜻이다.

<sup>183)</sup> 시거등(是去等): 이두로 '이거든'으로 읽으며, '이거든'의 뜻이다.

<sup>184)</sup> 암숙(諳熟) : 훤히 앎.

<sup>185)</sup> 삼망(三望) : 세 명의 후보(候補).

<sup>186)</sup> 지구관(知彀官) : 조선 후기의 군직(軍職)으로, 훈련도감과 총리영(摠理營) 및 각 도의 순영 (巡營)과 병영(兵營)에 두었다. 1594년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면서 마련한 고참 군직이다.

<sup>187)</sup> 능마아(能磨兒): 조헌 인조(仁祖) 조에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학하고 시험을 보이는 관청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능마아청(能磨兒廳)이다. 능마아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이를 능마아(能磨兒)라 한다.

보고하게 한다. 중군(中軍)의 담당관이<sup>190)</sup> 검칙(檢飭)해 실효(實效)를 물으며, 종번(終番) 후에 강지(講紙)를 서로 대조하여[考準] 일등과 꼴찌를 가려내 경중(輕重)에 따라 상벌(賞罰)을 논한다.

일(一). 정액(定額)된 내외(內外) 기패관(旗牌官)은 금년 10월 초1일부터 다음 해 3월 그 믐날까지 1번(番)당 4인씩 5일마다 돌아가며 번을 선다. 그 중에서 혹 실고(實故)한 이가 있으면 차례대로 퇴번(退番)하되, 1년 내에는 반드시 그 번차(番次)를 준수해야 한다. 5일 번을 서는 동안 야강(夜講)과 주사(畫射)가 있으면 절대로 낭유(浪遊)를 금한다. 1년 권과(勸課) 후 강사(講射)를 끝내 배우지 못하면, 이듬해 번(番)에 별도로 시예(試藝)하고, 모두 자불(自不)191이 된 자는 등급을 낮춘 오(伍)의 군졸로 편성시킨다.

일(一). 집사(執事)가 이미 군중의 이목(耳目)이 되었으면 기치(旗幟)의 방색(方色)<sup>192)</sup>, 언수(偃竪)의 절도(節度)와 금고(金鼓)의 완긴(緩緊)、고저(高低)의 방법을 입으로 외면서 배강(背講)하지 않을 수 없다.<sup>193)</sup> 청중(廳中)에 능마(能磨)<sup>194)</sup>를 설치하고, 집기(執旗)의 나무는 항상 앞에 두고 어루만지면서[排擺] 눈에 익숙하고 손에 익게 해야 한다. 번(番)을 선 기패관(旗牌官)<sup>195)</sup>도 이것에 의거하여 가르치고 익히되<sup>196)</sup>, 중군(中軍)<sup>197)</sup>이 불시 (不時)에 제비를 뽑아 법(法)에 따라 실시하여 관통(慣通)한 자에게 영외(令外)의 상(賞)을 특별히 베풀어 감동하게 한다. 방위(方位)을 아예 모르는 자는 사장(射場)의 법(法)에 따라 처리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격발되는 계기로 삼는다.

일(一). 대기수(大旗手)、뇌자(牢子)198)、취고세악수(吹鼓細樂手)199)、순령수(巡令手)200)

<sup>188)</sup> 획지(畵紙): 시험이나 고과(考課) 등의 성적을 기록한 종이를 말한다. 각 고을 수령이 봄· 가을·겨울 세 차례에 걸쳐 그 고을 속오군(束伍軍)의 활쏘기 시험을 하여 그 성적을 기록한 획지(畵紙)를 영문(營門)에 보내도록 하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을 주어 격려하였다.

<sup>189)</sup> 중영(中營) : 중군(中軍)의 영문(營門)이나 진영(鎭營)을 가리킨다. 중군(中軍)은 전、후、좌、우、중 5영(營)의 하나이다. 지방 각 군영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을 중군(中軍)이라 하기도 하였다.

<sup>190)</sup> 구관(句管):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사무를 맡아 다스리는 것. =담당(擔當). 담임(擔任). 관장(管掌).

<sup>191)</sup> 자불(自不) : 활쏘기에서 자기가 쏠 차례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음.

<sup>192)</sup> 방색(方色) : 동·서·남·북·중(中)의 다섯 방위에 따른 청(靑)·백(白)·적(赤)·흑(黑)·황 색 등 다섯 가지의 빛을 가리킨다.

<sup>193)</sup> 시치(是置): 이두. '이두'라고 읽으며, '이다' '이더라도'의 의미이다.

<sup>194)</sup> 능마(能磨): 능마아청(能麼兒廳)을 말하는 듯하다. 능마아청은 조선조 때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보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 16대 인조 때 베풀어서 26대 고종 19년에 폐지되었다.

<sup>195)</sup> 기패관(旗牌官) :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의 하나이다. 훈련도감의 기패관은 일반 병사들 중에서 진급시켜 임명하였고, 기타 군영에서는 병사 출신·금군 출신·무과 출신 등을 섞어서 임명하였다. 호조에서 급료를 지급하였으며, 20~24개월 근무하면 병조에 통보하여 6품의 품계로진급시켰다.

<sup>196)</sup> 위호의(爲乎矣): 이두. '하오되'라고 읽으며, '하되'의 높임말이다.

<sup>197)</sup> 중군(中軍) : 조선시대 지방의 각 군영(軍營)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 군대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장수의 직임(職任)을 갖는다.

이 4색(色)은 4원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조련(操鍊)한다. 분판(粉板)<sup>201)</sup>을 만들어 경군문 (京軍門)의 예(例)에 따라 담당관<sup>202)</sup>이 대장(大將) 앞에 획출(劃出)한다. 관할(管轄) 내의 군졸이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sup>203)</sup> 교재(教才)를 익히지 않으면, 가벼운 자는 스스로 판단해 곤장 5대를 치고, 무거운 자는 중영(中營)에 보고[轉報]하여 각별히 엄하게 다스려 군문(軍門)의 체통을 따르게 한다.

일(一). 조련(操鍊)할 때에 혹 취타수(吹打手)가 완긴(緩繁)을 고르게 하지 않거나, 기치 (旗幟)를 눕히고 세우는 차례를 잃거나, 순령수(巡令手)가 가고 멈춤의 절도(節度)를 잃거나, 뇌자(牢子)가 참역(站役)을 고르게 규찰(糾察)하지 않으면, 각 담당자는 잘못의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부과한다. 춘추(春秋)의 조련(操鍊)、평상시의 입번(立番)、사맹(四孟)204)의 부시(赴試)는 각 담당자가 단속하고 검칙(檢飭)하여 기계와 복色(服)을 각별히 선명(鮮明)하게 한다. 혹 부서진 것이 있으면 즉시 중영(中營)에 보고하여 군기시(軍器 寺)205)에서 마련하여 내려준다206).

일(一). 기고관(旗鼓官) · 지구관(知彀官) 4원의 요미(料米) · 삭포(朔布) · 의자(衣資)는 군수고(軍需庫)에서 전례(前例)에 따라 지급한다. 기패관(旗牌官)의 입번(立番) 급료(給料)가 이미 혁파(革罷)되었다면 그 요미(料米)<sup>207)</sup>는 여유(餘裕)가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되,각 고(庫)의 감관(監官)의 예(例)를 따른다. 그렇지만 군수(軍需)에 응당 들어와야 될 쌀은 그 수(數)가 많지 않고, 또 2원은 삭포(朔布)<sup>208)</sup>를 더 주어야 할 상황이면, 막중(莫

<sup>198)</sup> 뇌자(牢子):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하인. 오늘날의 헌병과 같음.

<sup>199)</sup> 취고(吹鼓) : 취고수(吹鼓手). 군대 안의 취타수(吹打手)와 세악수(細樂手)를 통틀어 일컬음. 세악수(細樂手)는 군대에서 장구、북、저、깡깡이、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병. 취타수 (吹打手)의 상대.

<sup>200)</sup> 순령수(巡令手): 대장의 명령 전달、호위(護衛)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sup>201)</sup> 분판(粉板): 아이들의 글씨 연습용으로 만든 장방형의 널빤지. 분(粉)을 기름에 개여 널조각에 발라 걸었음. 그 위에 먹으로 글씨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하여 글씨 연습을 함.

<sup>202)</sup> 차지(次知): 이두로 '담당, 주관, 차지,'의 뜻이다.

<sup>203)</sup> 시거내(是去乃): 이두. '이거나'로 읽으며, '이거나' '아무렇거나 가리지 않는다'의 뜻이다.

<sup>204)</sup> 사맹(四孟): 사맹삭(四孟朔). 사맹월(四孟月). 봄·여름·가을·겨울의 각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통틀어 일컫는다.

<sup>205)</sup> 군기시(軍器寺): 조선조 때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仗) 등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한 군기감(軍器監)을 세조 12년(1466)에 군기시로 고쳤고, 고종 21년(1884)에는 이를 없애고 그 일은 기기국(機器局)에 옮기어 붙였다.

<sup>206)</sup> 상하(上下) : 이두. '차하'라고 읽으며, '지불하다' '지출하다'라는 뜻이다.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가리킨다.

<sup>207)</sup> 요미(料米) : 관가의 하급 구실아치에게 급료로 내어주는 쌀.

<sup>208)</sup> 삭포(朔布) : 잡직(雜職)이나 각 군문(軍門), 아문(衙門)의 장교와 원역(員役) 및 그 밖의 아 전들에게 급료로 주는 베를 말한다.

重)한 군수(軍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sup>209)</sup>. 그러므로 각 고(庫)의 감관(監官)<sup>210)</sup>보다는 2되를 적게 주고 군교(軍校)<sup>211)</sup>보다는 각각 1되를 더 주되, 매달 1원(員)당 4되씩 마련하고, 삭포(朔布)와 찬지(饌紙)<sup>212)</sup>는 각 군교(軍校)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군수(軍需)가 설립된 초기 절목(節目)에는, 군교(軍校)의 삭포(朔布)의 경우 조련(操鍊)할 때 상격(賞格)<sup>213)</sup>、호궤(犒饋)<sup>214)</sup>、약환(藥丸) 이외에는 함부로 내려주지 않는 것이 엄격한 정식(定式)이었다<sup>215)</sup>. 군대를 편성함에 미포(米布)를 징수하는 법이 그 중간에 정해진 법이외에 한만(汗漫)하게 쓰는 병폐가 생겨났고, 근래에는 본고(本庫)에 요구하는 것이 증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절목(節目)의 본뜻에는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는 각 고(庫) 감관(監官)들의 급료는 각각의 창고에서 지급하며, 군교(軍校)에게 요미(料米)와 삭포(朔布)는 상격(賞格) 이외에는 함부로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수시(隨時)로 가감(加減)하려는 뜻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정식(定式)으로 삼으니<sup>216)</sup>, 절목(節目)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일(一). 군문(軍門)의 칠색군(七色軍)은 만군(萬軍)을 지휘하는 요체이니, 색(色)을 통솔하는 자는 더욱 긴중(繁重)하다. 이 때문에 병지(兵志)에 이르길 "용감한 자는 금고(金鼓)를 잡고, 강한 자는 정기(旌旗)를 잡는다."<sup>217)</sup>고 했다. 칠색군(七色軍)은 지극히 정밀하게 가르치고 익히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고관(旗鼓官)은 결코 초보자[生手]가 담당해서는 안 되니, 이후 뇌자(牢子) 중에서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 취타수(吹打手)로 별정(別定)하며, 기군(旗軍) 중에서 강하고 민첩한 자를 가려 순령수(巡令手)로 별임(別任)한다. 기고관(旗鼓官)은 일정한 기한이 차도 이송(移送)이 허락되지 않고, 다른 관청(官廳)에 이름을 기록하고 본청(本廳)에서 돌아가며 일을 하되<sup>218)</sup>, 훈장(訓長)을 겸임(兼任)한다.

<sup>209)</sup> 시호등이(是乎等以): 이두. '이온들로'라고 읽으며, '이온 줄로' '이온 바로'의 뜻이다.

<sup>210)</sup> 감관(監官) : 궁가(宮家)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의 보관 출납 등을 맡아보는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sup>211)</sup> 군교(軍校): 각 군영(軍營)에 속한 권무군관(勸武軍官)、별무관(別武官)、지구관(知彀官)、기 패관(旗牌官)、별무사(別武士)、교련관(敎鍊官)、별기위(別騎衛) 등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 하는 속역(屬役)의 총칭. 군관(軍官). 군교(軍校). 병교(兵校).

<sup>212)</sup> 찬지(饌紙) : 찬수(饌需)와 종이.

<sup>213)</sup> 상격(賞格) : 상(賞)을 주는 격례(格例).

<sup>214)</sup>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호군(犒軍). 호석(犒錫).

<sup>215)</sup> 시여호(是如乎) : 이두. '이다온'이라 읽으며, '이라 하는' '이라 하므로' '이라 하더니'라는 뜻이다.

<sup>216)</sup> 위거호(爲去乎): 이두. '하거온'이라고 읽으며, '하니' '하므로'라는 뜻이다.

<sup>217)</sup> 오기(吳起)의 『오자(吳子)』에 "키 작은 사람은 모극(矛戟)을 잡고 키가 큰 사람은 궁노(弓弩)를 잡고 강한 사람은 정기(旌旗)를 잡고 용감한 사람은 금고(金鼓)를 잡고 약한 사람은 말을 기르고 지략이 있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 계책을 짠다."라는 말이 있다.

<sup>218)</sup> 차제(差除) : 벼슬에 임명함.

## 영리이방색(營吏吏房色)

일(一). 모든 외인(外人) 임원(任員)은 30일 내에 부임(赴任)하며, 식솔을 데리고 가는[挈眷] 수령은 가까운 도(道)는 30일, 중도(中道)는 40일, 먼 도(道)는 50일이 과한(過限)<sup>219)</sup>이다. 계파(啓罷)<sup>220)</sup>되었다가 비로소 부임하거나, 해유(解由)<sup>221)</sup> 때문에 관(官)의 일에 얽매여 있는 자는 이 과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一). 모든 재외(在外) 인원(人員)으로 제수(除授)된 자는 근도(近道)、중도(中道)는 30일 내에, 원도(遠道)는 40일 내에 사은(謝恩)<sup>222)</sup>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자는 계달(啓達)<sup>223)</sup>하여 개차(改差)<sup>224)</sup>한다.

일(一). 수령이 본 읍에서 밭 10결(結)을 소유하였거나, 혹 건장한 노비(奴婢) 10구(口) 이상을 소유했으면 체개(遞改)<sup>225)</sup>한다.

일(一). 각 도(道)의 감사(監司)는 분묘 정비[掃墳]、가토(加土)、결혼[成婚] 등의 일로 허유(許由)를 요청할 수 없다.

일(一). 변읍(邊邑)과 수읍(守邑)은 반드시 얼굴을 대면하여 교대<sup>226)</sup>한 뒤에 올라온다. 교대하기 전에는 인신(印信)<sup>227)</sup>과 병부(兵符)<sup>228)</sup>를 이전의 관리에게 그대로 주어 얼굴을 맞대고 교대할 때 주고받도록 한다.

일(一). 내지(內地)<sup>229)</sup>의 수령(守令)은 죄로 파직을 당한, 곧 봉고파직(封庫罷職)된 자 이 외에는 임기가 다하면<sup>230)</sup> 자리를 옮긴다. 상피(相避)로 체직을 당한 수령(守令)만<sup>231)</sup>은

219) 과한(過限) : 정해진 기간을 넘김. 본문에서는 수령이 부임해야 할 기일(期日)을 말한다.

220) 계파(啓罷) : 장계를 올려 파직(罷職)됨.

221) 해유(解由) : 관리가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책임의 해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2) 사은(謝恩) : 사은숙배(謝恩肅拜). 하직(下直).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223) 계달(啓達) : 임금께 상소를 올림.

224) 개차(改差) : 관직의 등급이나 특정 기한을 바꾸거나 고침.

225) 체개(遞改) : 해당 관원을 바꾸는 것.

226) 면간교대(面看交代) : 신구(新舊)의 관원이 서로 면대(面對)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교대하는 것. 영장(營將), 성장(城將), 독진(獨鎭)을 겸직한 수령(守令)이나 국경、연안(沿岸)지방의 수령은 군사기밀에 관계되므로 특히 면간교대하여야 함.

227) 인신(印信): 나무, 쇠붙이, 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왕이 사용하는 것은 새(璽), 관리가 사용하는 것은 인(印), 평민이 사용하는 것은 사인(私印)이라 한다.

228) 병부(兵符): =발병부(發兵符).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둥글 넙적한 나무로 된 패.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진호(鎭號) 등을 기록한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 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보고 군대를 동원한다.

229) 내지(內地) : 해안(海岸)이나 변방(邊方)에서 깊숙이 들어간 안쪽 지방.

얼굴을 맞대고 교대한다.

일(一). 외관(外官)의 인신(印信)은 관찰사(觀察使)는 경내(境內)에서, 절도사(節度使)·첨사(僉使)·만호(萬戶)는 진문(鎭門)에서, 수령(守令)·찰방(察訪)은 아문(衙門)에서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는다.

일(一). 수령(守令)은 2년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3년에 한 번 분묘를 소제(掃除)하는 것, 병든 부모를 찾아뵙는 것, 조부모의 귀장(歸葬)<sup>232)</sup>, 죽은 아내의 귀장(歸葬), 과거 시험 응시[赴擧] 이 6조목에만 허유(許由)한다. 이외는 비록 법전(法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절대 허유(許由)하지 않는다. 허유를 받아 체직을 도모하는 자는 허유를 받지 못했거나 체개(遞改)되지 않았더라도, 경솔한 행동으로 벼슬을 버린 자이므로 아울러 그읍에 정배(定配)한다. 이 6조목으로 허유를 받았지만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본도(本道)에서 즉시 계문(啓聞)을 올리고 귀환을 독려해야 한다.

일(一). 수령 중 가족을 데리고 온 자<sup>233)</sup>는 환상거말(還上居末)의 예(例)<sup>234)</sup>에 의거해 장형(杖刑)을 집행(執行)하고<sup>235)</sup>, 벼슬을 버린 자는 그 지역 정배(定配)하거나 장형(杖刑)을 집행(執行)하되 영문(營門)에서 거행한다.

#### 일(一). 과만식(瓜滿式)

감사(監司)

절도사(節度使)

영장(營將)

우후(虞侯)

권관(權管) [四]

[团] '감사(監司)'에서 '권관(權管)'까지. 720일이다.

당상수령(堂上守令)

제권수령(除眷守令)

첨사(僉使)

만호(萬戶)

230) 과만(瓜滿) : 관리의 임기가 다함.

231) 뿐(哛): 이두로 '뿐'의 의미이다.

232) 귀장(歸葬) : 타향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으로 운구(運柩)하여 장사지내는 일.귀장(歸葬) : 타향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으로 운구(運柩)하여 장사지내는 일.

233) 남솔(濫率) : 관리가 법을 어기고 임지(任地)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

234) 환상거말(還上居末)의 예(例) : 환상(還上)은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 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상거말의 예는 환상(還上) 사무의 실적(實積)이 불량한 경우의 처리 예이다.

235) 결장(決杖) : 장형(杖刑)을 집행(執行)하는 것을 말한다.

#### 찰방(察訪) [제]

【团】 '당상수령(堂上守令)'에서 '찰방(察訪)'까지. 900일이다.

목사(牧使)

판관(判官)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四]

[四] '목사(牧使)'에서 '현감(縣監)'까지. 1800일이다.

참봉(參奉)

심약(審藥)

검률(檢律) [別]

[刊] '참봉(參奉)'에서 '검률(檢律)'까지. 450일이다.

#### 일(一), 포폄식(褒貶式)

매(每) 6월 15일、12월 15일에는 등제(等第)<sup>236)</sup>하여 계문(啓聞)을 올린다. 5년 동안 모두 상(上) 등급을 받으면<sup>237)</sup> 상(賞)으로 한 품계(品階)를 올리고, 중(中)이 셋이면 파직(罷職)한다. 당상관(堂上官)은 중(中)이 하나면 파직한다.

일(一). 경관(京官)은 30일을 채우고, 외관(外官)은 50일을 채워야 등제(等第)를 허락한다.

#### 일(一). 상피식(相避式)

일(一). 경외관(京外官)은, 본종(本宗)은 대공(大功) 이상의 친척<sup>238)</sup>과 여손부(女孫夫)、 자매의 남편, 외친(外親)은 시마(緦麻) 이상의 친척<sup>239)</sup>, 부조(父祖)의 형제(兄弟)와 자매 (姉妹)의 남편, 혼인한 집안은 모두 상피(相避)한다.

일(一). 영장(營將)은 군무(軍務)를 전담하는 속읍(屬邑) 수령(守令)과 상피(相避)한다.

<sup>236)</sup> 등제(等第):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사정(査定)하는 일. 중앙 관아의 관원은 그 관아의 당상관 (堂上官) 및 제조(提調)가, 지방 관아의 관원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에 사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sup>237)</sup> 십고상(十考上): 십고십상(十考十上). 벼슬아치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 경관(京官)은 각 청(廳)의 장관, 지방관(地方官)은 감사(監司)가 해마다 두 번씩 그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상·중·하의 세 급으로 나눈다. 십고십상(十考十上)은 동일한 직(職)에 있는 사람이 다섯해 동안 늘 상급의 성적을 얻었을 때를 가리킨다.

<sup>238)</sup> 대공(大功) : 종형제자매、중손(衆孫)、중손녀(衆孫女)와 질부(姪婦)、남편의 조부모、남편의 백숙부모、질부 등 대공친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이다.

<sup>239)</sup> 시마(總麻): 시마(總麻)는 상복의 하나로 가는 베로 만들며,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 兄弟)·중증손(衆曾孫)·중현손(衆玄孫)의 상사에 석 달 동안 입는 복제이다. 시마 이상의 친은 시마복을 입는 이상의 친족 이상. 즉 유복친(有服親)을 말한다.

일(一). 문서직(文書直)은 70명이다.

일(一). 산군(山郡) 수령(守令)은 군무(軍務)에 관계되지 않으면 관찰사(觀察使)가 직접 파출(罷黜)을 청하지 않는다. 병오년(丙午年)의 품계(稟啓)에 의해 법식으로 정해졌다.

## 호방색(戸房色)

- ◎ 전세(田稅)는 1부(夫)당 세미(稅米)240) 1섬 10말 7되 9홉
  - ▷ 공목(公木)241) 3필 36자 7치
  - ▷콩 1말 1되 6홉 2사 [四]
    - 【团】'전세(田稅)는'에서 '콩 1말 1되'까지. 이것은 수변읍(水邊邑)의 환작목(還作木)<sup>242)</sup>이다. 그러 므로 9등(等)의 예(例)로써 쌀을 내고, 무명으로 환산하는 예로 분배(分排)한 수를 마련한 다
- ◎ 경○년 양안(量案)243)의 전답(田畓)은 모두 336,429결 13부 9속 가운데,
  - ▷ 속전양부(續田量付)244) 5,468결
  - ▷ 기전(起田)245) 3,645결 52부 5속
  - ▷ 묵정밭246) 1,822결 19부 9속 [개]
    - 【沙】 '속전양부'에서 '묵정밭'까지. 개량(改量)할 때에 원전(元田)에 합부(合付)하여 기전(起田)에 따라 수세(收稅)하는 것을 허락했다. 세월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자 원전을 인감(引滅)했다. 경술년의 현진(懸陳)이 거의 원수(元數)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신해년 수천 결을 엄사(嚴査)하여 실제 수조(收租)로 되돌리고, 별도로 서록(書錄)을 시행했다.
  - ▷ 부세(賦稅)를 감면받았거나 절수(折受)247) 등의 전답 11,335결 26부 4속이다.
  - ▷ 예전부터 황무지였거나 반천포락(反川浦落)<sup>248)</sup>으로 잡탈(雜頃)된 것은 83,231결 89부 8속

<sup>240)</sup> 세미(稅米): 조세로 바치는 쌀을 가리킨다.

<sup>241)</sup> 공목(公木): 일본과의 물화(物化) 교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무명을 이르는 말이다.

<sup>242)</sup> 환작목(還作木): 환작목(換作木). 어떤 물품의 가치를 무명으로 바꾸어 매긴다는 뜻으로 짐 작된다.

<sup>243)</sup> 양안(量案):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 곧 논、밭의 소재지(所在地)、자호(字號)、 위치、등급、형상(形狀)、면적、사표(四標)、소유주(所有主)] 등을 기록한 원장(原帳). 전적(田 籍). 전안(田案).

<sup>244)</sup> 속전(續田) : 원전(元田) 이외의 전답으로서 토질이 척박(瘠薄)하여 매년 경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작하기도 묵히기도 하는 전지를 말한다.

<sup>245)</sup> 기전(起田) :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sup>246)</sup> 진전(陳田) : 묵정밭. 경작하지 않고 벼려두어 황폐(荒廢)한 전지를 말한다.

<sup>247)</sup> 절수(折受) : 임금으로부터 땅이나 결세(結稅)를 자기 몫으로 잘라 받는 것.

<sup>248)</sup> 반천포락(反川浦落): 전답이 내를 이루고 개울로 된 것.

- ▷ 면세되었다가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5,224결 71부 9속이다.
- ◎ 기유년(己酉年)의 실제 결수(結數) 236,637결 95부 8속 가운데,
  - ▷ 밭 119,457결 16부 3속이다.
  - ▷ 논 117,180결 79부 5속이다.
- ◎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sup>249)</sup>에 의거하면, 상지상(上之上) 1결에 내는 쌀은 20말이며, 상지중(上之中) 1결에 내는 쌀은 18말로, 그 다음은 차례대로 2말씩 감(減)한다. 전답은 같다.
  - ▷ 상지하(上之下)의 논은 4결 56부 7속으로, 1결당 쌀 6말이다.
  - ▷ 중지중(中之中)의 논은 88결 41부 5속으로, 1결당 쌀 12말이다.
  - ▷ 중지하(中之下)의 논은 65결 37부 7속으로, 1결당 쌀 10말을 낸다.
  - ▷ 하지상(下之上)의 밭은 128결 85부 3속으로, 1결당 쌀 8말을 낸다. 논은 1,631결 18부 5속으로, 1결당 쌀 8말을 낸다.
  - ▷ 하지중(下之中)의 밭 18,072결 11부 2속으로, 1결당 콩 6말을 낸다. 논은 24,160결 3부로, 1결당 쌀 6말을 낸다.
  - ▷ 하지하(下之下)의 밭은 101,264결 19부 8속으로, 1결당 콩 4말을 낸다. 논은 91,231결 22부 1속으로, 1결당 쌀 4말을 낸다.
  - ▷ 만약 흉년이 들면 재결(災結)<sup>250)</sup>은 반드시 하지하(下之下)를 따른다. 감급(減給)은 하(下)에서 상(上)까지 그 재결(災結)을 따라 그친다. 상(上)으로 확정(確定)된 것은 가감할 수 없다.
- ◎ 세미(稅米) 34,981결(結)<sup>251)</sup> 7말 3되 6홉 6사 가운데,
  - ▷ 위미(位米)252)는 107섬 2말 8되 8홉이다.
- ◎ 세태(稅太) 34,291섬 1말 3되 2사 가운데,
  - ▷ 위태(位太)는 5,592섬 1말 5되 1홉이다.
- ◎ 삼수량미(三手粮米)<sup>253)</sup> 18,931섬 5말 5홉 1사는 논밭을 막론하고 1결당 각각 1말 2

<sup>249)</sup>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세종(世宗) 26년(1444)에 규정한 지세(地稅) 제도 중의 하나이다. 전국의 토지를 그 비척(肥瘠)에 따라 상(上)、중(中)、하(下)로 나누고, 각 주군(州郡)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또 그 지역 안에서 다시 3등분하여 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임. 전분육등(田分六等)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의하였음.

<sup>250)</sup> 재결(災結) : 재앙을 입은 논밭을 말한다.

<sup>251)</sup> 결(結): 원문에는 '결(結)'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섬[石]'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sup>252)</sup> 위미(位米): 조세로 바치는 쌀. 조선 선조(宣祖) 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모든 전세(田稅)를 쌀과 콩으로 통일하였으며, 경기에 수납하는 쌀과 콩을 각각 위미(位米)와 위태(位太)라 했다.

<sup>253)</sup> 삼수량미(三手粮米): 삼수(三手)를 양성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원세(元稅) 외에 내는 세미(稅米)를 말한다. 삼수(三手)는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하여 세 가지로 나뉘어 무기(武技)를 익히는 군사, 곧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의 통틀어 일컬는다.

되를 내었으나<sup>254)</sup>,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 살수(殺手)、사수(射手)、포수 (砲手)의 급료(給料)로 쓰였기 때문에 군자창(軍資倉)<sup>255)</sup>에 바쳐 전세(田稅) 구등(九等)에 연계되어 외지외(外之外)로 내게 되었다.

- ◎ 공작목(公作木)256) 1,166동 3필 10자 6치
- ◎ 왜료미(倭料米)<sup>257)</sup> 2,670섬 1말 9되 1홉 3사 ▷ 콩 822섬 8말 6되
- ◎ 상납미(上納米) 16,618섬 14말 4홉 2사
  - ▷ 삼수량미(三手糧米)258) 9,306섬 7말 9되 4홉 8사
  - ▷ 콩 14,517섬 7말 2되 7홉 4사
  - ▷ 무명[木] 945동 30필 17자
- ◎ 가흥창(可興倉)<sup>259)</sup> 소속의 안동(安東)、비안(比安)、문경(聞慶)、예천(醴泉)、용궁(龍宮)、상주(尙州)、함창(咸昌) 등 7읍은 9등법에 의거해 쌀을 낸다. 본미(本米)와 본태(本太)를 본 창(倉)으로 수납(輸納)하면, 본 창에서 다시 경창(京倉)에 바친다. 민부(民夫)는 짐삯[駄價]<sup>260)</sup>로 배(倍)를 바친다. 예안(禮安)、풍기(豊基)、순흥(順興)、봉화(奉化)、영천(榮川) 등(等) 다섯 읍의 본미(本米)와 본태(本太)는 단양(丹陽)에 이르러 배를 임대하여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여 바친다.
- ◎ 장암참(塲巖站)<sup>261)</sup> 소속의 진주(晉州), 사천(泗川), 거제(巨濟), 진해(鎭海), 남해(南海), 웅천(熊川)<sup>262)</sup>, 하동(河東), 곤양(昆陽), 창원(昌原), 칠원(漆原), 고성(固城) 등(等) 11읍은 9등법에 의거해 쌀을 낸다. 본미(本米)와 본태(本太)를 바닷길로 경창(京倉)까지 운반한다. 그 중에서 분수(分數)<sup>263)</sup>는 환작미(還作米)<sup>264)</sup>로 나누어<sup>265)</sup> 진휼청(賑恤廳)에

254) 시내(是乃): 이두로 '이나'로 읽으며, '이나'의 뜻이다.

260) 태가(駄價) : 짐을 실어 날라 준 데 대해 주는 삯을 말한다.

261) 장암참(塲巖站) : 진주에 있었던 역참.

262) 웅천(熊川) : 경상남도 마산(馬山)의 옛 이름.

263) 분수(分數) : 과년도에 수납(收納)하지 못한 환상(還上)은 3년에 걸쳐 한 해에 3분의 1씩 거

<sup>255)</sup> 군자창(軍資倉): 군자감에서 관리하던 창고.

<sup>256)</sup> 공작목(公作木) : 공목작미(公木作米). 일본과의 교역에 치르는 무명을 공목(公木)이라 하고, 이 공목을 쌀로 환산하여 치를 쌀을 공작미라 한다.

<sup>257)</sup> 왜료미(倭料米)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내어주는 쌀.

<sup>258)</sup> 삼수량미(三手糧米):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軍糧米). 이들은 소지한 무기에 따라서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로 나누어져 삼수(三手)라고 하였다.

<sup>259)</sup> 가흥창(可興倉): 충청도 충주에 가흥역에 있던 창.『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옛날에는 덕흥창 (德興倉)이라 일컬었고, 또 경원창(慶原倉)이라 일컬었다. 가흥역 동쪽 2리에 있다. 예전에는 금천 (金遷) 서쪽 언덕에 있었는데, 세조(世祖) 때에 여기로 옮기고 경상도 여러 고을과 본주(本州)의 음성(陰城)、괴산(槐山)、청안(淸安)、보은(報恩)、단양(丹陽)、영춘(永春)、제천(堤川)、진천(鎭川)、황간(黃澗)、영동(永同)、청풍(淸風)、연풍(延豐)、청산(靑山) 등 고을의 전세(田稅)를 여기에서 거두어 배로 실어 날라 서울에 이르는데, 수로(水路)로 2백 6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납(移納)하는데, 본목(本木)보다 더 낸다.

- ◎ 감동창(甘同倉)<sup>266)</sup> 소속의 창녕(昌寧)、함안(咸安)、영산(靈山)、현풍(玄風)、밀양(密陽)、양산(梁山)、김해(金海)、의령(宜寧) 등(等) 8읍(邑)은 본미(本米)와 본태(本太)를 바닷길로 경창(京倉)까지 운반한다. 9등법에 따라 내는 쌀을 내는 법과 분수(分數)의 환작미(還作米)는 장암참(場巖站)의 소속과 동일하다.
- ◎ 수변읍(水邊邑)인 영해(寧海)、청하(淸河)、영일(迎日)、경주(慶州)、동래(東萊)、초계(草溪)、울산(蔚山)、고령(高靈)、선산(善山)、영덕(盈德)、흥해(興海)、인동(仁同)、장지(長只)、기장(機張)、대구(大丘)、성주(星州)、칠곡(漆谷) 등 17읍(邑)의 왜료미(倭料米)와 왜료태(倭料太)는 동래(東萊)로 떼어 주고, 바치고 남은 수가 있으면 공목(公木)<sup>267)</sup>으로 만들어 하납(下納)<sup>268)</sup>한다. 그러므로 9등법에 의거하여 내는 쌀에 비해 가납(加納)<sup>269)</sup>함이 있다.
- ◎ 산군읍(山郡邑)인 개령(開寧)、청도(淸道)、자인(慈仁)、하양(河陽)、군위(軍威)、청송(靑松)、의흥(義興)、김산(金山)、거창(居昌)、함양(咸陽)、합천(陝川)、언양(彦陽)、경산(慶山)、영천(永川)、의성(義城)、신령(新寧)、진보(眞寶)、영양(英陽)、지례(知禮)、산음(山陰)、삼가(三嘉) 등 21읍(邑)은 모두 무명으로 대신 상납(上納)한다. 그런데 공목(公木)은 각 읍(邑)에 흉년이 들어 결수(結數)가 줄어들어 혹 원래의 수(數)를 지키지 못하면, 이상의 읍은 무명으로 대신 충급(充給)하되, 상납(上納)은 쌀 1섬을 무명 3필 반(半)으로, 콩 1섬을 무명 2필 반(半)으로 하고, 하납(下納)은 쌀과 콩을 각각 반 필씩 감(減)하되 짐삯[駄價]은 별도로 낸다. 민부(民夫)는 그 수조(收租)와 획지(畵紙)²70)를 담당하는데, 상사(上使)가 예로부터 친히 떼어 주되, 쌀을 내는 수는 일체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의 예(例)를 따른다.

두는데 그 3등분한 해의 환상액수(還上額數)의 일컫는다.

<sup>264)</sup> 환작미(還作米) : 환작미(換作米). 어떤 물품의 가치를 쌀로 바꾸어 매긴다는 뜻으로 짐작된다.

<sup>265)</sup> 제출(除出) : 나누어 보냄. 파견함.

<sup>266)</sup> 감동창(甘同倉) : 경상남도 양산(梁山)에 설치한 창고. 통영(統營)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sup>267)</sup> 공목(公木) : 일본과의 물화(物貨) 교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무명을 이르는 말.

<sup>268)</sup> 하납(下納):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sup>269)</sup> 가납(加納) : 조세나 공물(貢物) · 환곡(還穀) 등을 정수(定數) 이외에 더 바침.

<sup>270)</sup> 획지(畵紙): 시험이나 고과(考課) 등의 성적을 기록한 종이를 말한다. 각 고을 수령이 봄· 가을·겨울 세 차례에 걸쳐 그 고을 속오군(束伍軍)의 활쏘기 시험을 하여 그 성적을 기록한 획지(畵紙)를 영문(營門)에 보내도록 하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을 주어 격려하였다.

### 단성상납(丹城上納)

- ◎ 1년 동안 왜(倭)에게 공급하는 쌀과 콩은 전세(田稅)에서 떼어 준다<sup>271)</sup>.
- ◎ 쌀 2,741섬 14말 2되 2홉 4사 가운데 【100섬은 병오년(丙午年)에 가정(加定)되었다.】
  - ▶ 71섬 2말 3되 1홉은 옛 도주(島主) 평의진(平義眞)272)의 요미(料米)로 감한다.
  - ▷ 남은 쌀은 2,670섬 11말 9되 3사이다.
- ◎ 콩 837섬 1말 3되 1홉 3사 가운데 [200섬이 가정(加定)되었다.]
  - ▶ 14섬 7말 7되 1홉 3사는 옛 도주(島主)의 요태(料太)로 감한다.
  - ▷ 남은 콩은 822섬 8말 6되이다.
- ◎ 공목(公木) 1,166동 13필 20자 6치는 전세미(田稅米)로써 1섬당 무명 3필로 쳐서 매년 입급(入給)하는 가운데.
  - ▷ 400동은 1필당 12말씩이니, 민부(民夫)들에게서 쌀로 바꾸면 도합 16,000섬이된다. 처음에 신묘년(辛卯年)부터 입급(入給)했는데, 기미년(己未年) 대동법(大同法)이 설립되었을 때 백성들의 원망으로 각각 2말을 감(減)했다. 계해년(癸亥年)에 선유사(宣諭使)<sup>273)</sup>가 올린 장계(狀啓)로 인해 또 2말을 감해 지금의 민납(民納)은 8말이 되었다.
  - ▷ 44동 18필 23자 3치는 옛 도주(島主)의 아들 암환(巖丸)에 대한 명목으로, 병오 년(丙午年)에 처음으로 입급(入給)했다.
  - ▷ 70동 20필은 강원도(江原道)의 응연가(鷹連價)<sup>274)</sup>이다. 전에는 응연(鷹連)을 관동(關東)에서 팔뚝에 얹어 와서[臂來] 입급(入給)했는데, 왜인(倭人)의 점퇴(點退)<sup>275)</sup>로 인해 본(本) 도(道)에서 무명으로 바꾸어 공급하고, 그 대신 경사(京司)에서 추심(推尋)한다.
  - ▶ 705동 4필 32자 3치는 공무역(公貿易) 값의 무명이다.

<sup>271)</sup> 획급(劃給): 떼어 주다.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나누어 주는 것. 획하(劃下)라고도 한다.

<sup>272)</sup> 평의진(平義眞): 대마도 도주(島主)의 이름이다. 평의진이 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인조 25년 정해(丁亥, 1647) 10월 9일 조이다. 효종 8년 정유(丁酉, 1657) 10월 26일 조를 보면,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강호(江戶)에서 죽고 아들 평의진이 뒤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경종 즉위년 경자(庚子, 1720) 10월 30일 조에는 "대마도주 평의진이 죽고, 아들 평방성의(平方誠義)가 습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평의진은 대략 63년 동안 대마도주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sup>273)</sup> 선유사(宣諭使) : 병란(兵亂)이 났을 때 임금의 명(命)을 받들어 인민을 훈유(訓諭)하던 임시 (臨時) 벼슬.

<sup>274)</sup> 응련가(膺連價) : 대전(大殿)에 바칠 조류(鳥類)의 사냥을 위하여 매를 기르게 하고 이를 대전응방(大殿鷹坊)이라 하는데, 이 응방에서 사육할 매의 구입비를 말함.

<sup>275)</sup> 점퇴(點退) : 공물 수납 때 품질이 나쁘다고 퇴짜를 놓는 것.

- ◎ 공작미(公作米)276) 16,000섬 가운데
  - ▷ 5,821섬 13말은 수변읍(水邊邑)의 세미(稅米)로 1섬당 무명으로 환산하면 3필이니, 1필당 쌀 8말씩을 동래(東萊)로 수납(輸納)한다. 원래의 공목(公木)은 218동 16필로, 민간(民間)에서 쌀로 바꿀 경우 8말씩 쳐준다.
  - ▷쌀 2,039섬 4말 7되 9홉 2사는 장암(塲巖), 감동(甘同), 수변(水邊) 세 역참(驛站)이 상납할 때 위미(位米)<sup>277)</sup>, 위태(位太)<sup>278)</sup>를 무명<sup>279)</sup>으로 바꾸었다. 기미년 (己未年)에 처음으로 2말을 감한 대신 동래(東萊)로 수납(輸納)했다. 이것은 전세 (田稅)로 충급(充給)했다.
  - ▷쌀 627섬 5말 2되 7사는 산군(山郡)과 내지관(內地官)이 위미(位米)、위태(位太)를 무명으로 바꾸어 선혜청(宣惠廳)에 상납(上納)하다가 대동미(大同米)로 대신했다. 기미년(己未年)에 처음으로 동래(東萊)로 떼어 주다가, 2말을 감한 것이 준행되지 않자 전세(田稅)로 충급(充給)했다.
- ◎ 위의 세 역참(驛站)과 산군(山郡)、내지관(內地官)의 위미(位米)、위태(位太)를 떼어 주는 일의 경우 이전에는 공목(公木) 1필을 쌀 12말로 환산하였는데<sup>280)</sup>, 수변읍(水邊邑)의 인민(人民)들의 원망을 호소하여 기미년(己未年) 대동법(大同法)이 실시할 때 선혜청 (宣惠廳)에서 위 조항을 변통하여 쌀 12말로 환산하는 것에서 2말을 감해준 후 이로써 위미(位米)、위태(位太)를 충급(充給)했다.
- ◎ 쌀 4,844섬 12말은 장암(場巖)、감동(甘同) 두 창(倉)에 소속된 읍(邑)에서 상납(上納)하는데, 전세(田稅)의 분수(分數)<sup>281)</sup>를 제출(除出)<sup>282)</sup>하는 것은 수변읍(水邊邑)의 예(例)를 따른다. 1섬을 무명으로 환산하면 3필이며, 1필을 다시 쌀로 환산한 8말을 선혜청에 상납한 뒤, 수변읍(水邊邑)의 대동미(大同米)로 서로 바꾸어 떼어 주는데, 이것을 '상환공작미(相換公作米)'라 한다.
- ◎ 쌀 2,666섬 10말은 계해년(癸亥年) 즈음에283) 선유사(宣諭使)의 장계(狀啓)로 인해

<sup>276)</sup> 공작미(公作米): 조선시대 대마도(對馬島)에서 솜을 수입하는 대가로 치러 주던 쌀. 공목작미(公木作米)의 준 말이다.

<sup>277)</sup> 위미(位米) : 조세로 바치는 쌀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처음에는 전세를 명주·모시·베·꿀 등으로 징수하다가 선조41년(1608)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쌀과 콩으로 바치게 하였다.

<sup>278)</sup> 위태(位太): 조세로 바치는 콩. 선조 41년(1608) 대동법이 실시되면서부터 모든 전세(田稅)를 쌀과 콩으로 통일하였으며, 경기에 수납하는 쌀과 콩을 위미(位米), 위태(位太) 혹은 합하여 위미태(位米太)라고 하였다.

<sup>279)</sup> 무명 : 원문에 '미(米)'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목(木)'의 오기로 판단된다.

<sup>280)</sup> 위여호(爲如乎) : 이두. '호도온'으로 읽으며, '하다고 하므로' '하다는' '하였다는' '하더니'의 뜻이다.

<sup>281)</sup> 분수(分數) : 과년도(過年度)에 수납(收納)하지 못한 환상(還上)은 3년에 걸쳐 한 해에 3분의 1씩 거두었는데 그 3등분한 한 해의 환상액수(還上額數).

<sup>282)</sup> 제출(除出) : 나누어 보냄. 파견(派遣)함. 덜어냄.

공작미(公作米) 10말에서 또 2말을 감했다. 그 대신 수변읍(水邊邑)의 대동미(大同米)로 떼어 주어 16,000섬의 수를 충당했다. 그러므로 수변읍(水邊邑)의 환작미(還作米) 규식 (規式)은 지금 8말이다.

- ◎ 남은 공목(公木) 721동 44필 32자 3치는 본색(本色)의 전세(田稅) 조(條)이다. 쌀은 1섬당 무명 3필, 콩은 1섬당 무명 2필로 환산하되, 무명으로 떼어 준다. 그렇지만 왜 (倭)에 공급하는 것은 200동에 불과하니, 그 나머지는 모두 시장 상인들의 실[絲] 가격을 참작하여 감(減)하여 처리한다.
- ◎ 이른바 '공작미(公作米)'란 지난 신묘년(宰卯年)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왜인(倭人)들의 간청(懇請)으로 인해 공목(公木)의 원수(元數) 중에서 400동을 연해(沿海) 20읍에서 정한 것으로 제출(除出)했다. 1필당 쌀 12말로 환산하여 도합 16,000섬을 왜인에게 거두어 주었다. 그렇지만 원세미(元稅米) 1섬을 무명 3필로 바꾸었으니, 곧 5말로 무명을 바꾼 것이다. 1필을 다시 쌀 12말로 환산하면, 백성들이 세금 이외에 가납(加納)하는 것이 많게는 7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심하여 무오년(戊午年) 대동법을 시행할 때에 그 중 2말을 감해 단지 10말만 바치게 했다. 감한 쌀 2말은 대신 연읍(沿邑) 소재 공물(公物)、위미(位米)、위태(位太)로 충급(充給)했다. 계해년(癸亥年) 선유사(宣諭使)의 장계(狀啓)로 인해 또 2말을 감하여 대동미의 남은 쌀로 떼어 주었고, 지금은 8말만 거두어 바칠 뿐이다.

### 대동수조(大同收租)

- ◎ 기유년(己酉年)의 실결(實結)<sup>284)</sup> 논밭은 226,498결 4부 1속이며 1결당 12말을 낸다.
- ◎ 쌀은 181,198섬 6말 4되 9홉 2사로
  - ▷ 28,887섬 7말 8되 4홉 3사는 본관(本官)에서 쓰는 것이고
  - ▷ 36,900섬은 때에 따라 가감(加減)하되, 강과 바다의 배 삯[船價]<sup>285)</sup>은 원근(遠近)에 따라 마련한다. 그렇지만 1섬당 많은 것은 3말 5되를 넘지 않으며, 적은 것도 3말 아래를 내려가지 않는다.
- ◎ 무명 2,670동은 때에 따라 가감(加減)하지만 1필당 7말이다. 짐삯[駄價]은 저치(儲置)<sup>286)</sup>된 것을 합산하여 역참(驛站)에서 회감(會減)<sup>287)</sup>한다.

<sup>283)</sup> 분(分): 이두로 '즈음'의 뜻이다.

<sup>284)</sup> 실(實) : 실결(實結). 실지로 경작하는 전결(田結)을 말한다.

<sup>285)</sup> 선가(船價):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삯.

<sup>286)</sup> 저치(儲置) : 미리 대비하여 저축해 둠.

<sup>287)</sup>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 ◎ 쌀 4,844섬 12말은 전세(田稅) 조(條)로 공목(公木)으로 서로 바꾸는 대신 본청(本廳)에서 동래(東萊)로 떼어 준다.
  - ▷ 2,666섬 10말은 공작미(公作米) 2말을 감하는 대신으로 채워 공급하는 조항이다.
  - ▷ 420섬은 청구한 매[鷹子] 28연(連) 값으로, 계해년(癸亥年)에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 ▷ 138섬 4되는 산군(山郡)의 산닭[活鷄] 값
  - ▷ 4섬 1말 5되는 물고기 값
  - ▶ 143섬 5말은 공석(空石)288) 450입(立) 값
  - > 91섬 3말 2되는 잡물(雜物)을 청구하는 값 [四]
    - 【개】 '138섬 4되'에서 '91섬 3말'까지. 갑자조(甲子條)에 처음 마련되었다.
  - ▷ 623섬 9말 3되 5홉은 날마다 제공되고
  - ▷ 50섬은 접위청(接慰廳)에 제공되며
  - ▶ 22섬은 부산(釜山)에 바친 범죽(帆竹) 8주(株)、장판(長板) 10입(立) 값 [四] 「別」 '623섬 9말'에서 '22섬은'까지. 계해조(癸亥條)에 처음 마련되었다.
  - ◎ 각 관(官)에서 원래 정한 왜(倭)에 공급하기로 한 것 중에서, 정묘년(丁卯年)에 처음 정해지지 않은 각 관(官)의 조(條)는
    - ▷쌀 49섬 3말 1되 2홉은 곶감 492첩 8개 값이며,
    - ▷ 19섬 5말 8홉은 홍시[紅柿子] 3,617개 값이며,
    - ▷ 14섬 7말 3되 2홉은 황률(黃栗) 4섬 12말 4되 4홉 값이며,
  - ▶ 9섬 9말 9되 4홉 2사는 대추[大棗] 4섬 12말 4되 4홉 값으로 도합 왜(倭)에 공급되는 쌀은 1,580섬 14말 9되 1홉 2사이다.
- ◎ 강해선가미(江海船價米)는 12.868섬 11말 7되이고.
- ◎ 태가미(駄價米)는 3,931섬 9말 7되 3홉 6사이다. [四]
  - 【四】 '강해선가미'에서 '태가미'까지. 상납(上納)의 다과(多寡)에 따라 가감(加減)하되, 전포(錢布)를 참반(參半)289)하라는 영(令)은 백성들이 원하지 않기에 근래에 대부분 방색(防塞)290)되었다.
- ◎ 쌀 2,915섬은 왜인이 접대(接對)에 청구한 값 및 본부(本府) 각 진(鎭)의 사수(射手) · 포수(砲手)의 군량미(軍糧米)로 떼어 준 것으로<sup>291)</sup>, 연례(年例)대로 부산창(釜山倉)으로 획송(劃送)한다. 때에 따라 가감하는데, 해마다 각각 같지 않다.
- ② 쌀 8,000섬은 각 포(浦)의 사수(射手)、포수(砲手)의 군량미 및 불시(不時)의 변란에 대비한 것으로, 연례(年例)대로 감동창(甘同倉)으로 획송(劃送)한다. 해마다 각각 같지 않다.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마련한다.

<sup>288)</sup> 공석(空石) : 공석자(空石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빈 섬.

<sup>289)</sup> 참반(鏊半): 조세나 대동미를 상납할 때 돈이나 포목 등을 각각 반분(半分) 가량 섞는 것.

<sup>290)</sup> 방색(防塞) : 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음.

<sup>291)</sup> 차이(次以) : 이두. '차로'로 읽히며, '할 양으로' '하려고' '할 것으로'의 의미이다. 차이(此 以)라 표기하기도 한다.

- ◎ 경외(京外)의 합미(合米)는 156,437섬 14말 2되 7홉 9사이다.
- ◎ 나머지 쌀은 100,685섬 6말 7되 3홉 8사이다.

일(一). 이상 각종(各種)은 모두 수조(收租)를 회감(會減)한 것이고, 그 나머지 각양의 짐 삯[駄價]、진상(進上)、부지(負持)<sup>292)</sup>、삭선진상(朔膳進上)<sup>293)</sup> 값의 쌀은 모두 공용(公用)에 연계되어 있으니, 한결같이 정식(定式)을 따른다. 영문(營門)에서 사계삭(四季朔)<sup>294)</sup>에 마련하여 회감(會減)한다.

일(一). 부산창(釜山倉)으로 떼어 주는 것은 으레 가승(加升)<sup>295)</sup>과 낙정(落庭)<sup>296)</sup>이 있기때문에 각 읍(邑)에서 싫어하며 회피한다. 동래부(東萊府)는 가승(加升)과 낙정(落庭)을 막아서 공급하기 위해 결역(結役)<sup>297)</sup>에 반드시 많이 떼어 주기를 청하는데, 간혹 1년에 10,000섬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임시로 헤아려 떼어 준 것이다. 감동창(甘同倉)으로 떼어 주는 것은 봄에 포수(砲手)의 양식으로 나누어 떼어 주고, 또 불시(不時)에 쓰일 물품에 대비하지만 부산창(釜山倉)에 바치는 것에 비해 조금 가볍다. 반드시 친히 구획(區劃)하여 범과(泛過)하지 않도록 한다.

일(一). 중도(中道) 이상(以上) 각 읍(邑)이 가을에 봉상(捧上)하는 조(條)는 신해년(辛亥年) 계문(啓聞)으로 변통하였고, 사실에 의거하여 주석(註釋)을 달아 놓았다. 매년 봄에 봉상(捧上)하는 것은 차례대로 가봉(加捧)하여 마련하고, 한 해의 월기(月期)로써 일시(一時) 준봉(準捧)<sup>298)</sup>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sup>299)</sup> 진헌(進獻)하는 자리[席子] 값 1단(丹)은 다음 다음해[再翌年]에 모감(冒減)<sup>300)</sup>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자년(庚子年)에 보고하여 바로잡았고, 신해년(辛亥年)에 등록(謄錄)을 고쳐 만들었으니, 한결같이 등록에 의거해 시행한다.

일(一). 왜인(倭人)들이 별도로 무역을 요구할 때는 비록 비축301)한 것으로 우선 사서 지급하더라도, 본래 가격은 공목미(公木米)로써 낱낱이302) 추심(推尋)하고 다시 기록하

<sup>292)</sup> 부지(負持) : 물건을 운반함.

<sup>293)</sup> 삭선진상(朔膳進上): 삭선(朔膳)이란 매월 초하룻날 각 도(道)에서 나는 특산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을 말한다. 삭선진상(朔膳進上)은 바로 여기에 소용되는 물품을 진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sup>294)</sup> 사계삭(四季朔) : 사맹삭(四孟朔).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각 첫 달. 곧 음력 1 · 4 · 7 · 10월의 통틀어 일컬음.

<sup>295)</sup> 가승(加升): 세(稅)로 내는 곡물을 수납(收納)할 때에 축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석에 3승씩 더 받는 것.

<sup>296)</sup> 낙정(落庭) : 되질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

<sup>297)</sup> 결역(結役) : 결세(結稅) 속에서 경저리(京邸吏)、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급료(給料).

<sup>298)</sup> 준봉(準捧) : 일정 기준대로 받아들임.

<sup>299)</sup> 위유며(爲有旀): 이두. '호이시며'로 읽으며, '하였으며'의 뜻이다.

<sup>300)</sup> 모감(冒減) : 억지로 값이나 물품을 깎음.

<sup>301)</sup> 저치(儲置) : 미리 대비하여 저축해 둠.

여 역관배(譯官輩)들이 마음대로 중간에서 떼먹는[消化] 폐단이 없도록 한다. 왜인(倭人)들에게 제공할 잡물(雜物) 값과 공석(空石)、쑥풀[蒿草] 값은 경외(京外) 모리배(牟利輩)303)들이 방납(防納)304)을 도모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모감(冒減)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왜인들에게 제공하는 값은 모두 동래부(東萊府)에서 도획(都劃)305)하는 것은 기유년(己酉年)의 정식(定式)이고, 공석(空石) 값 역시 동래부(東萊府)에서 도획(都劃)하는 것은 경자년(庚子年)의 정식(定式)이다. 이것들을 구획(區劃)함에 반드시 정식(定式)을 준수하여 착란(錯亂)이 없도록 한다.

일(一). 각 진(鎭)의 신참 포수(砲手)와 구포수(舊砲手)의 요미(料米)는 매년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風和六朔] 감동창(甘同倉)의 저치미(儲置米) 2,750섬 8말 2되 6훕에서 떼어 주되, 윤달이 들어있는 해에는 2,984섬 6말 5되 6홉에서 떼어 준다.

일(一). 호조(戶曹)에 소속된 염선(鹽船)의 수조식(收租式)

- ▷ 쇠솥[鐵釜] 228좌(坐)는 1좌당 소금 4섬씩이다.
- ▷ 흙솥[土釜] 17좌는 1좌당 소금 4섬씩이다.
- ▷ 소철부(小鐵釜) 및 동부(童釜)는 모두 83좌로 1좌당 소금 2섬씩이다.
- ▷ 중선(中船) 16척은 1척당 무명[木] 2필씩이다.
- ▷소선(小船) 211척은 1척당 무명 1필씩이다.
- ▷ 소소선(小小船) 1,000척은 1척당 무명 반(半) 필씩이다.
- ▷소각선(小桷船) 87척은 1척당 무명 반(半) 필씩이다.
- ▷ 조선(槽船)306) 3척은 1척당 무명 반(半) 필씩이다.

일(一). 연해(沿海) 각 읍(邑) 호조(戶曹)에 소속된 선박과 솥에 대해 징족(徵族)<sup>307)</sup>하는 폐단을 무신년(戊申年) 박사또<sup>308)</sup>가 회맹제(會盟祭) 참석(叁席) 차 상경(上京)했을 때 진달(進達)했다. 그 뒤 선박 중에 탈(頃)이 있는 412척과 솥 76좌(坐), 아울러 각 영(營)에 소속된 선박의 빠진 수를 조사해 대정(代定)한 뒤 혁파했다. 그 뒤 지부별장(地部別將)<sup>309)</sup>이 내려와서 세금을 징수하는 규정은 각각 그 읍에서 거두어 바치도록 했다. 매

<sup>302)</sup> 저저(這這): 이두로 '낱낱이' '하나하나'의 뜻이다.

<sup>303)</sup> 모리배(牟利輩) : 모리지배(牟利之輩). 모리지배(謀利之輩). 모리배(謀利輩). 도의는 돌아보지 않고 순전히 재리(財利)만 추구하는 무리들.

<sup>304)</sup> 방납(防納) : 공물(貢物) 바칠 것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로 곱절로 불려 받는 일. 상인이나 하급 관리가 이것으로 중간이득을 얻었으며 국가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장려하였다. 이것은 뒤에 폐단이 많아 임진왜란 후 대동법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sup>305)</sup> 도획(都劃) : 도합하여 획부하는 것을 말한다.

<sup>306)</sup> 조선(槽船) : 원래 이름은 농토선(農土船)으로, 강과 바다가 합치는 곳에 왕래하는 배이다.

<sup>307)</sup> 징족(徵族): 도피자와 사망자의 세금을 친족들에게 징수하는 것.

<sup>308)</sup> 등내(等內): 관원의 재임 기간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에 있는 동안이란 뜻이다.

<sup>309)</sup> 지부별장(地部別將) : 지부(地部)는 지부아문(地部衙門) 즉, 호조(戶曹)의 별칭으로 호조에 소속된 별장을 가리킨다.

식년(式年)마다 각 영에서 소속된 선박을 모아서 하나하나 대탈(代頃)<sup>310)</sup>하며, 선박이 부서졌거나 선주(船主)가 도망한 경우는 징족(徵族)한 일을 장계로 올리고 윤허를 받아 정식(定式)으로 시행하되, 매년 세말(歲末)에 영문(營門)에서 마감(磨勘)하여 성책(成冊)한 뒤 해당 부서에 보고한다.

#### 일(一). 원회곡(元會穀)311)에 모곡(耗穀)312)을 취하는 법식[元會取耗式]

▷ 10,000섬 이상은 모곡(耗穀)의 2/3를 취한다.

원모곡(元耗穀) 1말 5되 내에 1되 5홉은 원회곡(元會穀)에 회록(會錄)<sup>313)</sup>하고, 8되 5홉은 상평창(常平倉)에 회록(會錄)하며, 5되는 본관(本官)에서 취용(取用) 한다.

▷ 6,000섬 이상은 모곡(耗穀)의 반(半)을 취한다.

원모곡(元耗穀) 1말 5되 내에 1되 5홉은 원회곡(元會穀)에 회록(會錄)하고, 6도는 상평창(常平倉)에 회록(會錄)하며, 7되 5홉은 본관(本官)에서 취용(取用) 한다.

▷ 3,000섬 이상은 모곡의 1/3이상을 취한다.

원모곡(元耗穀) 1말 5되 내에 1되 5홉은 원회곡(元會穀)에 회록(會錄)하고, 3 되 5홉은 상평창(常平倉)에 회록(會錄)하며, 1말은 본관(本官)에서 취용(取用) 한다.

- ▷ 별회곡(別會穀)<sup>314)</sup> 및 각 영(營)의 곡식은 온전히 모곡(耗穀)에서 취한다. 오로지 대구(大丘)만 원회곡(元會穀)、별회곡(別會穀)을 막론하고 1섬당 1말씩 취한다.
- ▷각 산성(山城)의 쌀은 1섬당 5되이며, 피곡(皮穀)315)은 1섬당 3되씩이다.
- ▷ 대혜창(大惠倉)316)의 쌀은 1섬당 1말이며, 피곡(皮穀)은 1섬당 6되씩이다.
- ▷ 동성창(東城倉)과 금정산성(金井山城)317)은 온전히 모곡(耗穀)에서 취한다.

<sup>310)</sup> 대탈(代頃) : 탈이 생긴 배를 다른 배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sup>311)</sup> 원회(元會): 원회곡(元會穀)의 준말로 환곡을 징수할 때 모곡(耗穀) 명목으로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은 공용으로 충당하게 하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국가 소용으로 당해 고을에 모아 두는 곡식을 말한다.

<sup>312)</sup> 모곡(耗穀) : 환곡(還穀)이나 세곡(稅穀)을 징수할 적에 쌓아두는 동안 축이 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을 말한다.

<sup>313)</sup> 회록(會錄) : 정부의 소유물 주로 곡물 등을 본 창고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보관 하던 일.

<sup>314)</sup> 별회곡(別會穀) : 지방 관아에서 관장하는 환곡을 말한다.

<sup>315)</sup> 피곡(皮穀) :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을 가리킨다.

<sup>316)</sup> 대혜창(大惠倉) : 경상북도 선산(善山)에 있던 창고로, 북관전(北關田)의 곡식을 저장했다.

<sup>317)</sup> 금정산성(金井山城) : 경상남도 동래(東萊)에 소속된 산성으로, 석축이며, 둘레 69,570척이다. 영종 20년 갑자(1744년)에 이를 폐지했다가 '순조'8년 무진(1808년)에 고쳐 쌓았다. 만기

- ▷ 성산산성(城山山城)은 개색(改色)318)한다.
- ▷ 별향미(別餉米) 및 선가미(船價米)는 온전히 모곡(耗穀)에서 취한다.
- ▷ 노비(奴婢)들의 공납(貢納) 무명을 바치는 법식[奴婢貢木上納式] 공노(貢奴)는 1구(□)당 무명 1필 반(半)을, 공비(貢婢)는 1구당 무명 1필인데, 후목(後木)<sup>319)</sup>은 1구당 14자이다. 주사분방노(舟師分防奴)<sup>320)</sup>는 1구당 2필씩 이다.

일(一). 절[寺]의 노비(奴婢)는 1구(口)당 후목(後木) 14자씩 수봉(收捧)321)하는데, 영문(營門)에서 한결같이 해당 부서[該曹]의 정식(定式)에 따라 원공(元貢)322)에서 떼어 준다. 상납할 때 종이를 만든 품삯323) 중에서 남은 것은 별회곡으로 회록하고, 상납한 공목(貢木)이 비록 1필이지만 구(口) 값은 징수한 것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비(婢)의 수가적은 읍은 대부분 공납한 무명이 부족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읍(邑)에 있는 것을 옮겨 떼어 주어 부족한 수를 채운다. 동일하게 책정한 품삯을 각 읍에서 정하여상송(上送)할 즈음에 경사(京司)의 공인배(貢人輩)들이 사사로이 봉상(捧上)한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과분하게 바치는 경우가 생겨 각 읍(邑)이 동일하지 않아 결국 일관된 법규가 없기 때문에324) 임자년(壬子年) 식례(式例)를 마련하여 역가(役價)、작지(作紙)325)、원공(元貢)의 상납(上納)은 진성(陳省)326) 중에서 구별해 장부에 올려 봉상(捧上)했다. 척문(尺文) 중에 첨가할 뜻이 있으면 호조(戶曹) 옮긴 후 각 읍으로 관문(關文)을 올린다. 각 읍에서 절목(節目)이 한 번 통행(通行)하여 각각 등서(謄書)했으면, 책은 영문(營門)으로 상송(上送)해 성첩한다. 그런 다음 각 읍(邑)으로 하송(下送)해 영구(永久)히 준행(遵行)할 정식(定式)으로 삼는다.

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 4, 경상도 조 참고.

<sup>318)</sup> 개색(改色): 원래는 세곡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 그 수침미를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는 것을 말한다.

<sup>319)</sup> 후목(後木) : 공납(貢納)해야 할 무명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무명.

<sup>320)</sup> 주사분방노(舟師分防奴) : 주사(舟師)는 수군(水軍)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군의 임무를 분담하는 노(奴)를 가리킨는 듯하다.

<sup>321)</sup> 수봉(收捧) : 세금을 징수함. 혹은 남에게 빌려 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거두어 들임.

<sup>322)</sup> 원공(元貢) : 원정공물(元定貢物. 지방에 따라 원래 정하여 진 공물의 액(額)

<sup>323)</sup> 역가(役價) : 일을 한 품삯을 말한다.

<sup>324)</sup> 을잉우(乙仍于): 이두. '을지즈로'로 읽으며, '을 말미암아', '에 따라'의 뜻이다.

<sup>325)</sup> 작지(作紙):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 문서(文書)를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sup>326)</sup> 진성(陳省) : 지방 관아가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

### 마감식(磨勘式)

일(一). 각 읍의 저치미(儲置米)는 매 절기의 끝 달에 영문(營門)에서 마감(磨勘)하되, 3 개월 동안 쓸 것은 남기고, 성책(成冊)으로 꾸민 뒤 해당 관청에 보고한다.

일(一). 전선가미(戰船價米)와 별향미(別餉米)는 매 세말(歲末)에 영문(營門)에서 마감(磨勘)한다. 선중(船中)의 집물(什物)을 담당하는 임장(任掌)<sup>327)</sup>의 요미(料米)는 정식에 의거해 회감(會減)<sup>328)</sup>한 후 쓸 것은 남기고, 성책(成冊)으로 꾸민 뒤 선혜청(宣惠廳)에 보고한다.

일(一). 대동수조(大同收租)<sup>329)</sup>는 본청에서 분획(分劃)<sup>330)</sup>하여 내려주기를 기다렸다가 영문(營門)에서 가감(加減)하여 분획(分劃)한 뒤, 다시 마련(磨錬)한 다음 성책(成冊)으로 꾸며 선혜청(宣惠廳)에 보고한다.

일(一). 영(營)의 별회곡(別會穀)은 매년 세말(歲末)에 1년 용하(用下)<sup>331)</sup>할 각 곡식에서 모곡(耗穀)을 내고, 영문(營門)에서 성(城)을 좌(左)、우도(右道)로 나누어 도안(都案)<sup>332)</sup>을 만든 다음 나누어 보낸다. 약간의 곡식은 가령(假令)<sup>333)</sup>을 만들어 비변사(備變司)에 보고한다.

일(一). 사군목(射軍木)<sup>334)</sup>은 매년 세말(歲末)에 영문(營門)에서 마감(磨勘)하는데, 방군 (防軍)<sup>335)</sup>은 베[布]를 내지 않고<sup>336)</sup>, 사부(射夫)<sup>337)</sup>는 방수(防戍)하지 않는다. 여사노(餘

<sup>327)</sup> 임장(任掌): 서울의 각방(各坊) 또는 지방의 동리(洞里)에서 호적 및 기타 공공업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들을 일컫는다. 서울의 각방에는 별문서(別文書)、별유사(別有司)가 있고 지방 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등이 있었다.

<sup>328)</sup>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sup>329)</sup> 대동수조(大同收租): 조선 후기에 실시된 대동법(大同法)에 의거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법은 지방에서 내는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조세이다. 선조 41년 (1608) 이원익(李元翼)이 주장하여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뒤, 숙종(肅宗) 3년(1677) 이조판서 이원정(李元楨)의 말에 의해서 영남(嶺南)에도 대동법을 시행하였으며, 숙종 34년(1708)에 전국으로 확산됨.

<sup>330)</sup> 분획(分劃) : 나누어 획급(劃給)함.

<sup>331)</sup> 용하(用下)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용돈을 내어 줌. 혹은 그 돈.

<sup>332)</sup> 도안(都案) : 군안(軍案). 정기적으로 몇 해에 한 번씩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종 군사들을 조사하여 만드는 군안(軍案)을 가리킨다.

<sup>333)</sup> 가령(假令): 예상 수치

<sup>334)</sup> 사군목(射軍木) : 사군(射君) 즉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에게 지급하는 무명을 말한다.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가세의 하나로 징수하였다.

<sup>335)</sup> 방군(防軍): =방수군(防戍軍). 국경을 수비하는 군사.

<sup>336)</sup> 조선 후기 군역법(軍役法)에 의하면, 방군은 포를 내지 않고 보인(保人)만 포를 내는 데, 이를 방군포(防軍布)라 한다.

寺奴)、여사부(餘射夫)、여수군(餘水軍) 등의 베는 일체 회록(會錄)<sup>338)</sup>하되, 각양의 응하 (應下)<sup>339)</sup>하는 수(數)는 모두 회감(會減)하여 도안(都案)을 만들어 두고 참작(參酌)한 뒤 비변사에 보고하는데, 별회곡(別會穀)의 예와 같이 시행한다.

일(一). 도내(道內)의 전곡(錢穀)은 청도군(淸道郡)에서 정한 도회(都會)<sup>340)</sup>에서 사계삭(四季朔)에 마감(磨勘)하여 성첩(成貼)<sup>341)</sup>한다. 영문(營門)은 본군(本郡)에서 각 해당 유사(有司)에게 곧바로 올려 보낸다. 각 영(營)의 별회곡을 일체 고준(考準)<sup>342)</sup>하여 도안(都案)에 첨부하는 일은 경술년(庚戌年)에 정식(定式)을 만들어 시행(施行)하였다.

일(一). 도내(道內)의 전결(田結)343)은 차관(差官)을 정하여 도회(都會)의 복시(覆試) 후 성주목(星州牧)에서 정한 도회(都會)에서 수조(收租)를 마감하고 영문(營門)에서 성첩(成貼)하게 한다. 성책(成冊)은 것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고, 계문(啓聞)한다. 본주(本州)에서 수정해 영문(營門)의 고준(考準)을 받으면 영문(營門)에서 봉발(封發)한다. 전결(田結)의 대동미(大同米) 분참(分站) 및 공목미(公木米)344)의 구획(區劃)은 아울러 성주목(星州牧)에서 마감(磨勘)하여 오면 영문에 다시 마감한다. 전결도목(田結都目)은 영문에서 마감(磨勘)하여 이송(移送)하면, 도회관(都會官)은 곧장 경사(京司)로 보낸다.

일(一). 도내(道內) 각 절의 사노비(寺奴婢) 실공안(實貢案)은 영문(營門)에서 고준(考準) 하여 속안(續案)을 마감(磨勘)한 뒤 성첩(成貼)하여 각 읍현(邑縣)으로 보낸다. 상건(上件) 실수(實數)는 모두 성책하여 호조(戶曹)로 수송해 봉상(捧上)의 근거로 삼는다. 이일은 경술년(庚戌年) 계문(啓聞)에 의해 정식(定式)으로 시행(施行)하였다. 도회(都會)가 끝나면 아울러 도회를 혁파하고, 세말(歲末)의 잡탈(雜頃)은 전례(前例)에 의거해 영문(營門)에서 마감한다.

일(一). 호조(戶曹)에 바칠 염부선안(鹽釜船案)은 매년 세말(歲末)에 영문(營門)에서 마감 (磨勘)한 뒤 성책(成冊)하여 해당 관청에 보고한다. 대탈(代頃)의 규정과 수세(收稅)의 법 (法)은 이미 앞에서 진술한 대로 시행한다.

일(一). 도내(道內)의 은점(銀店)은 청격(靑格) 1고(庫)、영덕(盈德) 1고(庫)、밀양(密陽) 1

<sup>337)</sup> 사부(射夫): 사수(射手). 삼수(三手)의 하나.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중국의 군제(軍制)를 따라 특수 전투군을 설치하였는데,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 등의 특기자로 조직하였다.

<sup>338)</sup> 회록(會錄): 금전이나 곡물 따위의 정부 소유물을 용도별로 모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sup>339)</sup> 응하(應下) : 마땅히 나가야 할 지출. 곧 경상지출(經常支出)을 말한다.

<sup>340)</sup> 도회(都會) : 계(契) 모임이나 종친(宗親) 모임 및 유림 전체의 모임.

<sup>341)</sup> 성첩(成貼) :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sup>342)</sup> 고준(考準) : 베낀 책이나 서류를 원본과 대조하여 봄.

<sup>343)</sup> 전결(田結) :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또는 그 전답을 말한다.

<sup>344)</sup> 공목미(公木米)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무명을 공목(公木)이라 하고, 이 공목을 쌀로 환산하여 치를 쌀을 이르는 공작미(公作米)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고(庫)·의성(義城) 1고(庫)인데, 한결같이 모군(募軍)의 수에 따라 1명당 월령세(月令稅) 은(銀) 1전씩 거두어 바치게 한다. 6월과 12월 두 달은 더위와 추위가 극심하므로 감해준다.

### 조선절목(造船節目)

일(一). 선주(船主)가 1명당 각별히 근착(根着)<sup>345)</sup>한 사람을 두면 순영(巡營)에서 차첩(差貼)<sup>346)</sup>을 작성ㆍ지급하여 제반(諸般)의 군역(軍役)과 연역(煙役)<sup>347)</sup>으로 일체 침탈하지 않는다. 이미 역(役)을 충당한 자는 또한 즉시 탈하(與下)<sup>348)</sup>하여 오로지 수호(守護)의 책임만을 지게 한다. 혹 잘 돌보지 못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경중(輕重)에 따라 논죄한다. 무거우면 일차로 엄한 형벌로 다스리고, 가벼우면 그 훼손된 곳을 자신이 직접 보수하게 한 뒤에, 본관(本官)에서 즉시 첩보(牒報)<sup>349)</sup>한다.

일(一). 매 선(船)의 격군(格軍)<sup>350)</sup>은 선주(船主)가 모집하게 하되, 소선(小船)은 10명을 넘지 못하게 하며, 중선(中船)은 10명이다. 대선(大船)은 중선(中船)과 동일하니, 이에 의거해 정급(定給)하되, 반드시 연해(沿海)에 익숙한 자와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작정(酌定)하여 안(案)을 만들고, 완문(完文)<sup>351)</sup>으로 역(役)을 없애 원속(願屬)<sup>352)</sup>의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새로 건조(建造)한 지토선(地土船)<sup>353)</sup>은 대소(大小)가 같지 않으므로, 싣는 곡물 (穀物) 또한 상황에 따라 가감(加減)한다. 대동선(大同船)<sup>354)</sup>과 전세선(田稅船)<sup>355)</sup>의 가격은 비싸고 쌈이 각각 달라 한 가지 예(例)로 법식을 정할 수 없으며, 또한 한쪽에만 치우치게 실 수 없다. 1척당 각각 대동세(大同稅)과 전세(田稅)를 어림잡아 반쯤<sup>356)</sup> 실어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싣는 폐단이 없게 한다. 선가(船價, 배 삯)는 고을마다 같지

345) 근착(根着) : 내력이나 주소가 확실하여 믿을 만한 함.

346) 차첩(差帖) :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

347) 연역(煙役) : 군역 대신 땔감을 바치는 것.

348) 탈하(頃下) : 사고가 있을 때 즉시 그 역(役)을 면제해 주던 일.

349) 첩보(牒報):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혹은 그 보고서.

350) 격군(格軍) :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351) 완문(完文) : 조선조에 주로 부동산에 관한 관청의 증명서. 후기로 내려오면서 부동산은 물론 각종 증빙 서류로 활용되었다.

352) 원속(願屬) : 소속감을 지님.

353) 지토선(地土船) : 지방 토민(土民)들의 배. 주로 강가를 다니면서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후 릿그물로 고기를 잡았음.

354) 대동선(大同船) : 대동법에 해당하는 세금을 싣는 배를 말한다.

355) 전세선(田稅船) : 전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싣는 배를 말한다.

356) 참반(叁半) : 어림잡아 반쯤이란 뜻이다.

않아, 하나를 지목하여 작정(酌定)할 수 없다. 소선(小船)은 비록 고기잡이의 이로움이 있지만, 싣는 바가 매우 적다. 선가(船價)는 상황에 따라 깎을 수 있지만 왕래하는 양식과 상납의 비용이 동일하여 거의 남는 수(數)가 없다. 중선(中船)은 혹 그물을 걸기도하고, 혹 흥정을 하기도 하여<sup>357)</sup> 선적(船積)한 것에 대한 선가(船價)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 대선(大船)은 조운(漕運)<sup>358)</sup> 이외에는 다른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며, 노 젓기를 하지 않으면 바람 따라 왕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격군(格軍)이 소선보다 많지 않지만, 선가(船價)는 곱절이나 되니, 선가(船價)를 균일하게 나누어 내는 것은 지극히어려운 것이다<sup>359)</sup>. 그러므로 각 배에 싣는 선가(船價)의 원수(元數) 중에서 수를 나누어마감한다.

일(一). 200섬에서 400섬까지는 소선(小船)을 이용하고<sup>360)</sup>, 500섬에서 700섬까지는 중선(中船)을 이용하며, 800섬에서 1,000섬까지는 대선(大船)을 이용한다. 대(大)、중(中)、소선(小船)을 막론하고 원래의 선가(船價) 중에서 10섬마다 1섬씩을 취해 매년 제출(除出)하게 하고, 모곡(耗穀)을 모아 이자를 불려 개조(改造)하는 자본으로 삼는다.

일(一). 경선(京船)도<sup>361)</sup> 이미 각각 관아에서 물력(物力)을 보태 돕고, 선재(船材)를 지급하면서 해당 읍의 조운선(漕運船)으로 삼았으면, 스스로 갖춘 배와는 조금 다르다<sup>362)</sup>. 만약 관리하고 단속하는 행위가 없으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마음대로 다른도(道)에 가는 페단이 있어서 또한 칭탁(稱託)이 없을 수 없다. 해당 읍(邑)에 가지도 않고 먹고 살 걱정으로 매 선가(船價) 중에서 10섬을 나누어 일체(一體)를 회록(會錄)한다. 그러다가 10년이 되어 고친 값을 더해 쌀이 100섬에 이르면, 이는 개삼(改杉)<sup>363)</sup>、개조(改造)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해당 읍의 담당관이 마련해 출급하면, 단지 공사(公私)모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리하고 단속한 효험도 있으니<sup>364)</sup>, 이에 따라 거행한다. 비록 다른 곳에서 난파[致敗]시키더라도 즉시 불러서 책립(責立)하고 개삼(改杉)、개조(改造)할 때 물력(物力) 값만은 쌀로 지불하도록 하여 그것을 재목을 바꾸고 보수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일(一). 옛 지토선(地土船)이 이미 스스로 갖추었고 관에서 재목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sup>357)</sup> 흥판(興販) : 물건을 흥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sup>358)</sup>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이나 조세로 징수한 세곡을 실어 나름.

<sup>359)</sup> 시백호등이(是白乎等以): 이두로 '이숩온도로'로 읽으며, '이옵는 것으로'의 뜻이다. =是白乎.

<sup>360)</sup> 원문에 '자이백석사백석지위소선(自二百石四百石至爲小船)'로 된 것을 '자이백석지사백석위 소선(自二百石至四百石爲小船)'으로 바꾸어 풀이하였다.

<sup>361)</sup> 단치(段置): 이두. '단두' '뚠두'로 읽으며, '것도' '일도' '딴도'의 뜻이다.

<sup>362)</sup> 시견(是遣): 이두. '이견'라고 읽으며, '이고'라는 뜻이다.

<sup>363)</sup> 개삼(改杉): 미상.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財用編)」에 "영남은 3년마다 개삭(改槊)하고 6년마다 개삼(改杉)하고 10년마다 새로 만드는데 선혜청에서 관장한다."라는 언급이 있다.

<sup>364)</sup> 시거호(是去乎) : 이두. '이거온'이라 읽으며, '이므로' '인데' '이니'의 뜻이다.

선가(船價)는 새로 건조한 지토선(地土船)의 예(例)로 나누어 낼 수 없다. 이미 선세(船稅)를 감(減)하고 또 신역(身役)을 감하였으니, 전수(全數)를 감제(減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sup>365)</sup>, 앞으로 개삼(改杉)하고 개조할 때에 선재(船材)와 역량(役粮)은 담당한 관청에서 새로 만든 지토선의 예(例)에 따라 거행한 뒤라야 영구(永久)의 도(道)가 될 것이다<sup>366)</sup>. 그러니 우선 경선(京船)의 예(例)로써 한 척마다 선가미(船價米) 5섬씩 제출(除出)하여 회록(會錄)하다가<sup>367)</sup>, 배를 개조할 때에 이 회미(會米)로 관청에서 조급(造給)한다. 조금씩 그 규모를 크게 한 뒤 모든 거행(擧行)과 제출(除出) 등의 일은 한결같이 새로 건조한 지토선(地土船)의 예(例)에 따라 거행(擧行)한다.

일(一). 새로 건조한 경선(京船)<sup>368)</sup>이 이미 해당 읍의 조운선(漕運船)으로 삼았고, 또 삼 안(三案)을 만들어 본사(本司)、본영(本營)、본관(本官)에 나누어 봉상했으면, 정식(定式)의 도(道)가 없을 수 없다. 매년 경사(京司)에서 일체 안부(案付)<sup>369)</sup>에 의거하여 해당 읍(邑)에 독려해 보내되, 혹 곡식 값이 싸면<sup>370)</sup> 선인배(船人輩)들이 내려가려고 하지 않거나<sup>371)</sup>, 해당 관청에서 즉시 독려해 보내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폐단이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읍은 논죄하지 말고, 선주(船主)는 엄한 형벌을 내려 정배(定配)하고, 그 배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수운(輸運)에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이미 스스로 선척(船隻)을 분배했으면, 안부(案付) 외에 서울 각 사(司)로 곧바로 옮길 배는 한결같이 방색(防塞)을 갖추어 피차(彼此) 낭패(狼狽)를 보는 폐단을 없도록 한다.

일(一). 매 선(船)마다 각각 본관(本官)의 낙인을 찍게 해 임의대로 팔거나 멋대로 고치는 폐단을 없게 하며, 전삼세(田三稅)<sup>372)</sup>를 상납한 뒤에 선주(船主)가 임의대로 사용하여 생계를 꾸려가도록 한다. 사용할 때는 어떤 일로 어디에 아무 날에 갈 지를 알리고,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하여 정관(呈官)하고<sup>373)</sup>, 입지(立旨)<sup>374)</sup>를 받은 뒤에 사용한다. 만약 입지(立旨) 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모두<sup>375)</sup> 관찰

<sup>365)</sup> 뿐불유(分叱不喩) : 이두. '뿐 아닌지'라고 읽으며,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다.

<sup>366)</sup> 시거호(是去乎) : 이두. '이거온'이라 읽으며, '이므로' '인데' '이니'의 뜻이다.

<sup>367)</sup> 시여가(是如可): 이두. '이다가'로 읽으며, '이다가' '이라가'의 뜻이다.

<sup>368)</sup> 경선(京船) : 경사(京司)에 소속된 배.

<sup>369)</sup> 안부(案付): 대장(臺帳).

<sup>370)</sup> 곡천(穀賤) :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내려감을 뜻한다.

<sup>371)</sup> 시거내(是去乃): 이두로 '이거나'로 읽으며, '이거나'의 뜻이다.

<sup>372)</sup> 전삼세(田三稅): 전지(田地)를 근거로 하여 과하는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군포(軍布)의 삼세. 전세는 전지에 과하는 세. 대동미는 현물로 바치는 모든 공물(頁物)을 미곡으로 환산하여 밭과 논 1결(結)에 대해서 일정한 양(量)을 거두어들이는 쌀. 군포는 군적(軍籍)에 있는 자가 병역 대신으로 바치는 삼베와 무명. 소유전지의 다과(多寡)에 따라 수량이 다르다.

<sup>373)</sup> 정관(呈官) : 관에 소장(訴狀) , 고장(告狀) , 소지(所志) 등을 냄.

<sup>374)</sup> 입지(立旨) : 신청서(申請書) 또는 원서(願書)의 말미에 신청 또는 원(願)한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하는 관아의 증명.

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 각별히 논죄(論罪)하는 근거로 삼는다.

일(一). 신(新)、구(舊) 지토선(地土船)을 막론하고 각 읍의 안부류(案付類)<sup>376)</sup>는<sup>377)</sup> 영문 (營門)에서 장(章)、표(標)를 작성해 지급한다. 각 항(項)의 선세(船稅) 및 경유처[所經諸處]、수세(水稅)、노세(櫓稅)、낙인세(烙印稅) 등 제반(諸般) 명목이 정해지 않은 세금들을 모두 완전히 면제해 준다.

일(一). 선척(船隻)의 담당<sup>378)</sup>은 해당 읍의 좌수(座首)<sup>379)</sup>를 도감(都監)<sup>380)</sup>으로 삼아 검찰(檢察)하게 한다. 혹 위반[違越]의 폐단이 있으면 감관(監官)이 형추(刑推)<sup>381)</sup>하여 정배(定配)한다.

일(一). 지토선(地土船)과 전선(戰船)은 평상시 수행하는 임무가 다르지만, 항해할 때 좀 벌레를 먹거나 상하는 폐단이 없어야 함은 동일하다. 선척(船隻)은 5년마다 개삭(改 槊)382)하고, 9년마다 개조(改造)한다. 혹 사용(使用)을 삼가지 않거나, 혹 고의로 파손시켜 기한 내에 고치는 경우가 발생하면<sup>383)</sup>, 선주(船主)는 제1조 절목(節目)에 의거해 논죄(論罪)한 후, 스스로 수리하여 보고하게 한다. 도감(都監) 역시 불찰(不察)의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일체(一體) 과죄(科罪)<sup>384)</sup>한다. 혹 잘 돌보아 비록 기한된 햇수를 넘겨도 결코 파상의 흔적이 없고, 또 한두 해 더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선주(船主)와 사공(沙工)은 각별히 논상(論賞)한다.

일(一). 포장하고 실어 상납(上納)할 때 다른 물건을 더 싣는 자는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곧바로 속공(屬公)<sup>385)</sup>하며, 물주(物主)와 사공(沙工)은 그 물종(物種)의 다과(多寡)를 헤아려 경중(輕重)에 따라 형추(刑推)한다. 수령(守令) 역시 과죄(科罪)한다.

일(一). 개삭가(改槊價)는 배의 대소(大小)386) 및 역처(役處)의 다과(多寡)에 따라 마련한

<sup>375)</sup> 병지(幷只) : 이두로 '다목'으로 읽으며, '모두' '함께'의 뜻이다.

<sup>376)</sup> 안부류(案付類): '안부(案付)'는 일반적으로 대장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안 부류는 대장 따위를 가리킨다.

<sup>377)</sup> 을량(乙良) : 이두로 '으란', '을랑'의 뜻을 지닌 지적보조사이다.

<sup>378)</sup> 차지(次知) : 이두.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행위 혹은 그 주체를 가리킨다.

<sup>379)</sup> 좌수(座首) : 유향소(留鄕所)의 우두머리. 아관(亞官) · 수향(首鄕)이라고도 불린다.

<sup>380)</sup> 도감(都監) : 나라에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사(官司). 혹은 그 관원(官員).

<sup>381)</sup> 형추(刑推)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는 것.

<sup>382)</sup> 개삭(改槊): 삭(槊)은 배를 구조결합(構造結合)하는 목전(木栓), 또는 방향을 정하는 노(櫓), 키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분의 개조 또는 수리를 개삭이라 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의「재용편(財用編)」에 "영남은 3년마다 개삭(改槊)하고 6년마다 개삼(改杉)하고 10년마다 새로 만드는데 선혜청에서 관장한다."라는 언급이 있다.

<sup>383)</sup> 선척(船隻)은 3년마다 개삭(改槊)하고 6년마다 개삼(改杉)하는 등 정해진 수리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파손하여 수리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sup>384)</sup> 과죄(科罪) : 죄를 처단함.

<sup>385)</sup>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製品)·장물 등을 관부(官府)로 떼어 붙이는 것.

뒤, 선가미(船價米)는 저치(儲置)된 조(條)에 내어 준다. 소선(小船)은 5섬, 중선(中船)은 10섬, 대선(大船)은 15섬씩 내어 준다. 선척(船隻)의 상처(傷處)는 본관(本官)이 적간(摘 奸)<sup>387)</sup>한 뒤 마련하여 지급<sup>388)</sup>한다.

일(一). 개조(改造) 때의 물력(物力)은 또한 개삭(改槊) 때 예(例)에 의거해 때에 따라 승강(陞降)하여 마련하며, 영문(營門)에서 적간(摘奸)하여 썩거나 상처 난 곳을 비변사에 보고하고, 통영(統營)에 이문(移文)<sup>389)</sup>한다. 연해(沿海) 및 육지(陸地)의 산에서 봉금(封禁)<sup>390)</sup>하는 소나무는 잘 헤아려서 찾아 공급한다. 경선(京船)에 이미 가미(價米)를 공급했다면, 목재를 벌채하여 공급하는 것은 거론(擧論)하지 않는다.

일(一). 지토선(地土船)이 낡은 것[舊退]은 영문(營門)이나 경사(京司)의 수결(手決)을 거치지 않고 혹 팔아서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며, 간혹 재목으로 쓸 만한 선판(船板)은 일체(一體) 덧보태어 사용하도록 한다. 혹시 해당 읍에서 낡은 것을 빙자하여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거나, 혹 개조(改造)하는데 덧보태어 사사로이 타인에게 주면, 영문(營門)에서 사실을 조사해 논죄(論罪)한다. 그리고 더 이상 물력(物力)은 지원하지 말고 관할 관청자체에서 개조(改造)를 담당하게 한다.

일(一). 매 년(年)마다 기선(騎船)<sup>391)</sup>할 때에는 식량과 잡비 등의 물건은 절대로 미리 내어 주지 말고, 본관(本官)이 친히 배에 이르러 원전세(元田稅)을 꾸려 실은 뒤, 각 배의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을 불러 모아 점명(點名)<sup>392)</sup>하여 내어 준다.

일(一). 대선(大船)은 반드시 급수선(汲水船)을 둔 뒤에야 비로소 육지를 통행하거나 땔감과 물을 공급하는[樵汲] 방법이 있게 된다. 대선(大船) 1척마다 급수선 1척씩을 만들어 지급하되, 개조할 때에는 대선(大船)의 남은 것으로써 개조하며, 별도로 벌목하여 재목을 공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정식(定式)이다.

일(一). 육지(陸地) 모리배(牟利輩)들은 간혹 배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탐하여 선주(船主)를 갈아버리려고 도모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해당 읍(邑)에서는 별도로 금단(禁斷)하여 드러나는 일에 따라 중구(重究)393)하며, 도감(都監) 역시 논죄(論罪)한다.

일(一). 동래(東萊)로 하납(下納)하는 것은 그 선척(船隻)의 차례에 따라 돌아가며 포장하고 싣는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施行)한다. 선가(船價)는 일체 원수(元數)에서 회

<sup>386)</sup> 원문에는 대소(大少)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맥상 대소(大小)가 옳은 듯 하다.

<sup>387)</sup> 적간(摘奸):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sup>388)</sup> 상하(上下): 이두로 '차하'라고 읽으며, '지불하다.' '지출하다.'라는 뜻이다.

<sup>389)</sup> 이문(移文) : 동등한 관아(官衙)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또는 공문서를 보냄.

<sup>390)</sup> 봉금(封禁) :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나, 높은 벼슬아치가 관리하는 지역의 나무에 대해 벌채를 금하는 것.

<sup>391)</sup> 기선(騎船) : 배에 사람을 실음.

<sup>392)</sup> 점명(點名) : 점을 찍어가며 이름을 부름.

<sup>393)</sup> 중구(重究) : 심하게 허물을 추궁함.

감(會減)하여 내어 준다. 혹 흉년으로 인해 이전(移轉)하는 일이 있으면 이 배를 사용하는데,이 때 별도의 선격(船格)<sup>394)</sup>을 두고, 양식으로 실은 곡식은 그 해로(海路)의 원근(遠近)에 따라 고례(古例)에 의거해 마련한 뒤 지급한다. 본관(本官)이 만약 사사로이 쓰고자 하면 본읍(本邑)의 백성들은 두려워 감히 거역(拒逆)하지 못하며, 임의대로 사역(使役)하게 되면 그 말류(末流)의 폐단은 반드시 혁파(革罷)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혹 관(官)의 일로 사용할 경우라도<sup>395)</sup>, 영문(營門)에 아뢰어 제김[題辭]<sup>396)</sup>을 받은 뒤 사용하며, 비록 선가(船價)를 주지 못하더라도 사역(使役)과 역량(役糧)은 숫자에 의거하여 헤아려 주어서 칭원(稱寃)의 폐단을 없게 한다. 이와 같이 정식(定式)으로 삼은 뒤, 본관(本官)과 향청(鄕廳)이 결탁하여<sup>397)</sup> 혹 차용(借用)의 폐단이 있다가 염문(廉問)<sup>398)</sup>하여 발각되면, 좌수(座首)와 수리(首吏)<sup>399)</sup>를 곧장 엄형으로 정배(定配)하고, 수령(守令)은 계문(啓聞)을 올려 논죄하여 함부로 대여하지 못하게 한다.

일(一). 선중(船中)의 집물(什物)과 부정(釜鼎)은 금년에 이미 조치해 갖추었으니, 비록 훼손이나 파손이 있더라도 선주가 관리해 사용한다면, 관아에서 속속들이 개비(改備)해 줄 필요가 없다. 혹 목재 따위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생긴 것 중에 값을 받지 못하고 개비(改備)한 것이 있으면, 관에서 적간(摘好)한 뒤에 구하여 지급한다. 나머지 잡물(雜物)들은 선주(船主)로 하여금 훼손된 곳을 따라 보수하게 한다. 배를 감추거나 불태우는 것은 모두 선주(船主)가 책임을 지게 한다.

일(一). 선가(船價) 중에서 덜어 낸[除出] 쌀의 수효(數爻)는 매년 수정하여 보고하면, 영문(營門)에서는 회감(會減)하여 책안(冊案)을 만들어 개삭(改槊)、개조(改造) 할 때에 물력(物力)을 제공하는 밑천으로 삼되, 일체 별향미(別餉米)의 예(例)를 따라 반을 잘라 분급해 모곡을 취한다. 배를 수리해야 할 때 들어가는 물력(物力)을 마련하여 보고하면 영문에서 회감한다. 매년 나누어 준 쌀의 반을 깎아 모곡(耗穀)을 취하면, 10년 이내에 내지 않은 쌀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나누어 유치(留置)할 때 적조(糴糶)하는 사이에 만약정식(定式)이 없다면 반드시 장차 허류(虛留)400)와 모실(耗失)의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세말(歲末)에 영문(營門)에 마감(磨勘)하면, 영문에서 늑만(勒慢)을 고찰하여 논죄하는 일 등은 일체 군향미(軍餉米)의 예(例)를 따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매년 세말(歲末)에 성책(成冊)으로 만들고 선혜청(宣惠廳)에 보고하여 빙준(憑準)의 밑바탕

<sup>394)</sup> 선격(船格) : 배를 부리는 곁꾼. 격군(格軍)

<sup>395)</sup> 시량치(是良置) : 이두. '이아두'로 읽으며, '일 지라도'의 뜻이다.

<sup>396)</sup> 제김[題辭]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에 대해 관부(官府)의 판결이나 지령(指令).

<sup>397)</sup> 부동(符同) : 일을 하기 위하여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한통이 됨.

<sup>398)</sup> 염문(廉問) : =염탐(廉探). 남모르게 사정을 물어봄.

<sup>399)</sup> 수리(首吏) : 각 지방 관의 수석 아전. 곧 이방 아전(吏房衙前).

<sup>400)</sup> 허류(虛留) : 창고(倉庫)에 쌓인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으로 삼는다.

일(一). 무릇 상납(上納)의 규정(規定)의 경우, 경강선인(京江船人)401)은 경사하배(京司下輩)과 으레 계방(契房)402)을 만들어 고적(顧籍)403)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흠축(欠縮)404)이나 생경(生梗)의 폐단이 없다. 그러나 지토선(地土船)은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이 모두 바다 모퉁이의 어리석은 무리들로, 물고기 잡이만을 업(業)으로 삼아서 경사(京司)에 상납(上納)하는 법식을 알지 못해 늘 생소(生疎)한 근심이 많다. 비록 선격(船格)405)의 양식이 있지만, 재빨리 날라 옮기기를 마치 사지(死地)로 나아가는 듯할 뿐만 아니라, 각 아문에 소속된 경선들 중 관문을 기다려 곧바로 도착한 것은 헛되이 돌려보낸다. 이런 무리들이 모질(媢嫉)하고 생경(生梗)하게 함은 경사(京司) 하배(下輩)들이 업신여기며 농간을 부리게 되니, 조종(操縱)하는 폐단은 반드시 경선인보다 배(倍)가 된다. 상납할 때 해당 관청과 해조(該曹)에서 별도로 금단(禁斷)하고, 상납할 때의 응당 보내야 하는 물품은 수효(數爻)를 작정(酌定)하고, 완문(完文)을 만들어 주어 거행(擧行)의 빙고(憑考)406)로 삼아 그 중에서 조종(操縱)하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일(一). 지토선(地土船)에 이와 같이 처리[制置]하면, 다만 상시(常時)의 운반하는 세금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란(戰亂)에 군량을 운반하고 흉년에 곡식을 옮기는 것 또한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격군(格軍)과 군졸(軍卒)들에겐 별양(別樣)으로 돌보며 보호하고, 선척(船隻)엔 별도로 엄한 징벌을 더하여, 책임에 실효(實效)가 있게 한다. 일(一). 웅천(熊川)의 경우<sup>407)</sup> 돈녕부(敦寧府)가 어조(漁條)<sup>408)</sup>에 입선(立船)을 허락했으니 개삭(改杉)하고 개조(改造)할 때에 물력(物力)의 가미(價米)<sup>409)</sup>를 치러주는 것은 거론(擧論)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sup>401)</sup> 경강선(京江船) : 주교사(舟橋司)에 속한 사선(私船). 수원(水原) 능행(陵行) 때에 노들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 썼고, 남도에서 오는 세곡(稅穀)을 실어 나르는 때에 썼다.

<sup>402)</sup> 계방(契房) : 나루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삯으로 사공에게 여름에는 보리, 가을에는 벼를 주는 일.

<sup>403)</sup> 고적(顧籍) : 자기 몸을 아껴서 돌봄.

<sup>404)</sup> 흠축(欠縮) : 일정한 수량에서 부족분이 생김. 흠결(欠缺).

<sup>405)</sup> 선격(船格) : 배를 부리는 곁꾼. 격군(格軍).

<sup>406)</sup> 빙고(憑考) : 증거를 대고 고증을 함.

<sup>407)</sup> 시재여중(是在如中): 이두로 '인 터에' '인 경우'의 뜻이다.

<sup>408)</sup> 어조(漁條): 연해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배를 두는 것을 말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財用編)」에 "대개 어채(漁採)의 명목(名目)이 세 가지가 있으니, '어장(漁場)', '어조(漁條)', '방렴(防簾)'이다. 발[簾]을 설치하는 것을 방렴이라 이르고, 배를 두는 것을 어조라 이른다. 어장에는 강과 바다의 구별이 있고, 방렴도 또한 강과 바다에 따라 다른 명칭이 있으며, 어조(漁條)는 오직 바다에만 있다."라고 하였다.

<sup>409)</sup> 가미(價米) : 물품 · 용역(用役) 등의 대가(代價)로 주는 미곡(米穀)

### 예방색(禮房色)

일(一). 본영(本營)에 소속된 칠원(漆原)·사천(泗川) 세소(稅所)의 선박은 매년 10월에 통영(統營)에 낙인(烙印)을 받도록 보낸다.

일(一). 제향(祭享)에 소속(所屬)된 검은 소[黑牛] 5마리는 거제부(巨濟府)에서 추풍령(秋風嶺)을 경유하여 올려 보낸다.

일(一). 성주(星州)、안동(安東) 두 읍(邑)의 관왕묘제(關王廟祭)는 제관(祭官) 및 집사(執事)를 영문(營門)에서 차정(差定)<sup>410)</sup>하여 매년 경칩(驚蟄)、상강(霜降)에 제사를 거행하라고 분부(分付)한다.

일(一). 문경(聞慶) 주흘산(主屹山)、울산(蔚山) 우불산(亏佛山)、양산(梁山) 가야산(伽倻山)、경주(慶州) 신라시조전(新羅始祖展)의 춘추(春秋) 향사(亨祀)에 향축(香祝)이 내려온 뒤, 헌관(獻官)은 본관(本官)의 행사를 형지(形止)411)를 계문(啓聞)하고, 제집사(諸執事)들은 전물(奠物)을 예조(禮曹)에 점이(粘移)412)한다.

일(一). 도내(道內)에 있는 당상관(堂上官)과 그의 처(妻) 중 나이 70 이상이 된 이와, 예전에 실직(實職)<sup>413)</sup>을 지냈던 이와 그의 처(妻) 중 나이 80 이상인 자는 매년(每年) 세말(歲末)에 예조(禮曹)에서 보낸 세찬(歲饌)을 지급<sup>414)</sup>한다.

일(一). 인명(人命) 15명 이상을 살린 자는 가자(加資)415)하고, 5명 이상인 자는 원회모미(元會耗米) 2섬씩 상전(賞典)416)으로 지급한다.

일(一). 영(營)에 소속된 각 세소(稅所)의 토선(土船)에 대한 수세(收稅)가 정해진 한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해년(辛亥年)에 조령(朝令)을 통해 고친 정식(式)을 반포(頒布)하였다. 일(一). 우도(右道)의 연해(沿海) 칠원(柒原)、사천(泗川) 두 세소(稅所)의 지토선(地土船)은 대선(大船) 2냥 8전、중선(中船) 1냥 8전、소선(小船) 1냥、소소선(小小船) 8전、소삼선(小杉紅)417) 5전、소통선(小桶紅)418) 3전씩 받아서 사용한다419).

410) 차정(差定) : 관련 사무를 담당함. 담당시킴.

411) 형지(形止): 사실의 전말, 일이 되어 가는 형편.

412) 점이(粘移): =점련이문(粘連移文). 관련 증거 서류나 원공문(原公文)을 첨부하여 관련 관아 (官衙)에 발송함. 점련(粘連)은 첨부한다는 뜻이고, 이문(移文)은 관아(官衙)와 관아(官衙) 사이에 공무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해 발송하는 공문 또는 공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지칭함. 공이(公移) 혹은 회이(回移)라고도 하였음.

413) 실직(實職) : 문무양반만이 할 수 있는 벼슬. 품계나 직급에는 상관없이 오로지 양반만이 할 수 있는 벼슬을 가리킴.

414)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 줌. 지령(指令)을 내어 줌.

415) 가자(加資) :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에 올려 주는 것.

416) 상전(賞典) : 공로의 대소에 따라 상을 주는 격식. =상격(賞格).

417) 삼선(杉船): 현(舷), 곧 뱃전이 있는 배이다.

418) 통선(桶船) : 현(舷)이 없어서 말구유 같은 것을 말한다.

▷ 사수세(斜水稅)<sup>420)</sup>는 대선(大船) 2냥 8전、중선(中船) 1냥 8전、소선(小船) 8전 씩 거둔다.

일(一). 좌도(左道) 연해(沿海)의 영일(迎日)의 상선(商船)은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1척당 3냥씩이며, 지토선(地土船)은 2냥씩이다. 동절기(冬節期) 어선(漁船)은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7냥씩 거둔다.

일(一). 울산(蔚山)의 사수세(斜水稅)는, 지토휘리선(地土揮罹船)421)은 1척당 4냥씩이며, 세망선(細網船)은 2냥씩이다. 상선(商船) 중 대선(大船)은 3냥、중선(中船)은 2냥 5전、소선(小船)은 2냥씩이다. 동절기 어선은 대선(大船)은 7냥、소선(小船)은 4냥씩 거둔다. 일(一). 용당(龍塘)의 사세광선(斜稅廣舡) 중 대선(大船)은 3냥、중선(中船)은 2냥、소선(小船)은 1냥、소소선(小小船)은 5전씩이다. 복선(卜船)422)과 염선(鹽船)은 1섬당 1되씩이며, 해선(醢船)423)은 1독[瓮]당 1되씩 거둔다.

일(一). 동래(東萊)의 대선(大船)은 1냥 5전、중선(中船)은 1냥 2전、소선(小船)은 1냥이다. 동절기 해선(海船) 중 대선(大船)은 3냥、소선(小船)은 2냥이다. 세망선(細網船)은 중소(中小)를 막론하고 1선(船)당 1냥씩 거둔다.

### 도내권학절목(道内勸學節目)424)

일(一). 읍중(邑中)에서 문학(文學)이나 행의(行誼)로 명망(名望)이 가장 알려진 자는 문남(文南)<sup>425)</sup>이나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을 막론하고, 한 사람을 별도로 선택하여 훈장(訓長)으로 삼고, 수령(守令)이 친히 가서 예(禮)로써 가르침을 청한다.

일(一). 도훈장(都訓長)<sup>426)</sup>을 정한 후에 수령(守令)과 도훈장이 의논하여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 중 문학과 행의가 있는 자를 별도로 선택하여 교임(校任)<sup>427)</sup>으로 차정(差定)한다.

<sup>419)</sup> 봉용(捧用) : 돈이나 물건을 거두어 받아쓴다는 말이다.

<sup>420)</sup> 사수세(斜水稅) : 사수(斜水)는 두 군(郡)의 경계선(境界線)에 걸쳐 있는 하수(河水)로, 이곳에 서 고기를 잡되 해당한 군에만 세금을 낸다. 이 세금을 사수세라 한다.

<sup>421)</sup> 지토휘리선(地土(揮罹船) : 지토선에 후릿그물을 싣고 다니는 배.

<sup>422)</sup> 복선(卜船) : 짐을 싣는 배.

<sup>423)</sup> 해선(醢船) : 젓갈만 싣고 다니는 배.

<sup>424)</sup> 도내권학절목(道內勸學節目) : 이 조목의 전문(全文)은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의 『귀록 집(歸鹿集)』권19, 「통유도내사우문(通諭道內士友文)」 아래의 <권학절목(勸學節目)>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sup>425)</sup> 문남(文南) : 문관(文官)과 남행(南行). 남행은 음직(蔭職), 곧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상 의 혜택으로 벼슬하는 사람을 말한다.

<sup>426)</sup> 도훈장(都訓長) : 훈장 중의 우두머리.

<sup>427)</sup> 교임(校任) : 향교에 소속된 임원으로 생각된다.

일(一). 교임(校任)을 정한 후에 도훈장(都訓長)과 교임이 의논하여 각 면에서 문학과 행의가 있는 한 사람을 별도로 선택하여 각 면(面)의 훈장(訓長)으로 정하되, 큰 면(面)은 몇 사람을 정하고, 작은 면(面)이라 합당한 자가 없으면 부근(附近)에서 겸정(兼定)한다. 일(一). 도훈장(都訓長)과 교임(校任)、면훈장(面訓長) 등은 의논하여 사족(士族)의 15세이상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재주가 빼어나 지행(志行)과 문재(文才)를 지닌 자 중에서 소읍(小邑) 5인、중읍(中邑) 10인、대읍(大邑)은 15인씩을 별도로 선택하여 향교(鄉校)에 들어가도록 권한다. 관(官)에서는 양식、반찬、땔감、기름을 공급해 교임(校任)이 권과(勸課)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도훈장(都訓長)이 이를 통령(統領)한다.

일(一). 거재(居齋) 유생(儒生) 이외에 사족(士族)、중인(中人)、서인(庶人)을 막론하고, 각 면(面)에 동몽(童蒙)의 수(數)에 제한을 두지 말고, 아울러 가르칠만한 이들을 별도로 선택하여 각 면(面)의 훈장(訓長)들에게 업무를 나누어 가르치고 인도하게 한다.

일(一). 거재(居齋) 유생(儒生) 및 각 면(面)의 학도(學徒) 등은 성명(姓名)을 책(冊)으로 만들되, 그들이 읽은 책을 각각 그 이름 아래에 기록한다. 그들이 익힌 과문(科文)、시(詩)、부(賦)、표(表)、책(策)、의(義)、의(疑)<sup>428)</sup>、고풍(古風)도 또한 기록하고 본관(本官)으로 보고해, 영문(營門)에 전보(轉報)하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각 면(面)에 비록 훈장이 있지만 한 면(面)의 멀기가 혹 수십 리나 되며, 작은면(面)도 8~9리보다 적지 않아 학도(學徒)들이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수학(受學)할 수 없고, 훈장(訓長)들도 또한 사람마다 입으로 전수(傳授)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부형(父兄)들이나 혹 이웃의 숙사(塾師)<sup>429)</sup>가 매일 과제를 준다. 매월(每月) 삭망(朔望) 두차례씩 날을 잡아 서원(書院)과 산당(山堂) 등에 모이는데, 훈장(訓長)은 학도(學徒)들과 문의(文意)를 강론하고 그 근만(勤慢)을 헤아려 강지(講紙)를 본관(本官)에 보고한다. 이때 본관에서는 3개월간을 합산(合算)하여 24획(劃)을 채운 자는 본관(本官)에서 지필목(紙筆墨)으로 논상(論賞)한다.

일(一). 거재(居齋) 유생(儒生)을 막론하고 각 면(面)의 학도(學徒)들이 읽어야 하는 책은 경서(經書)와 유현(儒賢)들의 의리(義理) 문자(文字)<sup>430)</sup>인 『사서삼경(四書三經)』、『소학(小學)』、『가례(家禮)』、『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절작통편(節酌通編)』<sup>431)</sup>、『성리대전(性理大全)』、『이정전서(二程全書)』를 위주로 해야 한다. 외가서(外家書)인 『통감절목(通鑑綱目)』、『좌전(左傳)』、『당감(唐鑑)』、『팔대가(八代家)』와 같은 책을 배우고자

<sup>428)</sup> 의(疑) : 과거를 보일 때, 사서(四書)의 의의처(疑義處)에 대해 묻는 시험을 말한다.

<sup>429)</sup> 숙사(塾師) : 개별 글방의 스승을 말한다.

<sup>430)</sup> 문자(文字): 원문에는 '문학(文學)'으로 되어 있으나, 조현명(趙顯命)의 <권학절목(勸學節目)>에 의거하여 '문자(文字)'로 고쳐 번역하였다.

<sup>431)</sup> 절작통편(節酌通編) :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주요한 항목을 가리고 필요한 설명을 가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간편하고 정확히 이해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책이다.

하면 또한 금하지 않는다. 다만 노장(老莊)、불가(佛家)、이단(異端)의 책은 금단(禁斷)한다. 회강(會講) 때에 그 구두(句讀)가 생숙(生熟)한지 살필 필요는 없고, 문의(文義)를 관통하여 체행(體行)에 유의(留意)하는 자를 우등(優等)으로 삼는다.

일(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의 반포(頒布)는 이미 시교(時敎)에서 나와 각별히 봉행(奉行)하지 않을 수 없고<sup>432)</sup>, 전부터 이미 각 읍(邑)에 알려왔으므로<sup>433)</sup>, 지금 겸하여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삭망(朔望) 회강(會講) 시(時)에 훈장(訓長)을 별도로 초대하고 학도(學徒)들은 좌우(左右)로 나열하여 앉는데, 그 중에서잘 읽는 자가 3~4판(板)씩 또는 4~5판(板)씩 읽도록 하여 그 사실을 살피고 그 의도를 논의하여 하나하나 이해하여 흥기하는 바가 있도록 하고, 이를 회강(會講) 할 때의 규례(規例)로 삼는다.

일(一). 과거(科擧) 공부 또한 권과(勸課)<sup>434)</sup>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매 월마다 각각 익힌 바를 지어 올리게 하되, 책문(策文)은 2마리, 시(詩)、부(賦)、표(表)、의(義)、고풍(古風)은 3마리씩이다. 수령(守令)과 도훈장(都訓長)이 과차(科次)<sup>435)</sup>하여 3개월 동안을 합한 것 중에서 우등한 자는 본관(本官)에서 지필묵(紙筆墨)으로 논상하되, 세말(歲末)에 우등(優等)한 시권(試券)을 영문(營門)으로 올려 보내 다시 논상하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강획(講劃)<sup>436)</sup>에 우등한 자 또한 일체(一體) 영문(營門)에 보고한다.

일(一). 경서(經書)를 공부하는 선비가 오로지 송독(誦讀)만을 위주로 하여 망연(茫然)히 문의(文義)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설(鄙褻)한 말로 경전을 더럽히게 된다. 이런 부류들은 배우지 못하게 하되, 그 중에서 사람됨이 전아(典雅)하고 신중하며 또한 문의(文義)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초선(抄選)을 허락한다.

일(一). 무릇 거재(居齋) 유생(儒生)들과 각 면(面)의 학도(學徒)들 중 혹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형이나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거나, 장기와 바둑을 두고 술과 여색(女色)을 좋아하거나, 재물을 좋아해 송사(訟事)에 출입하거나, 붕당(朋黨)을 좋아해 조정(朝廷)의 일을 함부로 논하거나, 다른 사람의 장단(長短)을 논하고 입을 함부로 놀려 향당(鄕黨)에 분란(紛亂)을 일으키거나, 강한 자를 의지하고 약한 자를 능멸해 소민들을 침학(侵虐)하거나, 관장(官長)을 알현해 사사로이 청탁하거나, 독서를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sup>437)</sup> 일을 만드는 등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각각 그 훈장(訓

<sup>432)</sup> 을잉우(乙仍于) : 이두. '을지즈로'로 읽으며, '을 말미암아', '에 따라'의 뜻이다.

<sup>433)</sup> 지위(知委) : 기별이나 통지 등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알려준다는 뜻이다.

<sup>434)</sup> 권과(勸課) : 일을 맡기고 권장(勸獎)하는 일을 말한다.

<sup>435)</sup> 과차(科次) : 과차란 원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순위를 말하지만, 본문에서는 학도들의 순위를 가리킨다.

<sup>436)</sup> 강획(講劃) : 강서 성적(講書成績)의 점수를 말한다.

<sup>437)</sup> 천인(倩人): 다른 사람에게 시켜 대신함.『寒水齋先生文集』,卷之八,「答閔聖猷」,"倩人 代人之意也"란 구절이 있다.

長)들이 순순(諄諄)히 가르치고 주의를 준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도훈장(都訓長)에게 보고해 매질하고, 매질하여 따르지 않은 뒤에, 본관(本官)에 보고해 엄중히 처벌하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도훈장(都訓長) 이하는 학도들을 선발하여 보낼 때에는 당색(黨色)에 구애되지 말고, 공론(公論)을 따라 오로지 문학(文學)과 명망(名望)으로 선발한다.

####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sup>438)</sup>

일(一).439) 본재(本齋)는 선배들이 설립한 것으로 그 뜻이 비록 아름답지만, 단지 도회 (都會)<sup>440)</sup>에 선발한 우수한 사람 약간(若干) 명에게만 시문(時文)과 제술(製述)을 부과할 뿐이니, 낙육재(樂育齋)의 본의(本意)가 아니다. 이제 옛 집을 중건하고 장차 도내(道內)의 학도들을 모아 인도하고 가르치는 계책(計策)으로 삼고자 이 절목(節目)을 약정(略定)하니, 영구히 준행(遵行)하도록 한다.

일(一). 무릇 선비를 선발할 때는 엄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열읍(列邑)에서 이미 각각 선비를 선발하여 향교(鄉校)에 들이고, 낙육재에 거처하게 하여 학문을 권과 (勸課)하니, 입선(入選)한 이는 해당 읍에서 명망이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지 각 읍의 수령들에게 선발된 선비들 중에서만 천거(薦擧)하게 한다. 대읍(大邑)은 교액(校額)441) 15인에서 몇 사람을 천거하고, 중읍(中邑)은 교액 7인에서 몇 사람을 천거하고, 소읍은 교액 5인에서 몇 사람을 천거하여 모두 정한 날짜에 영하(營下)에 모여 시취(試取)442)할 수 있도록 한다.

일(一). 그 시취(試取)할 때는 시(詩)、부(賦)、의(義)、의(疑)、표(表)、책(策)에서 먼저

<sup>438)</sup>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 : 이 조목은 이만부(李萬敷, 1664~1732)의 『식산집(息山集)、속집 (續集)』권4,「답조시회(答趙時晦)」의 별지(別紙)인 <악육재절목(樂育齋節目)>의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sup>439)</sup>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다.

<sup>440)</sup> 도회(都會) : 공도회(公都會)의 준말. 공도회는 조선시대 과거의 하나로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가 해마다 자기 지방의 유생들에게 보이는 소과(小科) 초시(初試)이다. 제술(製述), 고강(考講) 등의 두 가지를 시험 보았는데, 이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에 보는 생원(生員), 진사(進士) 등의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다. 9대 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공도회(公都會) : 조선시대 과거의 하나로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가 해마다 자기 지방의 유생들에게 보이는 소과(小科) 초시(初試)이다. 제술(製述), 고강(考講) 등의 두 가지를 시험 보았는데, 이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에 보는 생원(生員), 진사(進士) 등의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다. 9대 성종 때처음으로 실시되었다.

<sup>441)</sup> 교액(校額) : 향교(鄕校)의 정원을 말하는 듯하다.

<sup>442)</sup> 시취(試取) :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인데, 주로 정식 과거(科學)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음자제(蔭子弟)나 녹사(錄事)·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다.

출제하는데, 각각 잘 하는 바를 지어 올리면 그 등수를 매긴다. 그 다음은 경전(經傳)을 가지고 유가(儒家)의 문자(文字)를 주는데, 읽은 바에 따라 강(講)에 임하여 문의(文義)를 염출(拈出)하는 것으로 그 견식(見識)을 시험(試驗)한다. 이는 그 대강(大綱)으로, 제술(製述) 및 강독(講讀)에 따라 통(通)、조(粗)를 대략 헤아려 30인을 선발하여 정액(定額)을 삼아 재(齋)에서 강습(講習)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교(本校)로 도로 소속시킨다.

일(一). 30인은 15인씩 나누어 양번(兩番)443)으로 만든다. 【정자(程子)의 「간상학제(看詳學製)」444)에 번(番)을 나누는 규정(規定)이 있다.】선(先) 1대(隊)가 낙육재에서 1개월을 다 채우고 나면, 후(後) 1대(隊)는 그믐날 모두 모인다. 다음 달 초하루 아침에 교체(交替)하고 물러나는데, 이와 같이 번갈아 드나든다. 이상은 선취(選取)에 관한 규정이다.

일(一).445) 지금 제술(製述)과 강독(講讀)을 병행해서 시험하는데, 그 뜻이 다만 문예(文藝)의 말단(末端)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그 오른쪽을 우재(右齋)라 하고, 왼쪽을 좌재(左齋)라 명명하니, 【호학규무(湖學規撫)446)와 간상학제(看詳學製)에는 모두 익힌 바에 따라 당재(堂齋)를 나누었다.】 우재(右齋)는 그 지향(志向)이 오로지 과거(科擧)에 두지 않은 자가 거처하고, 좌재(左齋)는 문학(文學)에 특장이 있는 자가 거처한다.

일(一).447) 매달 한 번씩 좌(左)、우재(右齋) 가운데 연장자를 가려서 공령(功令)448)을 짓게 하여 제생(諸生)들을 모두 감독하도록 한다. [『한서(漢書)』에 「공령지명(功令之名)」이 있고, 『여씨향약(呂氏鄉約)』에 「월직지임(月直之任)」이 있다.] 매월 보름 이전에 좌재(左齋)에서는 출제(出題)하여 몇 차례 지어 바치게 하고, 우재(右齋)에서는 아무 책을 읽고 와서 몇 판(板)을 강송(講誦) 한다. 보름 이후에도 이와 같이 한다.

일(一).<sup>449)</sup> 비록 좌재(左齋) 사람이라도 강송(講誦)을 겸하고자 자원(自願)하면 들어주고, 우재(右齋) 사람이라도 제술(製述)을 겸하고자 자원하면 들어준다.

일(一).<sup>450)</sup> 매일 식당(食堂)에서는 북을 한 번 울리고, 회강(會講)에는 북을 세 번 울리고, 일어 있어 강좌를 열 때는 북을 세 번 울린다. 【태학(大學)에서는 식당(食堂)과 일이 있으면 모두 북을 울렸다.】이상은 낙육재에 관한 규정이다<sup>451)</sup>.

<sup>443)</sup> 양번(兩番) : 원문에는 서번(西番)으로 되어 있으나, 이만부(李萬敷)의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에 의거하여 양번(兩番)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sup>444)</sup> 간상학제(看詳學製) : 간상학제는 태학(太學)의 제도를 살펴보아 수정(修正)하는 것을 말한다. 정자는 철종(哲宗) 때에 숭정전설서(崇政殿說書)가 되어 손각(孫覺)과 함께 태학의 제도를수정 보완하였다.

<sup>445)</sup>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다.

<sup>446)</sup> 호학규무(湖學規撫) : 호안정(胡安定)이 설립한 호학의 규무.

<sup>447)</sup>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다.

<sup>448)</sup> 공령(功令) : 과거(科擧)에 사용하는 시문(詩文).

<sup>449)</sup>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다.

<sup>450)</sup>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다.

<sup>451)</sup> 이상은 낙육재에 있을 때의 규정이다 : 이 부분의 원문인 '우재규(右齋規)'은 『영영사례』에

일(一).452) 무릇 초하루와 보름에 회강(會講)을 실시할 때, 관장(官長)이 친히 오면, 제생(諸生)들은 두건(頭巾)과 복장(服裝)을 갖추고 동쪽과 서쪽 뜰에서 북쪽을 향하여 관장을 공경히 맞이한다. 관장(官長)의 자리가 정해진 뒤, 좌우(左右)의 반수(班首)들은 손을 가지런히 하고 종종걸음으로 나아가고, 제생(諸生)들 역시 이를 따르다가 계단 아래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선다. 양 반수(班首)는 가운데 서고453) 제생들을 나누어 동쪽과 서쪽에 차례대로 서서 읍례(揖禮)를 행한 뒤, 양 반수(班首)가 제생들을 인솔해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또 읍례(揖禮)를 행한 뒤, 차례대로 당에 오를 때에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 나이순서대로 앉는다. [이 조목은 대학학규(大學學規)와 요강월조약회의(寥崗月朝約會議)를 모방하였다.] 장차 읽을 책을 두 손으로 받들어 책상에 두고, 조금 물러나 읍(揖)한 뒤강석을 나아가454) 관장이 손으로 지적한 곳에 따라 몸을 바로 세우고 단정하게 앉아 조용히 강독(講讀)하되, 구두(句讀)를 분명하게 하고, 소리를 낭랑하게 낸다. 만약 글의 뜻에 대해 질문하면, 비록 익숙하게 강독한 것이라도 또한 경솔하게 응대하지 않는다.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의심이 들고 잘 모르는 것 있으면, 표출(標出)하여 질문을 청한다.

### 병방색(兵房色)

일(一). 임진왜란(壬辰倭亂) 후 연해(沿海)의 수비(守備)는 전에 비에 엄정해져 도내(道內) 각 읍(邑)의 군졸이 돌아가며 부방(赴防)<sup>455)</sup>한다. 평상시의 부방(赴防)은 민폐(民弊)가 매우 심하기에 각색(各色)의 군졸로 방군(防軍)<sup>456)</sup>을 편성하고, 가포(價布)<sup>457)</sup>를 거두어서 변방 백성들에게 지급하고 대신 수비하게 하여<sup>458)</sup>해 평소의 방어를 갖추게 했으므로 주사(舟師)<sup>459)</sup>가 방군(防軍)을 분담하였다. 길천군(吉川君) 권반(權盼)<sup>460)</sup>이 처음 절

별행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만부(李萬敷)의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에 의거하여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야 한다.

<sup>452)</sup>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다.

<sup>453)</sup> 가운데 서고 : 원문에는 '당중(堂中)'으로 되어 있으나, 이만부(李萬敷)의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에 의거하여 '당중(當中)'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sup>454)</sup> 나아가 : 원문에는 '취(取)'로 되어 있으나, 이만부(李萬敷)의 <낙육재절목(樂育齋節目)>에 의거하여 '취(就)'로 고쳐 번역하였다.

<sup>455)</sup> 부방(赴防) : 군인이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해 수자리를 나가는 일을 말한다.

<sup>456)</sup> 방군(防軍) : 방수군(防戍軍). 국경을 지키는 군사를 말한다.

<sup>457)</sup> 가포(價布) :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하지 않고 그 역(役)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

<sup>458)</sup> 급대(給代) :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혹은 대가(代價)를 지급함.

<sup>459)</sup> 주사(舟師) : 수군(水軍).

<sup>460)</sup> 권반(權盼) : 1564(명종19)~?. 본관은 안동. 자는 중명(仲明), 호는 폐호(閉戶). 근(近)의 후 손으로 아버지는 화(和)이다. 1613년(광해군5)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지방행정을 잘 다스려 길

목(節目)을 만들었으며, 기축년(1649) 완원군(完原君) 이만(李曼)<sup>461)</sup>이 덧보태고 절충(折衷)지만, 세월이 오래되자 폐기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다. 서상국(徐相國) 【문중(文重)】 <sup>462)</sup>이 도(道)의 감사(監司)로 재직할 때 폐막(弊瘼)을 조목조목 진언(陳言)했는데, 회계(回啓)<sup>463)</sup>하기도 전에 대신(大臣)들이 진달(進達)하여 안(案)을 고치려 했지만, 마침 그해 흉년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다. 무진년(1688)에 이르러 이상서(李尙書) 【세화(世華)】 <sup>464)</sup>가 도(道)의 감사(監司)로 재직할 때 비로소 번(番)을 안배하고 안(案)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그냥 맡겨 두고 방치하여 방안(防案)은 모두 무너지고, 대탈(代頃)<sup>465)</sup>과 부표(附標)도 즉시 거행되지 못했다. 방노(防奴)들이 포목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도 계제가 없었고, 남아 있던 포목도 완전히 고갈되었다. 그래서 방노(防奴)들의 모탈(冒頃)이 횡행하여, 노액(奴額)은 점점 줄어들었다. 계사년(癸巳年) 이판서(李判書) 【황恒》】 <sup>466)</sup>이 각별히 사정(査定)하여 각 년(年) 대탈(代頃)에 대해 연제(連梯)<sup>467)</sup>를 추심(推尋)하여, 모두 부표(付標)하여 누락된 노비들을 다시 확정했다. 기해년(1719)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오(吳)<sup>468)</sup>가 하직 인사를 할 때<sup>469)</sup>에 임금<sup>470)</sup>께 폐단을 아뢰었다. 감사로 부임한

천군(吉川君)에 봉해졌으며, 나주목사、강화부사, 함경도、경기도、충청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sup>461)</sup> 이만(李曼): 1605(선조38)~1664(현종5). 참의 이휴(李烋)의 아들. 1628년(인조6)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1649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묵은 폐단을 시정하고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병졸을 훈련시키는 등 국방에 힘썼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병조참판이 되었다. 그는 지방관으로 오래 있는 동안 농사짓는 방법 및 토질을 잘 가려내는 일 등에 일가견이 있었다.

<sup>462)</sup> 서문중(徐文重): 1634(인조12)~1709(숙종3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도윤(道潤), 호는 몽어정(夢漁亭)이다. 1683년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1699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고 1701년 판중추부사로 호위대장을 겸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해방지(海防誌)』、『군국총부(軍國摠簿)』、『조야기문(朝野記聞)』、『상제례가범(喪祭禮家範)』、『역대재상연표(歷代宰相年表)』、『국조대신연표(國朝大臣年表)』、『병가승산(兵家勝算)』 등의 많은 편、저서를 남겼다.

<sup>463)</sup>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을 재심(再審)하여 상주하는 것을 말한다.

<sup>464)</sup> 이세화(李世華) : 1630(인조8)~1701(숙종27). 본관은 부평(富平). 자는 군실(君寶),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이다. 1689년(숙종15)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그 뒤 공조、형조、병조、예조、이조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저서로는 『쌍백당집』이 있다.

<sup>465)</sup> 대탈(代頃) : 탈이 생긴 것을 대신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한다.

<sup>466)</sup> 이항(李恒): 미상.

<sup>467)</sup> 연제(連梯): 신상기록표. 본인의 성명、부(父)、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 등 가계(家系) 표 시와 본인의 이력이 차례로 기록되어 마치 사다리의 연결과 같다는 뜻에서 생긴 말.

<sup>468)</sup> 오명항(吳命恒) : 1673(현종 14)~1728(영조 4).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상(士常), 호는 모암(慕菴)、영모당(永慕堂)이다. 1716년 경상도와 강원도、평안도의 관찰사 등을 거쳐 사직으로 있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에 소론이 실각하자 사직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판의금부사로 4도도순무사를 겸하여 난을 토평하여 분무공신(奮武功臣) 1등이 되고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다.

<sup>469)</sup>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을 말한다. 오명항은 1719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뒤, 방안(防案)에 일체 정군(正軍)의 군안(軍案)에 의거하여 그 나이와 거주지(居住地)、 성명(姓名) 등을 기록했다. 당초(當初) 行伍가 비어 제 자리가 정해지 않았던 노(奴) 3,298명이었는데, 원방(元防) 노(奴) 2,000명471)을 덧보태 도합 5,298명 전부472) 방군 (防軍)에 보충했다. 매년 대송(代送)하던 포(布) 220여(餘) 동을 영영 혁파(革罷)하고, 숨 겨 누락된 것과 모탈(冒頉)은 기포(譏捕)를 설치해 찾아내었다. 원방(元防)의 빠진 액수 (額數) 역시 성안(成案)에 보충해 넣었다. 지금은 한결같이 기해년(己亥年)의 방안(防案) 에 의거하여 대정(代定)하고 부첨(付簽)473)하니, 유포(留布)나 대송(代送)은 일체 금한다. 일(一). 주사방군전선(舟師防軍戰船)은 1척당 80명을 정하여 제공하는데, 이를 10번(番) 으로 만드니, 한 배의 방군(防軍)은 모두 800명이다. 매 번(番)을 40명씩으로 나누어 상 하(上下)로 반(半)씩 편성하고,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바람이 잔잔한<sup>474)</sup> 매 달에는 상하(上下) 반(半) 80명씩 포(布)를 거두고 방군(防軍)에 들인다. 9월부터 이듬해 2월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바람이 높아 파도가 이는 매달에는 분반(分半)된 40명씩 포(布)를 거두고 방군(防軍)에 들인다. 그러면 정해진 10번(番) 내에 바람이 잔잔한 달에 번(番)을 서는 것은 6번(番)이고, 바람이 높을 때 번을 서는 것은 3번(番)이 된다. 그러 므로 1번(番) 80명을 유포(留布)로 삼으면, 10(番)이 모두 번을 서게 된다. 1차 유포(留 布)는 1필을 감해준다. 윤달에는 그 10번(番)에게 척촌(尺寸)만 수합(收合)해 윤달의 포 (布)를 채우기 때문에, 비록 100년이 지나더라도 번차(番次)는 원래 어긋나는 규정이 없 이 12월 내에 준작(准酌)할 수 있다. 방군(防軍)은 수군(水軍)이 부족한 중도(中道) 이하 52읍(邑)의 사노(寺奴) 및 병조(兵曹) 소속 기보병(騎步兵), 충순위(忠順衛)<sup>475)</sup>、충찬위 (忠贊衛)<sup>476)</sup>、충장위(忠壯衛)<sup>477)</sup>、충익위(忠翊衛)<sup>478)</sup>를 획속(劃屬)시켜서 원수(元數)를 채 운다. 그러나 원방군(元防軍) 2명에 병보(幷保)<sup>479)</sup> 1명을 나누어 주어 1명에 3필로 준거

<sup>470)</sup> 탑전(榻前) : 임금의 앞.

<sup>471) 2,000</sup>명 : 원문에는 '二十名'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3,298명'과 '5,298명'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2,00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sup>472)</sup> 몰수(沒數) : 깡그리, 죄다, 전부라는 뜻이다.

<sup>473)</sup> 부첨(付簽) : 고칠 곳이나 부정확한 곳, 또는 문서·서적 등 참고로 할 부분에 종이 쪽지를 붙이는 일.

<sup>474)</sup> 풍화(風和) :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일지 않는 것.

<sup>475)</sup> 충순위(忠順衛): 조선시대 왕족이나 관리, 또는 그들의 자손들로 조직한 군대를 말한다.

<sup>476)</sup> 충찬위(忠贊衛):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 소속 군대로서 원종공신(原從功臣) 및 그 자손이 이에 속한다.

<sup>477)</sup> 충장위(忠壯衛) : 전사(戰死)한 사람의 자손으로 조직하여 궁중에 번(番) 들게 한 군대를 가리킨다.

<sup>478)</sup> 충익위(忠翊衛): 조선시대에 공신(功臣)의 자손들로 조직한 군대로, 궁중에 번을 들게 하였다.

<sup>479)</sup> 병보(幷保) : 병말보(幷末保). 합득보(合得保). 말보(末保). 원군(元軍) 2인이 보인 1명을 함께 얻는 것을 말한다.

를 삼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첨노(添奴)'라는 것은 양군(良軍)은 모두 보인(保人)이다. 원군(元軍)도 2필을 바치고, 병보(幷保) 역시 2필을 바치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1명에 3필로 규정하고, 대신 지급하면 2필이기때문에 병보(幷保)를 혹 혁파(革罷)하기도 하고, 혹 존치(存置)하기도 해 시비(是非)가 많다. 일(一). 바람이 잔잔하거나 높을 때 방군(防軍) 10번(番)을 상하(上下)로 반씩 나누거나함께 번을 세우는 법식

▷ 기○년(己○年)

정월(正月) 1번(番) 상반(上半)

2월(二月) 1번(番) 하반(下半)

바람이 잔잔한 3월 2번(番) 합번(合番)

4월 3번(番) 합립(合立)

5월 4번(番) 합립(合立)

6월 5번(番) 합립(合立)

7월 6번(番) 합립(合立)

8월 7번(番) 합립(合立)

바람이 높은 9월 8번(番) 상반(上半)

10월 8번(番) 하반(下半)

11480)월 9번(番) 상반(上半)

12월 9번(番) 하반(下半)

▷ 경○년(庚○年)

정월(正月) 10번(番) 상반(上半)

2월(二月) 10번(番) 하반(下半)

바람이 잔잔한 3개월 1번(番) 합립(合立)

4월 2번(番) 합립(合立)

5월 3번(番) 합립(合立)

6월 4번(番) 합립(合立)

7월 5번(番) 합립(合立)

8월 6번(番) 합립(合立)

바람이 높은 9월 7번(番) 상반(上半)

10월 7번(番) 하반(下半)

11월 8번(番) 상반(上半)

12월 8번(番) 하반(下半)

▷ 해마다 이와 같이 하여 매년 1번(番)씩 나머지를 적용하여 유포(留布)로 삼기 때

<sup>480)</sup> 원문에는 十九로 기록되어 있으나, 十一로 고쳐 번역했다.

문에 10년이 되면 10번(番) 모두 한 차례 유포(留布)가 된다.

일(一). 원방사부(元防射夫)는 매 선(船)마다 18명씩 정급(定給)하며, 오로지 8월 초하루에만 16명을 정급(定給)하니 도합 106명이다.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만 포(布)를 거두어 방소(防所)에 납입한다. 선후운(先後運)을 만들어 금년에 후운(後運)이 방소(防所)에 포(布)를 납입하면 선운(先運)은 본관(本官)에 포(布)를 납입하여 유포(留布)로 회록(會錄)하니, 이른바 '사목(射木)'이다.

일(一). 첨격사부(添格射夫) 또한 선후운사부(先後運射夫)를 두는데, 한결같이 원방사부 (元防射夫)의 예(例)에 의거한다. 1년은 본관(本官)에 포(布)를 납입하여 유포(留布)로 회록(會錄)<sup>481)</sup>하고, 1년은 방소(防所)에 포(布)를 납입하여 또한 각 진포(鎭浦)의 유포(留布)로 회록(會錄)하여 병선(兵船)、전선(戰船)을 개조(改造)할 때에 철정(鐵釘) 값 및 깃발[旗麾]、풍석(風席)<sup>482)</sup> 등의 값으로 지급한다.

일(一). 탄사부(炭射夫) 또한 선후운사부(先後運射夫)를 두는데, 1년은 부산(釜山)에 포 (布)를 납부하여 왜에서 매탄(埋炭)하는 대신하는 군졸의 값으로 지급하고, 1년은 본관 (本官)에 납입하여 유포(留布)로 회록(會錄)한다.

일(一). 나머지 사노(寺奴)들은 기해년(己亥年) 분방(分防) 시(時)에 방군(防軍)으로 배번 (排番)한 뒤 남은 이들이다. 원방사노(元防寺奴)에 탈(頃)이 있으면 이들로 승정(陞定)하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매 세말(歲末)에 그 연장(年壯)을 헤아려 과 출포(出布)를 헤아려 각 읍의 유포(留布)로 회록(會錄)한다. 이를 원방사노의 기수(奇數)가 정해지지 않아 포를 거두지 못하고 첨급(添給)하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매 식년(式年) 추쇄(推刷)할때마다 새로 사노(寺奴)를 단속하고 녹안(錄案)을 초출(抄出)해 원방사노(元防寺奴)에 빠진 수가 있으면 대정(代定)하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그 연장(年壯)을 헤아려 16세 이후에 비로소 포(布)를 내어 회록(會錄)한다.

일(一). 여수군(餘水軍)과 여사부(餘射夫)는 기해년(己亥年)에 분방(分防)하는 것을 고칠때 방군(防軍)으로 배번(排番)한 뒤 남은 이들이다. 별도로 안(案) 하나를 만들어 "여사부여수군안(餘射夫餘水軍案)"이라 명명한다. 원방사부(元防射夫)에 결원이 생기면, 여수군(餘水軍)과 여사부(餘射夫)를 차례대로 승정(陞定)한다. 각 읍에 혹 원방사부(元防射夫) 등에 빠진 인원이 있어 다른 한정(閒丁)으로 대신하거나 대정(代定)해왔다면, 여수군(餘水軍)과 여사부(餘射夫)는 매년(每年) 세말에 그 연장(年壯)을 헤아려, 12세에 비로소포(布)를 내고 각각 그 관(官)에 유포로 회록한다.

일(一). 육진(六鎭)의 영장(營將)이 순력(巡歷)할 때 군병(軍兵) 등의 상격(賞格)은, 가을 에는 각 읍 소재(所在) 사군목(射軍木)에서 떼어 주고, 봄에는 감영(監營)에서 비변사의

<sup>481)</sup> 회록(會錄): 금전이나 곡물 따위의 정부 소유물을 용도별로 모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sup>482)</sup> 풍석(風席) : 돛을 만드는 돗자리.

구관당상(句管堂上)<sup>483)</sup>에게 바치는 장포(匠布)에서 떼어 준다.

일(一). 좌병영(左兵營) · 우병영(右兵營) · 좌수영(左水營) · 우수영(右水營)의 노비(奴婢)와 외사환(外使喚)은 모두 군입역(軍立役)으로 급대하는데, 원방안(元防案)에는 각각 정급 (定給)된 삼질(三秩)과 파임말보(把任末保)가 있다. 삼질은 진무(鎭撫)<sup>484)</sup> · 통인(通引)<sup>485)</sup> · 사령(使令)<sup>486)</sup>이다. 삼질에 결원이 생기면, 방군(防軍)과 진군(鎭軍)을 승정(陞定)하여 5번(番)을 만들되, 반드시 약간 부유한 백성을 늑정(勒定)한 뒤 '새로 내야 할 예전(禮錢)'이라 칭하면서 멋대로 징수한다. 그 때문에 각 읍의 군민 한 사람이 삼질을 담당하게 되면 재물을 기울여 파산하게 되므로 대탈(代頃)이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기유년(己酉年) 영성군(靈城君) 박<sup>487)</sup>이 도의 감사로 왔을 때 폐단을 다음과 같이 치계(馳啓)하기를, 각 읍 방군(防軍)의 승정(陞定)을 허락하지 말고, 각각 그 영하(營下)에 원래 거주하는 사람으로 삼질을 채우고, 보포(保布)를 받아 급대(給代)하는 뜻을 정식(定式)으로 하자고 아뢰어 윤허(允許)를 받았다. 지금 이후 각 영(營)에서 만약 준수(遵守)하지 않으면 각별히 금단(禁斷)하도록 한다.

일(一). 6곳에서 소모(召募)하는 방군(防軍)은 다른 각 포(浦)에 비해 수를 감해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구소을비(舊所乙非)의 원모군(元募軍) 140명、여모군(餘募軍) 200명, 남촌(南村)의 원모군(元募軍) 250명, 장목포(長木浦)의 원모군(元募軍) 400명, 풍덕포(豊德浦)의 원모군(元募軍) 260명, 청천(菁川)의 원모군(元募軍) 234명, 신문(新門)의 원모군(元募軍) 266명은 각 그 지방관이 거주민들을 모집하고 쌀과 무명을 수봉(收捧)하여 선중(船中)의 여러 물건들을 수리하는 자금으로 삼는다. 그러나 원래 정해진 모군(募軍)은 조정에서 급복(給復)<sup>488)</sup>으로 허가하거나 결원이 있으면 대탈(代與)하는데, 각 진(鎭)에서는 남은 모군(募軍)들을 몰래 모아 양역(良役)으로 투입한다. 이런 일은 각별히 금단(禁斷)하도록 한다.

일(一). 포수(砲手)는 매 선(船)마다 24명씩 정급(定給)해 바람이 잔잔한 6개월만 번(番)

<sup>483)</sup> 구관(句管): 구관은 어떤 지역이나 임무를 맡아 관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도(各道)를 담당하는 비변사의 구관당상(句管堂上)을 가리키기도 한다.

<sup>484)</sup> 진무(鎭撫): 조선 초기에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의금부(義禁府) 등에 두었던 무관직.

<sup>485)</sup> 통인(通引): 조선시대, 관아에 딸린 아전을 말한다. 수령(守令)의 잔심부름을 맡아 수행했다. 486) 사령(使令):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sup>487)</sup> 박문수(朴文秀): 1691(숙종 17)~1756(영조 32).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이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사서(司書)에 등용되었으며, 영남암행어 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였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 (四路都巡問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관찰사에 발탁되었으며,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하여졌다. 설화로서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던 행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sup>488)</sup> 급복(給復) : 복호(復戶)를 주는 일. 복호는 충신、효자 기타 특정인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일을 가리킨다.

을 선다. 포수는 신(新)、구(舊) 포수(砲手)가 있는데, 구포수(舊砲手) 10명은 기축년에 분방(分防)할 때를 따라 정한 것이고, 신포수(新砲手) 14명은 무진년에 분방(分防)을 고칠 때에 그 수가 적어서 가정(加定)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포수(舊砲手)가 번을 설 때는 양식 공급을 저치미(儲置米)로 고쳐 떼어 주고, 신포수(新砲手)의 양식 공급은 사군목(射軍木)으로 떼어 준다.

▷우수영(右水營)에 소속된 1선(船)은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의 방군(防軍)이 110명씩 660명이다. 사부(射夫)는 20명씩 120명이다. 요미(料米)는 통영(統營)에서 지급(支給) 한다.

▷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는 모두 24명씩 144명 가운데 【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바람이 높은 6개월은 한 달에 방군(防軍) 55명씩 33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110명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 (射夫)는 120명이다. (번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거북선[龜船]에는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이 60명씩 360명이다. 사부(射夫)는 (3~7월까지 5개월간 한 달에) 18명씩 90명이고, 8월은 16명이므로 도합 106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ㆍ구포수(舊砲手)는 모두 24명씩 도합 144명 가운데 【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바람이 높은 6개월은 한 달에 방군(防軍)이 30명씩 18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6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참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방패선(防牌船) 1척에는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50명씩 300명이다. 사부(射夫)는 10명씩 60명이다. 요미(料米)는 통영(統營)에서 지급한다.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25명씩 15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5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60명이다. (번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6명이다. 2선은 1선과 같다.

▷ 가덕진(加德鎭)<sup>489)</sup>에 소속된 1선(船)은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83명씩 498명이다. 사부(射夫)는 (3~7월까지 5개월간 한 달에) 18명<sup>490)</sup>씩 90명이고, 8월은 16명이므로 도합 106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 아울러 24명씩 144명 가운데【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 바람이 높은 6개월 내 3개월은 한 달에 방군(防軍) 42명씩 126명이고, 3개월은 한 달에 방군(防軍) 41명씩 123명으로 도합 249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83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106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미조항(彌助項)⁴91)의 전선(戰船) 1척과 가덕도(加德島)의 1선은 같다.

<sup>489)</sup> 가덕진(加德鎭) : 경상남도 웅천(熊川, 마산의 옛 이름)에 설치된 진(鎭)

<sup>490) 18</sup>명 : 원문에는 '십명(十名)'으로 되어 있으나, 앞뒤 조목의 '바람이 잔잔한 6개월'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sup>491)</sup> 미조항(彌助項) : 경상남도 남해(南海)에 있던 항구. 조선조에는 경상우수영 관할이었다.

- ▷우수영(右水營) 2선(二舡) 3선(三舡) 4선(四舡) 부선(副舡), 가덕진(加德鎭) 2선(二舡), 안골(安骨) 1선(一舡), 천성보(天城堡) 1선(一舡), 제포(薺浦) 1선(一舡), 옥포(玉浦) 1선(一舡), 영등포(永登浦) 1선(一舡), 곡포(曲浦) 1선(一舡), 평산포(平山浦) 1선(一舡), 상주포(尚州浦) 1선(一舡), 적량(赤梁) 1선(一舡), 가배량(加背梁) 1선(一舡), 소비포(所非浦) 1선(一舡), 당포(唐浦) 1선(一舡), 사량포(蛇梁浦) 1선(一舡), 삼천진(三千鎭) 1선(一舡), 지세포(知世浦) 1선(一舡), 조라포(助羅浦) 1선(一舡), 귀산(龜山) 1선(一舡), 율포(栗浦) 1선(一舡), 도합 23척은 방군(防軍)과 같고 부선(副船)의 사부(射夫)만은 20명씩 120명이다.
- ▷ 각각 바람이 잔잔한 6개월은 한 달에 방군(防軍) 80명씩 480명이며, 사부(射夫)는 (3~7월까지 5개월간 한 달에) 18명씩 90명이고, 8월은 16명이므로 도합 106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는 아울러 24명<sup>492)</sup>씩 144명가운데 【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은 40명씩 24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8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16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일(一). 신문진(新門鎭), 청천(菁川), 풍덕(豊德), 장목포(長木浦), 구소비포(舊所非浦), 남촌(南村)의 6곳의 소모(召募)하는 전선(戰舡)은 각각 1척이다. 각각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방군(防軍)은 32명씩 192명이다. 사부(射夫)는 7명씩 42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70명이고, 신포수(新砲手)는 5명씩 30명이다.
-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은 16명이고,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32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42명이고, 번(番)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70명이다.
- ▶ 좌수영은 1선이다.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은 104명씩 624명이다. 사부(射夫)는 18명씩 90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는 아울러 24명씩 144명 가운데【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은 52명씩 312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104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106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 는<sup>493)</sup>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 거북선[龜船]은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56명씩 336명이다. 사부(射夫)는 (3~7월까지 5개월간 한 달에) 18명씩 90명이고, 8월은 16명이다. 첨격사부 (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는 아울러 24명씩 144명 가운데【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sup>492) 24</sup>명 : 원문에는 '사십명(四十名)'으로 되어 있으나, 앞 조목의 '거북선' '가덕진'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sup>493)</sup> 원문에는 不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不立이 옳다.

-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28명씩 168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56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106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 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 부산(釜山)의 1선(一舡)은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84명씩 504명이다. 사부(射夫)는 18명씩 90명이다. 8월에는 16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는 아울러 24명씩 144명 가운데【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은 42명씩 252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84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106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 좌수영(左水營) 2선(二舡) 3선(三舡), 부산(釜山) 2선(二舡), 다대포(多大浦) 1선(一舡), 서생포(西生浦) 1선(一舡), 감포(甘浦) 1선(一舡), 축산포(丑山浦) 1선(一舡), 칠포(漆浦) 1선(一舡), 거이포(莒伊浦) 1선(一舡), 개운포(開雲浦) 1선(一舡), 두모포(豆毛浦) 1선(一舡), 서평(西平) 1선(一舡)으로 도합 13척이며, 방졸(防卒)은 같다.
- ▷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 80명씩 480명이다. 사부(射夫)는 (3~7월까지 5개월간 한 달에) 18명씩 90명이고, 8월은 16명이다. 첨격사부(添格射夫)는 2명씩 12명이다. 신(新)、구포수(舊砲手)는 아울러 24명씩 144명 가운데 [구포수(舊砲手) 60명, 신포수(新砲手) 84명]
- ▷ 바람이 높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방군(防軍)은 40명씩 24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방군(防軍)은 80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사부(射夫)는 106명이다. 번(番)을 서지 않는 첨격사부(添格射夫)는 12명이다.
- 일(一). 좌병영(左兵營) 주진군(主鎭軍) 4,200명을 7번(番)으로 나누어 1년에 1번 번(番)을 서므로 매 번(番)마다 1필씩 포를 징수한다. 별방사부(別防射夫) 202명을 선(先)、후군(後軍)으로 나누어 1년에 (1번) 번을 선다. 1년에 유포(留布)를 납입하되, 돌아가며 번을 서고 포를 납부한다.

차비군(差備軍)494) 50명

파말보(把末保) 187명

우병영주진군(右兵營主鎭軍) 4,200명

별방사부(別防射夫) 202명 [四]

[团] '우병영주진군'에서 '별방사부'까지. 입번(立番)과 수포(收布)는 좌병영과 같다.

차비군(差備軍) 50명

<sup>494)</sup> 차비군(差備軍) : 차비(差備)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임시로 임명하는데 그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차비군(差備軍)、차비노(差備奴) 등으로 구분한다.

#### 파말보(把末保) 421명

- ◎ 부산(釜山) 원정탄군(元定炭軍) 582명
  - ▷ 고군(雇軍) 402명 [四]
    - [河] '부산'에서 '고군'까지. 각 진포(鎭浦) 방군(防軍) 중에서 초출(抄出)하여 부산(釜山)으로 이송 한다. 탄군(炭軍)은 1명당 4필, 고군(雇軍)은 1명당 3필씩을 수봉(收捧) 왜(倭)의 시탄군(柴炭軍)을 대신하는 비용495)으로 지급한다.
  - ▷ 탄사부(炭射夫) 528명은 선(先)、후운(後運)으로 나누어 1년은 방군(防軍)에 편입 시키고 1년은 유포(留布)를 납부하게 한다. 방군(防軍)에 편입되면 부산(釜山)에 서 1명당 2필씩 포를 거두어 왜(倭)의 시탄군(柴炭군)을 대신하는 비용으로 지 급한다.
  - ▷ 탄장(炭匠) 108명은 부산(釜山)에서 1명당 각각 2필씩 포를 거두어 왜(倭)의 시 탄군(柴炭군)을 대신하는 비용으로 지급한다. 파말보(把末保)는 21명이다.

# 각 산성(各山城)

- ◎ 가산산성의 방군[架山防軍] 130명은 12개월 동안 한 달에 10명씩 번(番)을 선다. 나머지 10명에게 3필씩 베를 거둬 성을 보수할 때 쓰도록 한다.
  - ▷ 속오군(東伍軍)<sup>496)</sup> 2,930명
  - ▷ 마군(馬軍) 334명, 보인(保人) 666명
  - ▷ 군향곡(軍餉穀) 11,401섬 14말 2되 2홉 6사
  - ▷ 수성전(修城錢) 5,780냥 6전 7푼
- ◎ 독용산성 방군[禿用防軍] 36명은 12개월 동안 한 달에 3명씩 번을 선다.
  - ▷ 속오군(束伍軍) 5,706명
  - ▷ 군향곡(軍餉穀) 6,357섬 14말 8되 8사
  - ▷ 수성전(修城錢) 13,932냥 7전 5푼
- ◎ 금오산성 방군[金鳥防軍] 65명은 13번(番)으로 나누어 1번(番)당 5명씩 번을 선다.
  - ▷ 속오군(東伍軍) 3,341명
  - ▷ 군향곡(軍餉穀) 2,917점 8말 5되 7홉
  - ▷ 수성전(修城錢) 945냥 9전 8푼

<sup>495)</sup> 고립(雇立) :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병역이나 부역 따위를 치르게 하는 것.

<sup>496)</sup> 속오(東伍): 속오군. 조선후기의 지방군. 진관 중심으로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 양인 천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지휘권과 조련권이 각 영장에 속해 있었다. 선조 27년(1594)에 황해도부터 조직되어 1596년말에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다. 뒤에 왕성 중심의 5군영제가 실시되자 속오군의 양인은 쌀 10말, 천인은 15말을 바치게 되었고 영조 중엽에 이르러서는 천인만이 소속되어 군포를 바치게 되었다.

- ▷ 수성조(修城租) 6,736섬 12말 9되 4홉 7사
- ◎ 촉석루 토졸[矗石土卒] 1,420명
  - ▷ 군향곡(軍餉穀) 16,022섬 8말 3되 7홉
  - ▷ 수성전(修城錢) 2,027냥 1전 9푼
- ◎ 조령산성 수성전[鳥嶺修城錢] 25,081냥 4전 3푼 ▷ 군향곡(軍餉穀) 14,973섬 8말 1되 8홈 2사
- ◎ 성산산성군향곡(城山山城軍餉穀) 338섬 4말 3되 9홉 8사
- ◎ 천생산성군행미(天生山城軍餉米) 414섬 9말 5되 2홉 3사
- ◎ 금정산성별회미(金井山城別會米) 1,415섬 9말 1되 1홉 5사

# 육진군총(六鎭軍摠)

- ◎ 대구진(大丘鎭) 속오군(束伍軍) 5,453명, 보인(保人) 4,908명 ▷ 마군(馬軍) 1,097명, 보인(保人) 1,440명
- ◎ 경주진(慶州鎭) 속오군(束伍軍) 5,308명, 보인(保人) 4,218명 ▷ 마군(馬軍) 1,093명, 보인(保人) 889명
- ◎ 진주진(晉州鎭) 속오군(束伍軍) 8,615명, 보인(保人) 8,408명 ▷ 마군(馬軍) 580명, 보인(保人) 561명
- ◎ 안동진(安東鎭) 속오군(東伍軍) 6,869명, 보인(保人) 6,234명 ▷ 마군(馬軍) 849명, 보인(保人) 1,489명
- ◎ 상주진(尙州鎭) 속오군(束伍軍) 5,546명, 보인(保人) 5,140명 ▷ 마군(馬軍) 494명, 보인(保人) 399명
- ◎ 진해진(金海鎭) 속오군(束伍軍) 3,204명, 보인(保人) 3,110명 ▷ 마군(馬軍) 826명, 보인(保人) 268명
- ◎ 동래진(東萊鎭) 속오군(東伍軍) 1,235명 ▷ 마군(馬軍) 142명

#### 각양(各樣) 군(軍) 부표<sup>497)</sup>절목(各樣軍付標節目)

일(一). 백골징포(白骨徵布)498)는 이웃의 침징(侵徵)499)과 정채(情債)500)가 남잡(濫雜)한

<sup>497)</sup> 부표(付標) : 문서 중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그곳에 표지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sup>498)</sup> 백골징포(白骨徵布): 이미 사망한 자에게 여전히 포를 징수하는 것.

<sup>499)</sup> 침징(侵徵) : 위세를 부려 불법(不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

폐단이 근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전 감사(監司)가 재임할 때 크게 사정(査正)해 빠진 인원이 있으면 즉시 부표(付摽)해 책으로 만들게 했으며, 부표를 가진 자만을 차례대로 마감했다. 그리고 정채(情債)를 금지하는 일 등은 이미 계문(啓聞)으로 보고하여 행회(行會)501)하고, 도(道)에서도 또한 이런 일로 여러 차례 비변사에 보고해 제김을 받아 각 영(營)과 각 읍(邑)에 분부하여 시행하도록 했다502). 전후의 관문(關文)과 비변사의 회제(回題)에서 누차 분부하는 사이 혹 번잡함을 염려해 현란하게 봉행할 뿐만 아니라503), 정채(情債) 한 건(件)조차 각 읍의 색리(色吏)들은 군병(軍兵)에게 징수하고, 각 영리(營吏)들은 각 읍의 색리(色吏)들에게 징수하고, 경사(京司)의 서리(書吏)들은 각 영(營)의 서리(書吏)들은 각 영(營)의 서리(書吏)들은 기 영(營)의 서리(色吏)들에게 징수하고 경사(京司)와 같이 한 후에야 점차 정채를 요구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지고, 경사(京司)와 각 영(營)의 색리(色吏)들이 이로부터 굴(利窟)504)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앞으로 각 영(營)과 각 읍(邑)에서 체역(遞易)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전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 두는505)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분명하게 절목(節目)을 만들어 관문(關文)올린 뒤 기록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길이 정식(定式)으로 시행함이 마땅할 일.

일(一). 보포(保砲)506)는 도사(都事)507)가 영(營)에 있을 경우, 각각 그 읍은 결원에 따라 대정(代定)하고, 부표(付摽)하여 책으로 만든 것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公文)을 모두 굳게 봉인하여 이것을 가지고 도사(都事)에게 보고하게 한다. 도사(都事)는 영문(營門)에 전보(轉報)하고, 영문(營門)에서는 영안(營案)에 부표한 뒤 인편(人便)으로 해당 관청에 올려 보낸다. 도사(都事)가 만약 상경(上京)하였거나, 혹 차정(差定)하지 못했으면, 부표 (付摽)와 성책(成冊) 양 건(件)을 수정(修正)해 황첨(黃簽)508) 공문(公文)과 아울러 곧장

<sup>500)</sup> 정채(情債) :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례로 주는 돈. 또는 어떤 일을 청하는 데에 인정으로 주는 돈.

<sup>501)</sup> 행회(行會) :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각 관사의 장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논정 (論定)하기 위한 모임.

<sup>502)</sup> 시백재과(是白在果) : 이두로 '이옵는 것과, ~이옵거니와'의 뜻이다.

<sup>503)</sup> 분불유(叱分不喩) : 이두로 '뿐만 아니라'의 뜻이다.

<sup>504)</sup> 이굴(利窟) : 이로움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곳.

<sup>505)</sup> 엄치(掩置): 전임관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

<sup>506)</sup> 보포(保砲): 미상. 포보(砲保)가 아닌가 한다. 포보는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군보(軍保)의 하나. 포군(砲軍)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군역에 복무하고, 세 사람은 그 보인(保人)으로 쌀이나 베를 바쳤다.

<sup>507)</sup> 도사(都事): 관리의 감찰(監察)과 규탄(糾彈)을 맡아보는 종5품 벼슬. 충훈부(忠勳府).의빈부 (儀實府).의금부(義禁府).개성부(開城府).충익부(忠翊府).중추부(中樞府) 및 각 도(道)에 두었다. 각 도 감영(監營)의 경우 도사(都事)는 감사 바로 다음 가는 주요 벼슬로 아감사(亞監司)로 별 칭되었으며, 지금의 부지사(副知事)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로 지방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고 과시(科試)를 맡아 보았다.

<sup>508)</sup> 황첨(黃簽): 황색의 부전(附箋).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거행(擧行)의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분방사노(分防寺奴)는 으레 영문(營門)에서 마감(磨勘)하니, 또한 세초(歲抄)509)를 기다리지 않고 결원이 있으면 대정(代定)하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과 부표(付摽)한 책으로 만든 것에 황첨(黃簽)을 붙여 이것을 가지고 곧장 영문에 보고해 영안(營案)의 부표(付摽)를 마감(磨勘)하고 고준(考準)하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보인(保人) 및 육군대도안소(陸軍大都案所)에 소속된 여러 색군(色軍)은 세초(歲抄)를 기다리지 않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대정(代定)하고, 부표하여 책으로 만든 것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도 아울러 해당 색리(色吏)에게 준다. 이를 가진 자를 병영(兵營)에 보내면, 병영(兵營)에서는 부표를 마감하고 고준한 다음, 병영에서 각 해당 관사(官司)로 올려 보낸다. 부표(付摽)하여 성책(成冊)한 각 건(件)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은 황첨(黃簽)을 붙이고, 이를 가진 자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리면, 영문(營門)에서는 부표를 고준한 뒤 인편(人便)으로 각 해당 관사(官司)에 올려 보낸다. 영(營)에서 부표하고 책으로 만든 것은 각 건(件)마다 모두 성책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고, 한 건(件)만 황첨(黃簽)을 붙여 보고하도록 한다.

일(一). 좌(左), 우수영(右水營)에 소속된 각 진포(鎭浦)의 방수군(防水軍)에 편입시키는 대도안(大都案)에 부여된 여러 색군(色軍)은 육군(陸軍)의 예(例)에 의거해 거행하도록 한다.

일(一). 각 색(色)의 군보(軍保) 중에서 도망치거나 늙거나 죽은 자들은 정채(情債)가 어려워 입안(立案)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심하면 백골징포(白骨徵布)를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침징(侵徵)하는 지경에 이른다. 조정(朝廷)에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대정(代定)하며, 또한 해당 읍은 각 영(營)에서 마감하지 못하게 한다.510) 각 영진(營鎭)의 서리들을 경사(京司)에 가서 마감하지 못하게 함은 대개 군민(軍民)을 진념(軫念)511)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정채(情債)를 막고자 함이다. 수령은 조정(朝廷)에서 법식으로 정한 본의(本意)를 반드시 알아서 각별히 두려운 마음으로[惕念] 봉행(奉行)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식(定式)이 분부(分付)된 후 간혹 물고(物故)512)한 사람이 있어 입안(立案)에서 빠지지 못하거나, 탈(頃)로 처리해야 할 자가 탈이 나지 않아 영문(營門)에 절규(絶따)하며 호소(呼訴)하는 자도 있으니, 염탐해서 발각될 때는 좌수(座首)와 공형(公兄)513)을 포

<sup>509)</sup>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사를 보충하는 것이다. 보충한 군대를 세초군이라 한다.

<sup>510)</sup> 위견(爲遣): 이두. '하고'라고 읽으며, 우리말 의미 역시 '하고'이다.

<sup>511)</sup> 진념(軫念) : 존귀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걱정하여 생각함. 흔히 임금이 백성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씀.

<sup>512)</sup> 물고((物故) : 죄를 짓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다.

<sup>513)</sup> 공형(公兄) : 삼공형(三公兄). 조선시대 각 고을의 호장(戶長) · 이방(吏方) · 수형리(首刑吏) 등을 함께 이르던 말이다.

승으로 묶어 중률(重律)로 다스리도록 한다.

일(一). 이와 같이 사정(査正)한 뒤 변통(變通)한 일이 있지만, 영문(營門)에서 일찍이 부표(付摽)를 허락한 일은 없었다. 병(兵)、수영(水營) 및 대도안소(大都案所)에서 부여한 색목(色目) 외에 혹 각 읍(邑)에서 포를 징수해 곧바로 상납(上納)한 군졸이 있으면, 부표(付摽)하여 성책(成冊)한 양 건을 수정(修正)하고, 황첨(黃簽)을 붙여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곧바로 영문(營門)으로 보내도록 한다.

일(一). 일년(一年) 대탈(代頃)의 유(類)는 병(兵)、수영(水營)에서 매 세말(歲末)마다 총 류(摠類)로 바꾸어 계문(啓聞)을 올릴 것.

일(一). 이 새로운 정식(定式)은 각별히 두려운 마음으로 베껴서 1건(件)을 벽청(壁廳)에 주며, 또 서록(書錄)을 책으로 엮어 해당 색리(色吏)에게 전수(傳授)하여 홀망(忽忘)하지 말고 영구히 준행하는 밑바탕으로 삼도록 한다.

일(一). 영해군(寧海郡) 도회(都會)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보내온 화살대[箭竹] 22,000개 (箇)를 매년 5월에 보내도록 한다.

일(一). 신영(新迎)할 때의 기치(旗幟)는 사명(司命)<sup>514)</sup>、청도기(淸道旗)<sup>515)</sup>、순시영기(巡視令旗) 각 1쌍인데, 육진(六鎭)의 진영(鎭營)에서 돌아가며 만들어 대령한다. 값은 사군목(射軍木) 15필로 회감(會減)하되, 경술년(庚戌年) 박사또<sup>516)</sup>가 상주(尙州) 시인(市人)이 정장(呈狀)에 따라 5필을 더 회감(會減)하도록 했다.

일(一). 가교(駕轎)<sup>517)</sup> 1좌(坐)는 의성(義城)에서 매번 교체하여 돌아갈 때마다 만드는데, 유곡역(幽谷驛)에 대령(待令)하여 신영(新迎)이나 상경할 때 인마(人馬)에 싣고 간다. 가미(價米) 5섬 8말을 별회(別會)하여 회감(會減)한다. 경술년(庚戌年) 박사또가 처음으로 장교(裝轎)를 만들었기 때문에 값은 해당 읍의 사군목(射軍木) 1동으로 회감(會減)한다. 일(一). 각 진(鎭)에 입방(入防)한 신포수(新砲手)의 요목(料木)<sup>518)</sup>은 매년 바람이 잔잔한 6개월 동안 74동 6필을 각 읍 소재(所在) 사군목(射軍木)<sup>519)</sup>에서 떼어 준다. 윤달이 있는 해에는 86동 26필을 떼어 준다.

<sup>514)</sup> 사명(司命): 사명기(司命旗). 조선시대 각 군영의 대장이 군대를 지휘할 때 쓰던 대형의 군기이다.

<sup>515)</sup> 청도기(淸道旗): 군기(軍旗), 또는 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 행군할 때에 앞에 서서 길을 치우는 데 쓰며, 수효는 둘임. 바탕은 남빛이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인데, '청도 (淸道)' 두 자를 썼음. 깃대 길이는 여덟 자로, 영두(纓頭)、주락(珠絡)이 있고, 깃대장이는 창인(鎗刃)으로 됨.

<sup>516)</sup> 등내(等內) : 관원의 재임 기간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에 있는 동안이란 뜻이다.

<sup>517)</sup> 가교(駕轎) : 국왕이 타는 가마의 일종. 두 마리의 말을 앞뒤에 한 마리씩 안장의 양편에 채의 끝을 걸어 멍에 하고 앞뒤 양쪽에 거덜이 서서 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껴누르고 감.

<sup>518)</sup> 요목(料木) : 급료로 지급하는 무명[木].

<sup>519)</sup> 사군목(射軍木) : 사군(射君) 즉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에게 지급하는 무명을 말한다.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가세의 하나로 징수하였다.

일(一). 흉년에는 각 진포(鎭浦) 방군(防軍)의 포(布)를 덜어준 뒤, 재앙이 덜하면 사군목(射軍木)으로 대신 떼어 준다. 그러나 통영(統營)에 소속된 방군(防軍)에겐 떼어 주지 않는다. 일(一). 금위영(禁衛營) 보인(保人)들의 가포(價布)는 매년 10월 본도(本道)에서 차사원 (差使員)520)을 정해 영납(領納)하도록 한다.

### 마감식(磨勘式)

일(一). 매년 세말(歲末)에 사군목(射軍木)으로 쓸 것을 남겨 두고 마감 시에 번(番)을 서지 않는 수군, 번(番)을 서지 않는 방사부(防射夫)、별방사부(別防射夫)、탄사부(炭射夫)、첨격사부(添格射夫)、여사부(餘射夫)、여수군(餘水軍)、여사노(餘寺奴) 등은 가포(價布)로 회감(會減)521)한다.

일(一). 사군목(射軍木)으로 쓸 것을 남겨 놓고 마감 후에 책으로 만들어 비변사에 보고 한다.

일(一). 본영(本營)과 좌(左)、우병영(右兵營), 좌(左)、우수영(右水營)은 관할하는 비변사의 장포(匠布)로 쓸 것을 남겨 놓고, 더 받아 들인 수(數)는 모두 매년 책으로 만들어비변사에 보고한다.

일(一). 도내의 봉수(烽燧)는 123고(庫)이다.

# 형방색(刑房色)

일(一). 도내(道內) 시수(時囚)<sup>522)</sup>와 살옥(殺獄)<sup>523)</sup> 죄인(罪人)은 사계삭(四季朔)<sup>524)</sup>에 함께 추고(推拷)<sup>525)</sup>해 패(佩)의 차수(次數)를 계문(啓聞)한다.

일(一). 을사년(乙巳年) 9월 형조(刑曹)의 관문(關文)으로 인해 살옥(殺獄) 죄인(罪人)을 같이 추고(推考)했다. 한 달 내에 2번을 빠뜨리면 수령(守令)을 추고하고, 아예 거행하지 않으면 먼저 파출(罷黜)하고 난 뒤 그 일을 별도로 판부(判付)526)한다. 정미년(丁未年)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유(李瑜)의 장계로 인해 한 달 내에 2번 추고하지 않으면, 해당

<sup>520)</sup>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를 맡겨 파견하는 임시직 관리.

<sup>521)</sup>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sup>522)</sup> 시수(時囚) : 그 당시 옥에 갇혀 있던 죄인.

<sup>523)</sup> 살옥(殺獄) : 살인 사건.

<sup>524)</sup> 사계삭(四季朔) : 사맹삭(四孟朔).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각 첫 달. 곧 음력 1 · 4 · 7 · 10월의 통틀어 일컬음.

<sup>525)</sup> 추고(推拷) : 추고(推考). 죄과(罪過)가 있는 사람을 심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sup>526)</sup> 판부(判付): 상주한 사건에 대하여 임금이 결재해 내려준다는 뜻이다. 판하(判下).

관리를 추고하고, 3개월 내에 아예 거행하지 않으면 해당 관리를 파출하는 것으로, 고 쳐서 정식(定式)을 삼았다.

일(一). 신해년(辛亥年) 8월 대신(大臣)들이 입시(入侍)했을 때, 사사로운 도축을 금하는 법을 어긴 자는 3차례 형추(刑推)527)하여 방송(放送)하는 것으로, 고쳐서 정식(定式)을 삼았다.

일(一). 정묘년(丁卯年) 5월 동래부사(東萊府使) 이(李) 【의천(倚天)】 528)의 장계에 따르면, 연해인(沿海人)이나 어부가 표류하다 저들의 경계에 들어간 자는 처음 표류에는 사공(沙工)을 형추(刑推)하여 원배(遠配)하고, 격군(格軍)은 3차례 엄형(嚴刑)을 가한다. 2차 표류엔 사공(沙工)을 2차례 형추(刑推)하여 원배하고, 격군(格軍)은 1차례 감해주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

일(一). 각 읍의 죄수들은 먼저 향소(鄕所)의 형쇄(刑鎖)를 보고 1차로 엄형(嚴刑)을 가한 뒤에 죄인이 범한 본죄(本罪)를 보고 1등을 감하여 원배(遠配)할 일.

행형쇄장(行刑鎖匠) : 형(刑)을 집행하는 옥사장이.

일(一). 임자년(壬子年) 정월(正月) 한성부(漢城府) 관문(關文)으로 전교(傳敎)하기를, 경외(京外)의 상언(上言)은 4건 외에는 봉상(捧上)하지 말고, 4건은 형륙(刑戮)을 자신에게 미치도록 한다. 부자(父子)는 분간(分揀)529)하며, 적첩(嫡妾)도 분간(分揀)하며, 양천(良賤)도 분간(分揀)한다.

형륙(刑戮) : 죄지은 사람을 형벌에 따라 죽임. 형벽(刑辟).

일(一). 신해년(辛亥年) 6월 형조(刑曹) 관문(關文)에, 흑산도(黑山島)는 특별한 교지(敎旨)가 아니면 정배(定配)하지 말라고 하였다.

일(一). 묘(墓)를 훔치는 것은 처교(處絞)<sup>530)</sup>하는 율(律)이 있지만, 근래에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하는 예(例)가 있으니, 진영(鎭營)에서 수계(修啓)<sup>531)</sup>하도록 한다.

일(一). 신해년(辛亥年) 5월 비변사 관문에, 전화(錢貨)는 공채(公債)가 1/10이며 사채(私債)가 2/10이다. 생필품[生息]과 곡물(穀物)은 이전의 장리(長利)를 따르되, 이 범위를 넘긴 자는 물주(物主)를 형추하여 정배한다. 빚을 내고도 갚지 않는 자와 이자로 원금을 삼아 새로 빚을 내어 주고 고쳐서 문서로 만든 자는 중률(重律)로 다스린다.

<sup>527)</sup> 형추(刑推)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는 일. 형문(刑問), 형신(刑訊)이라고도 하였다.

<sup>528)</sup> 이의천(李倚天): 1676(숙종 2)~1753(영조 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립(斯立), 호는 박직와(樸直窩). 벼슬은 헌납·지평·장령·사간을 거쳐 1726년(영조 2) 좌부 승지에 이르렀다. 신임사화 때에는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를 주살(誅殺)하기를 주장하는 계(啓)를 올리기도 하였다.

<sup>529)</sup> 분간(分揀): 죄상(罪狀)을 보아서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處決)하는 일. 지금의 집행유예(執行 猶豫)와 같음.

<sup>530)</sup> 처교(處絞) : 오늘날의 교수형(絞首刑)과 같음.

<sup>531)</sup> 수계(修啓): 문서나 글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상주(上奏)한다는 뜻이다.

일(一). 정배(定配) 죄인 중 도년(徒年)532)에 해당하는 자가 기한이 다되었으면 먼저 방송한 뒤, 계문(啓聞)으로 보고한다.

일(一). 각 궁의 사패노비(賜牌奴婢)533)들은 해당 궁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534) 내려 보내면, 감영(監營)은 두루 묻고 사실을 가려 총수[都數]를 한 번 받아 낸 뒤에는 계속해서 후보자를 선정하지 말고, 탈이 있을 경우 대신 정급(定給)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신해년(辛亥年)에 본도(本道)에서 정식으로 삼았다.

일(一). 주사(舟師)<sup>535)</sup>가 있는 읍의 사노(寺奴)가 사패(賜牌)를 진고(陳告)<sup>536)</sup>하여 각 양으로 면천(免賤)하면, 영원히 금지<sup>537)</sup>한다. 무진년(戊辰年)의 절목(節目)을 분방(分防)하여 주사(舟師)가 있는 읍에 비(婢)를 둔 뒤에 방노(防奴)를 둘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婢)의 면천(免賤)은 기유년(己酉年)에 본도(本道)에서 장계를 올려 금지하였고, 신해년 (辛亥年)의 사괄(査括)<sup>538)</sup>은 이에 의거해 거행하였다.

일(一). 무진년(戊辰年) 절목(節目)을 분방할 때 타도(他道)에서도 진고(陳告)하여 면천 (免賤)하는 금지하니, 그 뒤부터 법을 어겨가며 면천(免賤)하려는 자들이 매우 많아졌다. 그 때문에 신해년(辛亥年) 사정(査正) 할 때에 일체 환천(還賤)하여 영원히 금지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sup>532)</sup> 도년(徒年): 도형(徒刑)에 의해 처벌된 햇수, 혹은 1년의 도형(徒刑)을 가리킨다. 도형(徒刑)은 오형(五刑)의 한 가지로 범죄 사실이 비교적 무거운 사람을 관청에서 구속하여 전염(煎鹽) 초철(炒鐵) 등과 같은 힘든 일로 강제 노력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도형(徒刑)은 반드시 곤장을 함께 쳤는데, 장(杖) 60대에 도(徒) 1년,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 장(杖) 80대에 도(徒) 2년,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 장(杖) 50대에 도(徒)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sup>533)</sup> 사패노비(賜牌奴婢) :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준 노비.

<sup>534)</sup> 망정(望定): 후보자를 선정함. 후보자로 선정됨.

<sup>535)</sup> 주사(舟師) : 수군(水軍)을 말한다.

<sup>536)</sup> 진고(陳告) : 윗사람에게 이야기 하여 알림. 혹은 죄인을 고발함.

<sup>537)</sup> 방색(防塞) : 남의 청(請)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음.

<sup>538)</sup>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여 찾아낸다.

일(一). 사목(事目)에서 일반적으로 진고(陳告)하는 방법은 관노비(官奴婢)는 관노비에게 진고(陳告)하고, 사노비(私奴婢)는 사노비에게 진고(陳告)한 뒤에 면천(免賤)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관노비(官奴婢)가 사노비(私奴婢)에게 진고(陳告)하여 면천(免賤)하는 길은 금단(禁斷)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음을 거듭 밝혔다.

일(一). 공장(工匠)으로 면천(免賤)을 대신한 자는 그 자신만 허락할 뿐 소생(所生)은 본 주인에게 환추(還推)한다. 신해년(辛亥年) 사정(査正) 시(時)에 호조(戶曹)에서 이문(移文)으로 인해 정해진 법식이 되었으며, 대급(代給)한 공천(公賤)539)의 자손(子孫)은 역시 공천(公賤)으로 환귀(還歸)한다.

일(一). 역노(驛奴)와 사노(寺奴)는 똑같이 공천(公賤)이되, 한결같이 녹안(錄案)의 선후에 따라 시행(施行)함을 정식(定式)으로 삼는다.

일(一). 신해년(辛亥年) 정월(正月) 초하루 자시(子時) 이후 공천(公賤)이 양처(良妻)의 소 생은 어머니를 따라 역(役)을 받는다. 장예원(掌隷院)에서 계하(啓下)하여 관문(關文)으로 정식으로 삼았다.

일(一). 원공신(元功臣)의 자손들은 음직(蔭職)을 승계해 면천(免賤)하고, 원종공신(原從功臣)<sup>540)</sup>은 단지 그 자신만 면천(免賤)되고 자손은 면천(免賤)되지 않는다. 신해년(辛亥年) 사정(査正) 시(時)에 비변사에서 정한 법식이다.

일(一). 각 사(司) 노비(奴婢)들의 잡탈(雜頃)은 매 세말(歲末)마다 영문(營門)에서 조사하여 감해주고 문서를 만들어 주면 해당 주(州)에서 구별한다. 공노비(貢奴婢) 또한 이에의거해 마감(磨勘)하고 모두 책으로 만들어 해당 조(曹)에 수송(修送)하여 수공(收貢)을 검사하는 증빙으로 삼는다. 신해년(辛亥年) 계문(啓聞)으로 정한 법식이다.

일(一). 공노비(貢奴婢)의 후목(後木)541)은 1구(口)당 14자이며, 작역가(作役價)와 짐삯 [駄價]는 정식(定式)에 따라 마감(磨勘)하고, 원래의 진성(陳省)542) 중 필(疋) 수를 기록하여 경외(京外) 해당 읍(邑) 등의 거중(居中)에서 더 거두어들이는 폐단은 제거한다. 신해년(辛亥年) 계문(啓聞)으로 정한 법식이다.

▷ 상고(相考)할 일입이다. 불행히도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목숨이 다 죽게 되었고, 완악(頑惡)한 무리들은 서로 모여 도적이 되니, 읍(邑) · 진(鎭)에서 문서 로 보고하는 것이 날마다 더욱 소란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다가올

<sup>539)</sup> 공천(公賤): 조선조 때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 등에 의하여 관부에 딸린 사내종 과 여자종을 이르는 말. 시노비(寺奴婢)、내노비(內奴婢)、관노비(官奴婢) 및 역노비(驛奴婢)등으로 나뉨. 공천은 장예원에서 관할하며 3년마다 각 사(司)와 각 기관의 노비를 조사하여 속안 (續案)을 작성, 20년 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였음. 이들 공천은 독립호(獨立戶)를 이루고 살았는데, 후손이 없으면 농지와 집을 소속 관아에 반납하였음.

<sup>540)</sup> 원종공신(原從功臣) : 정공신(正功臣)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

<sup>541)</sup> 후목(後木) :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무명.

<sup>542)</sup> 진성(陳省) : 지방 관아가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방략(方略)을 베풀어 해결하는 방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실천해야 할 조목 (條目)을 뒤에 일일이 개록(開錄)543)하오니, 상고(相考)하여 시행(施行)하고, 이조목으로 각각의 속읍(屬邑)에 발관(發關)544)하여 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一). 각 진영(鎭營)과 진(鎭)에 소속된 군관(軍官)과 나졸(羅卒) 중 똑똑하면서도 날째 며 기포(譏捕)를 익힌 자를 별도로 뽑아 내 장교(將校) 5인, 나졸(羅卒) 10명씩 한결같이 경기포도별군관(京畿捕盜別軍官)의 예(例)에 따라 '별기포군관(別譏捕軍官)'으로 칭하면서 각각 2명씩 거느리게 한다. 영장(營將)은 각별히 그들을 돌보고[撫恤] 심복(心腹)으로 대우해 준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간간히 각각 소속된 읍에 몰래 보내 도적들의 형세를 살피고, 소속에 읍에 적(賊)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양식을 보내주어 기포(譏捕)하는 밑바탕으로 삼도록 한다.

일(一). 소속된 각 읍의 나졸(羅卒)을 제외하고<sup>545)</sup> 진영군관(鎭營軍官)과 본관군관(本官軍官)을 막론하고, 각 그 관(官)에서 용감하면서도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를 별도로 가려 각각 별도로 차정해 '별토포군관(別討捕軍官)'으로 칭한다. 대읍(大邑)에서는 13명, 중읍(中邑)에서는 9명, 소읍(小邑)에서는 7명씩 책으로 만들어 진영(鎭營)과 순영(巡營)에 첩보(牒報)<sup>546)</sup>한다. 그들에게 임무를 나누어, 각각 읍(邑)의 면(面)을 막는다. 담당한 면(面) 내에 만약 몰래 절발(竊發)<sup>547)</sup>의 근심이 있으면, 각각 그 본관(本官)을 선두로 삼고, 그 담당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한 편으로는 기포(譏捕)를 발송(發送)하고, 한편으로는 진영(鎭營)에 연유(緣由)를 첩보(牒報)하게 한다. 진영(鎭營)에서는 또 영하(營下)로 발송하여 별기포군관(別譏捕軍官)과 나졸(羅卒)들이 일체(一體) 기포(譏捕)할 수있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각 진(鎭)의 별기포군관(別譏捕軍官)과 나졸(羅卒) 등은 별도로 돌보아주는 법(法)이 없을 수 없기에, 각각 백미(白米) 20섬씩 떼어 주어 나누어준다. 혹 날짜를 헤아려 급료(給料)를 지급하거나, 혹 출사(出使) 시(時) 재량(齎糧)으로 지급하거나 편의(便宜)에 따라 시행한다.

일(一). 별기포군관(別譏捕軍官)과 별토포군관(別討捕軍官)을 이미 택정(擇定)했으면, 그부지런함과 게으름[勤慢]에 따라 상벌(賞罰)의 밑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아무 읍(邑)이나 아무 면(面)에서 만약 절발(竊發)의 근심이 있는데도, 20일 이내 해당 면(面)의 별토포군관(別討捕軍官)이 잡아 바치지 못하면, 우선 그 관에서 곤장(棍杖) 20도(度)로

<sup>543)</sup> 개록(開錄)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末尾)에 의견을 열기(列記)하는 것.

<sup>544)</sup> 발관(發關) : 상관이 하관에게 관문(關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관문(關文)은 상급 관청에서 동급 이하의 관청에 내리는 공문서 혹은 허가서를 가리킨다.

<sup>545)</sup> 제량(除良) : 이두로 '을 제외하고'의 뜻이다.

<sup>546)</sup> 첩보(牒報) :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을 뜻한다.

<sup>547)</sup> 절발(竊發) : 몰래 책동하거나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처결한 뒤, 진영(鎭營)에 연유(緣由)를 첩보(牒報)한다. 30일 내에 잡아 바치지 못하면, 진영(鎭營)의 담당관리가 와서 곤장 30도(度)로 처결한다. 각 읍(邑)에 도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진영(鎭營)의 별기포군관(別譏捕軍官)과 나졸(羅卒) 등은 그날 바로 내 보낸다[出送]. 20일 내에 잡아 바치지 못하면, 진영(鎭營)에서 우선 곤장 20도(度)로 처결하고, 30일 내에 잡아 바치지 못하면, 연유(緣由)와 함께 수갑을 채워 상사(上使)가 곤장 30대로 처결한다. 만약 잡아 온 자는 다소(多少)를 막론하고 즉각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각별한 논상(論賞)의 밑바탕으로 삼으며, 5명 이상 잡아들인 자는 비록 군관(軍官)을 겸대하고 있는 자라도 우선 대탈(代與)548)을 즉시 허락한다.

일(一). 면리(面里)가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대포도막(大捕盜幕)을 설치한 뜻은 공한(空間)한 장소는 영성(零星)하여 끝내 적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애초부터 한사람도 맡아 지키는 이가 없음에랴. 다만 궐직(闕直)에 따른 징궐(徵闕)의 폐단만 있었다. 백성들의 해(害)를 없애려는 뜻이 도리어 양민(良民)이 지탱하기 어려운 길만 만들게 되었으니, 각각의 집앞에 설치하지 말고, 각각 집 앞에서 도적을 잡는다면, 예전대로설치한다. 각각 그 마을의 가구(家口) 수(數)를 헤아려 밤마다 5명씩 번(番)을 배정하여준다. 5경(更)이 되면 마을 내에 패(牌)를 몰래 설치하고, 임무를 맡은 집에서 매 경(更)마다 한 사람씩 촌중(村中)을 순환(巡環)한다. 경패(更牌)를 추납(推納)한 뒤 막(幕)으로돌아와 일체(一體) 맡아 지킨다. 초경(初更)에 이와 같이 하고 2경(更)에 또 이와 같이하면, 한 촌(村) 내에 한 사람이 항상 밤을 지키게 되며, 한 막(幕) 내에 4명이 항상 맡아서 지킨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경(一更)씩 순검(巡檢)하는 역(役)은 난감(難堪)한 일도아니며, 또한 돌아가며 가매(假寐)하는 편리함도 있으니, 이에 의거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일(一). 각 면(面)과 각 마을[里]에서 그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중 조금 인사 (人事)를 아는 자를 택해 패장(牌將)으로 삼고, 부근 10가(家)를 그 사람에게 소속시킨다. 10가(家) 내에선 각각 소나무 횃불을 밝힐 조(條)로 능(棱)·장(杖) 등의 물건을 준비해, 완급(緩急)에 접응(接應)할 자료(資料)로 삼는다. 그 중에서 활·칼[釰]·총(銃)·창(槍)이 있는 자들은 그 기계(器械)를 몸에 지니고 서로 따르게 하되, 아무개 마을에 적변(賊變)이 생겨 순경(巡更)·군졸(軍卒)들이 큰 소리로 급함을 알리면, 각 패장(牌將)들은 그에게 딸린 10명을 인솔하여 기계(器械)를 지니고 소나무 횃불을 밝혀 대응한다는 것을 차례로 서로 전한다. 동촌(東村)의 변(變)은 서촌(西村)에서 응하고, 북촌(北村)의 변(變)은 남촌(南村)에서 구원해 일시에 같이 응하면, 비록 명화적(明火賊)549)이나 극악

<sup>548)</sup> 대탈(代頉) : 탈이 생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정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sup>549)</sup> 명화적(明火賊): 조선시대 주로 횃불을 들고 약탈을 자행한 강도집단. 조선 전기부터 나타 나며,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도집단 혹은 떼강도를 말한다. 명 화적은 화적(火賊)이라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명칭은 그들이 약탈할 때에 주로 횃불을 들 고 다녔다는 점, 약탈 방법이 대체로 불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劇惡)한 적이라도 방어하기에 충분하며, 또 추격해 잡을 수 있다. 이는 지극한 강령(綱領)이 되니, 충분히 절량(節量)하여 미루어 거행(擧行)함이 마땅하다.

일(一). 각 마을[里]에서 10명을 거느린 파장(把將)들은 그들에게 소속된 10가(家) 내를 때로 순검(巡檢)한다. 만약 문자(文字)나 공문(公文)의 내용을 모르면서 지접(止接)한 자<sup>550)</sup>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인물이 왕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거주지(居住地)를 반문(盤問)<sup>551)</sup>한다. 명백히 행적이 수상한 자는 구류(拘留)시켜 두고, 즉시 관가(官家)에 알려 추핵(推覈)<sup>552)</sup>하게 하면, 적들은 서로 모이지 못할 것이며, 또한 지접(止接)하지 못해 저절로 흩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신칙(申飭)<sup>553)</sup>하되 그 마을[里]에서 지접(止接)하다가혹 아무 읍(邑)이나 아무 마을에서 도당(盜黨)으로 잡히면, 그 파장(把將)과 몰래 접촉한 사람은 와주(窩主)<sup>554)</sup>로 논해 곤장 30도(度)로 처결한다.

일(一). 걸인[流丐] 중 무뢰배들은 혹 사찰(寺刹)에 모여 도적(盜賊)이 되기도 하며, 혹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리를 만들어 길을 막고 겁략하기도 한다.555) 그래서 사찰에는 중을 차정(差定)하여 기찰(譏察)하고, 이에 의거해 규찰을 빙검(憑檢)한다. 각 읍의 기포 군관(譏捕軍官)들은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을 때때로 적간(摘好)한다. 시장(市場)에서 큰 소리를 내어 매번 기포군관(譏捕軍官)이 규찰(糾察)하는 말을 항상 적도(賊徒)들이 듣게 하면, 결코 멋대로 행동하거나 서로 모이지 못하며, 놀라 흩어져야 함을 스스로 알 것이다. 걸인들은 전일(前日)의 관문(關文)에 따라 차례대로 양식을 나누어주어모여 도적이 되는 폐단이 없게 하며, 또한 길에서 굶어 죽는 시체가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一). 읍저(邑底)와 대촌(大村)의 각 집 머슴[雇工]이나 양반의 노복(奴僕) 중에는 밤을 틈타 모여 혹 잡기(雜支)를 행하기도 하며, 혹 닭이나 개를 잡아먹으며 도당(徒黨)을 결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을의 파장(把將)들이 각별히 엄금한다. 몰래 다니거나 모였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들은 도적을 다스리는 율(律)로 논의하되, 느슨하게 처단하지 않도록 한다.

일(一). 각 읍(邑)의 진도처(津渡處)에는 각별히 똑똑하면서도 글을 아는 장교(將校)와 사 공(沙工) 차정하여 함께 행인의 형색(形色)을 살핀다. 호패(號牌)를 검사해 의심이 없는 자는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고, 의심이 가는 자는 관가로 잡아 와서 핵처(覈處)의 근거로 삼는다.

일(一). 평상시 도적(盜賊)을 금하는 것은 비록 진(陣)에서 적(賊)과 마주하는 것과는 다

<sup>550)</sup> 지접자(止接者) : 잠시 몸을 위탁하여 사는 자. 거접자(居接者)라고도 함.

<sup>551)</sup> 반문(盤問): 자세하고 반복해서 묻는다는 말이다.

<sup>552)</sup> 추핵(推覈) : 죄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실상을 캐내는 것.

<sup>553)</sup>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

<sup>554)</sup> 와주(窩主) : 소굴의 우두머리. 접주(接主).

<sup>555)</sup> 시호소(是乎所) : 이두로 '하는 바'의 뜻이다.

르나, 기찰(譏察)과 응함에 따라 기정(寄正)556)의 변화는 같은 기축(機軸)557)이다. 반드시 허(虛)、실(實)、유(有)、무(無)에 따라 오가며 말을 금방 바꾸면서558) 귀신같이 출몰해, 적도(賊徒)들로 하여금 바른지 그른지를 예측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늠름하게 지내기를 마치 기토장(譏討長)이나 기포장(譏捕長)이 배후(背後)에 있는 것처럼한다. 그러면 적들은 저절로 소멸되며, 저절로 흩어질 것이니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형장(刑杖)을 쓰며, 주륙(誅戮)을 가하겠는가? 그러나 각별히 두려워하면서 각별하게 거행해야 한다. 영장(營將)들은 간혹 말을 타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양식을 휴대하고서 때때로 원근(遠近)의 읍속(邑屬)에 출몰(出沒)해 수령(守令)을 신칙(申飭)한다. 별기포관(別譏捕官)들 역시 불려가 지휘를 받으면, 반드시 놀라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 진주진(晋州鎭)의 팔량(八良),상주진(尙州鎭)의 추풍령(秋風嶺)、조령(鳥嶺),안동진(安東鎭)의 죽령(竹嶺) 등과 같이 타도(他道)와 경계를 접하며 적도(賊徒)들이 왕래하며 출입하는 대소(大小) 요로(要路)에는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照管]559)하도록 한다.

일(一). 근래엔 체통(體統)이 해이(解弛)해져 각 읍의 수령(守令)들이 영장(營將)을 보면, 영장들은 마치 토포(討捕)와 관계된 것이 없는 듯하며, 분부(分付)한 일은 하나도 거행하지 않는다. 비록 거행하더라도 대부분 느려서 때를 놓치는 폐단이 있으니, 놀랄 만한일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영(營)에서는 영장(營將)에게 별도의 엄한 관문(關文)으로 신칙(申飭)하게 하고, 이후로 전의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영장을 법에 따라 계문(啓聞)하고 파출(罷黜)해 체통(體統)을 높이는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적도(賊徒) 등이 혹 각 진(鎭)과 각 읍(邑)의 관속(官屬)들과 결당하여 관문(官門)의 동정(動靜)을 파악하여 기포(譏捕)하는 이들이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한 통속이 되었으나 풀려난 자들이 간간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보다놀랄만한 일이 없다. 지금 별기포(別譏捕)、별토포(別討捕) 중 임장(任掌)<sup>560)</sup>이나 군졸(軍卒)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근착(根着)<sup>561)</sup>이 있고, 족당(族黨)이 있어 십분(十分) 의심이 없는 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sup>556)</sup> 기정(奇正) : 기(奇)는 기습(奇襲)을 정(正)은 정공(正攻)을 뜻하는데, 간혹 권도(權道)와 정도 (正道)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sup>557)</sup> 기축(機軸) : 관건이 되는 주요한 곳의 비유. 중요한 직무나 부분.

<sup>558)</sup> 섬숙(閃썇) : 말을 금방 바꿈.

<sup>559)</sup> 조관(照管) :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함. 관리함.

<sup>560)</sup> 임장(任掌): 서울의 각방(各坊) 또는 지방의 동리(洞里)에서 호적 및 기타 공공업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들을 일컫는다. 서울의 각방에는 별문서(別文書)、별유사(別有司)가 있고 지방 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등이 있었다.

<sup>561)</sup> 근착(根着) : 유근착인(有根着人).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말한다.

## 공방색(工房色)

일(一). 황장목(黃腸木)<sup>562)</sup>의 봉산(封山)<sup>563)</sup>이 소재(所在)하고 있는 7개 읍은 안동(安東), 예천(醴泉), 영해(寧海), 영덕(盈德), 문경(閩慶), 봉화(奉化), 영양(英陽)이다.

일(一). 황장목(黃腸木)의 봉진(奉進)은 한결같이 장생전(長生殿)<sup>564)</sup>의 관문(關文)에 따라 본영(本營)에서 각 관(官)으로 분정(分定)<sup>565)</sup>한다. 경차관(敬差官)<sup>566)</sup>이 쓸 지필묵(紙筆 墨)은 봉과(封裹)<sup>567)</sup>해 두고, 잡물(雜物) 또한 영문(營門)에서 분정(分定)하라고 발관(發 關)<sup>568)</sup>한다.

일(一). 밤나무[栗木] 400주(株)는 매 식년(式年)마다 예조(禮曹)에서 관문(關文)을 내려보낸 뒤 생산되는 관청으로 분정(分定)한다. 경차관(敬差官)이 내려 와 벌목을 감독하고, 문경현(聞慶縣)에서 정한 도회(都會)에서 수취(收聚)하여 서울로 올려 보낸다. 경차관이쓸 지필묵(紙筆墨) 역시 영문(營門)에서 분정(分定)하여 제공한다.

일(一). 주원(廚院)에 쓰일 자기(磁器)를 굽는 곳에 들어가는 백토(白土)의 산지(産地)인 곤양군(昆陽郡)에서는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 400섬을 수조(收租)하여 마감(磨勘)할 때고군(雇軍)에게 떼어 주어 채취하게 한다. 매년 수을토(水乙土)569) 40섬을 세선(稅船)에 덧싣고 진주(晋州)로 상납한다. 백첩토(白貼土) 20섬, 법토(法土) 15섬, 축부토(築釜土) 20섬, 구목회(仇木灰) 11섬은 매년 저치미 30섬에서 떼어 주어 고군(雇軍)에게 채취하게 하고, 세선(稅船)에 덧싣고 상납한다. 흙을 채굴할 때는 사용원(司饔院) 차사원(差使員)이 내려 와 채굴을 감독한다.

일(一). 사옹원(司饔院) 장인(匠人)의 가포(價布)는 매년 2월 사옹원(司饔院)에서 관문을 내려 보내는 것을 본 즉시 차사원(差使員)을 배정하여 올려 보내게 한다. 일(一). 도내의 사찰(寺刹)은 302사(寺)이다.

562) 황장목(黃陽木) : 품질이 좋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주로 관재(棺材)로 쓰임.

<sup>563)</sup>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채(伐採)를 금지하는 산. 나라의 말림갓.

<sup>564)</sup> 장생전(長生殿) : 세종 14년에 창설된 왕실용(王室用) 또는 대신(大臣)에게 내리는 관곽(棺 槨)을 갖추어둔 관아.

<sup>565)</sup> 분정(分定) : 제도(諸道)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sup>566)</sup> 경차관(敬差官) : 임금의 명을 받들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혹은 그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sup>567)</sup> 봉과(封裹) : 물건을 싸서 봉함.

<sup>568)</sup> 발관(發關) : 상관이 하관에게 관문(關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sup>569)</sup> 수을토(水乙土) : 경상남도(慶尙南道) 하동의 특산으로, 도자기(陶瓷器)의 원료(原料)로 쓰이는 흙.

# 영인리청(營人吏廳)

일(一). 기관(記官)<sup>570)</sup> 2인을 차출(差出)해 여러 반(班)의 하인들을 총 감독하고, 차임(差任)<sup>571)</sup>과 출사(出使)를 맡긴다.

차지(次知): 이두.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행위 혹은 그 주체를 가리킨다.

일(一). 새로 부임하는 관장을 모시고 올 때에 기관(記官) 1인, 감상(監嘗) 1인, 급창(吸唱)、도척(刀尺)、방자(房子) 각 1명을 차송(差送)<sup>572)</sup>한다.

일(一). 영(營)의 각 고(庫)의 파임(把任)은 재임 기간<sup>573)</sup> 내에 서로 교체하는데, 만약 체역(遞易)이 7개월 이내에 있으면 교체(交替)하지 말고 그대로 맡긴다.

일(一). 각 세소(稅所)의 색리(色吏)들은 1년에 서로 교체(交替)하는데, 교체한 뒤에는 보선색(補膳色)을 담당하게 한다.

일(一). 남창색(南倉色) 1인과 낙육재색(樂育齋色) 1인을 차출(差出)하여 2년마다 서로 교체한다.

일(一). 회계색(會計色) 4인과 산원(筹員) 8인을 차출(差出)하여 재임 기간 내에 수행하게 한다.

일(一). 약계색(藥契色)은 임신년(壬申年)에 설치되었는데, 본전(本錢) 2,400냥에서 해마다 2/10의 이자를 주었다. 본영에서 사용하는 당재(唐材)574)를 담당하여 진배(進排)575)하도록 했으니, 자주 교체하면 빚을 지고 원망하는 단서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비로소 8인을 차출해 거행하고, 이 8인 중에서 돌아가며 의생(醫生)으로 차출하되,576) 경력의 연수[久近]에 따라 승진시켜 의생의 임무를 맡도록 차출시키며, 이와 같이 점점 의생을 보충하여 의생의 임무를 그대로 전수해가며 담당하도록 한다.

일(一). 사령(使令)<sup>577)</sup>、군뢰(軍牢)、영노(營奴)는 각 반(班)에서 차출(差出)하되, 두목(頭目) 2인이 검찰(檢察)하도록 한다.

일(一). 각 창고의 고지기[庫子]들은 1마다 서로 교체하는데, 영(營)에서 쓰이는 채소는 관청(官廳)과 진휼청(賑恤廳)의 고지기[庫子]들이 담당한다. 기유년(己酉年) 박사또가 재임할 때 본전(本錢) 500냥에서 이자를 만들어 주었고, 이자 200냥을 덧보태었는데 점점

<sup>570)</sup> 기관(記官) : 조선시대 지방의 하례(下隷).

<sup>571)</sup> 차임(差任) :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일.

<sup>572)</sup> 차송(差送)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sup>573)</sup> 등내(等內) : 관원의 재임 기간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에 있는 동안이란 뜻이다.

<sup>574)</sup> 당재(唐材) : 중국에서 들어온 약재(藥材)를 말한다.

<sup>575)</sup> 진배(進排): 대궐이나 관아에 쓸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친다는 말이다.

<sup>576)</sup> 위호의(爲乎矣): 이두로 '하오되'로 읽으며, '하되'의 뜻이다.

<sup>577)</sup> 사령(使令) :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그것을 전수해가며 담당하였고 역(役)에 응하였다면, 본전(本錢)은 돌려주도록 한다.

인리(人吏)

소동(小童)

사령(使令)

문서직(文書直)

기생(妓生)

수급비(水汲婢)

영노(營奴)

통인방하전(通引房下典) 6명

진무문서직(鎭撫文書直) 20명

군뢰방하전(軍牢房下典) 7명

마군도훈하전(馬軍都578)訓導下典) 47명

중영인리청하전(中營人吏廳下典) 12명

아병도훈도하전(牙兵都訓導下典) 37명

소동방하전(小童房下典) 12명

영노보인(營奴保人) 12명

군뢰방하전(軍牢房下典) 11명

나장보인(羅將保人) 80명

사령방하전(使令房下典) 18명

하전(下典) 30명

# 영고(營庫)

#### 1년응봉(一年應捧)

- ◎ 원수미(元需米) 1,200섬 가운데 【300섬은 보선청(補繕廳)에 떼어 주고, 50섬은 도사(都事)의 지 공(支供)579)으로 본부로 이송하고, 670섬은 본소(本所)에서 봉상(捧上)하여 동래(東萊)에서 서로 바꾸면, 선가(船價)를 더해 입차(入次)한다.】
- ◎ 아록미(衙祿米)580) 25섬은 대구부(大丘府)로 수송해 바친다.

<sup>578)</sup> 도(都) : 원문이 마멸되어 글자를 판독할 수 없으나, 아래의 '아병도훈도(牙兵都訓導)'를 참조하여 '도(都)'로 추정하였다.

<sup>579)</sup> 지공(支供) : 조선시대 관비물품(官備物品)의 지급을 뜻하는 말이다. 호조(戶曹)의 경비사(經費司)가 주무 관사(官司)였다. 맡은 사람을 지공직(支供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공채(支供債) 라고 하였다.

<sup>580)</sup> 아록미(衙祿米) : 아록은 수령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주는 식료(食料)이다. 아록전을 떼어 주

- ◎ 돈[錢文] 1,900냥은 여섯 세소(稅所)에서 세말(歲末)에 마감(磨勘)하여 바치는데, 그 납세(納稅)는 어산(魚産)의 선부(善否)、다과(多寡)에 따르며 정식(定式)은 없다. 근래에 정식(定式)을 마련하였으나 곧 탈(頃)이 생겨 수(數)가 감소하니, 세입(稅入)이 날로 줄어 드는 폐단이 수시로 생겨 정식(定式)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전에 바치던 것에 의거하여 봉상(捧上)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 ◎ 미역[藿] 3,650근은 영일(迎日), 칠원(柒原), 울산(蔚山)의 세소(稅所)에서 연례(年例)로 바친다.
- ◎ 백문어(白文魚) 30속은 사천(泗川) 세소(稅所)에서 두수례(鈄水例)로 바친다.
- ◎ 생꿩[生雉]과 생닭[生鷄]의 연례(年例) 무납(貿納)하는 값은<sup>581)</sup> 진휼청(賑恤廳)의 둔조 (屯租)에서 돈 200냥으로 바꿔 이송한다.
- ◎ 찹쌀[粘米], 메밀[木米], 가죽[皮], 율무[薏苡], 녹두[菉豆], 팥[小豆], 참깨[眞荏淸], 잣[栢子], 호도[胡桃], 대추[大召], 황율[黄栗], 곶감[乾柿], 피율(皮栗), 석이버섯[石茸], 표고버섯[蔈古], 생배[生梨], 밤[生栗], 은어[銀□魚] 등이 생산되는 각 읍(邑)은 춘추(春秋) 두 계절에 분정(分定)하여 봉상(捧上)하고, 그 값은 해당 읍의 별회조(別會租)에서 절가 (折價)582)를 따라 회감(會減)한다.
- ◎ 말린 대구[乾大□]、말린 광어[乾廣魚]、전복(全鰒)、홍합(紅蛤)、익힌 전복[熟鰒]、백문어(白文魚)、해삼(海參)、어유(魚油) 등은 각 세소(稅所)에서 분정(分定)하여 바치고, 값은 다시 새로 바꾸어 영고전(營庫錢)으로 지급한 뒤, 그 대신 각 읍에서 별회곡(別會穀)을 구획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충당한다. 【이것은 새로운 법으로 비록 한 때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라 하지만, 영(營)에서 과견하여 돈으로 환산할 때나 조세를 분획(分劃)할 때 폐단이 없지 않으므로, 임시(臨時)로 해아려 거행한다.】
- ◎ 명태·말린 신삼어[乾申三魚] 등 영고(營庫)에서 곧바로 사들이고, 값은 별회조(別會租)로 지급한다.
- ◎ 홍시(紅柿) · 석류(石榴)는 사령(使令)으로 대금을 주고<sup>583)</sup> 사게 한다.
- ◎ 생간(生羊)은 관청(官廳)의 사후(伺候)에게 대금을 주고 사게 한다.
- ◎ 생어물(生魚物)은 각 세소(稅所)에서 한 달에 6차례씩 영고(營庫)에 수납(輸納)하고, 물선군(物膳軍)의 계식(計式)으로 대신하며, 매달 전정(塡井)한다.
- ◎ 감장(甘醬)584)은 갑인년(甲寅年) 훈조소(爋造所)585)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조어(措

어 그 수세(收稅)로써 아록에 충당했는데, 아록미는 여기서 거둔 세금이다.

<sup>581)</sup> 가본단(假本段) : 가본(假本)은 이두로 '값'의 의미이고, 가본단(假本段)은 '값은'의 뜻이다.

<sup>582)</sup> 절가(折價)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定)함. 결가(決價). 가절(價折).

<sup>583)</sup> 급가(給價): 대금을 주다, 댓가를 치러주다는 말이다.

<sup>584)</sup> 감장(甘醬) : 맛이 단 간장을 말한다.

<sup>585)</sup> 훈조소(爋造所) : 메주를 만드는 곳.

語)586)가 있는 듯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 ◎ 등어유(燈魚油)는 각 세소(稅所)에 분정(分定)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계제(階梯)가 없고, 사들이는 것이 나날이 늘어나 어호(漁戶)가 받는 폐단이 끝이 없다. 겨울과 여름에 쓰는 등유(燈油)는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여 더 사들이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 ◎ 소금 100섬은 용당(龍塘) 세소(稅所)에서 사서 바치고, 값은 별회조(別會租)로 지급하다.
- ◎ 참보리[眞麥] 50섬은 대구(大丘)에서 별회곡(別會穀)으로 내어 주면, 본영 소속의 각절에서 찧어 1섬당 보리찌꺼기[眞末] 8말과 기울[只火] 9말 5홉씩 봉상한다.
- ◎ 참기름은 영고(營庫)가 있는 곳에서 참깨[眞荏]를 내어 주면, 각 절에서 돌아가며 기름을 짜서 바치되, 1말당 2되씩이다.
- ◎ 녹말(菉末), 율무[薏苡], 조미료[味食], 원미(元米), 실잣[實栢子], 실호도(實胡桃)는 영 (營)의 계집종[婢]을 시켜 식례(式例)에 따라 만들어 바치게 한다.
  - ▷ 이상의 각종(各種)들은 수핍(垂乏)에 따라 열읍(列邑) 및 각 세소(稅所)에 분정 (分定)하였고, 신구(新舊)와 유무(有無)를 헤아리지 않고 예(例)에 따라 분정(分定)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방납(防納)<sup>587)</sup>의 길을 열어 주었다. 또 허봉(虛捧)의 사고가 있으니, 교체할 때에 조사하면 간혹 썩거나 상했다고 핑계를 대고, 간혹 장부(帳簿)를 보지 못했다고 핑계 댄다. 비록 대부분의 창고에는 쌓아둔 포목(布木)이 없고, 각 읍에도 하나라도 쓸 만한 것이 없지만, 분정(分定)할 때에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러한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년응하(一年應下)588)

- ◎ 들어오는 삭료(朔料)와 아객요(衙客料)
- ◎ 중군(中軍)은 한 달에 말린 광어[乾廣魚] 3마리 6조(條), 명태 9속, 감장(甘醬) 1말 2되, 간장(艮醬) 9되, 참기름 1되, 소금 3되, 팥[小豆] 6되, 어유(魚油) 3되, 밀가루[眞末] 3되, 미역[藿] 1근 5냥, 콩 1섬, 벼[租] 1섬 3말씩 본고에서 지급하고<sup>589)</sup>, 요미(料米)는 군수고(軍需庫)에서 지급하고, 반찬값[饌價米]은 보선청(補繕廳)에서 지급한다.
- ◎ 군관(軍官) 1원은 한 달에 쌀 3섬 1말 6되, 콩 9말, 벼[租] 9말, 팥[小豆] 6되, 말린 광어[乾廣魚] 3마리 6조(條), 감장(甘醬) 9되, 간장(艮醬) 9되, 참기름 1되, 명태 6속, 미

<sup>586)</sup> 조어(措語) : 글자를 사용하여 말이 통하는 글로 만듦.

<sup>587)</sup> 방납(防納) : 공물(貢物) 바칠 것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로 곱절로 불려 받는 일. 상인이 나 하급 관리가 이것으로 중간이득을 얻었으며 국가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장려하였다. 이것은 뒤에 폐단이 많아 임진왜란 후 대동법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방결(防結).

<sup>588)</sup> 응하(應下): 마땅히 나가야 할 지출. 곧 경상지출(經常支出)을 말한다.

<sup>589)</sup> 상하(上下): 이두로 '차하'로 읽으며, 관에서 백성에게 지불 또는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역[藿] 15냥, 소금 3되, 어유(魚油) 3되, 밀가루[眞末] 3되이다.

- ◎ 심약(審藥)과 검율(檢律)은 한 달에 요미(料米)590) 2섬 11말, 팥[小豆] 1말, 밀가루[眞末] 1되 5홉, 참기름 9홉, 말린 광어[乾廣魚] 3마리 6조(條), 명태 9속, 미역[藿] 9냥, 소금 2되 4홉, 어유(魚油) 2되이다.
- ◎ 남창별장(南倉別將)은 한 달에 말린 광어[乾廣魚] 3마리 6조(條), 감장(甘醬) 9되, 간 장(艮醬) 9되, 팥[小豆] 6되, 참기름 1되, 밀가루[眞末] 3되, 명태 2속, 미역[藿] 15냥, 소금 3되, 어유(魚油) 3되, 콩 9말, 벼[租] 9말이다.
- ◎ 재가병방군관(在家兵房軍官) 2인은 1인당 1개월에 요미(料米) 6말며, 3월부터 7월까지는 점심미(點心米) 2말 2되, 명태 3속이다.
- ◎ 고마감관(雇馬監官) 1인, 진휼감관(賑恤監官) 1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지고관 (知鼓官) 1인, 장무초관(掌務哨官) 1인, 군물도훈도(軍物都訓導) 1인, 아병도훈도(牙兵都訓導) 1인, 군뢰차지도훈도(軍牢次知都訓導) 1인, 중영병방군(中營兵房軍) 1인, 장무초관(掌務哨官) 1인은 1인당 매달 명태 3속씩이며, 요미(料米)는 군수고에서 지급한다.
- ◎ 기관(記官) 1인, 호방(戶房) 1인, 공방(工房) 1인, 회계색(會計色) 1인은 1인당 매달쌀 1섬 5말씩이며, 소금 3되, 감장(甘醬) 6되, 간장(艮醬) 3되, 참기름 3홉, 말린 광어[乾廣魚] 3마리, 명태 3속, 미역[藿] 9냥씩이며, 하절기에는 점심(點心)으로 7홉씩이다.
- ◎ 영선색(營繕色) 1인, 의생(醫生) 1인, 책색(冊色) 1인, 전정색(塡井色) 1인, 환상색(還上色) 1인, 영사색(營舍色) 1인, 호적색(戶籍色) 1인, 통인(通引) 3인은 1인당 매달 쌀 6 말씩이며, 명태 3속, 미역[藿] 6냥, 감장(甘醬) 6말씩이다.
- ◎ 군기색(軍器色) 1인, 진휼색(賑恤色) 1인, 고색(雇色) 1인은 1인당 매달 감장(甘醬) 6되, 명태 3속, 미역[藿] 6냥이며, 제도색(祭都色) 1인은 매달 쌀 3말, 명태 3속, 미역[藿] 6냥이다.
- ◎ 호방고자(戶房庫子) 1명, 도사후(都伺候) 1명, 공고고자(工庫庫子) 1명, 약방고자(藥房庫子) 1명, 도하전(都下典) 1명, 영선고자(營繕庫子) 1명, 노수(首奴) 1명과 위두책장(爲頭冊匠) 2명, 제청고자(祭廳庫子) 1명, 급창(及唱) 2명, 도칠장(都柒匠) 1명, 비행수(婢行首) 1명 이상은 1인당 매달 요미 6말씩이다.
- ◎ 상방도방자(上房都房子) 1명, 칠비(柒婢) 1명은 1인당 매달 쌀 3말씩이다.
- ◎ 상아이방(上衙吏房) 1인, 수청형방(隨廳刑房) 1인은 1인당 매달 쌀 3말씩이다.
- ◎ 영세번비(營洗蹯婢) 2명은 1인당 요미(料米) 2말씩이다.
- ◎ 영리(營吏)는 1인당 매일 쌀 2말, 감장(甘醬) 2홉, 참기름 2사, 소금 1홉, 미역[藿] 3전, 말린 대구[乾大□] 1마리, 말린 광어[乾廣魚] 1조(條), 생어(生魚) 2토(吐)씩이며, 하절기에는 점심미(點心米) 7홉씩이다.
- ◎ 문서서자(文書書者) 2명, 복직(袱直) 1명, 입대마부(立待馬夫) 1명은 1인당 매일 요미

<sup>590)</sup> 요미(料米) : 군관 따위의 하급 벼슬아치들에게 급료로 주는 쌀을 말한다.

(料米) 2되씩이다.

- ◎ 입대마(立待馬) 1필(匹), 영복마(營卜馬) 1필(匹)은 1필당 매일 콩 2되, 좁쌀[租末] 2되씩이다.
- ◎ 산원(算員)과 각 항(項) 문서리(文書吏)는 매일 쌀 2되, 감장(甘醬) 2홉, 명태 2마리씩 마감(磨勘) 때에만 지급한다.
- ◎ 각 색(色) 장인(匠人)은 사역(使役) 때에만 매일 쌀 2되씩 지급한다.
- ◎ 상경(上京)에서 출장 온 하인(下人)은 1인당 쌀 3말, 감장(甘醬) 2말, 명태 1속, 미역 [藿] 8냥씩 지급한다.
- ◎ 원근(遠近)에서 출장 온 하인은 와서 돌아 갈 양식을 그 정도(程道)에 따라 마련(磨鍊)해서 지급한다.

## 각색춘추예하(各色春秋例下)591)

◎ 기관(記官) 2인592), 호방(戶房) 2인, 공방영선색(工房營繕色) 2인, 의생(醫生) 2인, 책색(冊色) 2인, 회계색(會計色) 4인, 보선색(補繕色) 5인, 제도색(祭都色) 1인, 이상은 1인당 봄과 여름에 쌀 12말이며, 가을과 겨울에 쌀 12말이다. 제청고자(祭廳庫子) 1명, 열수(熱手) 1명, 찬비(餠婢) 1명은 1인당 봄、가을에 각각 쌀 3말씩이다. 원도한(圓徒漢) 4명은 1인당 봄、가을에 각각 소금 1섬씩 지급한다.

## 세찬예하(歲饌例下)

- ◎ 영장(營將)은 쌀 1섬, 누룩[曲子] 1동, 말린 대구[乾大□] 4마리, 전복(全鰒) 1접(占), 곶감 1접(占), 백문어(白文魚) 3마리이다.
- ◎ 중군(中軍)과 군관(軍官)은 1원(員)당 쌀 5말, 청어(靑魚) 2급, 곶감 1접, 말린 광어 [乾廣魚] 2마리, 생꿩[生雉] 1마리, 생닭[生鷄] 1마리, 콩 1되, 간장(艮醬) 2되이다.
- ◎ 심약(審藥)、검률(檢律)은 매 원마다 곶감 1접, 말린 광어[乾廣魚] 1마리, 청어(靑魚) 1급, 생꿩[生鷄] 1마리, 간장(艮醬) 1말이다.
- ◎ 재가청(在家廳)、장관청(將官廳)、기고청(旗鼓廳)은 각각 쌀 1섬, 청어(靑魚) 2급, 곶 감 2접, 누룩[曲子] 1동이다.
- ◎ 대솔청(帶率廳)593)은 쌀 12말, 누룩[曲子] 7원(員), 청어(靑魚) 1급, 간장 3되이다.

<sup>591)</sup> 예하(例下) :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sup>592)</sup> 원문에는 인(人)자가 없으나, 뒷 구절 매인(每人)이란 용어를 참작하여 양사를 넣어 번역하였다.

<sup>593)</sup> 대솔청(帶率廳) : 대솔(帶率)은 귀인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을 가리키므로, 대솔청은 이런 하인들을 관리하는 관청이다.

- ◎ 남창별장(南倉別將)은 쌀 4말, 청어(靑魚) 1급, 누룩[曲子] 2원이다.
- ◎ 고마감관(雇馬監官)、진휼감관(賑恤監官)、보선감관(補繕監官)은 각각 쌀 2말, 청어 (靑魚) 1급, 간장 1되, 누룩[曲子] 2원이다.
- ◎ 성정초관청(城丁哨官廳)은 쌀 2말, 간장 1되, 누룩[曲子] 4원이다.
- ◎ 영리청(營吏廳)은 쌀 1섬, 청어(靑魚) 2급, 생꿩[生雉] 2마리, 곶감 1접, 간장 5되, 누룩[曲子] 1동이다.
- ◎ 인리청(人吏廳)은 쌀 1섬 5말, 누룩[曲子] 1동, 청어(靑魚) 3급, 곶감 2접, 간장 7되이다
- ◎ 영고색(營庫色) 26인과 회계색(會計色) 4인<sup>594)</sup>은 각각 쌀 1말, 청어(靑魚) 1급, 말린 대구[乾大口] 1마리, 간장 1되이다.
- ◎ 제도색(祭都色) 1인은 쌀 3말, 청어(靑魚) 1급이다.
- ◎ 열수(熱手) 1명, 찬비(饌婢) 1명은 각각 쌀 2말, 청어(靑魚) 1급이다.
- ◎ 소동방(小童房)은 쌀 10말, 누룩[曲子] 5원, 청어(靑魚) 2급, 간장 3되이다.
- ◎ 사령방(使令房)은 쌀 10말, 누룩[曲子] 5원, 청어(靑魚) 1지(枝), 간장 3되이다.
- ◎ 군물도훈도(軍物都訓導)는 각각 쌀 3말, 누룩[曲子] 2원, 말린 대구[乾大□] 1마리, 간장 1되이며, 아병도훈도(牙兵都訓導)는 또한 위와 같다.
- ◎ 영노방(營奴房)은 쌀 1섬, 누룩[曲子] 7원, 청어(靑魚) 1급, 간장 5되이다.
- ◎ 주탕비방(酒湯婢房)은 쌀 10말, 간장 3되, 청어(靑魚) 1급, 누룩[曲子] 5원이다.
- ◎ 수급비(水汲婢) 등은 쌀 10말, 간장 3되, 생대구(生大口) 5마리, 누룩[曲子] 5원이다.
- ◎ 신구군뢰방(新舊軍牢房)은 각각 쌀 10말, 누룩[曲子] 5원, 간장 3되, 말린 대구[乾大 □] 3마리이며, 사후(伺候) 등은 쌀 3말, 누룩[曲子] 2원이다.
- ◎ 책장(冊匠) 등은 쌀 5말, 말린 대구[乾大□] 2마리, 누룩[曲子] 3원이다.
- ◎ 별공수하인(別公須下人) 등은 쌀 2말, 간장 1되, 청어(靑魚) 1지(枝), 누룩[曲子] 2원이다.

### 각 처의 메주[燻造] 예하(各處爋造例下)

- ◎ 심약(審藥) · 검률(檢律)은 각각 메주595) 14말 4되와 소금 7말 2되이다.
- ◎ 대솔청(帶率廳)은 메주 13말과 소금 6말 6되이다.
- ◎ 장관청(將官廳)은 메주 1섬과 소금 7말 5되이다.
- ◎ 재가청(在家廳)은 메주 10말과 소금 5말이다.

<sup>594)</sup> 원문에는 人자가 없으나 문맥을 고려하여 삽입하였다.

<sup>595)</sup> 원문에는 무엇을 바친다는 말이 없지만, 다음 단락의 "雇馬賑恤軍器三處監官 各爋造 六斗鹽三斗"에서 메주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메주란 단어를 삽입했으며, 이하도 같다.

- ◎ 도훈도청(都訓導廳)은 메주 5말과 소금 2말 5되이다.
- ◎ 기고청(旗鼓廳)은 메주 7말과 소금 3말 5되이다.
- ◎ 고마(雇馬)、진휼(賑恤)、군기(軍器) 3처(處)의 감관(監官)은 각각 메주 6말과 소금 3 말이다.
- ◎ 신군뢰청(新軍牢廳)은 메주 1섬과 소금 7말 5되이다.
  - ▷ 이상의 예하(例下)<sup>596)</sup>는 근래(近來)에 가출(加出)<sup>597)</sup>이 많아 오로지 관장(官長)들의 일시(一時) 처분(處分)에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작정(酌定)하지는 않고 예(例)에 따라 기록했을 뿐이다.
- ◎ 영일(迎日) 세소(稅所) 모군(募軍)은 652명 가운데 【양인(良人)은 1인당 신역(身役)으로 벼[租] 1섬씩이고, 공천(公賤)·사천(私賤)은 신역으로 벼[租] 7말 5되씩이다.】
  - ▷ 물선군(物膳軍) 296명은 1인당 매달 말린 대구[乾大□] 2마리를 생어(生魚)로 대신해 식례(式例)에 따라 수납(收納)한다.
  - ▷ 해채선(海菜船) 57척은 1척당 돈 2냥 5전씩이다.
  - ▷ 소소선(小小船) 3척은 매달 청어(靑魚) 50급씩이다.
  - ▷ 소금가마[鹽釜] 13좌(坐)에 나는 소금은 30섬이며, 곽전(藿田) 1곳에 나는 미역 은 1,000근이다.
  - ▷ 감관료(監官料)는 매달 벼[租] 30섬씩이며, 색리(色吏)、고지기[庫子]는 매달 벼 [和] 각각 1섬이다.
- ◎ 울산(蔚山) 세소(稅所) 모군(募軍)은 413명이며, 물선군(物膳軍)은 182명이다. 신역 (身役)은 위와 같다.
  - ▷ 소각선(小桷船)은 9척이며, 해채선(海菜船)은 46척인데 1척당 전복(全鰒) 1접씩이다.
  - ▷ 소금가마[鹽釜] 6좌(坐)에 나는 소금은 35섬이며, 곽전(藿田) 2처(處)에 1곳당 미역[藿] 200근씩이다.
  - ▷ 감관(監官) · 색리(色吏) · 고지기[庫子]의 요조(料租)는 영일(迎日)과 같다.
- ◎ 칠원(柒原) 세소(稅所) 모군(募軍)은 554명이며, 신역(神域)은 위와 같다.
  - ▷ 물선군(物膳軍) 285명은 1인당 매달 말린 잡어[乾雜魚] 1속씩을 생어(生魚)로 대신해 식례(式例)에 따라 수납(輸納)한다.
  - ▷ 해채선(海菜船) 1척에서 잡는 해삼(海蔘)은 3말 5되이다.
  - ▷ 소각선(小桷船) 3척은 1척당 홍합(紅蛤) 2말 5되씩 잡으며, 소금가마[鹽釜] 10좌 (坐)에서 소금 10섬을 생산한다.

<sup>596)</sup> 예하(例下):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sup>597)</sup> 가출(加出) : 관아에서 사무의 폭주(輻輳)로 정원(定員)의 서리(書吏) · 원역(員役)을 더 채용 하는 일.

- ▷ 곽전(藿田) 2곳에서 미역[藿] 250근을, 소소선(小小船) 2척으로 말린 잡어[乾雜 魚] 20속을 잡는다.
- ◎ 사천(泗川) 세소(稅所) 모군(募軍)은 248명, 물선군(物膳軍) 214명, 소각선(小桷船) 33척, 소소선(小小船) 4척이다. 신역(身役)은 칠원(柒原)과 같다. 소각선(小栏船) 1척은 말린 잡어[乾雜魚] 15속을 잡는다.
  - ▷ 감관(監官) · 색리(色吏) · 고지기[庫子]의 요(料)는 위와 같다.
- ◎ 용당(龍塘) 세소(稅所)의 모군(募軍)은 192명이며, 신역(身役)은 위와 같다. 어부군(漁 夫軍)은 96명이며, 휘리군(揮罹軍)은 30명이다. 생어착납안부선(生魚捉納案付船)은 91척 으로 1척당 돈 25냥 5전씩이다.
  - ▷ 갂관(監官)、색리(色吏)、고지기[庫子]의 요(料)는 위와 같다.
- ◎ 동래(東萊) 세소(稅所) 모군(募軍)은 55명이며, 신역(身役)은 위와 같다. 안부(案付)는 30척으로 1척당 돈 20냥 5전씩이다.
  - ▷ 감관(監官)、색리(色吏)、고지기[庫子]의 요(料)는 위와 같다.
  - ▷이상의 각 세소(稅所) 모군(募軍)은 이미 액수가 정해져 이에 따라 대탈(代 頃)598)할 것이지 일체 가모(加募)하지 못한다. 감관(監官)、색리(色吏)는 혹 양인 (良人)이 천역(賤役)이 되어 그 조세가 감해지면, 첩문(帖文)을 새로 발급해 예 전(禮錢)을 거둔다. 안선(案船)의 수세(收稅) 이외 각양 선척(船隻)은 한 번에 세금을 거두지만, 각 세소(稅所)에는 혹 그 세금을 두 번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해년(辛亥年) 정식(定式)에 각 선(船)에서 거두는 세금의 수를 돈으로 마련했다. 6곳의 세소(稅所)에서 봉상(捧上)하는 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절목(節目)에 기재된 정식(定式) 이외에 범하는 자는 각별히 엄금(嚴禁)한다.
- ◎ 일도선생(一道先生) 부의(賻儀)는 청밀(淸蜜) 3말, 잣 10말, 참깨 10말을 본고(本庫)에서 봉출(封出)해 각 읍에 분정(分定)599)한다. 봉상(捧上) 값은 별회조(別會租)로 회감한다.
  - ▷ 도사(都事) 선생(先生) 부의(賻儀) 청밀(淸蜜) 1말을 또한 각 읍에 분정(分定)하여 봉상한다. 봉송 값은 위와 같다.
  - ▷ 사후(伺候) 15명
- ◎ 새로 맞이할 수령의[新迎] 지장(持裝)600)
  - ▷ 쌀 10말, 콩 10말, 율무[薏苡] 5되, 조미료[元味] 5되, 참기름 3되, 소주(燒酒) 10선(鐥), 찬가목(饌價木) 5필, 전복(全鰒) 2접, 열복(熱鰒) 2접, 백문어(白文魚)

<sup>598)</sup> 대탈(代頃) : 탈이 생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정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sup>599)</sup> 분정(分定) : 제도(諸道)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sup>600)</sup> 지장(持裝) : 지장(支裝)이라고도 하며, 신임된 수령을 맞을 때에 그 곳 군아(郡衙)에서 주는 산물(産物)을 가리킨다.

2속, 해삼(海叄) 1말, 홍합(紅蛤) 1말, 말린 대구[乾大口] 10마리, 말린 광어[乾 廣魚] 10마리, 말린 신삼어[乾申三魚] 10속, 명태 10속, 미역[藿] 10근, 은어[銀 口魚] 40마리, 감장(甘醬) 5되, 간장(艮醬) 5되, 소금 5되, 팥[小豆] 1말, 다시마 [多士麻] 5줄[注乙], 청(淸) 3근, 황촉(黃燭) 2쌍(雙), 김[海衣] 5첩이다.

- ◎ 새로 맞이할 수령의 산소제물(山所祭物)
  - ▷ 콩 1섬, 약과(藥果) 밀가루[眞末] 4말 【청(淸)이 1말 2되이고. 참기름이 1말 2되이다.】, 소주(燒酒) 6선(鐥), 청(淸) 4근, 참기름 4근, 전복(全鰒) 2첩, 열복(熱鰒) 2첩, 백문어(白文魚) 1속, 해삼(海叄) 1말, 홍합(紅蛤) 1말, 말린 대구[乾大□] 10마 리, 말린 광어[乾廣魚] 10마리, 말린 꿩[乾雉] 4마리, 곶감 1첩, 호도(胡桃) 2말, 황률(黃栗) 1말, 명태 10속, 황촉(黃燭) 4쌍(雙), 탕자가중목(湯炙價中木) 10필, 돈[錢文] 15냥, 말린 사어[乾沙魚] 1속을 대신한 말린 대구[乾大□] 10마리이다.
- ◎ 신ㆍ구 수령이 행차할 때 배행(陪行)한 하인(下人)의 양식은 쌀 4말씩 지급한다.
  - ▷ 세찬(歲饌)601)이나 절선(節扇)602)으로 데리고 가는 색리(色吏)는 유경(留京) 양미 (粮米) 10말을, 수종한 사령(使令)은 유경(留京) 양미를 7말씩 지급한다.

# 공고(工庫)

### 일응봉상(一應捧上)

- ◎ 연분지(年分紙) 4,008속 6장 각 읍의 연분(年分) 도목(都目)<sup>603)</sup>은 연례를 대신해 무가(無價) 항정(恒定)으로 바친다.
- ◎ 진묵(眞墨) 180동
- ◎ 송묵(松墨) 100동 [团]
  - 【四】'진묵(眞墨)'에서 '송묵(松墨)'까지. 연례(年例)에 따라 생산 지역의 관청이 항납(恒納)하는 하고? 값은 해당 읍의 별회미로 등록(謄錄)에 의거하여 회감(會減)한다.
- ◎ 양모 11근 11냥은 각 읍에서 연례에 따라 항납(恒納)하는 것이 없다.
- ◎ 수철장(水鐵匠)<sup>604)</sup> 1,000명은 1인당 가포(價布) 1필씩
- ◎ 격군(格軍) 140명은 1인당 가포(價布) 1필씩
- ◎ 비국장(備局匠) 182명은 1인당 목(木) 1필씩 봉상(捧上)한다.

<sup>601)</sup> 세찬(歲饌)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식료품. 혹은 세배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

<sup>602)</sup> 절선(節扇): 단오절에 진상, 또는 선물하는 부채.

<sup>603)</sup> 도목(都目) : 일반적으로 도목은 "국가적 차원에서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연분의 등급을 기록한 것"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sup>604)</sup> 수철장(水鐵匠) : 공조(工曹)에 딸린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무쇠 그릇을 만드는 장인.

- ◎ 조역군(助役軍) 48명은 1인당 가포(價布) 1필씩
- ◎ 마조장(磨造匠)605) 8명은 1인당 무명[木] 1필씩
- ◎ 옹장(瓮匠) 188명은 1인당 무명[木] 1필씩
- ◎ 추근피군(楸根皮軍) 15명은 가포(價布) 1필씩 [四]
  - 【②】 '수철장(水鐵匠)'에서 '추근피군(楸根皮軍)'까지. 비변사의 구관당상(句管堂上)에게 매년 책으로 만들어 보고한 다음 한결같이 군수례(軍需例)를 따른다. 각 읍에 베를 거둘 때 후전(後錢)606)은 3 전으로 적정(的定)하고 목품(木品)은 전례에 의거하여 7승(升) 내외의 순동(純同)한 것을 세말(歲末)에 봉상한다.
- ◎ 행담오부(行淡五部)는 매달 유기장(柳器匠)이 신역(身役)으로 항납(恒納)한다.
- ◎ 수철기장(水鐵器匠) 11명은 매년마다 2명이 식정(食鼎) 1좌(坐)씩 바친다.
- ◎ 생철장(生鐵匠) 4명은 1인당 철 18근씩 거두어 바친다.
- ◎ 광선(廣船)<sup>607)</sup> 5척은 하납할 물품을 싣고, 강해선(江海船) 값은 그 손님이 실은 것에 따라 돈으로 확산하여 바쳐서 본고(本庫)에 보태어 쓴다.
- ◎ 계본지(啓本紙)608)、전문지(箋文紙)、백지(白紙)、밀지(蜜紙)、전칠(全柒)、들깨[水荏]、외겹바[條所]、황밀(黃蜜)、정철(正鐵)、추단판(楸椴板)、녹피(鹿皮)、장피(獐皮)、서피(黍皮)、산저피(山猪皮)、화석(花席)、백석(白席)、초석(草席)、백사석(白沙器)、흑칠반(黑柒盘)、자단향(紫丹香)
  - ▷ 위의 물품들은 봄ㆍ가을로 생산되는 읍에 분정(分定)하되, 그 당시의 보유한 수 량을 헤아려 가감(加減)을 마련한다. 값은 해당 읍에서 별회곡(別會穀)으로 회감 (會減)하며, 그 중에 발생하는 폐단은 한결같이 영고(營庫)로 분정(分定)하여 일 체를 검칙(檢飭)한다.
- ◎ 채은군(採銀軍) 102명은 매달 세은(稅銀)<sup>609)</sup> 1전씩이며, 군인(軍人)의 수에 따라 바 친다.
- ◎ 인주(印朱)、널빤지[挾板]는 봄、가을로 각 읍에 분정하고, 무가본(無價本)로 바쳐서 사용한다.
- ◎ 놋쇠[豆錫]、함석(含錫)、유철(鍮鐵)、납철(鑞鐵)、목단(丹木). 이상의 물품은 전령(傳令)、훈도(訓導)、별차(別差)<sup>610)</sup>가 사서 쓰고, 값은 동래(東萊)에 있는 사군목(射軍木)<sup>611)</sup>
- 605) 마조장(磨造匠) : 선공감(繕工監)에 딸린 연자매를 만드는 공인. 경공장의 하나임.
- 606) 후전(後錢) :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 607) 광선(廣船) : 강이나 연안에서 부리되, 바다에서는 부릴 수 없는 배를 가리킨다.
- 608) 계본지(啓本紙) : 임금께 상주(上奏)하는 글을 쓰는 종이.
- 609) 세은(稅銀): 세금으로 바치는 은.
- 610) 별차(別差) : 부산(釜山) 동래(東萊)에 설치한 왜관(倭館)에서 정기적인 개시(開市)가 열릴 때 내려보내는 통역(通譯).
- 611) 사군목(射軍木) : 사군(射軍)은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를 가리킴. 사군목은 사수에게 지급하는 무명이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 구실의 하나로 부과 징수하였다.

으로 회감(會減)한다.

- ◎ 유둔지(油屯紙)、소첩지(梳貼紙)、입모지(笠帽紙)、정초지(正草紙)、유삼지(油衫紙)、대장지(大壯紙)、명지(名紙)、대회자지(大回刺紙)、소회자지(小回刺紙)、청죽지(竹靑紙)、설화지(雪花紙)、농상자피지(籠箱子皮紙)、세승(細繩). 이상의 물품은 봄、가을에 사용하는 바를 헤아려 종이를 만드는 절[紙寺]에 분정하여 바치는 것을 받아쓴다. 값은 각 그읍의 별회곡에서 등록에 따라 마련해 지급한다. 후박(厚薄)、근과 냥[斤兩]、넓이와 길이[長廣]는 신해년에 정식(定式)을 마련하였으니, 정식(定式)에 따라 거두어 사용한다.
- ◎ 송연(松烟)은 각 절에 분정하되, 무가(無價)로 바친다.
- ◎ 황구피(黃狗皮)는 각 읍의 주인(主人)<sup>612)</sup>으로 하여금 값을 주고 사서 쓰게 한다. 값은 1영(令)당 벼[租] 3말씩 지급한다.
- ◎ 백반(白磻)613)은 산지인 경주부(慶州府)에 발관(發關)614)하여 취용(取用)한다.
- ◎ 옹기(瓮器)로 안부(案付)<sup>615)</sup>된 장인(匠人)의 신역(身役) 조(條)는 등패(等牌)<sup>616)</sup>가 수 용(收用)하여 각 소(所)에서 진배(進排)<sup>617)</sup>하게 한다.
- ◎ 영(營) 중의 각 처(處)를 보수하는 목물(木物)은 안부된 잡역장(雜役匠)들은 남북 산점(山店)에 거처하고, 주인들이 수봉(收捧)하는 일을 담당한다.
- ◎ 입염영(入染營)의 비(婢) 1명을 염모(染母)로 정하고, 영둔전(營屯田)<sup>618)</sup> 32마지기[斗落 只]와 기부(記付)<sup>619)</sup>한 소 1마리를 각 소(所)로 내 주어 입염역(入染役)을 전담하게 한다.
- ◎ 간지(簡紙)<sup>620)</sup>를 만드는 도침군(擣砧軍)<sup>621)</sup> 50명을 정급(定給)하고 도침(擣砧)을 마친 뒤에는 책장(冊匠)으로 하여금 종이를 만들어 바치게 한다.
- ◎ 지물(紙物)에 바르는 들기름[法油]은, 본고(本庫)에서 사용하는 들깨를 분급(分給)하면, 영(營)에 소속된 각 절에서 기름을 짜서 사용한다.

<sup>612)</sup> 주인(主人):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물건을 도맡아 주선하여 바치던 사람. 민인 중에서 선정하여 각 관아에서는 물건 값을 미리 주어 이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서 바치게 하였다.

<sup>613)</sup> 백반(白磻) : 명반(明礬)을 구어서 만든 덩어리. 매염료(媒染料)로 사용하는 것.

<sup>614)</sup> 발관(發關) : 상관이 하관에게 관문(關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관문(關文)은 상급 관청에서 동급 이하의 관청에 내리는 공문서 혹은 허가서를 가리킨다.

<sup>615)</sup> 안부(案付) : 대장(臺帳)에 기록함.

<sup>616)</sup> 등패(等牌) : 역사(役事)를 할 때에 일꾼들 중에서 영솔(領率)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옹기를 담당하는 장인들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sup>617)</sup> 진배(進排) : 물건을 나라에 바침. 물품을 진상함.

<sup>618)</sup> 영둔전(營屯田) : 조선조 때 각 영문(營門)에 급전(給田)으로 사급(賜給)한 둔전(屯田). 영둔토 (營屯土).

<sup>619)</sup> 기부(記付) : 관리가 교체되어 올 때 재임 중 쓰다가 남은 것들을 중기(重記, 공금을 기록한 장부)에 기록해 두고 오는 데, 이것을 기부(記付)라고 한다.

<sup>620)</sup> 간지(簡紙): 두껍고 품질이 좋은 편지지의 한 종류로 흔히 장지(壯紙)로 만든다.

<sup>621)</sup> 도침군(搗砧軍) : 조지소(造紙所)에서 닥나무 원료를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던 군정(軍丁)을 가리킨다.

### 일응하(一應下)

- ◎ 도선생(道先生) 부의(賻儀)에는 무명[木] 1동, 유둔(油屯) 1번(番), 도련지(搗鍊紙) 1속, 장지(壯紙) 5속, 백지(白紙) 10속, 황밀(黃蜜) 6근, 전칠(全柒) 2되를 본고에서 봉출(封出)한다. 황밀(黃蜜)과 전칠(全柒)은 각 읍에 분정(分定)하며, 값은 해당 읍에서 별회곡(別會穀)으로 회감(會減)622)한다.
- ◎ 도사선생(都事先生) 부의(賻儀)에는 무명[木] 8필, 육유둔(六油屯) 1번(番), 장지(壯紙) 2속, 백지(白紙) 3속, 황밀(黃蜜) 2근, 전칠(全柒) 2되를 봉출하되 황밀(黃蜜)과 전칠(全柒)의 값은 위와 같다.
- ◎ 영리(營吏) 자신의 상(喪)과 부모상(父母喪)에는 의궤목(儀軌木) 10필, 유지(油紙) 1속, 백지(白紙) 4속을 지급한다.
- ◎ 영인리(營人吏)의 부모상에는 무명[木] 1필과 백지(白紙) 3속을 지급하고, 자신의 상 (喪)에는 무명[木] 3필과 백지(白紙) 3속을 지급한다.
- ◎ 영사령(營使令) 및 노비의 부모상과 자신의 상에는 무명] 1필과 백지(白紙) 2속을 지급한다.
- ◎ 구군뢰(舊軍牢)의 부모상과 자신의 상에는 무명 1필을 지급한다.
- ◎ 신도사(新都事)의 참알채(叁謁債)<sup>623)</sup>는 무명 1필을, 서경채(署經債)<sup>624)</sup>는 무명 2필을 지급한다.
- ◎ 본도(本道)에서 피추(被推)625)할 때 영(營)의 색리(色吏)에게 속목(贖木)626)을 지급한다.

#### 삭하(朔下)627)

◎ 군관(軍官)、심약(審藥)、검률(檢律)、남창별장(南倉別將)에게 각각 장지(壯紙) 1속,

<sup>622)</sup>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sup>623)</sup> 참알채(叁謁債) : 참알(叁謁)할 때에 드는 비용. 참알(叁謁)은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포 자평(褒貶)을 할 때에, 각 관청의 관원이 그 책임자를 찾아뵙는 일을 가리킨다.

<sup>624)</sup> 서경채(署經債): 서경(署經)하는 데 드는 비용. 서경은 심사를 거쳐 동의한다는 뜻. 당하관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내외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 그 가부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 사간원은 하자 유무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음이 판명된 뒤에 서명하여 동의를 표하고 이조는 이로써 사령장(辭令狀)을 발부하였다.

<sup>625)</sup> 피추(被推) : 죄인을 심문함.

<sup>626)</sup> 속목(贖木) : 속죄(贖罪) 또는 속신(贖身)하기 위해 바치는 무명.

<sup>627)</sup> 삭하(朔下) : 다달이 내려 주는 것. 하급 벼슬아치나 밑에 부리는 사람에게 주는 급료(給料)의 한 가지로, 돈이나 무명으로 주었다.

백지(白紙) 1속, 황필(黃筆) 1자루, 백필(白筆) 1자루, 진묵(眞墨) 2정(丁)씩 지급한다.

- ◎ 영하입사장교(營下入仕將校) 10、중영병방군관(中營兵房軍官) 1、장무군관(掌務軍官) 1、군물도훈도(軍物都訓導) 1、군뢰도훈도(軍牢都訓導) 1、마군도훈도(馬軍都訓導) 1、보군도훈도(歩軍都訓導) 1인<sup>628)</sup>에게 각각 장지(壯紙) 1속, 백필(白筆) 1자루, 송묵(松墨) 1정(丁)씩 지급한다.
- ◎ 영고(營庫) 각 색리(色吏)들에게 백필(白筆) 1자루、송묵(松墨) 1정(丁)을 지급한다. 봄에는 의자목(衣資木) 2필과 입모지(笠帽紙) 1장을, 봄、가을에는 의자목(衣資木) 2필과 입모지(笠帽紙) 1장씩 지급한다.
- ◎ 제도색(祭都色) 1인에게 봄에는 무명 2필을, 가을에는 무명 2필씩 지급한다.
  - ▷ 노비(奴婢)들에게 각 무명 1필씩 지급한다.
- ◎ 비변사 서리(書吏)는 삭포(朔布)<sup>629)</sup>는 3필, 기별채목(奇別債木) 3필, 백지(白紙) 7속, 황필(黃筆) 5자루, 진묵(眞墨) 3정(丁)씩 지급한다.
- ◎ 도사(都事)의 삭하(朔下)는 도련지(擣鍊紙) 2장, 장지(壯紙) 2속, 백지(白紙) 5속, 진 묵(眞墨) 5정(丁), 황필(黃筆) 3자루, 무심필(無心筆) 3자루, 송묵(松墨) 5정(丁), 기별채 백지(奇別債白紙) 2속을 지급한다.
- ◎ 영리마도(營吏馬徒)가 번(番)을 설 때는 무심필(無心筆) 4자루, 송묵(松墨) 2정(丁)을 지급한다. 봄、가을에는 각각 입모지(笠帽紙) 1장씩 지급한다.
- 일(一). 잡역장(雜役匠) 44명은 영중(營中) 각처(各處)의 수리(修理)를 담당(擔當)한다.
  - ▷ 사기장(沙器匠) 21명은 영중(營中)에서 사용하는 사기(沙器)를 담당한다.
- 일(一). 선자장(扇子匠) 31명, 보인(保人) 13명, 책장(冊匠) 20명, 인출장(印出匠) 10명, 보인(保人) 22명, 필장(筆匠) 16명, 대장(帶匠) 12명, 칠장(柒匠) 6명, 두석장(豆錫匠) 19 명, 사옥장(沙玉匠) 11명, 야장(治匠) 12명, 도자장(刀子匠) 16명, 환도장(環刀匠) 3명, 은장(銀匠) 7명, 포진장(鋪陳匠) 6명, 유장(鍮匠) 14명, 욕삭장(褥槊匠) 1명, 죽석장(竹席匠) 7명, 화장(靴匠) 1명, 도침군(擣砧軍) 40명, 문서직(文書直) 15명. 이상 각 읍의 장 인들은 공납(貢納)하는 물품은 없고 일이 있으면 사역시킨다.

## 군기(軍器)

#### 일년응봉(一年應捧)

◎ 유황군(硫黃軍) 1,426명은 1인당 무명 1필씩을 감관(監官)으로 하여금 본고(本庫)에 수납(收納)하게 한다.

<sup>628)</sup> 원문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양사가 없으나 문맥으로 고려하여 인으로 설정하였다.

<sup>629)</sup> 삭포(朔布) : 월급 또는 월납하는 포목.

- ◎ 연군(鉛軍) 15명은 1인당 연철(鉛鐵) 2근을 매달 감관(監官)으로 하여금 수납(收納)하게 한다. 6월과 12월은 극심한 추위[隆冬]과 무더위[盛暑]로 인해 수납을 제외시켜 준다. 일(一). 궁인(弓人) 27명, 대년(待年)630) 25명
  - ▷ 시인(矢人) 11명, 대년(待年) 11명
  - ▷ 제역포수(劑藥砲手) 5명, 야장(治匠) 5명, 나팔장(喇叭匠) 3명, 산거궁인(散居弓人) 5명, 하전(下典)<sup>631)</sup> 20명

## 군수고(軍需庫)

- ◎ 성정군(城丁軍) 2,088명은 1인당 무명 1필씩 등패(等牌)가 거두어 바친다.
- ◎ 수미군(需米軍) 267명은 1인당 쌀 5말씩 수봉(收捧)632)한다.
- ◎ 마군(馬軍) 600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條)로 쌀 2말씩 수봉(收捧)한다.
  - ▶보인(保人) 1,110명은 원보(元保)로 1인당 무명 1필씩 수봉(收捧)한다.
- ◎ 복마군(卜馬軍) 152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로 쌀 2말씩 수봉(收捧)한다.
  - ▷보인(保人) 305명은 원보(元保)로써 1인당 무명 1필씩 수봉(收捧)한다.
- ◎ 보군(步軍) 1,665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條)로 쌀 1말 5되씩 수봉(收捧)한다.
- ◎ 기수보(旗手保) 181명은 양보(良保)로써 1인당 무명 1필씩 수봉(收捧)한다.
  - ▷ 181명은 겸역(兼役)으로써 1인당 쌀 5되씩 수봉(收捧)한다.
- ◎ 작령군(作領軍) 1,000명은 1인당 무명 1필씩 수봉한다.
- ◎ 마보(馬步)의 각색(各色) 표하군(標下軍)<sup>633)</sup> 400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로 쌀 1 말 5되씩 수봉(收捧)한다.
- ◎ 가산산성(架山山城) 진마군(鎭馬軍) 167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로 쌀 1말 5되씩 수봉(收捧)한다.
  - ▷ 보군(步軍) 1,200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로 쌀 1말 5되씩 수봉(收捧)한다.
- ◎ 군보(軍保)의 각색(各色) 표하군(標下軍) 177명은 1인당 번(番)을 쉬는 조로 쌀 1말 5되씩 수봉(收捧)한다.
  - ▷이상의 쌀·무명은 영(營) 중(中)의 담당관이 봉상(捧上)하고 군수고(軍需庫)로 이송해서 입번병(入番兵) 등의 방료(放料)와 시사방(試射放)의 상격(賞格)으로 지급한다.

<sup>630)</sup> 대년(待年): 대년군(待年軍)의 준말. 군역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어 16세가 되면 복무하기로 예정된 자를 가리킨다.

<sup>631)</sup> 하전(下典): 여자 종을 대접해서 부르거나, 또는 여자 종들이 서로 높여 부르는 말. 아전(衙前)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sup>632)</sup> 수봉(收捧) : 세금을 징수함. 빌려준 돈이나 외상값을 거두어들임.

<sup>633)</sup> 표하군(標下軍) :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專屬)된 수병(手兵). 표하병(標下兵).

#### 일년응하(一年應下)

- ◎ 중군(中軍)、군관(軍官)、심약(審藥)、검률(檢律)은 1인당 매달 무명 3필을, 춘추(春秋) 양등의 예하(例下)엔 각 4필을 지급한다. 겨울 등에는 이엄채(耳掩債)<sup>634)</sup>로 무명 3 필을 지급한다.
- ◎ 대구(大丘) 영장(營將)에겐 춘하(春夏)로 무명 10필을, 추동 등에는 무명 10필을 지급한다.
- ◎ 영(營)의 각(各) 고(庫) 외감(外監) 및 파임(把任) 장교(將校)에겐 1인당 매 달 무명 1 필씩 지급한다. 춘추(春秋) 양등에는 의자목(衣資木) 2필씩 지급하며 동등(冬等)에는 이 엄채(耳掩債)로 무명 2필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는 기유년(己酉年)에 창시(創始)되었다.
- ◎ 영리(營吏)는 그 입번(入番)에 따라 1인당 춘하(春夏) 등에는 무명 2필을, 추동(秋冬) 등에는 무명 5필씩 지급한다.
- ◎ 마도(馬徒)는 그 입번(入番)에 따라 1인당 춘하(春夏) 등에는 무명 2필을, 추동(秋冬) 등에는 무명 5필씩 지급한다.
- ◎ 군기색(軍器色) 2인은 1인당 춘하 등에는 무명 2필을, 추동 등에는 무명 2필씩 지급하다.
- 일(一). 중영호방(中營戶房) 1인、성정색(城丁色) 1인、마군색(馬軍色) 2인、보군색(步軍色) 2인에겐 춘추(春秋) 양등에 의자목(衣資木)으로 각 1필씩 지급한다.
- 일(一). 재가청(在家廳)에는 무명 3필, 쌀 12말, 대구(大口) 5마리, 누룩[曲子] 1동을 지급한다.
- ◎ 장관청(將官廳)에는 무명 5필, 쌀 13말, 대구 10마리, 누룩 1원을 지급한다.
- ◎ 대솔청(帶率廳)에는 무명 1필, 쌀 6말, 대구 4마리, 누룩 6원을 지급한다.
- ◎ 성정청(城丁廳)에는 무명 2필, 쌀 10말, 대구 5마리, 누룩 1동을 지급한다.
- ◎ 기고청(旗鼓廳)에는 무명 3필, 쌀 10말, 대구 7마리, 누룩 1동을 지급한다.
  - ▷ 이상 5청에는 춘추(春秋) 양등의 전최(殿最)<sup>635)</sup> 시(時)에 예하(例下)하는데, 쌀과 무명은 본소(本所)에서 지급하며, 누룩[曲子]과 대구는 영고(營庫)에서 지급한다.

### 매달의 급료 지급식[各朔料下式]

◎ 중군(中軍)은 요미(料米) 9말, 대구(大口) 30마리, 가미(價米) 2섬 5말이다.

<sup>634)</sup> 이엄채(耳掩債) : 이엄(耳掩)은 관복을 입을 때 사모 밑에 쓰는 모피로 만든 방한구, 귀마개를 말한다. 이엄채는 이 방한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나 무명을 가리킨다.

<sup>635)</sup> 전최(殿最) : 관찰사가 예하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성적을 고사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시행하였음.

- ◎ 군기감관(軍器監官) 1、지고관(知鼓官) 1、장무초관(掌務哨官) 1、중군병방(中軍兵房) 1、장무군관(掌務軍官) 1、군기색(軍器色) 1인은 1인당 매달 요미(料米) 6말, 점심미(點 心米) 2말 1되씩이다.
- ◎ 군기고자(軍器庫子) 1、군수고자(軍需庫子) 1、화약고자(火藥庫子) 1<sup>636)</sup> 각 1명、궁인(弓人) 1、시인(矢人) 1、군물도훈도(軍物都訓導) 1、아병도훈도(牙兵都訓導) 1、군뢰도훈도(軍牢都訓導) 1、위두사령(爲頭使令) 1、신구군뢰두목(新舊軍牢頭目) 각 1명、중영노자(中營奴子) 2명, 이상은 1인당 매달 요미(料米) 6말씩이다.
- ◎ 기수군(旗手軍) 6명에겐 1인당 매일(每日) 요미(料米) 2되씩이다.
- ◎ 중영호방(中營戶房) 1、군정색(軍丁色) 1、배리(陪吏) 1인에겐 1인당 매 달 요미(料米) 4말씩 지급한다. 하전(下典)은 20명이다.

### 고마청(雇馬廳)637)

② 본청이 신설된 초기에는 수납(收納)하는 물력(物力)이 없어 관청의 면모를 갖추기 어려웠다. 그래서 대략 본전(本錢)을 주고, 감색(監色)638)을 염장(鹽場)으로 보내어 소금을 사오게 하고, 그 이자를 취하여 마부와 말을 고용하였다. 을해년(乙亥年)에 순무사(巡撫使)가 장계를 올려 (이와 같은 제도를) 혁파하자, 감색(監色)들이 전례(前例)처럼 소금으로 바꾸는 일은 심히 온당치 못하다고 인고(引告)하니, 둔조(屯租)를 설치한 후에는 영영 폐지하였다.

일(一). 영문(營門) 내에서 영송(迎送)을 행하는 마부와 말은 일찍부터 민부(民夫)에게 당번을 맡겼는데<sup>639)</sup>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sup>640)</sup> 청(廳)을 설치해 관리하는 것은 민부에게 당번을 맡기는 것보다 더 폐단이 많았다. 계사년(癸巳年) 이사또 재임 기간에<sup>641)</sup> 둔전답(屯田畓)<sup>642)</sup>을 설치하고 거둔 세금으로 말을 세냈다. 기해년(己亥年) 오사 또 재임 기간에 둔전(屯田)을 더 사들여 장계(狀啓)를 올려 면세해 주고, 한결같이 역마

<sup>636) 1</sup>은 연문으로 생각된다.

<sup>637)</sup> 고마청(雇馬廳) : 민간의 말을 삯을 주고 징발하는 일을 맡아 보는 관아를 말한다.

<sup>638)</sup> 감색(監色)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감관은 궁가(宮家)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하여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이다. 감관에는 배에 타는 영선 감관(領船監官)과 곡식을 바치는 봉상 감관(捧上監官) 등이 있었다. 색리는 담당 아전이라는 뜻으로 감영(監營) 혹은 군아(郡衙) 등의 아전을 일컫는다.

<sup>639)</sup> 책립(責立): 부역을 세운다는 의미이다.

<sup>640)</sup> 시여(是如) : 이두로 '이다.'의 의미이다. 서술형 종결 어미.

<sup>641)</sup> 등내(等內) : 관원의 재임 기간.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sup>642)</sup> 둔전답(屯田畓): 둔전(屯田)과 둔답(屯畓)의 준말.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이기 위해 경작하는 밭을 둔전이라 하고, 논을 둔답이라 한다.

위(驛馬位)<sup>643)</sup>의 예(例)에 의거하여 말을 소유한 자 25명을 모집하여 전답(田畓)을 각각 30마지기를 떼어 주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말을 당번(當番)에 세우되, 돌아가며 사역시키고 빠진 수가 있으면 채워 넣었다. 간혹 성실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의 전답을 착실한 사람에게 추급(推給)하였다.

일(一). 둔마(屯馬)는 정간(井間)644)을 만들어 1년 내에 절선(節扇)과 세찬(歲饌)을 진상(進上) 두 차례에 돌아가며 사역(使役)한다. 이미 두 차례 진상(進上)을 다 했으면, 비록 긴급(緊急)한 일이 있어도 일체 말을 당번으로 세우지 않고, 다른 고마(雇馬)645)의 예(例)를 따라 짐삯[駄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일(一). 신(新)、구임관(舊任官)이 교체할 때는 25필로 분송(分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임관 행차를 따르는 말은 둔마(屯馬)로 책임을 맡기고, 신임관 행차에 따르는 말은 (민간에서) 다른 장실(壯實)한 말을 선발하여 본청에서 값을 치러주고 부역을 시킨다. 두행차(行次)가 만약 겹치지 않거나 신임관의 행차가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또한 둔마(屯馬)로 정송(定送)하고 민간의 다른 말은 부역을 시키지 않는다.

일(一). 둔전답(屯田畓)을 농사지어 먹고 사는 자들은 모두 힘이 있는 이들인데, 간혹 무뢰한 사람에게 부역을 대신 시키는 자도 있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으며 몰래 파는 자도 있으니, 신(新)、구관(舊官)이 교체할 때 한결같이 둔안(屯案)의 전답에 따라 더욱 검찰(檢察)하고, 부역시키는 말의 이름을 고준(考準)하도록 한다. 만약 농간(弄奸)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감색(監色)을 정죄(定罪)하고, 주고받은 이들을 모두 엄한 형벌로 징려(徵碼)한다. 일(一). 본청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은 일체 적조(糴糶)를 허락하지 말고, 시세에 따라사들이는 것에 근거하여 고마(雇馬) 값을 치르는 데 사용한다.

- ◎ 격군(格軍) 195명. 신해년(辛亥年)에 정한 액수.
- ◎ 모군(募軍) 46명
- ◎ 조역군(助役軍) 15명
- ◎ 하전(下典) 8명

#### 일년응봉(一年應捧)

◎ 격군(格軍)은 가포(價布) 2동 30필, 모조(募租) 14섬을 칠원(柒原) 세소(稅所)에 봉류 (捧留)<sup>646)</sup>한다.

<sup>643)</sup> 역마위(驛馬位) : 역위전(驛位田)을 말하는 듯하다. 역위전은 조선조 때, 추수한 곡식을 역마 (驛馬)의 사육에 쓰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마위전(馬位田).

<sup>644)</sup> 정간(井間): 가로 세로 여러 개의 평행선을 그어 정(井)자 모양이 거듭된 간살 혹은 그런 간살을 그어 만든 책자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말의 당번을 정간에 차례로 기록해 놓은 순서 즉정간차제(井間次第)에 따라 돌아가면서 분담시켰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sup>645)</sup> 고마(雇馬) : 지방 관아에서 역마(驛馬) 외에 민간으로부터 고용하여 쓰는 말을 가리킨다. 이에 관련된 법을 고마법(雇馬法), 이를 관리하는 관청을 고마청(雇馬廳)이라 했다.

- ◎ 마철(馬鐵)<sup>647)</sup>은 신해년(辛亥年) 조사또가 재임할 때 본전(本錢) 40냥을 장인(匠人)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이자 조(條)로 매달 8부(部)씩 1년 통계(通計) 96부(部)를 봉용(捧用)하였다. 기한 9년을 다 채우면 본전(本錢)을 탕감(蕩減)하고, 또 40냥을 공급해 정식(定式)에 따라 봉용한다.
- ◎ 잉박선(仍朴船)<sup>648)</sup> 5척은 하납미(下納米)<sup>649)</sup> 싣기를 허락한 뒤 선가미(船價米)는 선적한 수에 따라 봉용한다.
- ◎ 사명일(四名日)<sup>650)</sup>의 제물(祭物)과 짐삯[駄價]은 한결같이 산소(山所)의 원근(遠近)과 참수(站數)에 따라 마련하되, 대구부(大丘府)에 관문(關文)을 보내 저치미(儲置米)에서 취용(取用)하게 한다.

#### 일년응하(一年應下)

- ◎ 외감관(外監官) 1원、색리(色吏) 1인、고지기[庫子] 1명에게 매달 요미(料米) 6말씩 지급한다. 3월부터 7월까지는 감관(監官)의 점심(點心) 요미(料米)를 2말 1되씩 지급한다.
- ◎ 도하전(都下典) 1명、마부(馬夫) 1명에게 매달 요미(料米)를 각각 3말씩 지급한다.
- ◎ 색리(色吏) 2인에게 의자목(衣資木)을 봄과 여름에는 1필, 가을과 겨울에는 2필을 지급하며, 양등(兩等)에는 소금을 대신해 쌀을 12말씩 지급한다.
- ◎ 신영원정종마(新迎元定從馬) 24장(匠)에겐 1장(匠)당 짐삯[駄價] 23냥씩 지급한다.
- ◎ 강부군(杠扶軍) 11명에게 1인당 가전(價錢) 11냥 5전씩 지급한다.
- ◎ 구관(舊官)을 따르는 말과 절선(節扇)、세찬(歲饌)의 제물(祭物)은 둔마(屯馬)로써 실어 보내며 짐삯[駄價] 5냥씩 지급한다.
- ◎ 유양마(留養馬)는 상경(上京)할 때 1장(匠)당 노비전(路費錢) 3냥과 마철(馬鐵) 2부 (部)씩 지급한다.

## 진휼청(賑恤廳)

◎ 병신년(丙申年) 홍사또 재임 기간에 설치했다. 진휼청(賑恤廳)을 설치 한 뒤 잉여(剩餘) 곡물과 은전(銀錢)、베를 후임 사또에게 떼어 주었다. 이와 같이 점차 별도로 비축하고 거두어 들여 매년 염산(斂散)함으로써 흉년에 감영 소속을 진휼하는 밑바탕으로

<sup>646)</sup> 봉류(捧留) : 곡물이나 세금을 거두어 남겨 둠.

<sup>647)</sup> 마철(馬鐵): 말편자.

<sup>648)</sup> 잉박선(仍朴船) : 너비가 넓은 배. 주로 도강(渡江)할 때 사람과 말을 함께 태우던 배이다.

<sup>649)</sup> 하납미(下納米):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해 해마다 주는 쌀. 동래(東萊)·기장(機張)·울산(蔚山) 세 고을 대동(大同)을 정부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부산에 있는 왜관에 주었음. 650) 사명일(四名日): 한 해의 네 명일(名日) 즉, 원조(元朝)·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

삼았다.

일(一). 둔답(屯畓) 14섬 5말 8 마지기[刀落只]는 매년 조세(租稅) 133섬씩 수봉(收捧)했 다. 병오년(丙午年) 유(兪)사또가 재임하는 동안 돈 10,175냥을 지급하고 둔답(屯畓) 109섬 11마지기[斗落只]를 사들여 '치계둔답(雉鷄屯畓)'이라 명명하였다. 매년 수세(收 稅)로 벼[租] 814섬을 거두어 본 영부(營府)에서 날마다 쓰는 꿩、닭[雉鷄]을 돈을 주고 사서 쓰고, 본부(本府)의 민부(民夫)들이 바치는 꿩、닭은 길이 없앴다.

일(一). 감관(監官) · 색리(色吏) · 도사후(都伺候)는 매달 요미(料米)를 각각 6말씩 지급한다.

- ◎ 색리(色吏) 2인에게 봄ㆍ가을의 예하(例下)651)로, 소금을 대신할 쌀 12말씩 지급한다.
- ◎ 이 진휼청(賑恤廳)이 설치되면서 영하(營下)의 풍속이 크게 변해 주선(周旋)하거나 흥 정하여 판매할 때에 부민(府民)들이 받는 폐해와 임장(任掌)들의 농간(弄奸)은 이르지 않 은 데가 없으므로 혁파시키고 존치(存置)시켜는 안 되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한) 큰 살육을 겪고 진휼(賑恤)의 정치가 겨우 끝나자. 임기가 이미 끝나버려 분별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 비록 '진청(賑廳)'이라고 하지만 도내(道內)에 진청(賑廳)을 설치하는 것은 한 푼[分]의 힘도 얻을 도리가 없었다. 혹 참혹한 흉년이 아니더라도 영속(營屬)에서 진휼 로 구제하는 것은 해마다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혹 명예(名譽)를 구하는 데로 돌아가거 나, 심지어 상(賞)을 구하거나 자품(資品)을 올리는 단계에 이름이 말할 수도 없다. 전포 (錢布)를 출납하여 곡식을 바꾸거나 흥정、판매하는 사이마다 별도로 유의(留意)를 더한다.

◎ 하전(下典) 10명.

# 보선청(補繕廳)

◎ 경자년(庚子年) 조령(朝令)으로 별관청(別官廳)을 혁파(革罷)한 뒤, 본청(本廳)을 설립 해 영문(營門)의 지공(支供)652)을 담당했는데, 소용(所用)되는 물력(物力)을 구획(區劃)하 여 본청에 소속시켰다. 모든 잡물의 절가(折價)653)는 절목으로 만들었지만, 다섯 세소 (稅所)의 색리(色吏)들이 교체된 뒤 본청(本廳)의 색리(色吏)들이 그대로 담당하게 되었 다[仍差]. 또 소속된 각 읍의 주인(主人)들이 수시(隨時)로 사서 바쳐서 책응(責應)에 대 비하니, 당초(當初) 절가(折價)의 절목(節目)은 사례(事例)를 배삭(排朔)654)하였으나, 두 책(冊)을 도중에 잃어버렸다가 아무개 사또 재임 기간 내에 추득(推得)하여 본청(本廳)에 남겨 두었다.

<sup>651)</sup> 예하(例下) :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sup>652)</sup> 지공(支供) : 음식을 이바지함.

<sup>653)</sup> 절가(折價):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定)함. 결가(決價). 가절(價折).

<sup>654)</sup> 배삭(排朔) : 한 달에 얼마씩 정하여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일년응봉(一年應捧)

- ◎ 원수미(元需米) 300섬
- ◎ 별회미(別會米) 360섬
- ◎ 벼[租] 200섬 [別]
  - [] '원수미'에서 '벼[租]'까지. 돈으로 환산하여 취용(取用)한다.
- ◎ 화(花)、풍(豊) 두 면(面)의 화전(火田) 피잡곡(皮雜穀) 43섬
- ◎ 둔전답(屯田畓) 피잡곡(皮雜穀) 7섬 2말 1되
- ◎ 치계(雉鷄) 값 169냥 5전
- ◎ 시탄(柴炭) 값 돈 892냥 4전 2푼
- ◎ 청호초빙정(靑蒿草氷丁) 값 벼[租] 208섬
- ◎ 운문사(雲門寺) 둔전답(屯田畓) 결세(結稅) 75냥 2전
  - ▷ 화전세(火田稅) 돈 372냥 8푼 [四]
  - [团] '화(花)·풍(豊)'에서 '화전세'까지. 이는 그 해의 풍흉(豊凶)과 재실(災實)에 따르므로, 매년 수 세(收稅)하는 각 조목이 같지 않다.
- ◎ 본청(本廳) 무명 22동의 급채(給債) 이자는 돈 2냥이다.
- ◎ 광선(廣船) 2척에 하납미(下納米)를 실은 뒤에 선가미(船價米)는 그 실은 수(數)를 계산하여 취용한다.
- ◎ 일공선(日供船)655) 10척 세전(稅錢)은 200냥
- ◎ 창원(昌原) 주물연진(主勿淵津)의 휘리세(揮罹稅)656)는 돈 24냥

일(一). 지응(支應)657)은 특별한658) 공용(公用)659)에는 삼상(三床)에 의거해 진배(進排)한다. 만약 배부나 부인이 임기가 아니라면 그 대신 장자에게만 일상을 진배한다. 잡물을 12달로 분배하여 마련하였어도660) 한 달 내에 만약 절용(節用)하고, 혹 남으면 기한 내에 임의대로 구처(區處)661)한다.

#### 일년응하(一年應下)

◎ 쌀 189섬 1말 8되

655) 일공선(日供船) : 매일 물이나 음식을 공급하는 배를 말한다.

656) 휘리(揮罹) : 후릿그물을 둘러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이다.

657) 지응(支應) : 벼슬아치가 공무로 어느 곳에 갔을 때 필요한 물품을 그 지방 관아에서 대 주 는 일.

658) 자별(自別): 특별함. 보통과 다름.

659) 공수(公須) : 공용(公用).

660) 위유치(爲有置): 이두로 '하였어도'의 뜻이다.

661) 구처(區處) : 변통함. 혹은, 사물을 분변하여 처리함.

- ◎ 벼[租] 267섬 3말 7되 5홉
- ◎ 돈 2,356냥 1전 3푼 [四]
  - [团] '쌀'에서 '돈'까지. 12월 초에 수미(需米)와 잡물가(雜物價)로 응용(應用)하되, 한결같이 정간(井間)662)에 따라 달을 나눌 것. 한 달 내에 쓰다 남으면 기한 내에 임의대로 구처(區處)한다.

#### 매년 응판(應辦)663) 수

찹쌀[貼米] 20섬, 참깨[眞荏] 20섬, 청밀(淸蜜) 4섬, 황률(黃栗) 6섬, 피백자(皮栢子) 6섬, 대추 3섬 14말, 곶감 266첩, 홍시(紅柿) 32첩, 생리(生梨) 9첩, 생률(生栗) 3섬 1말, 석류(石榴) 9첩, 말린 대구[乾大口] 2,190마리, 말린 광어[乾廣魚] 470마리, 백문어(白文魚) 18속, 명태 240속, 신삼어(申三魚) 930속, 전복(全鰒) 120첩, 열복(熱鰒) 78첩, 해삼(海參) 4섬 9말, 홍합(紅蛤) 3섬, 생닭[生鷄] 3,420마리, 생꿩[生雉] 716마리, 계란(鷄卵) 12,000개, 말린 민어乾民魚] 120마리, 말린 조기[乾石魚] 180속, 생간(生芋) 1섬 6되, 메주 콩[爋太] 22섬, 보리[眞麥] 22섬, 녹말(菉末) 1섬, 소금 20섬, 팥[小豆] 12섬, 녹두(菉豆) 26말. 만약 윤달이 있으면 그 해에는 한 달 조를 더해서 마련한다.

일(一). 차사(差使) 1명은 사령(使令) 중에서 정출(定出)하고 사환(使喚)의 급료(給料)를 준다.

◎ 하전(下典) 14명은 강해(江解) 및 풀[草]、과일[實果]과 다른 도에서 생산되는 잡물 (雜物)의 값을 담당하여 무납(貿納)한다.

# 약방(藥房)

- ◎ 영중(營中)에서 쓰이는 당재(唐材)<sup>664)</sup>는 약계(藥契)를 설치하여 본전(本錢) 1,848냥 8 전을 지급하고, 2/10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당재(唐材)를 사서 진배(進排)<sup>665)</sup>한다. 매달 회계(會計)하되, 삭(朔) 외(外)에 더 쓰이는 것은 값을 즉시 지급하고, 남은 당재(唐材)는 공고(工庫)로 즉시 이납(移納)한다.
- ◎ 본도(本道)에서 생산되는 향재(鄕材)666)는 생산 되는 각 읍에 항정(恒定)하여 춘추(春

<sup>662)</sup> 정간(井間) : 줄이나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가로 세로 줄을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침. 또는 그렇게 줄을 쳐 놓은 것.

<sup>663)</sup> 응판(應辦) : 외국 사신이 쓰는 물건이나 돈을 내어 줌. 또는 그런 행위.

<sup>664)</sup> 당재(唐材) : 중국에서 나는 약재.

<sup>665)</sup> 진배(進排) : 물건을 나라에 바치는 일. =진상(進上).

<sup>666)</sup> 향재(鄕材) :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 중국에서 나는 약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 재를 이르는 말. 향약(鄕藥). 향약재(鄕藥材).

- 秋) 양등(兩等)에 봉용(捧用)하며, 항정(恒定)된 것 이외의 향재(鄕材)는 본부(本府)의 의생(醫生)과 도약한(都藥干)<sup>667)</sup>들이 진배(進排)한다.
- ◎ 당재(唐材)의 가절(價折)<sup>668)</sup>은 우수한 것을 따라 마련하여 등록으로 만든 뒤 이것에 의거해 회감(會減)한다. 비록 당재(唐材)가 아니고 본도(本道)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모두 절가(折價)로 지급한다.
- ◎ 하전(下典) 13명
- ◎ 약계하전(藥契下典) 6명

## 영선(營繕)

- ◎ 소목(燒木)<sup>669)</sup>은 춘추(春秋) 양등(兩等)에 7,116단을 본부(本府)의 민부들이 마련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고한 뒤, 본소(本所)에서 봉상(捧上)한 것은 1단당 5묶음[束]으로 나누어 일용(日用)으로 지급한다.
- ◎ 숯[炭]은 춘추(春秋) 양등(兩等)에 144섬을 본부(本府)에서 마련하여 책으로 만들어 보고한 뒤, 본소(本所)에 봉상(捧上)하면 일용(日用)으로 지급한다.
- ◎ 탄군(炭軍) 274명은 1명당 매년 신역(身役) 조(條)로 숯 2섬씩 등패(等牌)가 수납하였으되, 신해년(辛亥年)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명당 무명 1필씩 바치면, 본고(本庫)에서 숯을 사서 썼다.
- ◎ 하전(下典) 15명.

# 남창(南倉)

일(一). 절제사(節制使)는 군량미、기계、성(城)의 수축(修築) 등의 일을 주관(主管)한다. 외성(外城)은 중군(中軍)이 오로지 관리(管理)하는데, 봄、가을 조련(操鍊) 때에 무너지거나 보수할 것을 따라서 주장(主將)에게 품의(稟議)하여 거행(擧行)한다.

일(一). 군병(軍兵) 중에 도망갔거나 늙거나 죽은 자를 아병(牙兵)670)으로 대신하면, 중군(中軍)들이 담당하던 진속(鎭屬) 4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그전과 같이 검찰(檢察)한다. 산성(山城)의 군병(軍兵)이 이미 영문(營門)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병(牙兵)、산성군

<sup>667)</sup> 약한(藥干) : 약한(藥汗). 약한(藥漢). 약초(藥草)를 재배하거나 캐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sup>668)</sup> 가절(價折)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함. 결가(決價). 절가(折價).

<sup>669)</sup> 소목(燒木): 대궐에서 땔감으로 쓰는 잘게 쪼갠 나무.

<sup>670)</sup> 아병(牙兵): 조선시대 군졸(軍卒)의 하나로 대장(大將)에게 직속된 군졸을 말한다.

(山城軍)、절제사((節制使)를 검찰(檢察)하는 군(軍)을 막론하고 응당 중군(中軍)이 주장 (主將)이 된다. 일이 군무(軍務)에 관계되어 있으면, 절제사(節制使)는 중군(中軍)에게 논보(論報)하고, 중군(中軍)은 또한 주장(主將)에게 품의(稟議)하여 거행(擧行)한다.

일(一). 모든 군량미[軍餉]은 3년에 한 차례 개색(改色)<sup>671)</sup>하는 본의(本意)는 금년에 일 분(一分)을 공급하고, 명년에 또 일분(一分)을 공급하며, 그 다음해에 또 일분(一分)을 공급하여 3년 내에 돌아가며 개색(改色)한다. 그런데 본성(本城)의 창곡(倉穀)의 개색(改色)은 3년 내에 한 번도 분급(分給)하지 않다가, 3년 기한에 이르면 수천 섬의 곡식이 한꺼번에 분급하게 되어 변란과 근심에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부터는 각 곡식(穀食) 삼분(三分) 내에 일분(一分)은 금년에 출급(出給)하고, 일분(一分)은 다음 해에 출급 (出給)하며, 일분(一分)은 또 그 다음해에 출급해 1년마다 처음으로 되돌아옴을 정식(定式)으로 삼는다.

일(一). 환상(還上)672)을 적조(糴糶)673)할 때 비록 영(營)의 군관(軍官)들을 정해 보내지만 군관(軍官)들은 일시(一時)의 청사(聽使)674)에 불과하므로 항상 머물게 할 수는 없다. 노비(奴婢)와 모군(募軍)의 검찰(檢察)은 그 형세(形勢)가 참으로 어려우므로, 업무를 잘알고 신중한 자를 감관(監官)으로 택정(擇定)하고, 남(南)、북(北) 창고(倉庫)를 아울러 감찰하게 한다. 삭포(朔布)와 요미(料米)는 한결같이 군관(軍官)의 예(例)를 따라 매달 사군목(射軍木) 2필, 양미(粮米)와 반찬값[饌價]을 아울러 쌀 10말을 선가미(舡價米)로 지급한 뒤, 첩보(牒報)하여 회감(會減)하고 오로지 검찰을 전념하게 한다.

일(一). 남창(南倉)이 세워진 뒤에는 마땅히 색리(色吏),고지기[庫子]를 수직(守直)으로 삼는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예(例)를 따라 본부(本府)의 이졸(吏卒)들로 정체(定體)하고,【이하 원문의 순서가 바뀜. 원본 4장 뒤(不得一刻~~~~)에 있음. 원문 입력본은 이를 반영함. 참조.】

만약 잠시라도 떼어 낼 수 없으면, 응당 급료(給料)를 집행하여 모미(耗米)를 각각 6말씩 지급한다. 적조(乘粜)할 때 각 읍의 감색(監色)들이 입회(入會)하여 거행하되, 서울에서 파견된 믿을 만한 군관을 별도로 택하여 검찰(檢察)하도록 한다. 분급(分給)과 봉상(捧上) 시(時)에 그 영속(營屬)을 데리고 여러 날을 이어 머무르면, 많은 폐단이 있어 금억(禁抑)하기 어려울 듯하니, 비록 도방자(都房子)라도 데리고 가지 말고, 창저(倉底)의

<sup>671)</sup> 개색(改色): 원래는 세곡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 그 수침미를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세곡(稅穀)을 바꾸는 것을 지칭하는 듯하다.

<sup>672)</sup> 환상(還上)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

<sup>673)</sup> 적조(糴糶) : 원래는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일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냥 '방출과 수납'의 의미로 쓰였다.

<sup>674)</sup> 청사(聽使) : 지휘를 받아 이행함.

속공(屬公)을 비(婢)로 삼아 사환(使喚)으로 부린다.

일(一). 봉상(捧上)할 때에 간색(看色)<sup>675)</sup> 3홉 후 기에 낙인(烙印)을 찍고 간색미(看色米)로 유치(留置)하며, 그 실수(實數)를 총괄하여 영군관(營軍官)을 접대할 때 지급한다.

일(一). 침장(沈醬)은 본부(本府)에서 검찰(檢察)을 전담하되, 개색(改色)의 규정(規定)은 없을 수 없다. 3년이 지난 뒤 소금과 콩은 당초 침장(沈醬) 수(數)대로 봉납(捧納)하는 데, 한결같이 내성(內城)의 예(例)에 따라 각 읍(邑)에서 맡도록 한다.

일(一). 활과 화살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예(例)에 따라 각 절에 분치(分置)하지만, 총섭(摠攝)으로 하여금 매달 점검(點檢)하게 하고, 또한 본부(本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일(一). 높은 정상의 생활은 승려들[緇徒]에게는 더욱 어렵다. 그곳이 본래는 번성하지않았다가, 일찍이 주지(住持) 이상(以上)을 경험한 자가 다시 사찰을 세우고 승도(僧徒)를 모집해 들였다. 이후 원근(遠近)에 한결같이 응하여 승역(僧役)을 모조리 없앴으나, 새로 건축될 사찰은 각각 사대문(四大門) 안에 세우게 한다.

일(一). 수첩(守堞)에는 물과 불이 가장 긴요(繁要)하다. 땅의 형세를 살펴 혹 우물을 파거나, 혹 연못을 축조하는 등의 일은 절제사(節制使)가 담당하되, 그전에 축조했던 곳이다 무너져 모두 미나리밭[芹田]이 되었으면, 다시 수축(修築)하도록 한다. 성내(城內)、외(外) 아래 10리 이내의 산허리에 입표(立表)한 뒤, 초목(樵木)을 엄금하고, 이를 범한자는 범송(犯松)의 율(律)로 논죄한다.

일(一). 군보(軍堡)676)는 없어서는 안 되나, 높은 정상(頂上)이라 배치(排置)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으니, 이것이 가장 흠이 되는 일이다. 그 성가퀴[堞] 수(數)를따라 1 가퀴[堞]당 군병(軍兵)을 풀어 습조(習操)677)할 때나 사사롭게 조련(操鍊)678)하는날에 각각의 수첩군사는 3면에 담장을 쌓아 가건물(假建物)679)로 윗부분을 덮고, 1면은 개통해 두어 한편으로는 출입하는 곳으로 삼고, 한 편으로는 비를 대비하는 도구로 삼는다. 한 번 설치한 뒤에는 봄、가을 조련(操鍊) 시(時)에 수리하여 무너지지 않게 한다.일(一). 두 창(倉)의 곡식을 나누어 준 뒤, 공석(空石)680)은 그 입수(立數)를 헤아리고 별도로 창저(倉底)에 비치하여 수시(隨時)로 성중(城中)의 물건을 운반하는 용도로 삼는다. 간혹 군보(軍堡)의 가건물(假建物)을 덮는 도구로 공급하기도 한다.

일(一). 군병(軍兵)을 모으거나 환상(還上)을 출납[糴糶]할 때 각각 그 읍의 군민(軍民)

<sup>675)</sup> 간색(看色) :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해 본보기로 그 일부를 보는 것.

<sup>676)</sup> 군보(軍堡) : 군이 주둔하는 소규모 초소(哨所).

<sup>677)</sup> 습조(習操) : 습진(習陣)과 조련(操鍊). 습진(習陣)은 진(陣) 치는 것을 연습함이고, 조련(操鍊) 은 야조(夜操)、성조(城操)、수조(水操) 등에 대한 능력을 익히기 위한 훈련을 가리킨다.

<sup>678)</sup> 사조(私操) : 병사(兵使)가 습조(習操)할 때, 영장(營將)이 반드시 하루 전에 비공식적으로 조 련(操鍊)을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sup>679)</sup> 가가(假家) : 임시 필요에 따라 간단히 건축한 가건물(假建物).

<sup>680)</sup> 공석(空石): 아무 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가마니를 말한다.

등처(等處)에 석괴(石塊) 하나를 바치게 하여 각 타(垛)681)에 나누어 비치한다.

일(一). 일년 내에 봄에는 중군(中軍)이 열읍(列邑)의 시사(試射)와 시방(試放)을 순찰하고 살피되, 한결같이 속오군(束伍軍)의 예(例)를 따라 거행(擧行)한다. 가을에는 주장(主將)이 성 아래의 들[平野]에서 합쳐 조련하되, 예(例)에 따라 장조(場操)를 거행한 뒤에 그대로 성으로 들어와 또 성조(城操)682)를 거행한다.

일(一). 군기(軍器)와 군향(軍餉)을 순력(巡歷)할 때에 주장(主將)이 친히 감독하지 못하면, 중군(中軍)이 수시(隨時)로 순시(巡視)하게 한다.

일(一). 성첩(城堞)과 군기(軍器)의 수리하고 별도로 구비하는 등의 일은 중군(中軍)을 거치지 않고 주장(主將)에게 보고한다.

일(一). 영(營)에 소속된 뒤에는 중군(中軍)과 영군관(營軍官)의 왕래(往來)는 응당 해당역(驛)에서 체조(替操)하는 것 이외는 그 당시에 왕래해야 한다. 참주(站廚)를 파견해 공 궤하거나 접대하는 등의 일에는 십분(十分) 간략함을 따르고, 중군(中軍)의 지인(知印)683) 외에는 공궤(供饋)를 위해 별회미(別會米)로 회감(會減)하지 않도록 한다.

일(一). 본부(本府)의 군기(軍器)를 가산산성(架山山城)으로 옮긴 후에는 훼손된 것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기(城機)의 보루(堡樓) 또한 마땅히 수리해야하지만, 많은 물력이 들어 미리 준비하지<sup>684)</sup> 않을 수 없다. 칠곡(漆谷)에서 방군(防軍)으로 편입하고 남은 군(軍) 70명、사부(射夫) 34명을 산성(山城)에 전속(專屬)하되, 원정방군(元定防軍)과 함께 일체 포를 징수하며, 결원이 있으면 대신 충원한다. 절제사(節制使)가 관리하여 보수할 때의 양식은 주장(主將)이 취용(取用)한다.

일(一). 산성(山城)이 이미 영문(營門)에 소속된 뒤에는 영외(營外)가 되고, 칠곡민(漆谷民)들 또한 영하(營下)의 백성이니, 모든 폐단을 별양(別樣)으로 살펴서 민심(民心)을 위로한 뒤라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분정(分定)685)하는 일은 일체(一體) 대구(大丘)의 예(例)를 따라 공목(公木)을 복정(卜定)686)하지 말고, 또한 환작미(還作米)를 왜료(倭料)로 곧장 마련하지 않도록 하여 본부(本府)의 조그만 폐단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한다.

일(一). 송림사(松林寺)는 성저(城底) 왼쪽에 있는데도 별성(別星)687)들의 왕래가 끊임없

<sup>681)</sup> 타(垜): 성에 설치된 것으로, 날아오는 돌이나 화살을 막는 장벽(障壁).

<sup>682)</sup> 성조(城操): 습조(習操)의 하나로 성 안에서 하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sup>683)</sup> 지인(知印) : 통인(通引). 지방 관아(官衙)의 관장 앞에 딸리어 잔심부름하는 사람.

<sup>684)</sup> 길거(拮据) ; 부지런히 일하는 모양.『시경(詩經)』, 「빈풍(豳風)」<치효편(鴟鴞篇)> 참고.

<sup>685)</sup> 분정(分定) : 제도(諸道)의 감영(監營) · 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sup>686)</sup> 복정(卜定) : 공물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을 가리킨다.

<sup>687)</sup> 별성(別星) : 조정에서 파견하는 대소 관원을 통틀어 일컬음. 여기서 성(星)은 사자(使者)의 의미.

이 이어져 도로 옆에 있는 역사(驛舍)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기(城機)를 보수할 때에는 늘 부역을 거들어야 한다. 이번에 창사(倉舍)를 건립할 때 또한 많은 공로(功勞)가 있어서 특별히 두둔하고 보호하는 행위가 없을 수 없다. 영문(營門)의 복정(卜定)과 종이를 상납하는 일, 원근(遠近)으로 사역 나가는 일에는 승군(僧軍)을 일체 보내지 말 아서 남아 있는 중들을 보존(保存)의 밑바탕으로 삼도록 한다.

일(一). 남(南)、북창(北倉)을 인가가 드문 곳에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군민들을 모입 (募入)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새로 창건한 뒤에는 반드시 격려(激勵)하는 도(道)가 있어야 사람들은 대부분 기꺼이 달려온다. 공(公)、사천(私賤)은 속오(束伍)와 연역(煙役)을 없애주고, 양인(良人)들은 군보(軍保)와 작통(作統)688) 등의 일에 배정하지 않은 것을 한 결같이 성중(城中) 토졸(土卒)들처럼 한다면 창사(倉舍)를 착실하게 수호(守護)하게 될 것이다.

일(一). 고성(固城)에 소속된 공둔전(公屯畓) 4결 3부 4속, 김해(金海) 둔답(屯畓) 55복(卜)689) 1속, 울산(蔚山) 둔답(屯畓) 1결 5부 6속, 칠원(漆原) 둔전(屯田) 15부, 하동(河東) 둔답(屯畓) 50복(卜) 8속을 가산(架山)으로 옮겨 놓고, 자호(字號)와 복수(卜數)를 모두 중기(重記)690) 가운데에 기록한다. 절제사(制節使)가 이를 담당하는데, 일을 아는 감색(監色)을 별도로 정해 거두어들인 수(數)를 첩보(牒報)하게 한다. 높은 봉우리나 꼭대기에서는 식염(食鹽)이 가장 귀하니, 곡물로 소금을 사서 침장(沈醬)에서 취용(取用)하고, 그 나머지는 창사(倉舍)에 유치(留置)해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한다. 소금을 사는 일은 비록 조령(朝令)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일은 병영(兵營) · 통영(統營)의 감관(監官)이 싼 값으로 매입하였다가 강제로 비싸게 파는 것과 다른 일이므로, 한결같이 일반 상인들이 매매(賣買)하는 예(例)에 의거하며, 소금을 살 때는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관문(關文)을 받은 뒤에 사온다. 강을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많은 비용이 소비되기에 영선(營船) 2척 또한 떼어 주어 사용하게 하며, 보수 등의 일은 본부(本府)에서 전담하여 처리한다. 비록 본부(本府)로 보내거나 또한 영선(營船)의 하납미(下納米)를 분파(分把)691)할 때는 전례대로 실도록 하고 그 선가(船價)는 매년 산창(山倉)에 봉류(捧留)한다.

일(一). 속공노비(屬公奴婢) 22구(口)는 영안(營案)에 입록(入錄)해, 혹 창사(倉舍)를 맡아지키게 하거나, 혹 고지기[庫子]로 정하기도 한다. 혹 영(營)의 군관(軍官)이나 중군(中軍)이 왕래할 때 사환(使喚)으로 부리기도 하는데, 본부(本府)에서는 일체 침탈하지 말고보존의 밑바탕으로 삼는다.

일(一). 성(城)을 설치한 뒤로 남(南)、북(北) 암문(暗門)의 일이 있었으니, 마땅히 맡아

<sup>688)</sup> 작통(作統) : 가가(家家) 호호(戶戶)를 다섯 집, 혹은 열 집씩 편성하여 동을 만드는 것.

<sup>689)</sup> 복(ト): 짐이라고 한다. 전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이다. 부(負)라고도 한다.

<sup>690)</sup> 중기(重記) : 전곡의 출납 장부, 또는 사무를 인계할 때 넘겨주는 문서를 말한다.

<sup>691)</sup> 분파(分把) : 파수(把守)를 분담한다는 뜻이다.

지키면서 열고 닫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미 당번[守直]을 두었다면, 요포(料布)가 없을 수 없으니, 매달 남문지기[南門直]는 4말, 암문지기[暗門直] 5명에게 각각 쌀 3말씩 지급하는 것을 길이 정식(定式)으로 삼는다. 신설(新設)된 산성(山城)의 생활이 어렵다면한 사람만 항상 당번으로 정할 수 없고, 고자(庫子)와 문지기를 번갈아 정체(定體)하여고생과 휴식[苦歇]을 공평하게 한다. 【3페이지 앞쪽의 것이 錯簡되어 다음 페이지에위치하였으므로, 다음 페이지를 뛰어 넘어야함. 원문 입력에서는 바로잡았음.】

일(一). 도총섭(都摠攝)이 4곳의 산성(山城)을 전담하되, 3곳 산성의 승장(僧將)은 총섭(摠攝)을 접대하는데, 한결같이 별장(別將)이 중군(中軍)을 대하는 체례(體例)로 시행한다.

일(一). 년응봉(年應捧)

유황포(硫黃布) 6동 37필

마군보(馬軍保) 6동 33필

일(一). 년응하(年應下)

쌀 9섬 9말을 수첩병방장무(守堞兵房掌務) 4원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12말씩이다.

쌀 40섬 13말 2되를 별장(別將) 1년의 급료로 지급하는데, 매달 3섬 6말 1되씩이다.

쌀 9섬 9말을 색리(色吏) 2인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6말씩이다.

쌀 12섬을 총섭승(摠攝僧)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1섬씩이다.

쌀 4섬 12말을 도고자(都庫子) 1명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6말씩이다.

쌀 2섬 6말을 취반비(炊飯婢) 1명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3말씩이다.

쌀 4섬 12말을 천주사(天柱寺) 화상(和尙)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6말씩이다.

쌀 4섬 12말을 장무기패관(掌務旗牌官)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6말씩이다.

쌀 12섬을 대포수(大砲手) 등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1섬씩이다.

쌀 20섬을 각 고지기[庫子] 및 삼문지기[三門直]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5말씩이다.

쌀 6섬 6말을 남(南)、서(西) 양(兩) 문지기[門直]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4말씩이다.

무명 36필을 별장(別將)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3필씩이다.

무명 8필은 별장(別將)의 춘추(春秋) 양등(兩等)의 의자목(衣資木)이다.

무명 48필을 수첩병방장무(守堞兵房掌務) 4원에게 지급하는데, 매달 각 1필씩이다.

무명 4필은 색리(色吏) 2인의 춘추(春秋) 의자목이다.

벼[租] 12섬은 별장(別將)의 반찬값[饌價]이다.

- ◎ 다섯 색리[五色]의 합미(合米)는 5,713섬 13말 4되 6홉 9사 내에 아직 봉상(捧上)하지 않은 쌀은 2,181섬 5말 8되 1홉 7사이고, 창고에 남아 있는 쌀은 3,532섬 7말 6되 5홉 2사이다
  - ▷ 2,865섬 9말 5되 7홉 1사는 산창(山倉)에 봉류(捧留)했다.
  - ▷ 666점 13말 8홉 1사는 각 읍(邑)에 봉류(捧留)했다.
- ◎ 콩 32섬 13말 9되 4사 내에

아직 봉상하지 않은 콩은 11섬 2되 6홉 6사며 창고에 남아 있는 콩 11섬 2말 6되 3홉 8사는 산창(山倉)에 봉류했다.

◎ 벼[租] 2,932섬 12말 6되 1홉 6사 내에

37섬은 전전(前前) 색리(色吏) 이귀번(李龜蕃)이 인계할<sup>692)</sup> 때 부패(腐敗)된 것을 다시 개작(改作) 해축(解縮)했다.

아직 봉상하지 않은 벼[租]는 2,702섬 8말 1되 5홉 4사며 창고에 남아 있는 벼[租]는 1,093섬 4말 4되 6홉 2사이다.

575섬 13말 9되 2홉 5사는 본창(本倉)에 봉류(捧留)했다.

617섬 5말 5되 3홉 7사는 각 읍(邑)에 봉류(捧留)했다.

◎ 별향미(別餉米) 2,549섬 14말 6되 7홉 4사 내에 20섬 8말 8되 7사는 전전(前前) 색리(色吏) 이귀번(李龜蕃)이 인계할 때 감축했다.

아직 봉상하지 않은 별향미는 1,877섬 1말 7되 6홉 8사며

창고에 남아 있는 별향미 652섬 4말 9되 9사는 본창(本倉)에 봉류(捧留)했다.

장(醬) 58섬 9말은 창고에 남겨두었다.

◎ 콩 3섬 8말 7홉 7사

13말 9되 9홉 3사는 전전(前前) 색리(色吏) 이귀번(李龜蕃)이 축냈다.

창고에 남아 있는 콩은 2섬 9말 8홉 4사이다.

- ◎ 벼[租]는 5말 2되 6홉 1사
- ◎ 피모(皮牟)는 8섬 3되 2홉 6사
- ◎ 무명 408동 2필 31자 8치 8푼 내에

백성들에게 빌려 주고 아직 봉상하지 않은 것이 75동 19필 26자 7치이며,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이 332동 33필 5자 1치 8푼이다.

◎ 돈[錢文] 28,018냥 8푼 내에

각 관에서 빌려 주고 아직 봉상하지 않은 것이 14,010냥 7전이고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은 13,947냥 3전 8푼이다.

◎ 은자(銀子)는 1,488냥 5전 2푼이다.

소[牛] 82마리

잉박선(仍朴船)<sup>693)</sup> 2척

692) 전장(傳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 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 줌. 사무 인계.

693) 잉박선(仍朴船) : 너비가 넓은 배.

### 접왜사례(接倭事例)

연례대로 출입하는 팔송사왜(八送使倭)<sup>694)</sup>의 원역(員役)<sup>695)</sup> 수, 공궤(供饋) 및 연향(宴享)의 횟수[度數], 왜관에 머무는 기한[留館元限]

◎ 특송제일선(特送第一船) 3척 내에 【대선(大舡) 1척의 격왜(格倭)6%)는 40명, 중선(中舡) 1척의 격왜(格倭)는 30명이다.】 1명당 매일 요미(料米)는 각 2되이며,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소선(小舡) 1척의 격왜(格倭)는 20명으로, 요미(料米)와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

진누룩[眞曲] 176동 3원 2되 9홉

개암[榛子] 6섬 2말 3되

잣[栢子] 6섬 1말 9되 9홉

호도(胡桃) 6섬 4말 2홉

생리(生梨) 1,825개

생률(生栗) 10섬 3말 4되 9홉 6사 4리

황률(黃栗) 8섬 13말 5되 2홉 6사 5리

대추[大棗] 8섬 2말 2되 4홉 9사 9리

곶감 574접 3꿰미[串] 6개

오미자(五味子) 3되 4홉

지초(芝草) 4말 4되 6홉 6사

홍시(紅柿) 6,104개

포육(脯肉) 102점(占) 7조(條) 반반(半半)

말린 꿩[乾雉] 164마리

생간(生羊) 1말 7되 2홉 1사 6리

건어(乾魚) 2,114속 1마리

말린 광어[乾廣魚] 1,878마리

청어(靑魚) 1,423급 17마리

전복(全鰒) 113접 9꿰미[串] 9개

대구(大口) 5,581마리 2조(條)

<sup>694)</sup> 팔송사(八送使):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 연례송사(年例送使)는 대마도주 세견선(歲遣船) 20척과 수도서선(受圖書船) 5척, 수직인선(受職人船) 5척 등 모두 30척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도래(渡來)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636년 겸대제(兼帶制)가 시행된 이후 도항 시기 및 횟수가 8회로 조정됨에 따라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 하였다.

<sup>695)</sup> 원역(員役) :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아전.

<sup>696)</sup> 격왜(格倭) : 왜인(倭人) 격군(格軍). 격군은 수부(水夫)의 하나로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선격(船格)이라고도 하였다.

말린 사어[乾沙魚] 3,237마리 6조(條)

해삼(海參) 19섬 9되 3홉

문어(文魚) 400마리 4조(條)

생선(生鮮) 3,391마리

홍합(紅蛤) 3섬 3말 3되 3홉

생복(生鰒) 3,270개

백합해(白蛤醢) 2섬 1말 7되 3홈 1사 6리

매[鷹子] 29연(連) 값 공목(公木) 17동

피조개[皮白蛤] 2,690개 반(半)

소금 9섬 3되 3홈 5사 8리 5푼

감장(甘醬) 1섬 12말 2되 7홉 5사 5리 5푼

간장(艮醬) 1섬 2되 6홈 3사 6리

미역[藿] 621근 11냥 6전 1푼

표고(蔈古) 1말 1되 2홉 6사 6리 4푼

산돼지[生猪] 70구(口)

생닭[生鷄] 2,610마리 3쾌(快)

어작미(魚作米) 579섬 3되 4홉 4사

하선(下船) 다례(茶禮) 1차(次), 2일의 조반(早飯), 2일의 숙공(熟供)<sup>697)</sup>, 상연선(上宴船) 1차(次)

- ◎ 세견제오선(歲遣第五紅)698)
- ◎ 제육선(第六紅)
- ◎ 제칠선(第七舡)
- ◎ 제팔선(第八紅)
- ◎ 제구선(第九紅)
- ◎ 제십선(第十舡) [団]

【团】 '세견제오선'에서 '제십선'까지. 예전에는 이 여섯 선박의 경우, 선척(船隻)의 격왜(格倭) 및 원역(員役)을 모두 세견제사선(歲遣第四船)의 예로 접대하였으되, 겸대(兼帶)699) 이후 다례(茶禮)

<sup>697)</sup> 숙공(熟供) : 음식을 제공함.

<sup>698)</sup> 세견선(歲遣船): 조선조에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뒤, 회유책으로 삼포(三浦:제포、부산포、염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두었다가 상주자이외는 철귀하게 하고, 세견선은 50척, 세사미(歲賜米)는 2백 섬, 특송선(特送船)은 2~3척으로하였고, 중종 5년 삼포 반란 이후는 세견선과 세사미를 반으로 감하고, 제포 한 곳만 개항하였음.

<sup>699)</sup> 겸대(兼帶): 특송선을 서로 겸하게 하던 일. 인조 13년 을해(1635)에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왕명을 받들고 강호(江戶)에서 무고(誣告)를 변론하고 돌아와 대마도에 이르러 대마도주 평의 성(平義成)을 타일러 세견선(歲遣船)의 액수를 줄였다. 1특송선으로 하여금 2, 3특송선을 겸대

와 연향(宴享)을 영원히 없앴다. 기타 진상하는 공무(公貿) 등의 값에 해당하는 무명과 회사(回賜)700)·구청(求請)하는 등의 물건은 이전의 정식(定式)에 의거해 곧바로 대관왜(代官倭)701)에게 지급한다.

- ◎ 세견제십일선(歲遣第十一舡)
- ◎ 제십이선(第十二舡)
- ◎ 제십삼선(第十三紅)
- ◎ 제십사선(第十四舡)
- ◎ 제십오선(第十五舡)
- ◎ 제십육선(第十六舡)
- ◎ 제십칠선(第十七紅) [제]
  - 【四】 '세견제십일선'에서 '제십칠선'까지. 예전에는 선척(船隻)의 격왜(格倭) 원역(員役) 및 접대(接對) 등의 정식(定式)은 제십선(第十船)에 비해 조금 감정(滅定)하였으나, 겸대(兼帶) 이후 다례(茶禮) 와 연향(宴享)을 영원히 없앴다. 기타 진상하는 공무(公貿) 등의 값에 해당하는 무명과 회사(回賜)·구청(求請)하는 등의 물건은 이전의 정식(定式)에 의거해 곧바로 대관왜(代官倭)에게 지급하다.
- ◎ 제십일선(第十一船) 이하 소선(小船) 1척엔 격왜(格倭) 20명으로 1인당 [각각의 요미(料米)는 2되이며, 반찬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역(員役) 내에 [정관(正官) 1인의 매일(每日) 요미(料米)・조반(早飯)・병미(餅米)는 5되이다.] 반종(伴從) 1명의 매일 요미(料米)、조반(早飯)、병미(餅米)는 아울러 4되 5홉이다.

이상 왜관에 머무는 기한[留館元限]은 85일이다. 겸대(兼帶)이후 건요(乾料)를 대관왜(代官倭)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연향(宴享)、다례(茶禮) 등은 영원히 없앴다.

입송사(入送使) 및 관수왜(館守倭)<sup>702)</sup>가 1년 동안 바치는 잡물과 별차왜(別差倭)<sup>703)</sup>가 바치는 것은 이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게 하고, 제4선송사로 하여금 제5선 이하부터 17선까지를 겸대하게 하고, 그 요(料)와 생선 [魚]을 환산한 쌀 및 별폭(別幅), 구청(求請), 육물(陸物), 공무역의 대목(代木) 등 한결같이 예에 따라 증여해 주던 물품은 공대관(公代官)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들여보내게 하였다. 구청 가운데에 들어 있는 잡물(雜物)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쌀로 환산해 주어 접대와 연향에 쓰이는 비용을 줄였다.

<sup>700)</sup> 회사(回賜): 답례(答禮)로 물건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답사(答賜).

<sup>701)</sup> 대관왜(代官倭):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내어 왜관(倭館)에 와 있으면서 공무(公貿)하는 무명、쌀, 문서(文書), 사무(私貿) 등의 일을 맡아보는 직원. 일본에 가는 우리나라의 사신을 따라가기도 함. 조선조 인조 13년에 24인을 보내 왔고, 숙종 10년에는 10인으로 줄여 3년 교체를 하였는데 그 중에 연조대관(年條代官)이라 하여 1년 교체로 하는 자도 있었음.

<sup>702)</sup> 관수왜(館守倭): 부산 왜관(倭館)을 관리하고 왜인을 단속하기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낸 대관(代官). 부산에 출입하는 왜인의 편의 도모와, 한계를 넘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관수(館守). 관수차왜(館守差倭).

<sup>703)</sup> 별차왜(別差倭) : 일본 국왕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 사자(使者). 특송사(特送使).

일공(日供)<sup>704)</sup>과 연향(宴享)의 잡물(雜物) 총수 참기름 15섬 8말 9되 1홉 6사 7리 5푼 청밀(淸蜜) 4섬 2말 9되 8홉 6사 4리 밀가루[眞末] 54섬 14말 5되 8홉 9사 6리 콩가루[太末] 53섬 5말 1되 6홉 7사 6리 찹쌀[粘米] 57섬 12말 9되 3홉 1사 메밀[木米] 36섬 8말 5되 팥[小豆] 30섬 1되 5홉 4사 8리 겨자[芥子] 1섬 8말 7되 9홉 5사 1리 7푼 녹두(菉豆) 6말 3되 6홉 8사 6리 5푼 모곡(牟曲) 3섬 3말 8되 9홉 8사

- ▷ 정관(正官) 1、도공(都舡) 1、이선주(二舡主) 1、봉진압물(封進押物)<sup>705)</sup> 1、사복 압물(私卜押物) 1、시봉(侍奉) 1、반종(伴從) 7명이 왜관에 머무는 기한[留館元 限] 110일 내에【숙공(熟供) 5일을 제외하면 105일이 된다.】
- ▷ 하선다례(下船茶禮) 1차(次), 5일의 조반(早飯) 1차(次), 5일의 숙공(熟供) 1차(次), 하선연(下船宴) 1차(次), 별연(別宴) 1차(次), 노차연(路次宴) 1차(次), 명일 연(名日宴)<sup>706)</sup> 4차(次), 예단다례(禮單茶禮) 1차(次), 상선연(上船宴) 1차(次) 【별 하정(別下程)<sup>707)</sup> 2차(次), 예하정(例下程) 2차(次)】이상의 4차례 연향(宴享)은 건물(乾物)로 입급(入給)한다.
- ◎ 부특송사선(副特送使船) 3척 내에【대선(大船) 1척에는 격왜(格倭) 40명이며, 중선(中船) 1척에는 격왜(格倭) 30명이다.】 1명당 매일 요미(料米) 3되며,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소선(小船) 1척에는 격왜(格倭) 20명으로, 요미(料米)와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
  - ▷ 정관(正官) 1, 부관(副官) 1, 도선주(都船主) 1, 이선주(二船主) 1, 유선주(留船主) 1, 봉진압물(封進押物) 1, 사복압물(私卜押物) 1, 시봉(侍奉) 1, 반종(伴從) 7명이 왜관에 머무는 기한 110일 내에 【숙공(熟供) 6일을 제외하면 104일이 된다.】
  - ▷ 다례(茶禮) · 연향(宴享)의 도수(度數)는 한결같이 특송사(特送使)의 예(例)로 하정 (下程)<sup>708)</sup>하며, 건물(乾物) 또한 같다.

<sup>704)</sup> 일공(日供) : 매일 바치는 것.

<sup>705)</sup> 압물(押物) : 외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 수행하여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 등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sup>706)</sup> 명일연(名日宴): 일본의 풍속에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7월 15일, 8월 1일, 9월 9일, 10월 해일(亥日)을 명일(名日)로 삼고 있는 바, 이때 베풀어 주는 연회를 말한다.

<sup>707)</sup> 별하정(別下程) : 별도의 하정(下程). '하정'은 사신(使臣)이 사관(使館)에 도착하면 주식(酒食) 등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것.

- ◎ 세견제일선(歲遣第一船) 2척 내에 【대선(大船) 1척에는 격왜(格倭) 40명이며, 소선(小船) 1척에는 격왜(格倭) 10명이다.】 요미(料米)와 반찬은 위와 같다.
  - ▷ 정관(正官) 1, 도선주(都船主) 1, 봉진압물(封進押物) 1, 반종(伴從) 3명이 왜관에 머무는 기한 85일 내에 【숙공(熟供)·조반(早飯) 2일을 제외하면 83일이 된다.】
  - ▷ 하선다례(下船茶禮) 1차(次), 2일의 조반(早飯), 2일의 숙공(熟供), 하선연(下船宴) 1차(次), 노차연(路次宴) 1차(次), 명일연(名日宴) 3차(次), 예단다례(禮單茶禮) 1차(次), 상선연(上船宴) 1차(次)
- ◎ 세견제이선(歲遣第二船)은 대선(大船)으로 격왜(格倭) 40명이며, 요미(料米)와 반찬은 위와 같다.
  - ▷ 정관(正官) 1, 반종(伴從) 1명이 왜관에 머무는 기한 85일 내에 【숙공(熟供)·조반 (早飯) 2일을 제외하면 83일이 된다.】
  - ▷ 하선다례(下船茶禮) 1차(次), 2일의 조반(早飯), 2일의 숙공(熟供), 하선연(下船宴) 1차(次), 노차연(路次宴) 1차(次), 상선연(上船宴) 1차(次)
- ◎ 세견제삼선(歲遣第三船) 1척은 세견제이선(歲遣第二船)과 같다.【이하 구청질까지는 원본의 1페이지가 누락되어 추가함. 원문 참조.】
- ◎ 세견제사선(歲遣第四船)<sup>709)</sup> 1척은 중선(中船)으로, 격왜(格倭)는 30명이며, 1명당 매일 요미(料米)는 각각 2되이며,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
  - ▷ 원역(員役) 및 숙공(熟供)、조반(早飯)을 매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제이선(第二船)의 예와 같다.
  - ▷ 왜관에 머무는 기한은 모두 제이선(第二船)의 예와 같다.
  - ▷ 다례(茶禮)와 연향(宴享)의 횟수는 모두 제이선(第二船)의 예와 같다.
- ◎ 수도서인(受圖書人)<sup>710)</sup>과 만송원(萬松院)<sup>711)</sup> 송사선(送使船) 2척 내 【대선(大舡) 1척의 격왜(格倭)는 40명이고, 매일 요미(料米)는 각 2되이며,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 소선(小舡) 1척의 격왜(格倭)는 20명으로, 요미(料米)와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
  - ▷ 정관(正官) 1, 도선주(都船主) 1, 봉진압물(封進押物) 1, 반종(伴從) 3명이 왜관

<sup>708)</sup> 하정(下程): 사신(使臣)이 사관(使館)에 도착하면 주식(酒食) 등 일상 수요 물품을 보내주는 것. 709) 세견제사선(歲遣第四船): 원본에는 '세견제삼선(歲遣第三船)'의 하위항으로 되어 있으나, 문 맥상 상위항으로 조정하여 번역하였다.

<sup>710)</sup> 수도서인(受圖書人): 조선 정부로부터 도서(圖書)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세종 즉위년(1418)에 서해로(西海路)미작 태수(美作太守)정존(淨存)의 사례가 처음이다. 수도서제(授圖書制)는 원래 조선 정부가 일본의 지방 호족들의 요청을 받아, 왜구(倭寇)의 통제 및 피로인(被擄人)의 송환, 외교상의 공로, 일본 내의 세력의 강약을 고려하여 통교자를 우대 또는 회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도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부신(符信)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도서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sup>711)</sup> 만송원(萬松院):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지(平義智)의 원찰(願刹). 임진왜란 당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가 죽은 후에도 매년 1척의 무역선을 영구히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에 머무는 기한 85일 내에 【숙공(熟供)·조반(早飯) 2일을 제외하면 83일이 된다.】

- ▷ 하선다례(下船茶禮) 1차(次), 2일의 조반(早飯), 2일의 숙공(熟供), 하선연(下船宴) 1차(次), 노차연(路次宴) 1차(次), 명일연(名日宴) 3차(次), 예단다례(禮單茶禮) 1차(次), 상선연(上船宴) 1차(次)
- ◎ 이정암(以酊菴)<sup>712)</sup>의 송사왜(送使倭)는 대선(大舡) 1척에 격왜(格倭) 40명이며, 1명당하루 요미(料米)는 2되이고, 반찬은 지급하지 않는다.
  - ▷ 정관(正官) 1, 반종(伴從) 3명이 왜관에 머무는 기한 85일 내에 【숙공(熟供)·조반 (早飯) 2일을 제외하면 83일이 된다.】

구청질(求請秩)713)

진묵(眞墨) 415정

사유둔(四油革) 64번(番)

우산지(雨傘紙) 28속 10장

들기름[法油] 1섬 1말 4되

마생(馬省) 72개(箇)

매[鷹子] 28연(連) 가미 420명

16종 잡물(雜物) 가미 91섬 3말 2되

### 공무역(公貿易)

공목(公木)714)은 1.166동 13필 20자 6치로

동철(銅鐵) 29,373근 5냥 4전의 값은 공목 352동 24필이다.

납철(鑞鐵) 16,013근 8냥의 값은 공목(公木) 640동 27필이다.

단목(丹木)715) 455근의 값은 공목(公木) 3동 1필 23자 2치이다.

소뿔[黑角716)] 400통(桶)의 값은 공목(公木) 17동 41필이다.

<sup>712)</sup> 이정암(以酊菴): 조선조에 특별한 공로(功勞)가 있었다는 왜승(倭僧) 현소(玄蘇)가 거주하던 절(寺)의 이름. 현소는 조선에 특별한 공이 있다 하여 사자가 왕래하였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매년 1척의 무역선 출입을 허용했음.

<sup>713)</sup> 구청질(求請秩) : 구청(求請)은 청구 또는 요구하다는 말일다. 질(秩)은 분류된 항목, 명단 건 (件)을 말하는 듯하다.

<sup>714)</sup> 공목(公木) : 일본과의 물화(物貨) 교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무명을 이르는 말.

<sup>715)</sup> 단목(丹木) : 콩과에 속하는 작은 상록(常綠) 교목(喬木). 목재로서는 탄력이 있어 활을 만드는데 쓰이고, 속의 붉은 부분은 홍색 염료로, 뿌리는 황색 염료로 쓰인다. 한방에서는 붉은 속부분이 나쁜 피를 없애 주는 효력이 있다고 해 통경제(通經劑)와 외용(外用)으로 쓰인다. 소목(蘇木), 혹은 소방목(蘇方木)이라고도 한다.

진상(進上) 잡물(雜物)의 값은 공목(公木) 134동 17자 1치이다.

매[鷹子] 29연(連)의 값은 공목(公木) 17동 20필이다.

도합 값은 공목 1,165동 14필 5자 3치 가운데 [44동 18필 23자 3치 평미일(平彌一)717)의 조(條) 로 입급(入給)한다.]

765동 14필 5자 3치는 본색(本色)으로 입납(入納)하고 400동은 쌀 18,000석으로 바꾸어 입납(入納)한다.

구송사왜(九送使倭)718)가 진상(進上)을 올리는 물건(物件)의 총수

후추[胡椒] 4,400근

백반(白磻) 1,400근

목단(木丹) 5,880근

주홍(朱紅) 80

문지(紋紙) 3축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채화연갑(彩畵硯匣) 2비(備)

적동흑삼관반(赤銅黑三盥盤) 1부(部)

흑칠췌전갑(黑漆萃箋匣) 1비(備)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1쌍

수정입서(水晶笠緖) 1결

#### 접위청(接慰廳)에 바치는 것

쌀 50섬은 대동(大同)으로 수조(收租)하고, 참기름 4말, 청밀(淸蜜) 3말, 곶감 9접, 대소 (大召) 2말, 호두 10말, 잣 10말, 황률(黃栗) 2말, 생률(生栗) 5말을 별도로 지급한다.

### 대동차지(大同次知)

대자목(俗子木) 850자를 왜헌(倭獻)이 진상하면 상송할 때 조대하여 용차한다.

<sup>716)</sup> 흑각(黑角): 무소의 뿔. 서각(犀角).

<sup>717)</sup> 평미일(平彌一): 의여(義如)의 고친 이름. 평미일은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성(平義城)의 아들로, 그의 뒤를 이어 대마도주가 되었다.

<sup>718)</sup> 구송사(九送使): 연례송사(年例送使)는 대마도주 세견선(歲遣船) 20척과 수도서선(受圖書船) 5척, 수직인선(受職人船) 5척 등 모두 30척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도래(渡來)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636년 겸대제(兼帶制)가 시행된 이후 도항 시기 및 횟수가 8회로 조정됨에 따라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 하였다. 여기서의 구송사는 1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 임자년(壬子年, 1732) 5월 29일 영사(營舍)에 불이 나서 징청각(澄淸閣)·응향침(凝香寢)이 일시(一時)에 불타버렸다.

장계(狀啓) 초고(草稿)719)

당일 신시(申時)와 미시(未時) 사이에 신(臣)의 영(營)에 돌연 불이 나서 신(臣)이 거처하 던 징청각(澄淸閣)·응향침(凝香寢)이 잠깐 사이에 불타버렸습니다<sup>720)</sup>. 대저 구관당상(句 管堂上)721) 영성군(靈城君) 박 아무개722)는 영천(永川)에서 태질(駄疾)로 가던 차에 신 (臣)의영(營)에 진상하려고, 이 거처하던 징청각(澄淸閣) 동편 수십 보(步) 쯤 떨어진 이 른바 '제승당(制勝堂)'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723). 신이 병문안을 하기 위해 당일(當日) 식후(食後)에 가서 함께 담화(談話)하던 즈음에 갑자기 징청각(澄淸閣)의 화재 소식을 보 고 받았습니다. 황급하게 돌아와 보니 잠깐 사이에 화염(火焰)이 내외(內外)를 다 덮고, 징청각(澄淸閣)ㆍ응향침(凝香寢)에 한꺼번에 불길이 번져 자못 도깨비불[鬼火] 같았습니 다.724) 신의 처ㆍ자식들과 노복(奴僕) 등의 인명(人命)이 겨우 살아남은 것은 참으로 다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인(官印)과 병부(兵符)는 마침 신(臣)의 몸을 떠나 구관당상(句 管堂上)의 병소(病所)에 옮겨두었기 때문에 겨우 화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725). 교서 (敎書) · 유서(渝書) · 내려주신 갑주(甲胄)는 늘 받들어 침소인 징청각(澄淸閣)에 두었기 때문에 형세가 구출하는데 미치지 못했으니, 참으로 통석(痛惜)합니다<sup>726)</sup>. 당중(堂中)에 있던 서책、문서는 비록 같이 불타버렸지만727), 그 나머지 재물과 비단을 보관하던 창 고와 장부를 갈무리하던 곳은 대부분 불에서 구출되어 연소(連燒)의 근심을 면했습니 다.728) 내려주신 교서(敎書)、유서(詠書)는 재임하는 날에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기

<sup>719)</sup>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권27)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덕수(李德壽)가 어떤 사람에게 "조현명(趙顯命)의 얼굴에 화기(火氣)가 있으니, 이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징청각(澄淸閣)이 불에 탔다. 조현명(1690~1752)은 경술년(1730) 7월에 경상 감사로 부임하였고, 임자년(1732) 9월에 파직되었으므로,이 장계의 초고는 조현명의 글로 판단된다.

<sup>720)</sup> 시백재과(是白在果): 이두로 '이옵는 것과', '이옵거니와'의 뜻이다.

<sup>721)</sup> 구관당상(句管堂上):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 비변사의 제조(提調)로서 8도의 군사 업무를 맡아보는 당상관.

<sup>722)</sup> 영성군(靈城君) 박 아무개 : 조선 후기의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렸던 박문수(朴文秀: 1691~1756)를 가리킨다.

<sup>723)</sup> 시백재여중(是白在如中) : 이두로 '이옵는 터에', '이옵는 경우에'라는 뜻이다.

<sup>724)</sup> 시백여호(是白如乎) : 이두로 '이숩둔'으로 읽고, '이옵던', '이옵더니'의 뜻이다.

<sup>725)</sup> 시백견(是白遣): 이두로 '이숩고'로 읽고, '이옵고'의 뜻이다.

<sup>726)</sup> 시백호며(是白乎於): 이두로 '이숩오며'로 읽고, '이사오며', '이시오며'의 뜻이다.

<sup>727)</sup> 시백호내(是白乎乃) : 이두로 '이숣오나'로 읽고, '이사오나'의 뜻이다.

<sup>728)</sup> 시백호소(是白乎所) : 이두. '이사온바'로 읽으며, '이온 바'의 뜻이다.

에<sup>729)</sup>,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다시 등서(謄書)해 하송(下送)해주십시오<sup>730)</sup>. 대진(大賑)을<sup>731)</sup> 겪고, 또 이와 같은 화재를 만났으니, 신의 정치가 무너지고 형벌은 번거로워하늘의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교서(敎書)、유서(諭書)의 일은 체통(體統)이 지극히 중하지만 불타버림을 면하지 못했으니, 황공히 대죄(待罪)하며 그 연유를 아울러 치계(馳啓)합니다.

유5월 초10일 공경히 받습니다.

동월 초5일 우승지(右承旨) 이 아무개가 성첩(成貼)<sup>732)</sup>한 교지(敎旨)에, "서장(書狀) 내에 경(卿)이 징청각(澄淸閣)의 실화(失火)로 인해 교서(敎書)、유서(諭書)를 소신(燒燼)해 대죄(待罪)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경(卿)은 대죄(待罪)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만력(萬曆) 34년 병오(丙午, 1606) 관찰사 【유영순(柳永詢)<sup>733</sup>》 이 창건했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105년, 옹정(雍正) 10년 임자(壬子, 1732)에 개건(改建)하고, 동년(同年) 7월 초4일 진시(辰時)에 기둥을 세웠으며, 16일 진시(辰時)에 상량(上樑)했다.

#### 관찰사(觀察使) 풍원군(豊原君) 조(趙)○○734)

- ▷ 통판(通判) 정언회(鄭彦恢)
- ▷ 감동동지(監董同知) 민유(閔裕)
- ▷ 전현령(前縣令) 홍이원(洪以源)
- ▷ 청응전감(靑應前監) 최덕중(崔德中)
- ▷ 성조감관(成造監官) 문재징(文在徵), 방재유(方載維)
- ▷ 부석감관(浮石監官) 하도문(河道文)
- ▷ 출물겸단청감관(鐵物兼丹靑監官) 장만유(張萬維)

<sup>729)</sup> 시백거호(是白去乎): 이두. '이숣거운'으로 읽으며, '이사오니'의 뜻이다.

<sup>730)</sup> 위백호의(爲白乎矣): 이두로 '호숩오드ㅣ'로 읽고, '하삽오되', '하사오되'의 뜻이다.

<sup>731)</sup> 대진(大賑) : 큰 흉년을 만나 대대적으로 구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up>732)</sup> 성첩(成貼) : 관인을 찍어 공문서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sup>733)</sup> 유영순(柳永詢) : 1552~?.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순지(詢之), 호는 졸암(拙庵)、북천(北川). 부사 정(挺)의 아들이다. 1595년에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가속(家屬)을 도내에 유치, 경거망동하고 또 수령을 통솔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지로 기용되어 해서(海西)、관서(關西)사이의 관문인 평산산성(平山山城)의 중요성을들어 그 수축을 청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란 중 부친과 형을 잃은 그는 김시헌(金時獻)、송순(宋詢) 등과 함께 사사로이 군량、무기 등을 준비하고 장정 700명을 모아 복수군(復讐軍)을 조직, 서울의 수성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1598년에 다시 황해도관찰사, 1601년 성주목사, 이듬해 좌승지를 역임하고, 1604년에는 정평부사(定平府使)가 되어 학교를 세우고 스스로 학동들을 가르쳤다. 1606년에 경상도관찰사, 이듬해 동지중추부사、한성부윤에 이어서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sup>734)</sup> 조(趙)○○ : 당시의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을 가리킨다. 그의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 도사(都事) 인수(仁壽)의 아들이다. 저서로는 《귀록집》이 있고, 《해동가요》에 시조 1수가 전하고 있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 담당관[次知] 영리(營吏)

- ▷ 책응색(責應色) 이백령(李百齡)
- ▷ 성조색(成造色) 김우평(金遇平)
- ▷ 철물색(鐵物色) 윤취겸(尹就謙)
- ▷ 모군색(募軍色) 지윤해(池潤海)
- ▷ 부석색(浮石色) 박진한(朴震漢)
- ▷ 도편수(都片手) 승(僧) 치백(緇白)
- ▷ 부편수(副片手) 승(僧) 명신(明信)

박태징(朴泰澄)

## **상량문(上樑文)**735)

침각(寢閣)의 연이은 화재로 인해 막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있었으니 정당(政堂)<sup>736)</sup>이 제도를 바꾸면 겸하여 신부(新夫)도 우러러본다. 일부러 이전보다 화려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형세가 그러했을 뿐이네. 생각건대,

교남(嶠南)737)이라는 지역은

옛날 진한(辰韓)의 땅으로,

겹겹의 고개 안에서 양호(兩湖: 호서와 호남)와 맞닿아 있고,

두 바다[重溟: 남해와 동해] 사이에서 별천지(別天地)를 열었네.

천년의 문물(文物)을 계림(鷄林)의 옛 풍속에서 징험할 수 있고,

만 이랑의 풍랑[風濤] 너머에는 대마도라는 강한 이웃을 접하고 있네.

주부군현(州府郡縣)은 대소(大小)를 아울러 70여 곳

<sup>735)</sup> 상량문(上樑文) : 이 글은 조현명(趙顯命)의 『귀록집(歸鹿集)』(권19)에 있는 「선화당상량문임자(宣化堂上樑文 壬子)」이다. 원문의 몇몇 글자는 『귀록집』과 차이가 있는데, 문맥상 『귀록집』의 글자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번역을 하였다. 글자의 출입(出入)은 원문 입력본에서 하나하나 밝혀두었으므로, 번역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sup>736)</sup> 정당(政堂): 정무를 보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선화당(宣化堂)을 가리킨다. 선화당은 경상감영(慶尙監營)의 관청으로 관찰사가 집무를 보던 정청(政廳)이다. 본래 달성(達城)에 설치되었다가 안동으로 잠시 이전했던 경상감영을 선조 34년(1601) 관찰사(觀察使) 김신원(金信元)이 지금의 대구광역시 경상감영 터로 옮겼다. 선화당은 현종11년(1670), 영조6년(1730), 순조 6년(1806) 세 차례에 걸쳐 큰 불로 소실(燒失)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순조 7년(1807) 관찰사 겸 부사인 윤광안(尹光顔)에 의해 중건된 것으로 1970년 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보수한 것이다.

<sup>737)</sup> 교남(嶠南) : 경상도의 옛 이칭(異稱). 교(嶠)는 문경의 새재[鳥嶺]을 가리키는데, 교남이란 문경 새재의 이남이란 뜻이다.

남북동서(南北東西) 연이은 길은 3,000리 남짓.

산하는 험하고 단단해 안팎으로 금성탕지(金城湯池)<sup>738)</sup>의 형세를 갈무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멀리까지 계견(鷄犬) 소리 들리네.<sup>739)</sup>

그 지형의 이로움을 믿을 수 있으니

백성들의 풍습이 매우 순박(淳朴)하네.

음식을 아끼고 부지런히 농사짓는 것은 빈기(豳岐)<sup>740)</sup>의 풍속과 매우 닮았고

경전을 연구하고 독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성대한 추로(鄒魯)741)의 기풍이 있네.

곡식과 마사(麻絲)를 바치니 대농(大農)742)의 경용(經用)743)은 이에서 의지하고,

어진 선비와 이름난 석학들이 배출되니 인재(人才)의 창고로 일컬어지네.

이는 나라를 위한 보장(寶藏)이기에

방백(方伯)744)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네.

처음엔 장부(帳簿)와 소송(訴訟)이 극심해 두 도(道)로 나누어 좌·우 감사(監司)를 두었다가 끝내 체통과 호령이 어지럽게 되자 한 사람이 순찰사(巡察使)와 관찰사(觀察使)를 겸하게 하였네.

이에 행영(行營)의 제도를 바꿔

드디어 정치를 펼 수 있는 관아(官衙)를 세웠네.

오직 이 달성(達城)은

평소부터 이름난 고을.

봉긋봉긋 솟은 여러 산들은 하늘 가운데 연꽃을 깎아 놓은 듯하고,

굽이굽이 흐르는 한 줄기 강물은 기름진 들판을 금대(襟帶)처럼 두르고 있네.

도리(道里)가 균등하니 자못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낙양(洛陽)과 같고

막부(幕府)가 깊고 엄숙하니 감당나무 그늘 아래에 머무르는 것 같네.745)

<sup>738)</sup> 금성탕지(金城湯池) : 방비가 굳고 단단한 성(城).

<sup>739)</sup> 멀리까지~들리네: 『노자(老子)』80장에, "개와 닭소리가 서로 들린다.[鷄犬之聲相聞]"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인구가 조밀(稠密)하거나, 태평성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sup>740)</sup> 빈기(豳岐) : 빈주(豳州)의 기산(岐山)이 주(周) 나라의 발상지이므로 뒷사람이 제왕의 발상지를 들어 빈기(豳岐)라 한다.

<sup>741)</sup> 추로(鄒魯) : 추(鄒) 땅은 맹자(孟子)가 탄생한 곳이며, 노(魯) 나라는 공자(孔子)가 탄생한 곳이다. 이는 공맹(孔孟)의 유학을 힘써 닦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sup>742)</sup> 대농(大農) : 대사농(大司農). 국가의 세금·곡식·염철(鹽鐵) 등 재정을 수지(收支)를 맡던 관리로, 구경(九卿)의 하나였다.

<sup>743)</sup> 경용(經用) : 날마다 일정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sup>744)</sup> 방백(方伯) : 관찰사의 다른 이름. =도백(道伯).

<sup>745)</sup> 당음(棠陰) : 감당나무 아래의 그늘이란 뜻으로 어진 관리의 아름다운 정사를 말하는데, 흔히 감사(監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周)나라 때 소공(召公)이 북연(北燕)에 봉해져서 감당나무 아래에서 어진 정사를 펼쳤는데, 소공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소공을 그리워해 감당나무를 감히 베지 못하면서 감당시(甘棠詩)를 지어 기렸다.

온 고을 군민(軍民)을 거느려야 하니 맡긴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

사방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체모(體貌)가 남다르네.

선화당(宣化堂)은 어찌나 낮고 좁은지

원수부(元帥府)의 위의를 이루지 못하였네.

아마도 전쟁 초기746)라 건물을 짓는 것이 조잡하였으며

하물며 지금엔 집도 낡고 서까래도 무너졌음에랴!

첩고(疊鼓)와 명가(鳴笳)<sup>747)</sup>는 삼엄(森嚴)한 유영(柳營)의 절도이고<sup>748)</sup>

짧은 처마와 평평한 주춧돌은 발사(茇舍)749)의 규모일세.

곤월(閩鉞)750)의 위엄을 드러낼 수는 없어도

번얼(藩臬)751)의 막중함을 손상시킬 정도는 아니었네.

그러므로 개건(改建)의 논의가 있어 전 호관들은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다만 흥작(興作)의 어려움이 있어 천취(遷就)752)가 여기에 이르렀네.

외람되게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욕되게도 감사(監司)의 임무753) 맡았으니

어려운 고비를 겪은 것은754) 이미 우낭중(虞郎中: 虞詡)의 이기(利器)만 못하고

<sup>746)</sup> 전쟁 초기 : 선화당이 대구로 옮겨진 것이 1601년이므로, 여기서의 전쟁은 정유재란(1597) 으로 판단된다.

<sup>747)</sup> 첩고(疊鼓)와 명가(鳴笳): 『성호사설』「인사문」, <첩고명가> 조에, "응가와 첩고는 길사(吉事)로 떠날 때의 문의(文儀)이며, 명가와 뇌고는 군사 일로 떠날 때의 무비(武備)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sup>748)</sup> 유영(柳營)의 절도 : 한 문제(漢文帝) 때 흉노가 크게 변방을 침입하자 주아부(周亞夫)로 하여금 세류(細柳)에 진을 치게 하였는데, 순시하던 문제가 이 진영의 군율(軍律)이 엄한 것을 보고는 극찬하고 돌아왔던 고사가 있다. 『한서(漢書)』「주아부전(周亞夫傳)」 참고.

<sup>749)</sup> 발사(茇舍) : 군사들이 야영하는 막사.

<sup>750)</sup> 곤월(閫鉞) : 곤(閩)은 곤수(閩帥) 즉, 장군을 말한다. 곤월은 전쟁에서 장군이 지니는 부월 (斧鉞)로, 본문에서는 관찰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sup>751)</sup> 번얼(藩臬) : 번(藩)은 봉건 시대의 제후의 나라를 지칭하며, 얼(臬)은 얼사(臬司)라는 뜻으로 안찰사(按察使)의 관아(官衙)와 같으니, 본문에서는 관찰사의 의미로 쓰였다.

<sup>752)</sup> 천취(遷就) : 자신을 낮추어 영접함. 격을 낮추어 나아감. 혹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sup>753)</sup> 순선(旬宣) : 감사(監司)의 직무를 말한다. 『시경(詩經)』「대아(大雅)」<강한(江漢)>편의 "임 금님이 소호에게 명하시기를, 왕명을 두루 선포하라 하시다.[王命召虎 來旬來宣]"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sup>754)</sup> 착절반근(錯節盤根)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근착절(盤根錯節)을 만나지 아니하면 잘 드는 연장[利器]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반근(盤根)은 오래 된 나무의 뿌리가 굴곡(屈曲)된 것이요, 착절(錯節)은 나무의 마디가 착잡한 것이다. 이 말은 어려운 고비를 당하여야 훌륭한 솜씨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詡笑曰難者不避易者必從臣之節也不遇盤根錯節蕪以别堅利此乃吾立功之秋怪吾子以此相勞也

가벼운 털옷을 입고 관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또한 양숙자(羊叔子: 羊祜)<sup>755)</sup>의 풍류에 못 미치네.

결국 나의 못난 정사(政事)가 재앙을 불렀으니,

갑자기 놀랍게도 회록(回祿)756)의 변괴(變怪)가 생겼다네.

화염이 하늘에 가득해 백 년 동안 살았던 집을 태워버렸고

아득히 날아오르는 잿더미 1겁(劫)의 세계를 없애버렸네.

진정 곤륜산(崑崙山)의 옥(玉)이 함께 불탔지만757)

그래도 노전(魯殿)758)만은 홀로 남았다네.

모두들 나에게 말했네. "허물어진 지 오래되어 고쳐 짓자는 의론이 이미 있었으니,

지금이 그 때입니다. 어찌 함께 움직여 중수(重修)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옛것은 헐어내고 새것을 도모해

좋은 날 잡아 공사를 시작했네.

금호(琴湖)759)에서 돌을 옮기고

화산(花山)760)에서 목재를 베어

고용된 군졸에게 천금의 재물을 뿌리고

솜씨 좋은 장인들에게 100일로 기한을 잡았네.

풍월의 도끼는 반수(般垂)761)의 공(功)을 다투어 연주하니

기둥과 서까래 단청으로 화려한 건물762)이 완성되었네.

계단 3급(級)을 더한 것은 혁혁(赫赫)하게 백성들이 추앙하게 하려는 것이고

<sup>755)</sup> 양숙자(羊叔子): 진(晉) 나라 때의 장군(將軍) 양호(羊祜)를 가리킨다. 양호는 장군으로 군중 (軍中)에 있으면서 항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갑옷도 입지 않고, 가벼운 갖옷에 느슨한 띠의 홀가분한 차림으로 지냈다고 한다.

<sup>756)</sup> 회록(回祿) : 불귀신의 이름인데, 보통 화재의 뜻으로 쓰인다.

<sup>757)</sup> 곤륜산~불탔지만: 『서경(書經)、윤정(胤征)』에 "불이 곤륜산 등성이를 태우면, 옥과 돌이 모두 불탄다.[火炎崑岡 玉石俱焚]"고 한 데서 온 말로, 원래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현우 선악 (賢愚善惡)이 똑같이 해를 입게 됨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임금이 하사한 교서 (敎書)、유서(諭書)、갑주(甲胄)가 타버렸음을 말하고 있다.

<sup>758)</sup> 노전(魯殿) : 노전영광(魯殿靈光). 한(漢) 나라 경제(景帝) 때 노공왕(魯恭王)이 세운 영광전 (靈光殿)을 말한다. 한 나라가 중간에 쇠약해져서 도적들이 횡행함으로 인해 미앙궁(未央宮)과 건장전(建章殿) 등의 궁전들이 모두 화를 당하여 무너지고 파괴되었으나, 영광전만은 홀로 우 뚝하게 보존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sup>759)</sup> 금호(琴湖) : 경상북도 경산군 금호면

<sup>760)</sup> 화산(花山) : 경상북도 신녕(新寧)의 옛 지명.

<sup>761)</sup> 반수(般垂) : 요(堯) 임금 때의 공수(工倕)와 춘추 시대의 공수반(公輸般)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이름난 장인(匠人)이었다.

<sup>762)</sup> 윤환(輪奐) : 집이 우뚝하고 규모가 넓은 것을 말한다.

헌의 여섯 기둥 사이를 열어 둔 것은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함일세. 생각해보니 성상께서는 궁실이 검소하여 감히 화려함을 보이지 않으셨고 외방(外方)에겐 당계(堂階)의 존귀함 알려 승선(承宣)의 체통 중하게 하셨네. 몇 일되지 않아 완성됨을 이미 고했으니 어찌 후인들에게 영원히 가르침을 내리지 않으리오? 가만히 생각하니 한 도(道)를 안찰(按察)하는 신하는 그 임무가 가장 막중하니 한 나라 풍교(風敎)가 나오는 바이며 만백성의 기쁨과 슬픔이 말미암는 바이네. 진실로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남을 거느림에 고을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어떻게 위엄을 펼치고 은혜를 베풀어 민생을 화합하고 편안케 하리오? 이 당(堂)에 거처하기에 부족하다면 또 어떻게 상헌(常憲)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뒤에 올 군자들이여! 바라건대, 힘쓰고 노력해 혹이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늠름(凜凜)히 청고(淸高)의 절개763)를 스스로 간직하고 긍긍(兢兢)히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듯 조심하라. 인(仁)은 과독(寡獨)764)한 이를 품어주는 것이고 무(武)는 강성함765)을 억제하는 것이라네. 큰 집이 높이 임하고 있는 것은 한사(寒士)들을 크게 덮어주려는 것이고 겹 문을 탁 틔어 놓은 것은 백성들의 정(情)과 위[上]를 소통하려는 것이네. 재앙과 경사의 이치가 지극히 밝으니 형살(刑殺)을 삼가고

명실(名實)의 사이는 쉽게 현혹될 수 있으니 출척(黜陟)은 공정해야 하네. 기계를 수리하고 병사(兵士)를 모으는 것은 비상시<sup>766)</sup>를 대비하지 않음이 없고

<sup>763)</sup> 빙얼(冰蘖) : 청고(淸苦)한 지절(志節)을 말한다. 청빈한 생활로 얼음을 마시고 나무의 움을 먹는다는 '음빙식얼(飮氷食蘖)'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sup>764)</sup> 과독(寡獨): 나이가 많지만 처자식이 없는 사람. =환과고독(鰥寡孤獨).

<sup>765)</sup> 강량(强梁): 힘이 억세고 함부로 날뜀. 이 말은 주돈이의『통서(通書)』에 나오는 것으로, 주돈이는 사람의 기품(氣稟)의 성(性)은 강유선악(剛柔善惡) 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선은 의(義)、직(直)、단(斷)、엄의(嚴毅) 간고(幹固)이고, 강악은 맹(猛)、애(隘)、강량(强梁)이며, 유선은 자(慈)、순(順)、손(異)이고, 유악은 나약(懦弱)、무단(無斷)、사영(邪佞)이라고 하였다.

<sup>766)</sup> 음우(陰雨) : 전란이나 비상시를 말함. 『시경(詩經)、빈풍(豳風)』「치효(鴟鴞)」 편에, "장맛비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 가져다가 창과 문을 단속한다면 너희 낮은 백성이 감히 나를 넘보랴.

유학을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는 것은 또한 풍화(風化)의 근원과 관계되기 때문이네.

그것에 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네.

오호라!

감사의 높은 깃발767)이니, 장부의 관직으로는 이미 영화롭고

방장(方丈)768)같은 화려한 당(堂)이니, 처자들의 봉양 또한 넉넉하네.

이 은혜 다 갚으려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이 아니라네.

애오라지 짧은 글을 지어

선송(善頌)을 대신하네.

어기영차[兒郞偉],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바다 가운데 대판(大板)과 적관(赤關)769)이 있네.

나는 허리에 3척 검(劒)을 차고 있으니,

큰 고래 피를 쏘아770) 부상(扶桑)이 붉게 물들이겠네.

어기영차[兒郞偉], 들보를 서로 던지니

추풍령(秋風嶺)、조령(鳥嶺)、팔량치(八良齊)는

어째서 오랑캐들이 들어오도록 놓아두었나?

용사(龍蛇)771) 때의 후회막급772)을 전철(前轍)773)로 삼아야겠네.

어기영차[兒郞偉],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sup>[</sup>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sup>767)</sup> 고아대독(高牙大纛): 대장군의 진영에 세우는 상아로 장식한 큰 깃발.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장(儀裝)을 범칭함.

<sup>768)</sup> 방장(方丈): 식전방장(食前方丈). 사방 한 장(丈)이나 되는 상에 가득 차려진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치한 생활이나 먹을거리가 풍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sup>769)</sup> 대판(大板)과 적관(赤關) : 모두 일본(日本)의 지명이다.

<sup>770)</sup> 큰 고래 피를 쏘니 : 장경(長鯨)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피를 쏜다는 말은은(殷) 나라 임금 무을(武乙)이 가죽 주머니에 피를 담아서 나무에 걸어 두고 활로 쏘아 터뜨리고는, "내가 하늘과 싸워서 이겼다."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남의 관찰사가 되어 일본의침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sup>771)</sup> 용사(龍蛇): 일반적으로 간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1592년 왜가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뜻한다.

<sup>772)</sup> 서제(噬臍): 사향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될 때에 제 배꼽의 향내 때문이라 하고 배꼽을 물어뜯는다는 말로,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만약 미리 도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꼽을 씹으려 한들 되겠습니까?[若不早圖 後君噬臍其及之乎]"라는 구절에서 유래함.

<sup>773)</sup> 복철(覆轍): =복철지계(覆轍之戒). 앞 수레가 넘어지면 뒷 수레는 이것을 보고 경계하는 것이니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음을 말한다.

만 리 푸른 바다엔 하늘과 물이 잠겼네. 임금의 은혜 깊고 얕음 비교하지 말라. 때때로 새 또한 깊은 못을 메운다네. 어기영차[兒郞偉],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뭇 별들은 또렷이 북극성을 에워싸네. 성군께서 내려주신 윤강록(倫綱錄)을 어찌 집집마다 읽지 않으리오? 어기영차[兒郞偉], 들보를 위로 던지니 오로지 하늘만이 크고 넓어 형용하기 어렵네. 만약 상제(上帝)가 상서로움과 길함을 내리기 바란다면 먼저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 없어야 하네. 어기영차[兒郞偉],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백성들은 바로 나의 군주(君主)의 어린 자식이니, 감히 받들어 모셔 은혜롭게 보호하지 않겠는가? 삼가 썩은 새끼로 달리는 말을 몰듯 해야 하네.774) 바라건대, 상량(上樑)한 뒤에 바람은 사납지 않고 비는 고르게 내려 정치가 잘 거행되고 교화가 행해지며, 해마다 풍년이 이어져 백성들은 편안히 밭을 갈아 먹고 샘을 파서 마시며775), 왕령(王靈)은 멀리까지 미쳐 변방(邊方)에도 풍진(風塵)의 근심 없기를.

#### 임자년(壬子年) 윤5월 초2일

첩보(牒報)776)할 일입니다. 본영(本營)의 관아(官衙) 및 징청각(澄淸閣)이 불타버린 자세한 상황은 겨우 계문(啓聞)으로 알렸습니다만7777, 관아와 정당(政堂)이 모두 한꺼번에 불타버려 현재 몸을 의탁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한 도(道)의 정사를 베풀 때에 아문(衙門)은 체통[觀瞻]에 관련되어 있으니, 때에 맞춰 경영하여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진(大賑)778)을 겨우 끝나자마자 또 농사철을 맞았으니, 이때 공사를 시

<sup>774)</sup> 후색(朽索): 백성들을 대하길 매우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뜻. 이 말은 『서경(書經)』에 "내가 만백성에 임함에 송구함이 썩은 밧줄로 여섯 말[馬]을 제어함 같다[予臨非民 懍乎若朽索之馭 六馬]."라는 구절에서 유래 한 것이다.

<sup>775)</sup> 경착(耕鑿): 밭을 갈아 먹고 우물 파서 마시는 것으로, 세상이 태평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격양가(擊壤歌)의 "해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농사지어 먹고 사니 황제의 힘이 나에게 무엇이 미침이 있으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는 것에 유래한 말이다.

<sup>776)</sup> 첩보(牒報):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혹은 그 보고서.

<sup>777)</sup> 위유재과(爲有在果): 이두. '호이시견과'로 읽으며, '하였거니와'라는 뜻이다.

작함은 실로 어렵습니다<sup>779)</sup>. 지금의 형세(形勢)는 하루가 급한 처지이니, 역량(役糧)·철 물(鐵物)ㆍ군정(軍丁) 등의 일은 편의에 구별(區別)할 방법이 있지만, 재목(財物)과 재목 (材木)는 다른 관사(官舍)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화당(宣化堂)과 징청각(澄淸閣)은 엉 성하게[草草] 지을 수 없으니, 반드시 덩치 큰 나무를 얻은 뒤에야 모양(模樣)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읍(近邑)에서는 사사롭게 기르는 산에는 합당한 재목(材木)이 없 을 뿐만 아니라<sup>780)</sup>, 이번에 불탄 영사(營舍)가 80여 카[間]입니다. 선화당(宣化堂)은 비 록 다행히 연이어 타는 것은 면했지만, 기둥과 서까래는 그을리고 상하여 장차 무너져 내리려하므로 평소의 나무기둥으로 지탱하려 하면 떠받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마 땅히 모두 경영(經營)하여 지으려 하면 100여 칸에 이릅니다. 선화당(宣化堂)은 이제 본 래의 재목(材木)으로 먼저 개건(改建)하게 하므로<sup>781)</sup>, 들여와야 될 큰 재목은 좌(左) · 우 도(右道) 연해(沿海)나 육지(陸地)의 봉산(封山)에서782) 특별히 벌목을 허락하여 경영하 여 짓는 밑바탕으로 삼아주십시오783). 저의 직분은 이미 임기가 다하여 비록 재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는 없으나784), 불에 태워버린 나머지 볼 것이 없으므로 근심에 잠 기고 기(氣)가 꺾이지만, 임시로 정사를 베푸는 것이 매우 구차하지만 부득불 이와 같이 첩보(牒報)하니785), 100여 칸에 들여올 재목은 급히 벌목을 허락하도록 하기786) 위해 서<sup>787)</sup> 비변사에 제송(題送)<sup>788)</sup>해 주십시오. 내영사(內營舍)를 개건하는 일도 각별하니, 올린 첩보(牒報)에 따라 벌목해 사용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연읍(沿邑)의 봉산(封山)은 이미 작년에 풍락(風落)을 겪었고, 배는 화재로 소실된 것이 또한 많기에 배와 재목에 관한 정사는 매우 근심스럽습니다<sup>789)</sup>. 이런 뜻을 잘 헤아려, 사사롭게 경영한 산소(山 所)도 얻기 어려우므로 십분 긴급한 것만 참작(參酌)하여 대략 벌목해 쓰게 해 주십시

<sup>778)</sup> 대진(大賑) : 큰 흉년을 만나 대대적으로 구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up>779)</sup> 시호의(是乎矣): 이두. '이오되'로 읽으며, '이오되'라는 뜻이다.

<sup>780)</sup> 뿐불유(叱分不喩) : 이두. '뿐아닌디'로 읽으며, '뿐만 아니라'의 뜻이다. '叱分'은 '分叱', '衆', '兺'으로 쓰기도 하며 '뿐'으로 읽는다.

<sup>781)</sup> 위거호(爲去乎): 이두. '하거온'이라고 읽으며, '하니' '하므로'라는 뜻이다.

<sup>782)</sup> 랑중(良中): 이두. '아해'라고 읽으며, '에' '에게'라는 뜻이다.

<sup>783)</sup> 위호의(爲乎矣) : 이두. '하오되'라고 읽으며, '하되'의 높임말이다.

<sup>784)</sup> 시호내(是乎乃): 이두. '이오니'로 읽으며, '이나' '이오나' '이지마는'의 뜻이다.

<sup>785)</sup> 위거호(爲去乎): 이두. '하거온'이라고 읽으며, '하니' '하므로'라는 뜻이다.

<sup>786)</sup> 행하(行下): 고문서(古文書)에서 행하(行下)는 상전이나 주인이 아랫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돈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윗사람이 내리는 분부나 명령, 혹은 그 분부나 명령의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up>787)</sup> 위지위(爲只爲): 이두로 '호기삼'으로 읽으며,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하려고'의 뜻이다.

<sup>788)</sup> 제송(題送) : 어떤 사건이나 일을 위해 지령문을 써 보냄.

<sup>789)</sup> 시여호(是如乎) : 이두. '이다온'이라 읽으며, '이라 하는' '이라 하므로' '이라 하더니'라는 뜻이다.

오. 벌목할 나무와 뿌리는 또한 반드시 낱낱이 낙인을 찍고 봉표(封標)<sup>790)</sup>해, 적(籍)에 의거해 혼잡을 가져오는 폐단을 없게 할 것입니다. 통영(統營)과 수영(水營)에도 또한 이 말로 관문(關門)을 보내 분부(分付)하실 일입니다.

### 경자년(庚子年, 1720) 등록(謄錄)

6월 초8일<sup>791)</sup>. 승전색(承傳色)<sup>792)</sup>이 와서 시약청(侍藥廳)<sup>793)</sup>에 이르길, "중궁전(中宮殿)에서 사전(四殿)에 하교(下敎)하시길 '문안을 우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속히 들어와 있던 승정원(承政院)과 옥당(玉堂)이 대전에 아침 문안을 드리니, 승전색(承傳色)이 내전(內殿)의 하교(下敎)를 전하길, "문안(問安)하러 비록 들어왔지만 지금은 증후가 더 심해져서 하답(下答)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중궁전(中宮殿)、세자궁(世子宮)、빈궁(嬪宮)에서 문안을 드리니, 하답(下答)에 이르길, "알았다.[知道]"<sup>794)</sup>라고만 하셨다.

승전색(承傳色)이 와서 말하기를, "문안(問安)은 비록 들였지만, 상께서는 하비(下批)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전(內殿)에서 하교(下敎)하신 일로 이와 같으니, 그 사연(辭緣) 을 전합니다."라고 했다.

영상(領相)이 말하기를, "전하의 징후가 지금 어떠하신가?"라고 하니,

승전색(承傳色)이 말하기를, "지금은 황급(遑急)해 단지 인삼과 차만 복용하십니다."라고 하였다.

한 건의 장계가 올라왔다.

초8일. 명정서사(銘旌書寫) 민진원(閔鎭遠)795)이 한 가지 영(令)을 내기를, "빈궁전(嬪宮

<sup>790)</sup> 봉표(封標): 나라에서 벌채(伐採)를 금지하는 산의 경계에 세우는 표(標).

<sup>791) 6</sup>월 초8일 : 이 날은 숙종(肅宗)이 승하한 날이다.

<sup>792)</sup> 승전색(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구실을 함. 승전빗이라고 도 함.

<sup>793)</sup> 시약청(侍藥廳) : 조선조에 임금이 병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내의원(內醫院) 도제조(都提調) 이하 모든 관원이 이에 종사함.

<sup>794)</sup> 지도(知道) : 왕이 알았다는 뜻을 표하는 말. 글에서만 씀.

<sup>795)</sup> 민진원(閔鎭遠): 1664~1736.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 아버지는 유중(維重)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우참찬 진후(鎭厚)의 동생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글씨를 잘 쓰고 문장에 능해 강릉의 송담서원비(松潭書院碑), 선산의 고려예의판서농암선생신도비(高麗禮儀判書籠巖先生神道碑), 여주의 여양부원군민유중신도비전액(驪陽府院君閔維重神道碑篆額) 등을 썼다. 저서로는 『단암주의丹巖奏議』、『연행록 燕行錄』、『단암만록丹巖漫錄』、『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등이 전한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殿)의 일은 유교(遺敎)를 크게 행한 것입니다. 대개 생각해보면, 자정전(資政殿)이 좁아 개축할 때 민력(民力)을 소비했기 때문에 옮겨 지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전(宣政殿)은 이미 어소(御所)로 지어진 곳으로, 자정전(資政殿)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정전(資政殿)으로 행차하심이 옳습니다."라 했다. 한 건의 장계가 올라왔다.

초8일. 이조수릉관(吏曹守陵官)은 여성군(礪城君) 즙(楫)<sup>796)</sup>이며, 시릉관(侍陵官) 오두환(吳斗奐)이며,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 3명은 송상기(宋相琦)、이관명(李觀命)、신임(申銋)이며, 당청(郞廳) 8인은 송성명(宋成明)、윤석래(尹錫來)、김희로(金希魯)、권상일(權相一)、이천기(李天耆)、김두벽(金斗壁)、이직(李溭)、정계장(鄭啓章)이며,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 3인은 신임(申銋)、권성(權恉)、유집일(兪集一)이며, 당청(郞廳) 8인은조상경(趙尙絅)、이명언(李明彦)、민진영(閔鎭永)、이희주(李熙疇)、한배의(韓配義)、조영복(趙榮福)、최이주(崔爾柱)、이단태(李端泰)이며,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提調) 3인은 민진원(閔鎭遠)、이관명(李觀命)、정호(鄭灝)이며, 당청(郞廳)은 조상건(趙尙健)、홍정필(洪廷弼)、민응수(閔應洙)、원명직(元命稷)、김순행(金純行)、성순석(成順錫) 등이다.한 건의 장계가 올라왔다.

초8일. 대왕께서 습정(襲正)하셨는데, 정각 유시(酉時)였다. 대행대왕(大行大王)<sup>797)</sup>께서 목욕하시고 나자 중전(中殿)、세자(世子)、약방(藥房)、정원(政院)、옥당(玉堂)의 2품 이 상, 육조(六曹)、양사(兩司) 장관(長官)들이 문안하니 하답(下答)을 "망극(罔極)하다."라고 하셨다. 빈궁(殯宮)、약방(藥房)、정원(政院)、옥당(玉堂)에서 문안(問安)하니 하답(下答)을 "망극(罔極)하다."라고 하셨다.

경자년(庚子年, 1720) 6월 초10일 상주(尙州)에 있을 때, 오시(午時)에 도착한[到付]<sup>798)</sup> 분발(分撥)<sup>799)</sup> 내에

대행대왕께서 초8일에 승하하셨는데,800) 예조의 관문(關文)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분발 (分撥)은 계수주인(界首主人)801) 고목(告目)802)을 이미 적시에 올렸던 것이다. 관문이 도

<sup>796)</sup> 여성군(礪城君) 즙(楫) : 종실인 이즙(李楫)을 가리킨다.

<sup>797)</sup> 대행대왕(大行大王) : 임금이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sup>798)</sup> 도부(到付) : 공문이 도달한다, 혹은 도달한 공문을 수령한다는 뜻이다. 수령(守令)의 보고 내용에 대한 관찰사의 회답을 도부(到付)라 하기도 하였다.

<sup>799)</sup> 분발(分撥): 조선 시대에, 승정원의 관보(官報)인 조보(朝報)를 발행하기 전에 그 긴요한 사항을 먼저 베껴서 돌리던 일을 가리킨다.

<sup>800)</sup> 교시여위호등이(敎是如爲乎等以): 이두. '이시다호온돌로'로 읽으며, '이시다 하온 줄로' '이 시다 하온 바로'의 뜻이다.

<sup>801)</sup> 계수주인(界首主人) : 서울에 있으면서 각도 감영(監營)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계수번 (界首番).

<sup>802)</sup> 고목(告目) : 고목(告目) : 조선 시대에, 각사(各司)의 서리 및 지방 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착하기도 전에 거애(擧哀)803)할 수 없어 편안치 않았었는데, 곧장 거애(擧哀)했다. 사또는 천담복(淺淡服)804)을 입고,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오각대(烏角帶)를 두르고, 백피혜(白皮鞋)를 신고 객사(客舍)로 나아갔다. 전패(殿牌)805)는 내지 않고 단지 향탁(香卓)만설치했다. 집사(執事)가 향(香)을 피우면, 곡을 하여 진애(盡哀)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했다. 다시 객사(客舍)로 돌아와 빈 가마니[空石806)]를 폈다. 저녁 이후에 베로 만든 두건[布頭巾]을 착용하고 밤을 보냈다. 영장(營將) 홍하석(洪夏錫)、목사(牧使) 조정만(趙正萬) 또한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오각대(烏角帶)를 두르고, 백피혜(白皮鞋)를 신었다. 산관(散官)807)과 유품(儒品)808)들은 흑관(黑冠)을 쓰고, 백의(白衣)를 입고, 백대(白帶)를 두르고 동서(東西)로 나누어 겹줄[重行]로 서서 곡을 하여 진애(盡哀)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했다.

동정(東庭) 군관(軍官) 한량(閑良) 송우주(宋遇周)

관찰사(觀察使) 오(吳) 아무개809) 상주영장(尙州營將) 홍하석(洪夏錫)

심약(審藥) 박준(朴俊)

유품중문외(儒品中門外)

영리(營吏) 본주아전(本州衙前) 중문외(中門外) 대문내(大門內) 대문외 (大門外)

경내(境內) 백성(百姓)

#### 서정(西庭)

상주목사(尙州牧使) 조정만(趙正萬) 진사(進士) 성숙(成淑)

전현령(前縣令) 홍도규(洪道達)

성덕징(成德徵)

전부사(前府使) 황익재(黃翼再)

이증엽(李增曄)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함. 또는 그때에 올리던 간단한 문서 양식.

<sup>803)</sup> 거애(擧哀) : 국상(國喪)이 있을 때에 망곡(望哭)을 하고 나서 복(服)을 입는 것.

<sup>804)</sup> 천담복(淺淡服) : 엷은 옥색으로 된 제복(祭服).

<sup>805)</sup> 전패(殿牌): 옛날 임금의 상징으로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전(殿) 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출장 간 중앙 관원이나 그 고을의 원이 여기에 배례(拜禮)하였다. 만약 훼손하면 본인은 물론, 수령, 그 고을까지 불경으로 처벌당하였음.

<sup>806)</sup> 공석(空石): 아무 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가마니를 말한다.

<sup>807)</sup> 산관(散官) :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한산(閑散)한 벼슬. 또 그 벼슬아치.

<sup>808)</sup> 유품(儒品) : 유생품관(儒生品官). 유생(儒生)으로서 유향소(留鄕所)등의 직(職)으로 품계(品階)를 받은 사람.

<sup>809)</sup> 당시의 경상도관찰사는 오명항(吳命恒, 1673~1728)이다. 『경상도선생안』에 따르면, 그는 숙종 45년(己亥, 1719) 5월 4일부터 이듬해(庚子, 1720) 10월 3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급제(及第) 황준(黃俊) 전현령(前縣令) 손경석(孫景錫)

일(一). 부음(訃音)을 들은 지 2일 후 조곡(朝哭)<sup>810)</sup> 때에 비로소 베로 만든 사모(沙帽)<sup>811)</sup>를 쓰고, 베로 만든 단령(團領)<sup>812)</sup>을 입고, 베로 만든 각대(布角帶)를 띠고 정청 (正廳)에 나아가 집사(執事)가 향(香)을 피우면 곡을 하여 진애(盡哀)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하는데, 다만 향탁(香卓)만 설치했다. 영장(營將)、목사(牧使) 및 산관(散官)과 유품 (儒品)들은 매일 모여 곡을 하는데, 집사(執事)를 두었다.

일(一). 부음(訃音)을 들은 날로부터 성복(成服)<sup>813)</sup>까지 날마다 모여 곡(哭)하기를 위의의식대로 거행했다. 베로 만든 단령(團領)을 입고, 베로 만든 사모(沙帽)를 쓰고, 베로 만든 각대(布角帶)를 띠고 【조곡(朝哭)은 새벽에, 석곡(夕哭)<sup>814)</sup>은 낮에 한다.】때 맞게 정청(正廳)에 나아갔다. 집사(執事)가 백의(白衣)를 입고, 흑두건(黑頭巾)을 쓰고 흥(興)、배(拜)를외치면, 꿇어앉아 향을 피우고, 부복(俯伏)해 곡을 하여 진애(盡哀)했다. 산관(散官)과 유품(儒品)들도 매일 모여 곡했다.

◎ 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815)한 일. 절도사를 통해 달하(達下)다음과 같이 하교(下敎)하셨다.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 이번 6월 초8일에 승하(昇遐)하셨으니,816) 제도(諸道)의 대소(大小) 대신(大臣)들과 박관(朴官)817)들은 문서가 도착하는 날 정청(正廳)에 향탁(香卓)을 설치하고, 소복(素服)을 입고 【오사모(烏沙帽)를 쓰고, 흑각대(黑角帶)를 띤다.】 뜰에들어와, 사신(使臣)들은 동쪽에, 외관(外官)들은 서쪽에 겹줄[重行]로 서서 북향으로 꿇어앉는다. 집사(執事)가 향을 피우면, 사신(使臣)과 외관(外官)들은 부복(俯伏)하여 곡을하여 진애(盡哀)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부음(訃音)을 들은 지 6일 뒤에 성복(成服)하고, 그 날 이른 새벽에 정청(正廳)에 향탁(香卓)을 설치하면, 소복(素服)을 벗고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뜰에 들어가 꿇어앉는다. 집사(執事)가 향을 피우면 사신(使臣)과

<sup>810)</sup> 조곡(朝哭) : 상제(喪制)가 소상(小祥) 때까지 이른 아침마다 죽은 사람의 위패 앞에서 우는 일. 또는 그런 울음.

<sup>811)</sup> 사모(沙帽) : 관복을 입을 때 쓰는 사(紗)로 짠 벼슬아치의 모자. 사모(紗帽).

<sup>812)</sup> 단령(團領) : 옷깃을 둥글게 만든 관원의 공복(公服). 이는 북방 민족이 입던 옷으로, 중국에 서 유행되다가 고려 때 명(明) 나라로부터 들어와 공복으로 된 것임.

<sup>813)</sup> 성복(成服) :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사흘에서 닷새 뒤) 상제(常制)들이 일제히 상복 차림을 하는 것.

<sup>814)</sup> 석곡(夕哭) : 상제(喪制)가 소상(小祥) 때까지 저녁마다 죽은 사람의 위패 앞에서 우는 일. 또는 그런 울음.

<sup>815)</sup> 상고(相考) : 서로 비교하여 고찰한다는 뜻이다. 두 관청 사이에 상호 협조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sup>816)</sup> 교시백곤(敎是白昆): 이두로 '이숩곤'으로 읽으며, '이옵고는'의 듯이다.

<sup>817)</sup> 박관(朴官) : 지위가 낮거나 봉급이 적은 관리인 듯하다. 박관(薄官). 박환(薄宦).

외관(外官)들은 부복(俯伏)하여 곡을 하여 진애(盡哀)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졸곡(卒哭)818) 후에 복(服)을 바꾸는 것과 연(練)、상(祥)、담(禪)819)에 복(服)을 바꾸는 절차는 관원(官員)들이 같다.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 및 절도사(節度使)、목사(牧使) 이상(以上)은 사람을 보내 전문(箋文)을 올리고[進箋] 조문[陳慰]820)한다. 2품 이상의 외관(外官)들은 비록 목사(牧使)가 아니더라도 또한 전문(箋文)을 올리며, 연과관(沿邊官)은 거애(擧哀)하지 말라고 하셨다.821) 그렇지만 팔도(八道) 및 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에822) 병조(兵曹)에서 발마(發馬)하여 알리라823)고 달하(達下)824)하였습니다825). 달하(達下) 내용을 봉심(奉審)하여 각 읍에 알려 시행하게 한 것을 상고할 일. 복제(服制) 의주(儀註)826)의 초본(草本)에서 이미 분부했으니, 즉시 사서(私書)를 미루어 볼 것. 영구(營履)는 갈혜(葛鞋)로 공복(公服)과 단령(團領)을 삼고, 허리에 매는 마대(麻帶)는 생마(生麻)로 바꾸고, 각대(角帶)를 베로 싸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합당한 듯하다. 경자년 6월 12일 대구와 동래에 분부하신 일이다.

일(一). 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한 일. 이번의 국휼(國恤)은 제도가 별단(別單)의 관문(關文)으로 나간 뒤에 등록(謄錄)한 것이니 상고(相考)하여 행한다. 경자년(庚子年) 초10일에 완성되고, 같은 달 13일에 이 관문이 도착했다. 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관(希冠)<sup>827)</sup>을 굴관(屈冠)으로 바꾸되 굴관(屈冠) 아래에는 마땅히 베로 만든 두건(頭巾)을 착용하고, 최복(衰服)의 제도는 한결같이 사가(私家)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따른 다음 백관(百官)들의 제도는 별도로 마련한다.

일(一). 종친(宗親)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은 참최(斬衰) 3년복을 입는데, 베로 만든 관[布冠]【양(梁)<sup>828)</sup>은 3품(品) 이상은 3양(梁), 5품(品) 이상은 2양(梁), 9품(品) 이상은 1양

<sup>818)</sup> 졸곡(卒哭) :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을 가려서 지냄.

<sup>819)</sup> 연(練)·상(祥)·담(禪): 모두 제사(祭祀)의 명칭으로 졸곡(卒哭) 후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올리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올리며, 15개월 만에 담제(禪祭)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sup>820)</sup> 진위(陳慰) : 국상(國喪)에 조문하는 것.

<sup>821)</sup> 위백유치(爲白有置): 이두. '호숣잇두'로 읽으며, '하였사옵니다', '하였사와도'의 뜻이다.

<sup>822)</sup> 랑중(良中): 이두. '아해'라고 읽으며, '에' '에게'라는 뜻이다.

<sup>823)</sup> 지위(知委): 기별이나 통지 등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알려준다는 뜻이다.

<sup>824)</sup> 달하(達下) :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뢴 문서를 왕세자가 보고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것을 이르는 말. 왕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은 계하(啓下)라고 함.

<sup>825)</sup> 위유치(爲有置): 이두. '하잇두'라고 읽으며, '하였다' '하였는지라'의 의미이다.

<sup>826)</sup> 의주(儀注) : 길흉(吉凶)의 행사 절차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다. 조선에서는 의주상정관(儀注 詳定官)을 두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 합당한 의전(儀典) 절차를 종래의 제도를 자 세하게 고찰해서 찬진(撰進)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의례절차를 모은 것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인데, 모든 국가적 행사는 대체로 이를 준용하였다.

<sup>827)</sup> 희관(希冠): 미상.

(梁)으로 하며, 삼노[麻繩]로 무(武)829)와 갓끈[纓]을 만든다.】、베로 만든 두건[布巾]、베로 만든 적삼[布衫]【매우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에 최벽령(衰僻領)830)、부판(負版)831)、엄임(掩袵)832)、대하척(帶下尺)833)、베로 만든 치마[布裙]【매우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마요질(麻腰絰)834)、마대(麻帶)、엄짚신[菅屨835)]、대나무 지팡이[竹杖]【망건(網巾)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흰색으로 선을 두르되, 금이나 옥으로 된 관자(貫子)는 제거한다.】를 더한다. 문무(文武) 음백 관(蔭百官) 중 현임[時任]으로 직명(職名)을 가진 자 [무관(武官)은 훈련원(訓練院) 습독(習讀)830 · 봉사(奉事) 이하 및 외방(外方)의 첨사(僉使)・만호(萬戶)・권관(權管)837)・별장(別將)에 제수된 자, 음직(蔭職)은 각 능전(陵殿)의 참봉(參奉) 및 사은숙배(謝恩肅拜)를 드리지 않은 초부직(初付職)과 외방(外方)의 감목관(監牧官)838)에 제수된 자이다.】전임[前銜839)]과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자840)【문무(文武)음관(蔭官)은 이전에 종이품(從二品)으로 실직(實職)을 지낸 자이다.】

일(一). 지팡이[杖] 【실친(實親) 종2품 이상, 육조(六曹)·삼사(三司)·승정원(承政院)·한성부(漢城府)·성 균관(成均館)·장예원(掌隷院) 이상의 장관(長官), 양도(兩都) 유수(留守)·외방(外方) 제도(諸道)의 감사(監司), 무관(武官) 중 현임[時位841] 대장(大將)·외방(外方)의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御使), 문무(文武) 음관(蔭官) 의 현임[時位] 및 일찍이 이와 같은 벼슬을 지낸[曾經] 이상(以上)인 사람】

일(一). 내시(內侍) · 사알(司謁) · 사약(司鑰) · 서방색(書房色) · 반감(飯監)은 백관(百官)의

<sup>828)</sup> 양(梁): 굴건(屈巾)이나 금량관(金梁冠)의 앞이마에서부터 우뚝 솟아올라서 둥그스름하게 마루가 져서 뒤쪽까지 닿은 부분. 굴건은 세 골이며, 금량관은 통골로부터 일곱 골까지, 관직의 품계에 따라 다르다.

<sup>829)</sup> 무(武): 굴관(屈冠)을 연결시킨 둘레.

<sup>830)</sup> 벽령(解領) : 벽령(辟領). 웃옷의 좌우 목 부분을 각 4치씩 재단하여 접어붙인 것인 적(適).

<sup>831)</sup> 부판(負版): 슬픔을 나타내려고 상복(喪服)의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베 조각이다. 원문의 '부 (負)' 뒤에 한 글자가 들어갈 만한 공백만 있고, 글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 '부판(負版)'의 '판(版)'이 누락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세종실록(世宗實錄)』134권, 오례(五禮)、흉례의식(凶禮儀式)、복제(服制) 참조.

<sup>832)</sup> 엄임(掩衽) : 웃옷의 양쪽에 허리 밑까지 길게 드리운 깃.

<sup>833)</sup> 대하척(帶下尺): 미상. 원문에는 협주(夾註) 표시가 없지만, 엄임(掩衽)의 협주로 간주할 경우 엄임의 옷깃이 띠 아래로 1척 정도 내려온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sup>834)</sup> 요질(腰絰):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허리에 띠는 띠.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듦.

<sup>835)</sup> 관구(菅屨): 엄짚신. 엄짚신은 상제(喪制)가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신는 짚신. 총을 드문드문 따고 흰 종이로 총 돌기를 감았다. 관구(菅屨). 관리(菅履). 엄신.

<sup>836)</sup> 습독(習讀) : 습독관(習讀官)의 준말. 조선조 때 훈련원(訓練院)의 종9품 무관직(武官職). 이 밖에 천문(天文)、의학(醫學)、한학(漢學) 등을 습독하는 습독관이 있음.

<sup>837)</sup> 권관(權管) : 변경(邊境)의 작은 진(鎭)에 둔 종9품 무관.

<sup>838)</sup> 감목관(監牧官) : 지방의 목장(牧場) 일을 맡아보는 종6품의 관직.

<sup>839)</sup> 전함(前銜): 이전의 벼슬. 전임(前任). 전직(前職).

<sup>840)</sup> 증경(曾經) : 일찍이 그 벼슬을 지낸 사람.

<sup>841)</sup> 시위(時位) : 시임(時任)이 아닌가 한다. 시임은 현임(現任) 또는 현직(現職)의 관원(官員)을 말한다.

실직자(實職者)와 같다.

일(一). 문무(文武) 백관(百官)、현임 산관(散官)의 공복(公服)은 단령의(團領衣) 【지극히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하고 가를 두른다.】、베로 싼 모자 【굵은 생포(生布)로 사모(沙帽)를 싸고, 철각(鐵角)을 제거하며, 베로 대(帶)를 만들어 뒤에 드리우도록 한다.】、베로 싼 각대(角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한다.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사모(沙帽)【입(笠)이면 흰색을 쓴다.】、베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한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베로 싼 사모(沙帽)를 착용한다.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짙은 옥색으로 물들인 옷[深染玉色衣]、오사모(烏沙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한다. 27개월의 담제(禪祭)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담제(禪祭) 후의 복(服)은 길복(吉服)이다.

일(一). 전임 중에서 시종(侍從)을 역임하여 최복(衰服)을 입을 인원(人員) 이외의 당하(堂下) 3품 이하 및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생도(生徒)842)는 백의(白衣)、백립(白笠)、생포의(生布衣)、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연제(練祭) 후에는 백의(白衣)、포대(布帶)로 3년을 마친다. 【학교(學校)에 들어갈 때에는 백두건(白頭巾)을 쓰며, 궁궐 [殿內]를 출입할 때는 흑두건(黑頭巾)을 쓴다.】

일(一). 종친(宗親) 1품(品) 이하 및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의 처(妻)는 자최복(齊衰服)을 1년이니, 대수(大袖)<sup>843)</sup>、긴 치마[長裙]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 、개두(蓋頭)<sup>844)</sup>、두수(頭霜)<sup>845)</sup> [조금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 、대비녀[竹釵]<sup>846)</sup>、포대(布帶)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쓴다.] 、포리(布履) [백면포(白綿布)로 만든다.] 를 착용한다. 졸곡(卒哭)후에는 백포(白布)、대수(大袖)<sup>847)</sup>、긴 치마[長裙]、개두(蓋頭)、두수(頭額) 및 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일(一). 문무(文武) 3품(品) 이하의 처(妻)는 흰 베[白布]로 만든 대수(大袖)、긴 치마[長裙]、개두(蓋頭)、두수(頭帮) 및 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졸곡(卒哭) 후에는 이를 벗는다.

<sup>842)</sup> 생도(生徒): 원문의 '생(生)' 뒤에 한 글자가 들어갈 만한 공백만 있고, 글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 '생도(生徒)'의 '도(徒)'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숙종실록(肅宗實錄)』, 46년 6월 8일조 참조.

<sup>843)</sup> 대수(大袖) : 원문에는 '목수(木袖)'로 되어 있으나, '대수(大袖)'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134권, 오례(五禮)、흉례의식(凶禮儀式)、복제(服制) 참조.

<sup>844)</sup> 개두(蓋頭) : 국상(國喪)때 왕비(王妃) 이하 나인(內人)이 상복에 갖추어 머리에 쓰는 것.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푸른 대로 둥근 테를 만들어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우고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임

<sup>845)</sup> 두수(頭箒): 수파(首帕). 수파는 머리를 동이는데 쓰는 좁은 헝겊으로 만든 끈이다.

<sup>846)</sup> 죽차(竹釵): 원문에는 '승차(升釵)'로 되어 있으나, '죽차(竹釵)'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34권, 오례(五禮)、흉례의식(凶禮儀式)、복제(服制)와 『숙종실록(肅宗實錄)』, 46년 6월 8일조 참조.

<sup>847)</sup> 대수(大袖) : 장삼(長衫). 장삼은 도포·철릭과 흡사하며, 소매가 매우 넓고 허리에는 여분을 풍부하게 둔 옷이다.

일(一). 각 도(道)의 대소(大小) 사신(使臣) 및 외관(外官)의 복(服)은 백관(百官)의 상복[衰経服]과 같다. 처(妻)의 복(服)은 종친(宗親) ·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의 처복(妻服)과 같다.

일(一). 직사(職事)가 있는 전임[前銜]의 각 품(各品)과 성중관(成衆官)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養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衞) 등의 무리를 말한다.】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모자(帽子)、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한다.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848》】、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여 3년을 마친다.

일(一). 녹사(錄事)、서리(書吏)는 백의(白衣)、백평정 두건(白平頂頭巾)<sup>849)</sup> 【각(角)이 있는 것은 철각(鐵脚)을 없애고, 베를 사용하여 띠를 드리운다.】、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흑평정 두건(黑平頂頭巾)<sup>850)</sup>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흑대(黑帶)를 착용(着用)하여 3년을 마친다.

일(一). 갑사(甲士)、정병(正兵)은 백의(白衣)、백립(白笠)、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후에는 포대(布帶)로 3년을 마친다.

일(一). 서인(庶人) 및 승도(僧徒)는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로 3년을 마친다. 일(一). 조례(皁隷)와 나장(羅將)은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백대(白帶)로 3년을 마친다.

② 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한 일.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를 전달함.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의 상서(上書)로 각 능전관(陵殿官) 이하(以下) 및 전임관[前銜官], 외방(外方)의 첨사(僉使)、만호(萬戶)、권관(權管)、별장(別將)、감목관(監牧官)은 일체(一體) 참 최(斬衰)로 성복(成服)하도록 한다. 생원(生員)、진사(進士) 및 유생(儒生)은 조관(朝官)들과 차별이 없을 수 없으므로 백립(白笠)、생포의(生布衣)、소마대(小麻帶)로 성복(成服)하라는 전하의 하교가 있었으니851), 조속히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경자(庚子) 6월 12일 작성, 13일 도착.

② 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한 일.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를 전달함. 국휼(國恤)의 졸곡(卒哭) 전(前)에 치르는 모든 과거(科擧)의 시재(試才), 의정부(議政府) 과시(科試), 홍 문관(弘文館) 월과(月課) 등은 아울러 멈추거나 폐(廢)하라고 전달하였으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sup>848)</sup>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 원문에는 이 협주가 '흑각대(黑角帶)' 다음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맥상 '오사모(烏紗帽)' 다음에 위치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번역하였다.『세종실록(世宗實錄)』134권, 오례(五禮)、흉례의식(凶禮儀式)、복제(服制) 참조.

<sup>849)</sup> 평정건(平頂巾) : 각 관아(官衙)의 서리(書吏)들이 머리에 쓰는 건.

<sup>850)</sup> 흑평정 두건(黑平頂頭巾): 원문에는 '흑평정 두건'다음에 '즉(則)'자가 있으나, 연문(衍文)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134권, 오례(五禮)、흉례의식(凶禮儀式)、복제(服制) 참조.

<sup>851)</sup> 위유치(爲有置): 이두. '하잇두'라고 읽으며, '하였다' '하였는지라'의 의미이다.

- ◎ 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한 일.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를 전달함. 금년(今年) 6월 13일 전하(殿下)께서 지위를 계승한 이후 중궁전(中宮殿)은 왕대비(王大妃)로 높이고, 빈궁(嬪宮)을 왕비(王妃)로 승차(陞差)하는 일은 사목(事目)852)으로 마련하라고 계하(啓下)853)하였다. 오늘 13일을 시작으로 각 전(殿)에 공상(供上)하는 것은 전례(前例)에 의거해 봉진(封進)하여 올리도록 한다.
- ◎ 예조(禮曹)에서 상고(相考)한 일. 이번 국휼(國恤) 때 매달 삭망(朔望)의 대소(大小) 봉명(奉命) 사신(使信) 및 외관(外官)들은 졸곡(卒哭) 전에는 최복(衰服)을 입고서 다만 망곡(望哭)만 행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먼저 망곡례(望哭禮)<sup>854)</sup>를 행하고 나중에 망궐례(望闕禮)<sup>855)</sup>를 행할 것을 각 읍(邑)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 사또[使道]는 최복(衰服)【굵은 생포(生布)를 쓴다.】、베로 만든 모자【생포(生布)를 쓴다.】、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 ▷ 영장(營將)과 수령(守令)은 위와 같다.
  - ▷ 군관(軍官)은 백립(白笠)、베로 만든 철릭[天翼]【굵은 생포(生布)를 쓴다】、마대 (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 ▷ 본관(本官)의 전임 3품(三品) 이하(以下) 및 생원(生員)、진사(進士)、유품(儒品) 은 백립(白笠)、생포의、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 ▷ 심약(審藥) · 검률(檢律)은 백관(百官)의 복(服)과 같다.
  - ▷ 영리(營吏)는 백립(白笠)、생포단령(生布團領)、마대(麻帶)를 착용한다.
  - ▷ 영 · 인리(營人吏) 및 본관아전(本官衙前)은 백립(白笠) · 생포의(生布衣) · 마대(麻 帶)를 착용한다.
  - ▷ 사령(使令)、취수(吹手)는 백립(白笠)、입희(笠餙)、생포의(生布衣)、마대(麻帶)를 착용한다.
  - ▷ 각역(各驛) 서자(書者)들은 백립(白笠)、포의(布衣)、마대((麻帶)를 착용한다. 보 졸(步卒)은 패랭이[平凉笠]、마대(麻帶)를 착용한다.
  - ▷ 관노(官奴)는 패랭이[平凉笠]、포의(布衣)、마대(麻帶)를 착용한다.
- 일(一). 군기(軍器) · 전죽(箭竹)의 진상(進上) 봉상(捧上) 후(後)의 예하(例下)
  - ▷ 인리청(人吏廳) 전죽(箭竹) 5부(浮)
  - ▷ 관노청(官奴廳) 전죽(箭竹) 5부(浮)

<sup>852)</sup> 사목(事目) : 공적인 일에 대하여 정해 놓은 관청의 규정 혹은 규칙을 뜻한다.

<sup>853)</sup>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임금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는 계(啓) 자를 새긴 나무 도장을 찍었다.

<sup>854)</sup> 망곡례(望哭禮): 국상(國喪)이 났을 때 서울에서는 대궐 문 밖에서, 지방에서는 서울을 바라 보고 곡을 하는 예절을 가리킨다.

<sup>855)</sup> 망궐례(望闕禮) :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관이 객관(客館)에 있는 궁궐의 상징 패 즉 궐패(闕牌)를 향해 절을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 일(一). 역서분급체하(曆書分給帖下)

▷ 인리청상(人吏廳上)에서 1건(件)

▷ 기관(記官) 2건(件) 영노청(營奴廳) 1건(件) ▷ 호방(戶房) 2건 사령청(使令廳) 1건(件)

▷ 공고(工庫) 2건(件) 마군도훈도청(馬軍都訓道廳) 1건(件) ▷ 군기색(軍器色) 2건(件) 본부상아이방(本府上衙吏房) 1건(件)

▷ 영선색(營繕色) 2건(件) 약계상(藥契上) 1건(件)
▷ 진휼색(賑恤色) 2건(件) 회계색(會計色) 4건(件)
▷ 고마색(雇馬色) 2건(件) 보선색(補繕色) 2건(件)
▷ 호적색(戶籍色) 2건(件) 낙육재색(樂育齋色) 1건(件)
▷ 의생(醫生) 2건(件) 제도색(祭都色) 1건(件)
▷ 책색(冊色) 2건(件) 절선색(節扇色) 1건(件)

▷ 수성창색(修城倉色) 2건(件) 남창색(南倉色) 1건(件) ▷ 수관(守官) 1건(件) 산원이청(算員吏廳) 1건(件)

▷ 오처세색(五處稅色) 5건(件) 군뢰청(軍牢廳) 1건(件)

### 서울대 규장각 영영사례

### 영고(營庫)856)

돈 652냥[兩] 5전[錢] : 쌀 290섬[石]으로 1섬에 2냥 2전 5푼[分], 대신 지급하는 작전 (作錢)<sup>857)</sup>에서 옴.

돈 477냥 5전 : 벼 560섬 8말 4되로 1섬에 9전.

돈 354냥 6전 : 벼 394섬으로 1섬에 9전, 나누어 줄인 벼에 대한 작전(作錢)에서 옴. 도합 돈 1484냥 6전.

돈 3750냥 : 쌀 1555섬으로 1섬에 2냥 2전 5푼, 배삭(排朔)858)하는 작전(作錢)에서 옴.

돈 117냥 5전 : 콩 117섬 7말 5되로 1섬에 1냥.

돈 2900냥 : 여름보리[夏牟] 70섬은 작전(作錢)에서 옴, 1섬에 7전.

도합 돈 6767냥 5전.

돈 850냥 : 북어(北魚) 850속(束)<sup>859)</sup>의 값으로 1속에 1전, 방채전(防債錢)<sup>860)</sup> 가운데서 옴.

돈 350냥: 건삼어(乾三魚) 3500속의 값으로 1속에 1전.

돈 180냥 9전 8푼 : 선산(善山) 수성전(修城錢) 10분의 1 이자[利條]에서 옴.

돈 14냥 : 안기(安奇)861)의 둔세전(屯稅錢)862)에서 옴.

돈 126냥 : 벼 126섬으로 1섬에 1냥, 대신 지급하는 작전(作錢)에서 옴.

40냥 : 휘리선(揮罹船)863)의 세금, 용당(龍塘) 창고가 혁파된 후 방채전(防債錢) 가운데

서 옴.

50냥: 강에 대한 세금.

297냥 9전 : 진휼고(賑恤庫)의 꿩ㆍ닭 값, 둔세전(屯稅錢) 가운데서 옴.

856) 영고(營庫) : 감영의 창고.

857) 작전(作錢)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 콩, 무명 대신 값을 쳐서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858) 배삭(排朔): 한 달에 얼마씩 정하여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

859) 속(束): 물건의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 묶음.

860) 방채전(防債錢) : 빚을 놓아 이자를 취하는 것을 막는 대신 별도로 마련한 돈.

861) 안기(安奇): 안동의 안기역.

862) 둔세전(屯稅錢) : 둔토(屯土)에 부과하는 세금.

863) 휘리선(揮罹船): 그물배. 고선(罟船)

200냥: 꿩ㆍ닭의 원가[本價]

402냥 : 양군(良軍)<sup>864)</sup> 201명으로 1명에 2냥, 여섯 세소(稅所)가 혁파된 후에 각 읍소 (邑所)에 있는 세금.

226냥 : 천군(賤軍) 226명으로 1명에 1냥, 소속된 곳에 신역(身役)865)으로 바침.

300냥: 방채전(防債錢) 가운데서 옴, 고기의 원가.

24냥: 배삭(排朔)하는 작전(作錢) 가운데서 옴.

도합 응봉전(應捧錢)866): 11312냥 9전 8푼.

이 가운데 187냥은 내아(內衙)<sup>867)</sup> 생신 예단(禮單) 대금, 1896냥 4전 8푼은 봄에, 1772 냥 7전 2푼은 가을에 배삭(排朔)하는 고기, 콩잎, 곶감, 석류 등의 값. 도합 지출은 4380냥 2전.

돈 6932냥 7전 8푼 : 정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줌, 매달 577냥 7전 3푼, 윤년에는 매달 533냥 2전 9푼.

물선전(物膳錢)868) 1388냥 : 양군(良軍) 694명으로 1명에 2냥.

106냥 : 천군(賤軍) 106명으로 1명에 1냥, 여섯 세소 혁파 후에 연해(沿海)의 읍에 고기 잡는 군정(軍丁)의 신역으로 바침.

도합 응봉전(應捧錢) 1494냥 : 10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매달 124냥 5전, 윤년에는 매달 114냥 9전 2푼.

수미(需米)869) 1000점.

20섬: 표범가죽 값, 대구 성주 인동 칠곡 고령 등 5개 읍의 대동(大同) 햅쌀[新米] 가운데서 떼어내어 가져 옴.

도합 1020섬 가운데서 팔도(八道)의 재결(災結)<sup>870)</sup>이 3만 결을 넘으면 영관(營官)의 수미(需米) 8분의 1, 표범가죽 값에 상응하는 쌀 4분의 1을 재감(灾減)함<sup>871)</sup>, 320섬은 보선고(補繕庫)에서 떼어줌, 9섬 12말은 세찬(歲饌)<sup>872)</sup>으로 예하(例下)<sup>873)</sup>

<sup>864)</sup> 양군(良軍) : 양인(良人) 신분의 군졸.

<sup>865)</sup> 신역(身役) :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

<sup>866)</sup> 응봉전(應捧錢) : 상부에 바치는 돈.

<sup>867)</sup> 내아(內衙): 지방 관아의 안채. 수령이 기거하는 곳.

<sup>868)</sup> 물선전(物膳錢): 물선은 각 지방에서 대궐에 바치는 특산물. 물선전은 물선 대신 돈으로 바치는 것이다.

<sup>869)</sup> 수미(需米) : 갖가지 수요에 따라 쓰이는 쌀.

<sup>870)</sup> 재결(災結) : 가뭄, 홍수, 폭풍 등의 재해를 입은 논밭.

<sup>871)</sup> 재감(灾減) : 재해에 따라 논밭의 세금을 줄여 줌.

수미(需米) 690섬 3말: 5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매달 57섬 7말 7되 5홉, 윤년에는 매달 53섬 1말 3되 8홉 4사(夕)<sup>874)</sup>, 재해가 있으면 감면함.

수미(需米) 875섬 가운데 280섬은 보선고(補繕庫)에서 떼어 줌, 9섬 12말은 세찬(歲饌) 으로 내려 줌.

도합 289섬 12말.

수미(需米) 585섬 3말 : 5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값 14630냥으로 매달 48섬 11말 5되, 윤년에는 매달 45섬 2되 2홉.

쌀 1200섬 14말 3되 : 각 읍의 별회미(別會米)<sup>875)</sup>에서 떼어내 가져옴, 21섬은 아록미 (衙祿米)<sup>876)</sup>로 대구에서 해마다 바침, 대구도호부 아록(衙祿)은 50결로 소출(所出) 항목에서 면세함, 3섬 5말은 본고(本庫)의 교구(矯捄)하는 모미(耗米)<sup>877)</sup>에서 가져 옴. 도합 응봉미(應捧米) 1225섬 4말 3되.

이 가운데 57섬 5말 4되는 낙육재(樂育齋)에 떼어 줌, 33섬 9말은 봄에, 33섬 9말은 가을에 기관(記官)<sup>878)</sup>의 각 고색(庫色)<sup>879)</sup>에게 내려 줌, 31섬 3말 5되는 영하(營下)의 세찬으로 내려 줌, 80섬은 선장(扇匠)<sup>880)</sup> 등의 급료, 10섬 1말은 부채의 원가로 떼어 줌, 37섬 1말 8되는 절선(節扇)<sup>881)</sup>, 26섬은 세찬으로 내려줌, 10말은 필공(筆工)에게 내려 줌, 38섬 5말은 교체되는 하인(下人)의 노자[路料]. 도합 347섬 14말 7되.

쌀 877섬 4말 6되 : 10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값은 2631냥 9전 2푼, 매달 73섬 1말 6되 3홉, 윤년에는 추가로 마련함.

<sup>872)</sup> 세찬(歲饌)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음식.

<sup>873)</sup> 예하(例下) :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주는 일.

<sup>874)</sup> 사[夕] : 한 움큼 분량의 단위.

<sup>875)</sup> 별회미(別會米) : 지방 관아에서 관장하는 환곡미(還穀米).

<sup>876)</sup> 아록미(衙祿米) : 지방관아의 봉록(俸祿) 및 경비(經費)에 필요한 쌀.

<sup>877)</sup> 모미(耗米) : 환곡(還穀)을 징수할 때, 곡식을 쌓아둘 동안에 줄어질 것을 미리 짐작하고 매섬에 몇 되씩을 덧붙여 받는 곡식이다.

<sup>878)</sup> 기관(記官) :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육방과 향리.

<sup>879)</sup> 고색(庫色) : 창고를 담당하는 아전.

<sup>880)</sup> 선장(扇匠) : 부채를 만드는 장인(匠人).

<sup>881)</sup> 절선(節扇): 단오절에 선물하는 부채.

콩 312섬 : 각 읍의 별회 콩[別會太]에서 떼어 옴.

콩 126섬 7말 5되는 본고에서, 22섬은 보선고에서 떼어 줌, 콩을 메주로 만들어 내려줌, 4섬 10말은 부채의 원가로 떼어 줌, 14말 2되는 군수고(軍需庫)로 이송함, 10말은 세찬으로 내려줌, 도합 응하(應下, 지출) 154섬 11말 7되.

콩 157석 3말 3되 : 10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값은 235냥 8전 8전 3푼으로 매달 13 섬 1말 5되 2홉 5사, 윤년에는 추가로 마련함.

벼[租] 850섬 : 각 읍의 별회 벼[別會租]에서 떼어 옴, 10섬은 본고(本庫)의 장독에 대한 값, 20섬은 필공(筆工)에게 내려 줌, 15섬은 연분(年分)<sup>882)</sup>을 기록하는 색리(色吏)에게 내려 줌, 8섬은 군작(軍作)을 마감하고 내려 줌, 32섬은 별무(別武)<sup>883)</sup> 도시(都試)<sup>884)</sup> 후에 내려 줌, 36섬은 절선(節扇), 31섬은 세찬으로 진봉(進封)한 후에 내려 줌, 20섬은 부채 값으로 떼어 줌.

도합 지출 172섬.

벼 678섬 : 10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값은 813냥 6전, 매달 56섬 7말 5되, 윤년에는 매달 52섬 2말 3되.

밀가루[眞末] 34섬 13말 8되 : 6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가격은 104냥 7전 6푼, 매달 2섬 13말 6되 5홉, 윤년에는 매달 2섬 10말 3되, 각 읍의 겉보리[皮牟]에서 떼어 가져 옴. 누룩 183동(同) 3원(圓) : 6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매달 15동 3원, 윤년에는 매달 14동 1원,가격은 128냥 3전 1푼

생닭[生鷄] 400수(首): 17수는 세찬으로 내려 줌, 생닭 383수는 정월부터 1달 나누어 줌, 가격은 76냥 6전, 매달 31수 3각(脚), 윤년에는 매달 29수 2각

생꿩[生雉] 300수 : 24수는 세찬으로 내려 줌, 생꿩 276수는 9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가격은 110냥 4전, 9월부터 2월까지는 매달 30수, 윤년에는 매달 25수 3각, 3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16수, 윤년에는 매달 13수 3각.

장(醬) 83섬 12말: 메주 만드는 곳에서 바침, 이 가운데 4섬 10말 8되는 부채값 15냥 1전으로 떼어 줌, 장 79섬 1말 2되는 4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1섬에 3냥 2전, 값은 253냥 6푼, 4월부터 7월까지 매달 5섬 3말 8되 5홉, 윤년에는 매달 4섬 3말 8홉, 8월부터 3월까지 매달 7섬 3말 8되 5홉, 윤년에는 매달 6섬 6말 7되 5홉.

돈 3669냥 2전 : 무납(貿納)885)한 각종 본가(本價)에서 가져 옴, 또 1566냥 4전 4푼은

<sup>882)</sup> 연분(年分) : 농작의 풍흉으로 인하여 매년 정하는 전세(田稅)의 비율

<sup>883)</sup> 별무(別武): 별무사(別武士). 조선 후기 오군영 중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소속된 기마병 (騎馬兵).

<sup>884)</sup> 도시(都試): 조선시대 무사(武士)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sup>885)</sup> 무납(貿納) : 어떤 물품을 대가를 받고 구매하여 관아에 바치는 것. 방납(防納).

분정(分定)한 각종 값으로 벼 1566섬 6말 5되 6홉에서 만들어 옴, 벼는 1섬에 1냥씩, 도합 돈 5235냥 6전 4푼.

70냥은 북어(北魚) 700속의 대금, 7냥은 콩잎 70근의 대금, 3냥 5전은 소금 2섬 5말의 대금[부채값으로 떼어 줌].

143냥 1전 2푼, 소금 95섬 6말 2되는 장 담글 때 소금을 넣는 사람들에게 내려 줌. 도합 223냥 6전 2푼.

돈 5012냥 2푼 : 정월부터 12달 나누어 줌, 매달 417냥 6전 6푼, 윤년에는 매달 385냥 5전 4푼.

#### 매달 지출[上下]

군관(軍官) 8원(員), 사화(寫畵) 2원(員)에게 각각 수미(需米) 2섬, 쌀 1섬 6말 1되, 콩 9말, 밀가루 3되, 참기름 4되, 소금 3되, 콩잎 15냥, 북어 6속(束), 팥[小豆] 6되, 광어(廣魚) 4미(尾), 찬값[饌價] 4냥 5전 지출.

중군(中軍)에게 수미 1섬, 콩 1섬 3말, 팥 1말, 밀가루 5되, 벼 1섬 3말, 참기름 5되, 콩잎 1근 5냥, 소금 5되, 북어 6속, 광어 2미, 대구 2미, 꿀 2되, 건삼어(乾三魚) 3속, 메밀[木米] 3되, 장 2말 지출.

남창별장(南倉別將)에게 콩 9말, 조 9말, 팥 6되, 밀가루 3되, 참기름 4되, 소금 3되, 북어 6속, 광어 4미, 콩잎 15냥, 장 1말 2되, 찬값 4냥 5전, 쌀은 매달 3석 6말 1되를 남창(南倉)의 환미(還米)<sup>886)</sup> 가운데서 지출함.

심검(審檢) 2원에게 각각 수미 1섬, 쌀 2섬 12말 5되, 콩 12말, 벼 12말 6되, 팥 1말, 밀가루 1되 5홉, 참기름 2되 9홉, 소금 2되 4홉, 콩잎 1근 5냥, 북어 9속, 광어 4미, 찬값 4냥 5전 지출.

파총(把摠) 2원(圓)에게 각각 건삼어 3속, 생선기름[魚油] 9홉 지출.

재가병방(在家兵房) 2원, 지소감관(紙所監官) 2원, 부료장무(付料掌務) 2원, 상영도훈도 (上營都訓導) 2원, 군기감관(軍器監官) 1원, 수성창감관(修城倉監官) 1원, 고마감관(雇馬監官) 1원, 영선감관(營繕監官) 1원, 아병도훈도(牙兵都訓導) 1원, 별무장무(別武掌務) 1원, 진휼감관(賑恤監官) 1원, 도합 15원(員)에게 각각 건삼어 3속 지출.

기고관(旗鼓官) 2원, 지구관(知彀官) 2원, 장무초관(掌務哨官) 2원, 중영병장무(中營兵掌務) 4원, 도합 10원(員)에게 각각 건삼어 1속 5미 지출.

이방영리(吏房營吏) 1인, 호방영리(戶房營吏) 2인, 형방영리(刑房營吏) 2인, 병방영리(兵 房營吏) 1인, 예방영리(禮房營吏) 1인, 공방영리(工房營吏) 1인, 승발영리(承發營吏) 1

<sup>886)</sup> 환미(還米) : 환상미(還上米).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백성에게 빌려준 쌀을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쌀.

인, 통인영리(通引營吏) 2인, 계서영리(啓書營吏) 4인, 마도(馬徒) 1인, 도합 16인에게 각각 쌀 6말, 팥 6되, 장 4말 5되, 콩잎 1근 14냥, 북어 6속, 밀가루 1근 5홉, 소금 1되 5홉, 찬값 51냥, 都中 점심값으로 쌀 2말 1되, 북어 3속, 미역 15냥 3월부터 8월까지 지출.

기관(記官) 2인, 호방 2인, 지소색(紙所色) 2인, 회계색(會計色) 4인, 별고색(別庫色) 4인, 공방 2인에게 각각 쌀 10말, 소금 1되 5홉, 광어 1미(尾) 4조(條), 북어 1속 5미, 장 6되, 미역 4냥 5전, 참기름 1되 5홉, 찬값 12냥[記官과 戶房은 각각 3냥씩], 점심값 각각 쌀 1말 5되, 북어 3속, 3월부터 8월까지 지출.

절선색(節扇色) 1인에게 쌀 10말, 장 6되, 광어 3미, 소금 3되, 북어 3속, 미역 9냥, 참기름 3홉 지출.

영선색(營繕色) 2인, 고마색(雇馬色) 2인, 책색(冊色) 2인, 의생(醫生) 2인, 호적색(戶籍色) 2인, 지인통인(知印通引) 3인, 도합 13인에게 각각 쌀 3말, 장 6되, 북어 1속 5미, 미역 3냥 지출.

제도색(祭都色) 1인, 전정색(塡井色) 1인, 환상색(還上色) 1인, 영사색(營舍色) 1인, 수관 (守官) 1인, 지통통인(紙筒通引) 3인, 도합 8인에게 각각 쌀 6말, 북어 3속, 장 6되, 미역 6냥 지출.

군기색 2인, 진휼색 2인, 수성창색 2인, 도합 6인에게 각각 건삼어 1속 5미, 미역 3냥, 소금 6되, 요미(料米)<sup>887)</sup> 6말을 해당 창고로부터 지출함.

영고고자(營庫庫子) 1명, 공고자(工庫子) 1명, 영선고자(營繕庫子) 1인, 제청고자(祭廳庫子) 1명, 지소고자(紙所庫子) 1명, 고마고자(雇馬庫子) 1명, 약방고자(藥房庫子) 1명, 유물책장(油物冊匠) 1명, 도책장(都冊匠) 2명, 도칠장(都漆匠) 1명, 지소도하전(紙所都下典) 1명, 공고하전(工庫下典) 1명, 영선하전(營繕下典) 1명, 보선고하전(補繕庫下典) 4명, 고마고하전(雇馬庫下典) 1명, 도합 19명에게 각각 쌀 6말 지출.

상아이방(上衙吏房) 1명, 육색(肉色) 1명, 수청형리(隨廳刑吏) 2명, 수노(首奴) 2명, 제숙수(祭熟手) 1명, 상도방자(上都房子) 1명, 비행수(婢行首) 2명, 육고자(肉庫子) 1명, 급창(及唱) 4명, 상침장비(上針匠婢) 2명, 영고도사후(營庫都伺候) 2명, 약방하전(藥房下典) 2명, 선차사(扇差使) 1명, 염비(染婢) 및 장비(醬婢) 1명, 도합 24명에게 각각 쌀 3말 지출.

세답비(洗踏婢) 1인, 부세답비(府洗踏婢) 1인, 도합 3인에게 각각 쌀 2말 5되, 절선편수 (節扇片手) 1명에게 쌀 10말 지출.

포진장(鋪陳匠) 1명, 조촉장(造燭匠) 1명, 병비(餠婢) 1명, 조과비(造果婢) 1명, 도합 4명에게 각각 쌀 5말, 수기(隨妓)는 1명당 쌀 6말 지출.

공고(工庫) 소목장(小木匠) 1명에게 쌀 9말, 북어 6속, 소금 3되, 장 6되 지출, 동기(童妓)는 1명당 쌀 5말 번수(番數)에 따라 지출.

<sup>887)</sup> 요미(料米) : 관가의 하급 관리에게 급료(給料)로 내어 주던 쌀.

도각수(都刻手) 1명에게 쌀 3말, 장 3되, 미역 15냥, 돈 1냥 2전 지출.

도필공(都筆工) 1명, 문서자(文書者) 3명, 보직(袱直) 3명, 수번마부(隨番馬夫) 1명, 도합 8명에게 각각 쌀 6말, 북어 6속, 미역 1근 14냥, 장 6되, 장초미(醬醋米) 6말, 초국(醋麴) 1동(同) 8원(圓), 겉보리싸래기[皮牟粉米] 6말 지출.

청문지기[廳門直]에게 밀가루 1말 5되[裨將廳에 풀칠할 때], 육문지기[六門直]에게 밀가루 6되[자물쇠에 풀칠할 때], 本庫에 밀가루 6되[풀칠할 때] 지출.

立大馬 1필에 콩 9말, 벼 1섬 3말, 비행수(婢行首)에게 녹두 1말[비누 만들 때] 狀啓踏印 淸 3홉, 細鹽할 때의 소금 1말, 藥所에 들어가는 대추 6되.

別供須 魚油 9되, 蔈古 1근, 石耳 1근 5냥, 밀가루 1말 4되, 어유 3되, 胡椒가루 3전, 生干 2되, 고기 10근[具味次 맛을 갖출 때], 고기 20근[간장으로 볶을 때], 장 6되.

廳供須 淸 3홉, 實柏子 3홉, 표고 5냥, 석이 5냥, 참깨소금 3되, 어유 3되.

壇告事[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반으로 나누어 지출함], 需米 2말, 팥 1말, 찹쌀 1말, 콩 2되, 벼 2말, 참기름 1홉, 북어 2속, 대구 2미. 꿀[淸] 1홉, 밤[黃栗] 2되, 호도 2되, 대추 2되, 고기 2근, 돈 1전[술값].

등잔 기름[燈油]을 매달 내려 줌 : 기관(記官)에 9되, 재가청(在家廳) 집사청(執事廳) 호방(戶房) 공방(工房) 의생(醫生) 배리(陪吏) 회계색(會計色) 약방별고(藥房別庫) 전정색(塡井色) 군기색(軍器色) 관노방청(官奴房廳) 도방자청(都房子廳) 군뢰(軍牢) 등 도합 14곳에 각각 6되 지출.

영선(營繕) 수성창(修城倉) 진휼고(賑恤庫) 고마고(雇馬庫) 겸제고(兼濟庫) 지소(紙所) 남 창(南倉) 절선소(節扇所) 배지청(陪持廳) 수관(守官) 전리(典吏) 통인방(通引房) 도책장(都 冊匠) 상다모(上茶母) 약직(藥直) 나뢰방(羅牢房) 조창방(調唱房) 도칠장(都漆匠) 순령수(巡令手) 내동문직(內東門直) 도훈도청(都訓導廳) 도합 21곳에 각각 3되 지출.

유물책장(油物冊匠), 착칠간(着漆間)에 각각 1되 5홉, 영리청(營吏廳)에 4말 5되, 공사청 (公事廳)에 4되 2홉 지출.

추가로 예하<sup>888)</sup>하여 매달 나누어 주는 가운데 들어갈[入下] 때 쌀 9섬 9말은 봄에, 쌀 9섬 9말은 가을에 내려줌-별고색(別庫色) 2인, 전정색(塡井色) 1인, 수관(守官) 1인, 영 리색(營吏色) 1인, 회계(會計) 및 서사리(書寫吏) 2인, 도필공(都筆工) 1인, 포진장(鋪陳匠) 1인, 조촉장(造燭匠) 1인, 상침장비(上針匠婢) 2인, 도합 12인에게 춘추로 쌀 12말씩 지급.

<sup>888)</sup> 예하(例下) :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 세찬(歲饌) 예하(例下)

영장(營將)에게 수미(需米) 1섬, 대구(大口) 4미(尾), 광어 3미. 삶은 전복 1첩(貼)[광어 1미를 대신함], 곶감 1첩[단자(單子)889)를 붙여 영고색리(營庫色吏)가 가지고 감] 예하. 중군(中軍)에게 수미(需米) 10말, 광어 2미, 꿀 2되, 생밤 1말, 대구 4미, 콩 1말, 생닭 1수(首), 생꿩 2수, 곶감 3첩, 장 2되 예하.

군관 8원(員), 사화(寫畵) 2원에게 각각 수미 10말, 콩 1말, 대구 4미, 광어 2미, 생닭 1수, 생꿩 2수, 꿀 2되, 생밤 1말, 곶감 3첩, 장 2되를 군관 8원이 품정(稟定)하여 들어갈 때 예하.

심검(審檢) 2원에게 각각 수미 9말, 대구 3미, 광어 2미, 생닭 1수, 생꿩 1수, 곶감 2첩, 장 1말 예하.

남창별장에게 수미 4말, 대구 4미, 광어 2미, 꿀 1되, 곶감 1첩 예하.

재가청(在家廳) 집사청(執事廳) 장군청(將官廳) 도합 세 곳에 각각 쌀 1섬 10말, 대구 4미, 곶감 1첩, 장 5되 예하.

부료청(付料廳)에 쌀 12말, 대구 2미, 장 3되, 성정초관청(城丁哨官廳)에 쌀 2말, 장 1되, 중영군관청(中營軍官廳)에 쌀 10말, 대구 2미, 장 3되, 영리청(營吏廳)에 쌀 1석 6말, 대구 4미, 생닭 2수, 곶감 2첩, 장 5되, 인리청(人吏廳)에 쌀 1섬 5말, 대구 6미, 생닭 2수, 곶감 2첩, 장 7되, 도훈청(都訓廳)에 쌀 6말, 대구 2미, 장 5되, 통인(通引)에게쌀 10말, 대구 4미, 장 3되, 사령방(使令房)에 쌀 10말, 대구 2미, 장 3되, 관노방(官奴房)에 쌀 1섬 8말, 대구 2미, 장 5되, 기생방(妓生房)에 쌀 10말, 대구 2미, 장 3되, 수급비방(水汲婢房)에 쌀 10말, 대구 5미, 신군뢰방(新軍牢房)에 쌀 1섬 5말, 대구 6미, 장 6되, 책장방(冊匠房)에 쌀 5말, 대구 2미 예하.

파총(把摠) 2원, 군기감관(軍器監官) 1원, 지소감관(紙所監官) 2원, 진휼감관(賑恤監官) 1원, 수성창감관(修城倉監官) 1원, 고마감관(雇馬監官) 1원, 보선감관(補繕監官) 1원, 영 선감관(營繕監官) 1원, 겸제감관(兼濟監官) 1원, 부료장무(付料掌務) 2원, 도합 13원(員)에게 각각 쌀 2말, 대구 2미, 장 1되, 기관(記官) 2인, 호방(戶房) 2인, 공방(工房) 2인, 회계색(會計色) 4인, 지소색(紙所色) 2인, 별고색(別庫色) 2인, 도합 14인에게 각각 쌀 3말, 청어 1급(級), 대구 1미, 장 1되, 제도색(祭都色)에게 쌀 3말, 청어 1급, 군기색(軍器色) 2인, 영선색(營繕色) 2인, 고마색(雇馬色) 2인, 호적색(戶籍色) 2인, 진휼색(賑恤色) 2인, 수성창색(修城倉色) 2인, 책색(冊色) 2인, 의생(醫生) 2인, 보선색(補繕色) 2인, 겸제색(兼濟色) 1인, 남창색(南倉色) 1인, 낙육재색(樂育齋色) 1인, 영고감상(營庫監嘗) 1인, 전정색(填井色) 1인, 수관(守官) 1인, 환상색(還上色) 1인, 중영도색(中營都色) 1인,

<sup>889)</sup> 단자(單子):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 돈의 액수나 선물의 품목, 수량, 보내는 사람의 이름 따위를 써서 물건과 함께 보낸다.

영사색(營舍色) 1인, 도합 28인에게 각각 쌀 1말 5되, 대구 2미, 장 1되, 수노(首奴) 2명, 급창(及唱) 4명, 비행수(婢行首) 2명, 도합 6명에게 각각 쌀 2말, 청어 1급, 장 1되, 침장비(針匠婢) 12구(口)에게 각각 쌀 2말, 대구 2미, 장 1되, 제청하인(祭廳下人) 5명에게 각각 쌀 2말, 청어 1급, 절선색(節扇色)에게 쌀 4말, 대구 3미, 선편수(扇片手)에게쌀 3말, 대구 2미, 선소(扇所) 각색(各色) 장인(匠人) 등에게쌀 3점 3말, 대구 36미, 중영하인(中營下人) 등에게쌀 1점 10말 예하.

### 동지(冬至) 예하(例下)

중군 1원, 군관 8원, 사화 2원, 심검 2원, 남창별장 1원에게 각각 찹쌀 5홉, 수미 5홉, 팥 1되, 꿀 1홉[당일 營中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 내려줌.

파총(把摠) 1인, 재가병방(在家兵房) 1인, 고마감관(雇馬監官) 1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보선감관(補繕監官) 1인, 수성감관(修城監官) 1인, 지소감관(紙所監官) 1인, 영선감관(營繕監官) 1인, 별무장무(別武掌務) 1인, 부료장무(付料掌務) 1인, 기고관(旗鼓官) 1인, 지구관(知彀官) 1인, 장무초관(掌務哨官) 1인, 겸제감관(兼濟監官) 1인, 부료군관(付料軍官) 5인, 중영장무(中營掌務) 2인에게 각각 팥 5홉, 쌀 3홉, 꿀 3사[夕] 내려줌.

기관(記官) 1인, 호방(戶房) 1인, 공방(工房) 1인, 회계색(會計色) 4인, 별고색(別庫色) 2인, 지소색(紙所色) 1인, 군기색(軍器色) 1인, 검제색(兼濟色) 1인, 고마색(雇馬色) 1인, 의생(醫生) 1인, 책색(冊色) 1인, 수성창색(修城倉色) 1인, 영선색(營繕色) 1인, 보선색(補繕色) 1인, 진휼색(賑恤色) 1인, 낙육재색(樂育齋色) 1인, 전정색(填井色) 1인, 환상색(還上色) 1인, 제도색(祭都色) 1인, 영사색(營舍色) 1인, 도훈도(都訓導) 2인, 중영수배(中營隨陪) 1인, 영고사후(營庫伺候) 4인, 제청하인(祭廳下人) 4인에게 각각 팥 5홉, 쌀 3홉, 꿀 3사 내려줌.

영리(營吏) 17인, 배리(陪吏) 21인, 통인(通引) 27인, 사령(使令) 221인, 관노비(官奴婢) 91인, 구군뢰(舊軍牢) 17인, 신군뢰(新軍牢) 18인, 책장(冊匠) 27인, 시인(矢人) 1인, 궁인(弓人) 7인, 칠장(漆匠) 10인, 선장(扇匠) 41인, 비장노자(裨將奴子) 4인, 심검노자(審檢奴子) 2인에게 각각 팥 5홉, 쌀 3홉, 꿀 3사 내려줌-영리 이하 당일 입직하는 수에따라 지급함, 해마다 같지 않음.

### 각양(各樣) 예하(例下)

화살대[箭竹]를 진상하러 가는 배지(陪持)<sup>890)</sup>에게 정으로 대구어(大口魚) 10미(尾)를 내려줌.

<sup>890)</sup> 배지(陪持): 지방 관청에서 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사람.

절선(節扇)을 간품(看品)891)한 후 대구 5미, 북어 5속, 소금 11말을 내려줌.

절선을 진봉(進封)한 후 야장(治匠) 5명, 연마장(鍊磨匠) 5명, 두석장(豆錫匠) 5명, 도합 15명에게 각각 쌀 5말 벼 10말을 내려줌.

보고비자(補庫婢子) 9명에게 추석에 각각 쌀 2말 북어 1속, 고기 2근을 내려주고 세찬 (歲饌)으로 각각 쌀 2말 북어 1속, 고기 2근을 내려줌.

별무도시 때 좌우별장에게 북어 6속 어유 1되 8홉을 내려주고 화기(花器) 본가(本價), 선후(先後) 도작(都作)에 각각 10냥씩 지급.

해산물 짐값, 선후 도작에 각각 120냥씩 지급 -매달 나누어주는 각종 해산물을 생산되는 각 고을에 모은 뒤 역마로 실어 옴, 경오년에 혁파한 후에는 돈으로 지급함.

영하(營下) 장교(將校)의 전최(殿最) 후에 누룩[麴子]<sup>892)</sup> 5동(同) 9원(圓) 가운데 1동 3원은 장관청(將官廳)에, 1동은 집사청(執事廳), 1동은 재가청(在家廳), 1동은 별무사청(別武士廳), 1동은 성정초관(城丁哨官) 등, 6원은 중영군관청(中營軍官廳)에 내려줌.

도시(都試) 활쏘기 후에 벼 23섬 가운데 2섬은 입번도훈도(入番都訓導)에, 2섬은 집획도훈도(執劃都訓導), 2섬은 도훈도(都訓導) 등, 3섬은 중영병장무(中營兵掌務), 3섬은 고전기패관(古箭旗牌官), 9섬은 순령수(巡令手), 2섬은 관덕당 고자(觀德堂庫子)에게 내려줌. 벼 8섬은 남문(南門) 외거민(外居民) 등에게 내려주고 정장(呈狀)하여 적어둠. 도합 벼 31섬.

### 요찬(料饌) 지급 방식

번외(番外) 영리(營吏) 마도((馬徒)의 조석 상값[床價] 1전, 점심 상값 3푼-磨勘과 書役할 때만 지급함.

주리(籌吏) 창준(唱準) 서사(書寫) 등의 조석 상값 4푼, 점심 상값 3푼-점심은 쌀 7홉, 북어 1미, 장 3홉.

각 項의 匠人 등이 사역할 때 조석 상값 5푼, 점심이 있으면 세 끼 동일, 점심은 3월부터 8월까지-쌀 1말, 북어 1미, 미역 5전, 장(醬) 3홉.

전문서사리(箋文書寫吏)의 조석과 점심은 영리(營吏)와 동일, 전문책장(箋文冊匠) 등의 조석과 점심은 각 항의 장인과 동일.

### 분정(分定)893) 감면 항목

<sup>891)</sup> 간품(看品): 물건의 품질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봄.

<sup>892)</sup> 국자(麴子) : 술을 빚을 때 쓰는 발효제

<sup>893)</sup> 분정(分定) : 제도(諸道)의 감영(監營), 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

돈 10냥 4전 6푼, 조청 6말 8되 5홉, 피백자(皮栢子)<sup>894)</sup> 2섬 1말, 녹두 5말 2되, 메밀 [木米] 13말, 팥 12말, 호도 3말, 석이버섯 3근, 표고버섯 5근 8냥, 찹쌀 2말, 참깨 13말 3되 3홉 8사를 춘하에 분정(分定) 감면함.

돈 13냥 2전 7푼, 꿀 4말 7되, 곶감 61첩 6꿰미[串] 2개, 생배 15첩, 표고버섯 5근 8 냥, 메밀 9말, 녹두 3말 5되, 찹쌀 2말, 참깨 7말, 석이버섯 8근 8냥, 팥 13말, 호도 2 말 5되, 피백자 2석 1말 5되를 추동에 분정 감면함.

# 낙육재(樂育齋)

벼 응봉 112섬 6말 : 대구(大邱) 둔세(屯稅)로 납부함, 이 가운데 9말 3되 7홉 5사는 천반(川反)<sup>895)</sup> 구탈(舊頃)<sup>896)</sup>, 20섬은 색리, 15섬은 고자 식모 책장 등에게 내려줌, 도 합 지출 35섬 9말 3되 7홉 5사, 벼 76섬 11말 6되 2홉 5사에서 매섬 6말씩 쌀로 환산 하여 30섬 10말 6되 5홉을 쌀이 지출된 곳에 내려줌.

쌀 응봉 30섬 10말 6되 5홉 : 위의 조작(租作)에서 가져옴.

쌀 3섬 5말 : 영고(營庫) 교구모미(矯捄耗米)에서 가져옴.

쌀 57섬 5말 4되 : 영고(營庫)에서 옮겨 옴.

도합 쌀 91섬 6말 5홉 가운데 3섬 3말은 색리 식모에게 춘추에 내려줌, 쌀 88섬 3말 5홉은 유생(儒生)의 1년 반미(飯米)로 지출.

돈 응봉 73냥 2전 5푼 : 경주 밀양의 둔모(屯牟)에서 가져옴.

112냥 8전 3푼 : 밀양 거제 경주의 둔조(屯租)에서 가져옴.

8냥 1전 4푼 : 칠원의 둔모에서 가져옴.

4냥 6전 : 재노비(齋奴婢) 4명의 공전(貢錢)에서 가져옴.

157냥 5전 : 쌀 70섬으로 매 섬 2냥 2전 5푼

342냥 5전 : 벼 380섬 9말로 매 섬 9전[대신 납부한 작전(作錢)에서 가져옴]

850냥: 산산창(蒜山倉)의 염리전(鹽利錢) 가운데서 가져옴,

84냥 2전 2푼 : 추가로 떼어낸 것[방채전(防債錢) 가운데서 가져옴]

32냥 6푼 : 대구의 둔조(屯租)에서 가져옴,

22냥 8전 7푼 : 김해의 갈대 세에서 가져옴,

88냥 5전 2푼 : 정묘년 새로 마련한 환모조(還耗租)에서 가져옴.

도합 응봉 돈 1776냥 4전 9푼에서 12냥은 색리 식모에게 내려줌, 2냥 2전은 재실의 그릇

894) 피백자(皮栢子) :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잣

895) 천반(川反) : 천반포락(川反浦落). 내가 터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서 논밭이 떨어져 나감.

896) 구탈(舊頃) : 전년에 재해로 인해 면세 받은 재결(災結).

값, 35냥은 세금 보관 창고의 노자(路子), 30냥은 재실의 서책을 새로 마련할 때 내려줌. 도합 응하[지출] 79냥 2전.

돈 1697냥 2전 9푼에서 850냥은 산산창의 염리전(鹽利錢)이 혁파되어 제외되고, 실제로 는 돈 847냥 2전 9푼이 유생의 1년 반찬값.

## 공고(工庫)

무명 10동(同)은 수철장(水鐵匠) 500명, 1동 34필(疋)은 옹장(甕匠) 84명, 2동 30필은 격군(格軍) 130명 : 매명 1필씩 신역(身役)으로 납부함.

도합 무명 응봉[납부] 14동 44필.

무명 3동은 영선(營繕) 탄군포(炭軍布)에서 옮겨 옴, 3동 10필은 소마고 격군 조역군포 (助役軍布)에서 옮겨 옴.

도합 무명 21동 4필에서 1동은 봄에, 1동 42필은 가을에 기관(記官)의 각 고색(庫色)에 게 내려 줌.

31필은 부채값으로 떼어주고 20필 10척(尺)은 메주 만드는 곳에 내려줌, 41필은 절선 (節扇), 36필은 세찬(歲饌)으로 진봉(進封)하고 내려줌.

14필은 군작(軍作) 영진(營賑)을 마감하고 내려줌, 2필은 군수고(軍需庫) 및 고마고(雇馬庫)의차사(差使)에게 내려줌, 12필은 중추부(中樞府) 기로소(耆老所)에 춘추로 상납함, 20필은 필공(筆工)에게 내려줌, 15필은 종이 대동(大同)으로 내려줌

도합 지출 6동 33필 10척.

무명 14동 20필 30척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배가(排價)는 1441냥 5전, 매달 1동 10필 2척 5촌, 윤년에는 매달 1동 5필 17척 7촌.

돈 응봉 1673냥 3전 5푼 : 그해의 종이값 가운데서 가져옴.

260냥은 벼 288섬 13말 4되로 매섬 9전[대신 납부하는 작전(作錢)에서 가져옴]

645냥은 쌀 286섬 10말로 매섬 2냥 2전 5푼

355냥은 벼 394섬 6말 6되로 매섬 9전

212냥 1전은 벼 235섬 10말로 매섬 9전[분정(分定)하여 감대(減代)한 작전(作錢)에서 가져옴]

도합 1471냥 1전

1250냥은 좁쌀[小米] 625섬으로 매석 2냥 150냥은 팥 100섬으로 매섬 1냥 5전[임술년 이후에 싸라기[折米]에서 區劃] 1082냥 5전은 콩 1082섬 7말 5되로 매섬 1냥[매달 지급] 1800냥은 벼 2000섬으로 매섬 9전 2000냥은 매달 지급하는 여름보리 7000섬[작전에서 가져옴, 매석 7전] 도합 7754냥 6전

도합 응봉전 9427냥 9전 5푼에서 198냥은 징청각(澄淸閣)에, 199냥 4전 2푼은 내아(內衙)에, 48냥은 이아(貳衙)에 생신 예단값으로 내려 주고, 706냥 6전 5푼은 봄과 가을에 백지 황필 백필 피물 남초 등의 값으로 매달 지급함.

260냥은 솜의 씨를 빼는 값으로 매달 지급, 400냥은 사중삭(四仲朔)<sup>897)</sup> 옷감 값, 134냥 은 춘추에 순력(巡歷) 배행(陪行)하는 군관(軍官)과 중방(中房)에게 내려줌.

203냥 5전은 부채값으로 떼어주고, 22냥 씩 절선과 세찬 진봉으로 지출함.

도합 지출 2900냥 2전 2푼.

돈 6527냥 7전 3푼은 정월부터 매달 543냥 9전 7푼, 윤년에는 매달 502냥 1전 3푼 지급. 연분지(年分紙) 응봉 4008속 6장(丈)에서 46속 12장은 연분 도안지(年分都案紙)로 대구에 권감(權減)<sup>898)</sup>해 주고, 15속은 함양에 권감해주고, 600속은 지소(紙所)에 나누어 줌. 1673속 7장은 돈으로 나누어 이송해줌, 대전(代錢)은 1673냥 3전 5푼. 도합 지출 2334속 19장.

연지(年紙) 1673속 7장에서 33속 10장은 동래(東萊)를 순도(巡到)할 때 지급, 80속은 절선, 40속은 세찬 진봉할 때 간지(簡紙)로 지급

도합 응하 153속 10장

실제 연지 1519속 17장은 10월부터 매달 지급, 값은 2279냥 7전 8푼, 매달 126속 13장, 윤년에는 매달 116속 18장.

진묵(眞墨) 응봉 180동은 정월부터 매달 지급[값은 117냥 6전 7푼], 매달 15동, 윤년에 는 매달 13동 8정(丁)[각 읍의 별회(別會) 겉보리에서 떼어옴]

松墨 응봉 105동은 정월부터 매달 지급[값은 31냥 5전], 매달 8동 7정, 윤년에는 매달 8동.

돈 1673냥 3전은 무납(貿納)한 각종 본가(本價)에서 가져옴, 894냥 9전 3푼은 분정한 각종 값으로 벼 894석 14말에서 만들어 옴, 벼 매석 1냥씩.

도합 돈 2568냥 2전 3푼에서 128냥 9전 6푼은 씨를 뺀 솜 248근의 값으로 제함. 돈 2439냥 2전 7푼은 정월부터 매달 지급, 매달 203냥 2전 7푼, 윤년에는 매달 187냥 6전 3푼

<sup>897)</sup> 사중삭(四仲朔) : 네 철의 중간달. 2월, 5월, 8월, 11월.

<sup>898)</sup> 권감(權減) : 임시로 감해 중.

### 매달 급료[朔下]

중군(中軍)에 연지(年紙) 1속, 백지(白紙) 4속, 황필(黃筆)<sup>899)</sup> 2자루, 백필(白筆)<sup>900)</sup> 3자루, 참먹[眞墨]<sup>901)</sup> 2정, 남초(南草 : 담배) 2근 지급.

군관 8인, 사화 2인에게 각각 연지 1속, 백지 1속, 황필 1자루, 백필 1자루, 진묵 2정, 남초 2근 지급.

심검 2인, 남창별장 1인에게 각각 연지 1속, 백지 1속, 황필 1자루, 백필 1자루, 진묵 2정, 남초 2근 지급.

재가병방(在家兵房) 2인, 파총(把摠) 2인, 지소감관(紙所監官) 2인, 부료장무(付料掌務) 2인, 기고관(旗皷官) 2인, 지구관(知彀官) 2인, 장무초관(掌務哨官) 2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진휼감관(賑恤監官) 1인, 고마감관(雇馬監官) 1인, 보선감관(補繕監官) 1인, 영선감관(營繕監官) 1인, 수성창감관(修城倉監官) 1인, 중영병장무(中營兵掌務) 2인, 별무사 장무 1인, 군물차지(軍物次知) 도훈도 1인, 군뢰차지 도훈도 1인, 마군차지 도훈도 1인, 보병차지 도훈도 1인, 도합 27인, 각각 연지 1속, 백필 1자루, 송묵<sup>902)</sup> 1정 지급. 호방 공방에게 각각 백지 9속 10장, 황필 2자루, 백필 1자루, 진묵 1정 지급, 백지 3속은 주판(籌板)을 기록할 때 씀, 남창색에게 백지 1속 15장, 황필 1자루, 송묵 1정 지급. 군기색 군수색에게 각각 백지 4속 5장, 황필 1자루, 백필 1자루, 진묵 1정, 송묵 1정 지급.

영선색 지소색에게 각각 백지 3속 10장, 황필 1자루, 백필 1자루, 진묵 1정, 송묵 1정 지급.

진휼색 고마색에게 각각 백지 1속 10장, 황필 1자루, 송묵 1정, 절선색 책색 수관에게 각각 백지 1속 5장, 황필 1자루, 진묵 1정, 수성창색에게 백지 17장, 백필 1자루, 송묵 1정, 겸제색(兼濟色)에게 백지 15장, 백필 1자루, 송묵 1정, 의생에게 백지 2속 10장, 황필 1자루, 진묵 1정, 제도색(祭都色)에게 백지 1속 10장, 황필 1자루, 진묵 1정 지급. 지통 통인 3인, 지인 통인 3인, 합 6인에게 각각 백지 1속 10장, 황필 1자루, 진묵 1정, 보선색에게 백지 6속, 황필 1자루, 백필 1자루, 송묵 1정 지급, 백지 2속은 주판을 기록할 때 씀,별고색에게 백지 2속, 황필 1자루, 백필 1자루, 참먹 1정, 배리(陪吏)에게 백지 6속, 백필 2자루, 송묵 2정, 지통(紙筒) 공사지(公事紙)903)에 연지(年紙) 3속, 별백지(別白紙) 3속, 백지 60속 지급, 회계 문서에 백지 8속, 별백지 3속, 황필 7자루, 진묵

<sup>899)</sup> 황필(黃筆) :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

<sup>900)</sup> 백필(白筆): 양털로 만든 붓.

<sup>901)</sup> 참먹[眞墨] : 품질이 아주 좋은 먹.

<sup>902)</sup> 송묵(松墨) : 소나무를 태워 나오는 그을음을 사용하여 만든 먹. 송연묵(松煙墨).

<sup>903)</sup> 공사지(公事紙) : 관청에서 공용문서로 쓰는 종이.

3정, 병소(兵所) 군호지(軍號紙)로 백지 5장, 별공수(別供須) 사지(斜紙)할 때 백지 1속, 상개(床蓋)할 때 장유지(壯油紙)<sup>904)</sup> 2장, 육고(肉庫) 장유지 4장[초를 만들 때 소용], 황 밀 3근은 좌촉(座燭)에 꿀을 바를 때 지급, 지인·통인이 인주(印朱)할 때 왜주홍(倭朱紅) 3냥중(兩重), 송연(松煙) 8냥중 지급

정부(政府) 서리(書吏)에게 황필 3자루, 참먹 2정, 무명 3필[삭료(朔料)], 무명 2필[소차 채(疏箚債)], 무명 3필[기별채(奇別債)], 무명 1필[가료(加料)], 돈 5냥 지급.

도필공에게 황모 첨가전(添價錢) 10냥, 소목장에게 무명 1필[삭료], 부레풀[魚膠] 3냥중, 번궁인(番弓人)에게 부레풀 5냥중 지급.

통인이 고강(考講) 시상(施賞)할 때 연지(年紙) 1속, 백지 10속, 백필 10자루, 진묵 5정, 별공수(別供須) 명주(明紬) 1척 값으로 1전 8푼, 사두응지리(槎斗應之里) 2부 값으로 2전, 사판(槎板) 2부 값으로 1전 4푼, 송사(松篩) 1부 값으로 2전, 상공수(上供須) 세마포(細麻布) 4척 값으로 3전 2푼, 사판 4부 값으로 2전 8푼, 사두응지리 4부 값으로 4전, 초상(草箱) 6부 값으로 3전 지급.

단에 고하는 일에[삭망에 나누어 지급] 백지 2속, 무명 20척, 황촉 2쌍[1냥중], 내단(內壇)에 고하는 일에[안에서 행차하여 감영에서 주관할 때만 삭망에 나누어 지급] 백지 2속, 무명 20척, 황촉 2쌍[1냥중], 고지기[庫子]<sup>905)</sup>에게 석황(石黃) 값으로 3전 지급.

장계(狀啓)에 관인을 찍고 보획(補劃)할 때 백필 3자루, 육문직(六門直)에게 백지 4속 10장, 약직(藥直)에게 약복지(藥服紙)로 백지 3속 지급.

#### 추가 예하질[例下秩]

무명 12필을 봄에 별고색(別庫色) 2인, 회계서사(會計書寫) 2인, 수관(守官) 1인, 영사색(營舍色) 1인, 전정색(塡井色) 1인, 도필공(都筆工) 1인, 포진장(鋪陳匠) 1인, 조촉장(造燭匠) 1인, 상침장비(上針匠婢) 2인, 도합 12인에게 각각 무명 1필 지급.

무명 22필을 가을에 별고색(別庫色) 2인, 회계서사(會計書寫) 2인, 수관(守官) 1인, 영사색(營舍色) 1인, 전정색(塡井色) 1인, 도필공(都筆工) 1인, 상침장비(上針匠婢) 2인, 도합 10인에게 각각 무명 2필, 포진장(鋪陳匠) 1인, 조촉장(造燭匠) 1인, 도합 2인에게 각각 무명 1필 지급.

#### 각양 예하

<sup>904)</sup> 장유지(壯油紙) : 들기름을 넣은 두꺼운 종이.

<sup>905)</sup> 고자(庫子) : 각종 창고를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던 하급관직. '고직(庫直), 고지기'라고도 하였다.

절선(節扇) 간품(看品)에 각색((各色) 장인(匠人) 등에게 무명 3필, 도사옥장(都沙玉匠)에 게 무명 1필, 도합 4필 내려 줌.

일을 끝낸 후 선색(扇色) 1인에게 무명 1필, 편수(片手) 1명에게 무명 1필, 도합 무명 2 필을 내려줌.

바친 후에 선색 1인, 편수 1명에게 각각 무명 1필, 도합 무명 2필을 내려줌.

별무도시 좌우 별장에게 연지 2속, 백필 2자루, 진묵 2정을 내려줌.

대자리를 나뢰수직간(羅牢守直間)에 30립(立), 청고자(廳庫子)에게 4립, 청도방자(廳都房子)에게 6립, 청군뢰(廳軍牢)에게 6립을 내려줌.

### 분정(分定) 견감질(蠲減秩)

황밀 15근 8냥, 줄바[條所] 44거리(巨里), 들깨[水荏] 1석 14말, 진옻[全漆] 8홉, 추판(楸板) 4립, 화문석(花文席) 13립, 백문석(白文席) 27립, 초석(草席) 25립, 사슴가죽[鹿皮] 2 령(令), 노루가죽[獐皮] 12령을 춘하에 똑같이 분정 견감함.

황밀 22근, 줄바[條所] 26거리(巨里), 들깨[水荏] 1섬 7말, 진옻 5홉 5사, 추판(楸板) 4립, 화문석 15립, 백문석 28립, 초석 20립, 사슴가죽 2령, 노루가죽 10령을 추동에 똑같이 분정 견감함.

# 책고(冊庫)

돈 450냥, 쌀 150석 매석 3냥은 작전(作錢)에서 가져옴.

돈 300냥, 쌀 100석 매석 3냥은 작전에서 가져옴.

도합 응봉전 750냥에서 450냥은 간역전(刊役錢)으로 지출, 300냥은 해당 색리(色吏) 교구(矯捄)로 내려줌.

도합 응하 750냥.

#### 각양(各樣) 예하(例下)

서책을 인출할 때 책색(冊色) 2인, 도책장(都冊匠) 2명, 범책장(凡冊匠) 13명에게 도합 벼 15섬 지급.

장황(粧黃)<sup>906)</sup>할 때 동롱(同籠)에 배접하는 책장(冊匠) 3명에게 각각 벼 1섬, 무명 1필 지급, 춘추(春秋)에 동일.

유물(油物) 책장(冊匠)에게 쌀 3말, 벼 1섬, 무명 1필 지급, 춘추 동일.

간지(簡紙)를 도침(搗砧)하는 원군(元軍) 1명에게 벼 1섬 지급, 절선(節扇)과 세찬(歲饌) 도 동일.

906) 장황(粧黃) : 인쇄된 책판을 책으로 묶는 일.

진봉(進封)한 후 책색 2인, 도책장 2명, 범책장 18명 등에게 벼 26섬, 무명 22필, 돈 22냥, 도침군(擣砧軍) 등에게 벼 5석 지급, 절선과 세찬도 동일.

간지를 일용하는 책색 2인, 도책장 2명에게 각각 무명 1필, 돈 1냥, 벼 2섬, 범책장 18명에게 각각 무명 1필, 돈 1냥, 벼 1섬, 도합 무명 22필, 돈 22냥, 벼 26섬 지급, 춘추동일.

병풍을 배접할 때 책장 2명, 도책장 2명에게 각각 돈 1냥, 무명 1필 지급.

진상하는 책을 인출할 때 책색 2인, 도책장 2명에게 각각 벼 1섬, 인출하는 책장 등에게 벼 3섬, 도합 벼 7섬 지급.

# 보선고(補繕庫)

돈 189냥 6전 6푼은 대구 청도 양산 경주 밀양 언양의 둔전세(屯田稅)에서 가져옴.

돈 400냥은 대구에서 바친 땔나무와 숯 값으로 민부(民夫)들이 바친 것에서 가져옴.

돈 158냥은 벼 158섬으로 매섬 1냥, 대신 지급하는 작전(作錢)에서 가져옴.

돈 1400냥은 벼 200섬으로 매섬 7전, 대신 지급하는 작전에서 가져옴.

돈 400냥은 쌀 100섬으로 매섬 2냥 2전 5푼, 벼 195섬으로 매섬 9전으로 대신 지급하는 작전에서 가져옴.

도합 돈 1800냥

돈 150냥은 진휼고의 雉鷄 둔세(屯稅)에서 가져옴.

돈 400냥은 방채전(防債錢) 가운데서 가져옴: 산산창(蒜山倉)907)의 염리조(鹽利條)

돈 180냥은 방채전 가운데서 가져옴.

돈 36냥은 배삭전(排朔錢) 가운데서 가져옴[고기값]

도합 응봉전 3313냥 6전 6푼에서 2367냥 4전 3푼은 사들여 배삭하는 각종 값. 216냥은 고기값, 188냥 2전 3푼은 윤년에 배분하는 각종 값 도합 응하 2771냥 6전 6푼

돈 542냥에서 400냥은 산산창의 염리 혁파조로 제하고 실재 142냥을 정월부터 12달로 배분.

11월부터 정월까지 매달 33냥 5전, 2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냥 6전 1푼.

<sup>907)</sup> 산산창(蒜山倉) : 1744년(영조 20)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경상도 김해에 설치한 창고(倉庫).

수미(需米) 응봉 320섬은 영고(營庫)에서 옮겨옴.

24섬은 찹쌀 24섬으로 대신, 12섬은 팥 12섬으로 대신, 3섬 1말 8되는 생강[生干] 1섬 6되로 배삭하고 바꾸어 감.

도합 응하 39섬 1말 8되, 윤년에는 41섬 14말 8되

수미 280섬 13말 2되 5월부터 12달로 배분, 윤년에는 278섬 2되, 매달 23섬 6말 1되, 윤년에는 매달 21섬 5말 7되 8홉 4사: 재해에 따라 줄임.

수미 응봉 280섬은 영고(營庫)에서 옮겨 옴.

39섬 1말 8되: 찹쌀, 팥, 생강 배분을 위와 같이 함, 윤년에는 41섬 14말 8되.

수미 240섬 13말 2되는 정월부터 12달 배분, 윤년에는 238섬 2되, 값 6022냥. 매달 20섬 1말 1되, 윤년에는 매달 18섬 4말 6되 3홉.

찹쌀 응봉 24섬은 수미로 바꾸어 옴, 윤년에는 1섬 10말을 추가로 바꾸어 옴, 값 600냥. 매달 1섬 10말, 12 절일에 각각 5말.

팥 응봉 12섬은 수미로 바꾸어 옴, 값 300냥, 매달 1섬, 윤년에는 1섬 추가하여 바꾸어 옴.

생강 응봉 1섬 6말은 수미로 바꾸어 옴, 값 78냥, 매달 1말, 12 절일에 각각 3되, 윤년 에는 1말 추가로 바꾸어 옴[5월부터 12달 배분]

밀가루 응봉 12섬, 각읍 별회(別會) 겉보리에서 떼어 옴, 값 36냥, 매달 1섬, 윤년에는 상행전(上行錢)을 제하고 취하여 씀.

돈 2367냥 4전 3푼은 貿納하여 배삭하는 각종 본가(本價)에서 가져 옴. 23냥 2전 5푼은 분정하는 각종 값으로 벼 23섬 3말 7되 5홉으로 환산하여 가져옴. 도합 돈 2390냥 6전 8푼에서 44냥은 소금 20섬의 예하(例下)로 제함. 실재 존 2350냥 6전 8푼은 정월부터 12달 배분, 매달 195냥 8전 9푼, 윤년에는 매달 180냥 8전 2푼.

#### 매달 삭하(朔下)

감관(監官) 1원(員)에게 쌀 9말, 북어 3속, 장 1말 삭하. 감관 1원을 추후 추가해도 봉료(俸料)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음. 색리 2인에게 각각 쌀 6말, 북어 3속, 장 6되, 감상(監嘗) 2인에게 각각 쌀 3말, 북어 1 속 5미, 장 3되, 육색(肉色) 1인에게 쌀 3말, 본고자(本庫子) 2인, 설찬직(設饌直) 2인, 도하전(都下典) 2인, 차사(差使) 2인, 육고자(肉庫子) 1인, 도합 9인에게 각각 쌀 3말, 초미(醋米) 3말, 자장육(煮醬肉) 30근, 풀칠할 때의 밀가루 6말, 비누[飛陋] 만들 때의 녹두 6되, 원도한(園徒漢)에게 소금 3말 삭하.

#### 각양 예하

앞뒤로 6달 각 창고에 한 달 가량 도작(都作) 후에 예하.

해당 감관에 돈 50냥을 춘추로 동일 예하.

회계 該監에게 돈 50냥을 춘추로 동일 예하.

외감(外監) 1인, 색리 2인, 회계색 4인에게 각각 돈 20냥을 춘추로 동일 예하.

화기(花器) 값으로 돈 30냥을 춘추로 동일 예하.

이상 춘추에 각각 270냥 예하.

한여름에 該監에게 돈 20냥, 외감에게 돈 4냥, 쌀 1섬, 색리 2인에게 각각 돈 2냥, 쌀 7말, 감상(監嘗) 2인에게 각각 돈 1냥, 쌀 3말, 고자(庫子) 1인에게 돈 2냥 쌀 5말, 도 하전(都下典 ) 1인에게 쌀 5말, 도척(刀尺) 4인에게 각각 돈 1냥, 쌀 2말, 비자(婢子) 6인에게 각각 돈 1냥, 쌀 1말, 장비(醬婢) 1인, 병비(餠婢) 2인, 도합 3인에게 각각 쌀 3말 예하.

이상 도합 돈 42냥, 쌀 4섬 8말 예하.

한겨울에 해당 감관에게 돈 20냥, 쌀 5섬, 외감(外監)에게 돈 10냥, 쌀 1섬, 색리 2인에게 각각 돈 5냥, 감상(監嘗) 2인에게 각각 돈 3냥, 쌀 3말, 고자(庫子) 1인에게 돈 5냥, 쌀 1섬, 도척(刀尺) 4인에게 각각 돈 2냥, 쌀 6말, 비자(婢子) 6인에게 각각 돈 3냥, 쌀 1섬 3말, 장비(醬婢) 1인에게 쌀 3말, 병비(餠婢) 2인에게 각각 쌀 2말, 도하전(都下典) 1인에게 쌀 3말, 원도한(園徒漢)에게 돈 6냥 예하.

이상 삭하 및 예하하는 쌀은 본고의 수미(需米)로 지급.

돈 37냥 6전 7푼은 둔탈(屯頃)로 예하, 12냥은 원도한에게 예하, 4냥은 동구철(銅灸鐵) 및 메주의 볏짚 값[즙장(汁醬) 비용], 18냥은 고자에게 배삭한 소금값, 18냥은 원두한의 김치 절이는 소금값, 소금 5섬은 침장(沈醬) 더해줄 때 값 : 1-2번. 매년 한 차례씩 소금값 예하는 공염(公鹽) 혁파 후 본가(本價)로 사들여옴에 이익이 없어 이를 바로 잡음.

# 육고(肉庫)

돈 324냥은 영고(營庫)에서 옮겨 옴.

돈 216냥은 보선고(補繕庫)에서 옮겨 옴.

도합 540냥 : 정월부터 12달 배분, 매달 45냥, 윤년은 계산하지 않음. 27냥은 영고에, 18냥은 보선고에 예하.

### 매삭 삭하

대좌촉(大座燭) 90자루, 통촉(桶燭) 240자루, 등롱(燈籠)908)의 징청각(澄淸閣) 통촉 30자루, 약직간(藥直間) 고기 30근, 보선고 자장육 30근, 영고 자장육에 쓰이는 고기 4근을 내외 단에 고할 때 삭하.

# 지소(紙所)

돈 3132냥 9전 2푼: 작전(作錢)에서 가져 옴, 쌀은 400섬으로 매섬 2냥, 벼는 2502섬 1말로 매섬 9전, 구지(舊紙) 환작조(還作租)는 90섬 1말로 매섬 9전.

100냥은 백천사(百泉寺) 승료조(僧料租) 100섬으로 매섬 1냥, 작전에서 가져 옴 476냥은 신유년에 추가로 떼내어 들여온 벼 476섬으로 매섬 1냥, 작전에서 가져 옴 도합 3708냥 9전 2푼.

600냥은 연지(年紙) 600속 값으로 공고(工庫)에서 옮겨 옴, 매속 1냥.

1082냥 5전 7푼은 방채전 가운데서 가져 옴.

275냥은 갑오년 별비전(別備錢) 950냥의 분표(分俵)<sup>909)</sup>하는 각 관청의 10분의 4 이자 [利條]에서 가져 옴.

600냥은 저전가(楮田價) 1500냥의 10분의 4 이자에서 가져 옴.

240냥은 진휼고 신둔세(新屯稅)에서 가져옴.

438냥은 절선소 교구조(矯捄租)의 작전(作錢) 가운데서 가져옴

도합 응봉전 6944냥 4전 9푼에서

898냥 1전 5푼은 대지물(大紙物) 본가(本價)에서 들여옴.

871냥 9푼은 대지물 부입(浮入) 잡비로 종이 대동(大同)에서 내어줌.

400냥은 구(舊) 계본지(啓本紙)910) 50속 본가, 매속 8냥, 무술년에 신(新) 계본지 배입

<sup>908)</sup> 등롱(燈籠) : 대나무나 쇠 따위로 살을 만들어 겉에 종이나 헝겊을 씌우고 그 안에 등잔을 넣어 사용하는 등.

<sup>909)</sup> 분표(分俵) : 모든 물품을 나누어줌.

이 시작됨.

50냥은 신계본지 첨가(添價), 무술년에 시작됨

1950냥은 천지(泉紙) 본가, 550냥은 무지(貿紙) 본가, 1380냥은 후지(厚紙) 본가, 160냥은 피지(皮紙)<sup>911)</sup> 본가: 배입조

104냥 계본지 및 천무지(泉貿紙) 짐값

196냥 무지 잡비

350냥 천무지 감가조(減價條)

도합 돈 6944냥 4전 9푼

계본지 응봉 66속 13장(丈) 3절(折) 1, 정월부터 12달 값 배분 400냥, 9월부터 2월까지 매달 6속 13장 3절 1, 윤년에는 매달 5속 14장 3절 1,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4속 9장, 윤년에는 매달 3속 16장

천지(泉紙) 응봉 1500속에서 300속 절선, 200속 세찬 : 두 가지 진봉할 때 간지(簡紙)로. 도합 응하 550속

천지 1000속 정월부터 12달로 값 배분 1300냥, 매달 83속 6장반, 윤년에는 매달 76속 18장반

무지 응봉 500속에서 40속 부채 값으로 떼어냄.

60속 절선, 30속 세찬: 두 가지를 진봉할 때 간지로

50속 밀지(蜜紙)912)로 장계 내봉(內封)을 쌀 때

60속 동지사 구청조(求請條)

도합 응하 240속

무지(貿紙) 260속: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286냥, 매달 21속 13장, 윤년에는 매달 20속 후지(厚紙) 응봉 2300속에서 30속 부채값으로 떼어줌,

후지 2270속에서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1362냥, 매달 189속 3장, 윤년에는 매달 174속 12장 반.

피지(皮紙) 응봉 288속: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172냥 8전, 매달 24속, 윤년에는 매달 22속 3장.

유삼지(油衫紙)<sup>913)</sup> 응봉 13속: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84냥 5전, 매달 1속 1장 반, 윤 년에는 매달 1속.

<sup>910)</sup> 계본지(啓本紙) :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을 쓰는 한지(韓紙).

<sup>911)</sup> 피지(皮紙): 닥나무 껍질의 찌꺼기로 만든, 품질이 낮은 종이.

<sup>912)</sup> 밀지(蜜紙) : 납지(蠟紙). 밀랍(蜜蠟)을 표면에 바른 종이.

<sup>913)</sup> 유삼지(油衫紙) : 비·눈 따위를 막기 위하여 옷 위에 껴입는 유삼(油衫)을 만드는 데 쓰는 종이.

입모지(笠帽紙)<sup>914)</sup> 응봉 22속: 10장에서 14속 12장은 춘추 예하(例下), 입모지 7속 18 장,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64냥 3전 1푼, 매달 13장, 윤년에는 매달 12장.

남소첩지(男梳貼紙)<sup>915)</sup> 응봉 6속 10장: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84냥 5전, 매달 10장 반 3절 1, 윤년에는 매달 10장.

여소첩지(女梳貼紙)<sup>916)</sup> 응봉 6속 10장,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169냥 5전, 매달 10장 반 3절 1, 유년에는 매달 10장.

정유둔지(正油芚紙)<sup>917)</sup> 응봉 7속,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227냥 5전, 매달 11장 반, 윤년에는 매달 10장 3절 2.

차유둔지(次油芚紙) 응봉 7속, 정월부터 12달 배분, 값 136냥 5전, 매달 11장 반, 윤년 에는 매달 10장 3절 2.

선문지(先文紙)918) 응봉 1속, 값 13냥, 10장씩 봄과 가을에 제외하고 바침.

#### 매삭 삭하

중군(中軍)에 천지(泉紙) 1속, 피지(皮紙) 10장, 군관 8인, 사화(寫畵) 2인, 심검(審檢) 2인, 남창별장(南倉別將) 1인에게 각각 천지 1속, 피지 10장, 북지(北紙)에 피지 6장, 별고문서(別庫文書)에 후지 1속, 지통(紙筒)과 통인(通引) 공사지(公事紙)로 천지 27속, 후지 81속, 정부서리(政府書吏) 기별채(奇別債)로 후지 7속, 피지 1장, 봉소차채(封疏箚債)로 후지 2속, 피지 1장, 내단(內壇)에 고할 때[內衙가 감영에 있을 때 삭망으로 나누어지급]에 후유지(厚油紙) 2장, 외단(外壇)에 고할 때[삭망으로 나누어 지급]에 후유지 2장, 병소군호지(兵所軍號紙)로 천지 3장, 회계(會計) 삭작건기(朔作件記)와 문서를 봉할때 무지 2장, 피지 2장, 각각 후유지 13장 공급.

#### 각양(各樣) 예하(例下)

중군 군관, 사화, 심검, 남창별장에게 춘추로 입모지(笠帽紙) 각 1장, 영리(營吏) 마도 (馬徒) 입번(入番)에게 춘추에 입모 각 1사(事) 예하.

<sup>914)</sup> 입모지(笠帽紙) : 갓 위에 씌우는 기름 바른 종이

<sup>915)</sup> 남소첩지(男梳貼紙) : 남성용 빗의 갑을 만드는 종이

<sup>916)</sup> 여소첩지(女梳貼紙) : 여성용 빗의 갑을 만드는 종이

<sup>917)</sup> 정유둔지(正油芚紙) : 비 올 때에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

<sup>918)</sup> 선문지(先文紙) : 중앙의 관리가 지방 출장시 도착 날짜를 미리 알릴 때 쓰는 종이

재가병방(在家兵房) 2인, 파총(把摠) 2인, 지소감관(紙所監官) 2인, 부료장무(付料掌務) 2인, 집사(執事) 4인, 장무초관(掌務哨官) 2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고마감관(雇馬監官) 1인, 진휼감관(賑恤監官) 1인, 보선감관(補繕監官) 2인, 영선감관(營繕監官) 1인, 수성창감관(修城倉監官) 1인, 중영병 장무(中營兵掌務) 2인, 별무사(別武士) 장무 1인, 궁물차지도훈도(軍物次知都訓導) 1인, 군뢰차지도훈도(軍牢次知都訓導) 1인, 마군차지도훈도(馬軍次知都訓導) 1인, 보병차지도훈도(歩兵次知都訓導) 1인, 도합 28인에게 봄·가음로 각각 입모(笠帽)919) 1사(事) 예하.

기관 2인, 호방 2인, 공방 2인, 회계색 4인, 별고색 2인, 지소색 2인, 군기색 2인, 영선 색 2인, 고마색 2인, 호적색 2인, 진휼색 2인, 수관 1인, 배지(陪持) 10인, 수성창색 2인, 책색 2인, 의생 2인, 보선색 2인, 보감상(補監嘗) 2인, 전정색 1인, 영감상(營監嘗) 1인, 환상색 1인, 겸제색 1인, 남창색 2인, 산산창색 2인, 포항창색 1인, 낙육재색 1인, 중영도색(中營都色) 1인, 영사색(營舍色) 1인, 제도색(祭都色) 1인, 절선색 1인, 약계색(藥契色) 6인, 도합 65인 춘추로 각각 입모 1사 예하.

수노 2인, 급창(及唱) 4인, 도합 6인 춘추로 각각 입모 1사 예하.

## 군기(軍器)

무명 16동(同)을 유황군 800명에게 매명 1필 신역(身役)으로 납부 70동을 각읍 신사(新射)할 때 무명 가운데서 떼어옴.

도합 응봉 무명 86동에서

5동은 수성창(修城倉)으로 이송(移送)하여 성역(城役) 보수(修補)할 때, 4동 30필은 도시 (都試)<sup>920)</sup>할 때, 6동은 四孟朔에 활쏘기 시상할 때 , 3동은 춘추로 시상할 때 예하 도합 응하 18동 30필

무명 67동 20필 10월부터 12달 배분, 값 6740냥, 매달 5동 30필 33척, 윤년에는 매달 5동 9필 9척

돈 500냥, 쌀 70석, 매석 2냥 2전 5푼, 벼 380석 9말[매석 9전, 급대작전(給代作錢)<sup>921)</sup>에서 가져 옴]

돈 100냥, 쌀 20석, 매석 2냥 2전 5푼, 벼 61석, 매석 9전, 급대 작전에서 가져 옴.

<sup>919)</sup> 입모(笠帽) :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기름종이로 만든 물건. 갈모라고도 한다.

<sup>920)</sup> 도시(都試) : 중앙에서는 병조(兵曹)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지방은 관찰사 (觀察使)와 각 진영(鎭營)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매년 봄과 가을에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제도.

<sup>921)</sup> 급대작전(給代作錢) : 값을 쳐서 돈으로 대신 주는 것

도합 응봉 돈 600냥에서 500냥은 군물 수보할 때 예하, 100냥은 약환가(藥丸價)로 예하 도합 응하 600냥

### 매삭 삭하

파총 2인에게 각각 무명 2필,

재가병방 2인, 군기감관 1인, 보선감관 1인, 지소감관 2인, 영선감관 1인, 고마감관 1인, 별무장무 1인, 수성창 감관 1인, 진휼감관 1인, 집사 4인, 장무초관 2인, 부료장무(付料掌務) 2인, 중영병 장무(中營兵掌務) 2인, 도궁인(都弓人) 1인에게, 각각 무명 1필, 순령수(巡令手) 가료대(加料代)로 무명 4필,

내단(內壇)에 고할 때 무명 20척[내아가 감영에 있을 때], 단에 고할 때 무명 20척, 별 공수포 8척, 상공수포 5척, 청공수포 5척, 중영공수포 5척,

부료군관 12인에게 각각 무명 1필, 돈 각각 2냥을 수보전 가운데서 지급,

매달 무명 12필[돈 24냥]을 작대군중 12인에게 각각 무명 1필 지급,

매달 무명 10필[몰기(沒技)<sup>922)</sup>하면 과녁 가운데 오중(五中)<sup>923)</sup>이라도 가상(加賞)으로 무명 2필씩 입격에 따라 지급, 군관 동일]

작대초관 우등 1인에게 무명 1필 : 삭사(朔射)<sup>924)</sup> 시상 항목

#### 각양 예하

무명 36필 34척, 대전 73냥 7전을 부채값으로 떼어 줌.

#### 활쏘기 시험의 상(賞) 격식(格式)

맹삭(孟朔)<sup>925)</sup> 활쏘기의 몰기(沒技)에 상으로 무명 5필, 가상(加賞)으로 무명 2필, 분수 (分數)가 있으면 매 1분에 무명 20척씩 가상(加賞).

과녁 가[邊] 사중(四中)에 무명 3필, 분수가 있으면 매 1분에 무명 20척씩 가상.

삼중(三中)에 무명 2필, 이중(二中)에 무명 1필: 분수가 있으면 매 1분에 무명 20척씩

<sup>922)</sup> 몰기(沒技): 활쏘기 시험의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사(騎射) 종목에 모두 명중시키는 것.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한 기술에 대해서 만점(滿點)을 얻은 것을 말함.

<sup>923)</sup> 오중(五中) : 활을 쏘아 다섯 발 적중시킴.

<sup>924)</sup> 삭사(朔射) : 매월 음력 초하루에 문무관을 대상으로 궁술을 시험하던 행사

<sup>925)</sup> 맹삭(孟朔)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이 각각 시작하는 달. 즉 정월, 사월, 칠월, 시 월을 말한다.

가상.

과녁 가운데[貫] 일중(一中)에 무명 20척, 이중(二中)에 무명 2필, 삼중(三中)에 무명 3 필 20척, 사중(四中)에 무명 5필, 오중(五中)에 무명 7필 20척, 가상에 무명 2필. 초하루 활쏘기 시험에 몰기(沒技)하면 과녁 가운데 5중이라도 가상으로 무명 2필씩. 활쏘기에 상으로 과녁 한가운데 일중(一中)에 돈 1냥, 과녁 가 일중(一中)에 무명 20척.

## 군수고(軍需庫)

무명 24동 2필은 마보군(馬保軍) 1202명, 무명 39동 46필은 성정군(城丁軍) 1996명, 무명 18동 38필은 수첩군(守堞軍) 938명, 무명 6동 3필은 복마군(卜馬軍) 303명, 무명 13동 16필은 양여군(良余軍) 666명이 매명 1필씩 신역(身役)으로 납부.

도합 응봉 무명 102동 5필에서 4동 48필은 중군(中軍) 이하 각 하인 등에게 춘추 옷감 [衣資]로 예하, 1동 38필은 중군 이하 각 하인 등에게 겨울 이엄채(耳掩債)로 예하, 20 동은 갑오년 별비(別備) 남리전(南利錢) 1만 냥, 분표리(分俵利) 2천냥으로 임신년에 혁 파하고 대신 방채전(防債錢)으로 떼어줌.

34필은 순력배행군관(巡歷陪行軍官) 중방(中房)에 예하

12필은 중영(中營)에 떼어줌

40필은 장교들 전최(殿最) 및 포폄(褒貶)으로 춘추에 예하

4동은 노비 등 춘추에 예하

17필은 별공수(別供須) 하인(下人) 등에게 춘추에 예하

4동 11필 6척은 나뢰(羅牢) 등에게 춘추에 예하

도합 응하(應下)는 무명 37동 6척

무명 65동 4필 34척은 10월부터 12달로 배분, 값 6509냥 7전 매달 5동 21필 9척 5촌, 윤년에는 매달 5동 15척 쌀 66석 10말, 수미군(需米軍) 200명, 매명 5말씩 신역으로 납부 8석 3말, 수솔군 41명, 매명 3말씩 신역으로 납부 326석 7되는 각읍 별회미(別會米)에서 떼어옴.

도합 응봉 쌀 400석 13말 7되에서 35석 5말 별무사 도시(都試)에 예하, 7석 13말 장교들의 전최에 춘추 예하, 33석 9말 장교들에게 춘추에 예하

도합 응하는 76석 12말

쌀 324석 1말 7되, 10월부터 12달로 배분, 값 972냥 3전 4푼, 매달 27석 1되, 윤년에

는 추가로 마련함.

콩 9석 6말 8되, 각읍 별회태(別會太)에서 떼어옴.

콩14말 2되는 영고(營庫)에서 옮겨옴.

도합 응봉은 콩 10석 6말.

12말은 별무 도시 예하.

콩 9석 9말은 10월부터 12달로 배분, 값 14냥 4전, 매달 12말, 윤년에는 추가로 마련함

돈 593냥, 쌀 80석, 매석 2냥 2전 5푼, 벼 458석 13말 5되, 매석 9전

돈 100냥, 쌀 20석, 매석 2냥 2전 5푼, 벼 61석 1말 5되, 매석 9전[급대작전(給代作錢)에서 가져 옴]

도합 돈 693냥에서 593냥은 나뢰(羅牢) 등에게 춘추에 옷감으로 예하, 100냥은 별무 도 시 호궤(犒饋)로 예하

도합 응하는 693냥

#### 매삭(每朔) 삭하(朔下)

중군(中軍)에게 무명 3필, 쌀 3섬

군관 8인, 사화(寫畵) 2인, 심검(審檢) 2인에게 각각 무명 3필

파총(把摠) 2인에게 각각 쌀 9말, 콩 6말

재가병방(在家兵房) 2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지소감관(紙所監官) 2인, 집사(執事) 4인, 영선감관(營繕監官) 1인, 고마감관(雇馬監官) 1인, 장무초관(掌務哨官) 2인, 중영병방(中營兵房) 2인, 별무사장무(別武士掌務) 1인, 상영도훈도(上營都訓導) 2인에게 각각쌀 9말, 무명 1필

중영장무(中營掌務) 2인에게 각각 쌀 4말, 무명 1필

중영도훈도(中營都訓導) 1인에게 쌀 6말, 무명 1필

보선감관(補繕監官) 1인, 진휼감관(賑恤監官) 1인, 부료장무(付料掌務) 2인에게 각각 무명 1필[쌀은 각 해당 창고에서 지급].

색리(色吏) 2인, 고자(庫子) 1인, 군기고자(軍器庫子) 1인, 화약고자(火藥庫子) 1인, 중영수배(中營隨陪) 1인, 기수군(旗手軍) 6인, 도궁인(都弓人) 1인, 도시인(都矢人) 1인에게 각각 쌀 6말

대포수(大砲手) 2인에게 각각 쌀 4말

도사령(都使令) 3인, 도군뢰(都軍牢) 3인에게 각각 쌀 6말

무부(巫夫) 도군뢰(都軍牢) 2인에게 각각 쌀 3말

기패관(旗牌官)에게 삭강(朔講) 상(賞)으로 쌀 1섬

번궁인(番弓人) 1인에게 쌀 6말 하전(下典) 2인에게 각각 쌀 3말 삭하

## 고마고(雇馬庫)

돈 2655냥: 쌀 500섬 매섬 2냥 2전 5푼, 벼 1700섬 매섬 9전 - 급대작전(給代作錢)에서 가져 옴.

530냥: 방채전 가운데서 가져 옴.

38냥: 모군(募軍) 20명 신역으로 납부

도합 응봉 돈 3223냥에서

1215냥은 교체시 신구행(新舊行) 쇄마(刷馬)값

393냥은 절선, 263냥은 세찬을 진봉(進封)할 때 짐값

104냥은 별고(別庫)로 옮겨 윤년에 배분하여 첨가할 때

도합 응하 1975냥

돈 1248냥 정월부터 12달로 배분, 매달 104냥, 윤년에는 별고(別庫)에 유치(留置)하는 돈 가운데서 옮겨 옴.

병 응봉 216섬, 각 읍 별회조(別會租)에서 떼어옴, 216섬은 나뢰(羅牢) 등의 급료(給料). 무명 응봉 3동 10필은 격군(格軍) 150명, 조역군(助役軍) 10명, 매명 1필 신역으로 납부, 3동 10필은 공고(工庫)로 옮겨 보냄.

# 영선(營繕)

돈 응봉 3558냥: 쌀 800섬[石], 매섬 2냥 2전 5푼, 벼 1953섬 5말, 매섬 9전, 급대작전(給代作錢)에서 가져 옴.

3320냥: 소목(燒木) 66400속(束) 값, 매속 5푼,

238냥: 숯 595섬 값, 매섬 4전[매달 배분 항목]

도합 응하 2558냥.

소목(燒木) 응봉 66400속, 값 3320냥

정월 10월에는 매달 6245속, 11월 12월에는 매달 6245속, 2월 9월에는 매달 4965속, 3월 8월에는 매달 4327속 반, 4월-7월에는 매달 3617속 반[응하(應下) 항목, 매달 바칠때]

도합 응하 5805속

소목 8395속: 정월부터 12달로 배분, 매달 699속 반, 윤년에는 상등(上等)은 매달 166 속. 정월 및 10월-12월, 2월과 9월에는 매달 264속, 3월과 8월에는 매달 312속 반. 하 등은 매달 367속 반, 4-7월.

숯 응봉 595섬, 값 238냥.

상등은 매달 21섬, 중등은 매달 18섬 12말, 하등은 매달 16섬 3말[응하 항목, 매달 바칠 때]

도합 응하 224섬.

숯 371섬: 정월부터 12달로 배분, 매달 30섬 13말 7되, 윤년에는 상등은 매달 26섬 13 말 8되, 중등은 매달 27섬 1말 4되, 하등은 매달 27섬 4말 4되.

### 매삭 삭하

징청각(澄淸閣) 상방(上房)에 상등 4달[매일 3속], 중등 4달[매일 2속]. 하등 4달[매일 1속]

침방(寢房)에 상등 4달[매일 2속], 중등 4달[매일 1속], 하등 4달[매일 반속] 외방(外房)에 상등 4달[매일 1속], 중등 4달[매일 1속], 하등 4달[매일 1속] 별공수(別供須) 식모(食母)에게 상등 4달[매일 5속], 중등 4달[매일 5속], 하등 4달[매일 4속]

매물(每物)에 상등 4달[매일 6속], 중등 4달[매일 5속], 하등 4달[매일 4속] 반상(盤床)에 상등 4달[매일 2속], 중등 4달[매일 1속], 하등 4달[매일 1속] 추가로 삼등(三等)<sup>926)</sup> 지급, 매달 각각 165속.

상공수(上供須) 식모에 상등 4달[매일 5속], 중등 4달[매일 4속], 하등 4달[매일 3속] 매물(每物)에 상등 4달[매일 4속], 중등 4달[매일 3속], 하등 4달[매일 2속 반] 반상(盤床)에 상등 4달[매일 1속 반], 중등 4달[매일 1속], 하등 4달[매일 1속] 상방 다모(茶母)에게 상등 4달[매달 60속], 중등 4달[매달 30속], 하등 4달[매달 30속] 책방 다모에 상등 매달[매달 30속], 중등 4달[매달 30속], 하등 4달[매달 15속] 중영(中營)에 상등 매달 390속, 중등 매달 330속, 하등 매달 270속 비장청(裨將廳) 매방(每房)에 상등 매달 60속, 중등 매달 30속, 하등 매달 30속 청공수(廳供須) 식모에게 상등 4달[매일 5속], 중등 4달[매일 4속], 하등 4달[매일 4속] 매물(每物)927)에 상등 4달[매일 4속], 중등 4달[매일 3속], 하등 4달[매일 3속]

<sup>926)</sup> 삼등(三等) : 상등, 중등, 하등.

<sup>927)</sup> 매물(每物) : 쓰기에 요긴한 여러 물건

반상(盤床)에 상등 4달[매일 1속 반], 중등 4달[매일 1속], 하등 4달[매일 1속] 다모(茶母)에게 삼등을 매달 각각 30속

중방(中房)에 상등 매달 60속, 중등 매달 30속, 하등 매달 30속

사화(寫畵) 2인에게 상등 매달 각각 60속, 중등 매달 각각 30속, 하등 매달 각각 30속 심검(審檢) 2인에게 상등 매달 각각 60속, 중등 매달 각각 60속, 하등 매달 각각 60속 남창별장(南倉別將)에게 상등 매달 60속, 중등 매달 30속, 하등 매달 30속

재가병방(在家兵房)의 방목(房木)과 취반목(炊飯木)으로 상등 매달 65속, 중등 매달 50속, 하등 매달 42속 반.

파총(把摠) 집사(執事) 기관(記官) 호방(戶房)의 방목(房木)과 취반목(炊飯木)으로 상등 매달 각각 65속, 중등 매달 각각 50속, 하등 매달 각각 42속 반.

영리청(營吏廳)의 방목과 취반목으로 상등 매달 250속, 중등 매달 200속, 하등 매달 150속.

공사청(公事廳)에 상등 매달 30속, 중등 매달 30속, 하등 매달 15속

보선감관 1인, 영선감관 1인, 지소감관 1인, 고마감관 1인, 수성창감관 1인, 부료장무 1인, 군기감관 1인, 겸제감관 1인, 중영병장무 1인, 진휼감관 1인, 별무사장무 1인, 장무초관 1인, 도합 12인에게 상등 매달 각각 30속,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각 15속, 하등 4달은 동일.

공방 1인, 수창색 1인, 보선색 1인, 지소색 1인, 고마색 1인, 진휼색 1인, 군기색 1인, 남창색 1인, 의생 1인, 절선색 1인, 호적색 1인, 영선색 1인, 낙육재색 1인, 겸제색 1인, 책색(冊色) 1인, 배지(陪持) 1인, 약계색 1인, 전리(典吏) 1인, 전정색(填井色) 1인, 도합 19인에게 상등 매달 각각 30석,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 15속, 하등 4달 동일.

수관방(守官房) 배리청(陪吏廳) 통인방 상훈도청(上訓導廳) 중훈도청(中訓導廳) 관노방사령방 군뢰방 신군뢰방(新軍牢房) 청군뢰방(廳軍牢房) 책장방 약직방(藥直房) 급창방청(及唱房廳) 도방자청(都房子廳) 기생방 조창방(調唱房) 순령수청(巡令手廳) 취고수방(吹鼓手房), 도합 18처에 상등 매달 각각 30속,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각 15속, 하등 4달은 동일.

별고색 회계색에게 상등 매달 각각 60속,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각 30속, 하등 4달은 동일. 공고(工庫) 소목장방(小木匠房)의 취반목(炊飯木)으로 상등 매달 60속, 중등 매달 50속, 하등 매달 42속 반.

징청각(澄淸閣)의 약직간 순령수문직간 내동문직간 궁인방 사령수직간 군뢰수직간 도합 6처에 상등 매달 각각 30속,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각 15속, 하등 4달은 동일.

나뢰수직간(羅牢守直間) 화토목(火吐木)으로 상등 매달 30속,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각 15속, 하등 4달은 동일.

회계문서방에 삼등 매달 30속,

지소유물방(紙所油物房)에 삼등 매달 60속,

궁고(弓庫)에 점화목(點火木)으로 상등 매달 30속, 2월과 9월 두 달은 동일, 3월과 8월 두 달은 각각 15속, 하등 매달 30속.

청통인수직간 청도방자수직간 청군뢰수직간에 상등 매달 각각 30속, 중등 동일, 하등 매달 각각 15속.

영고 보선고의 두 공수(供須) 자장목(煮醬木)으로 3등 매달 각각 30속.

단에 고할 때 삼등 매달 각각 8속.

수기방(隨妓房)에 隨時로 상등과 하등, 각각 동일하지 않음.

나뢰(羅牢) 등의 화토목(火吐木) 대전(代錢) 120냥은 지소(紙所)의 천무지(泉貿紙) 감가 (減價) 중에서 떼어 준 후 지급하지 않다가 근래에 다시 지급.

## 숯 삭하(朔下)

징청각에 상등 매일 1말, 중등 매일 7되, 하등 매일 5되

약직에게 삼등 매달 2섬

별공수(別供須) 도척(刀尺)에게 상등 매일 2말, 중등 매일 1말 8되, 하등 매일 1말 2되, 삼등 매달 1섬 9말 추가로 지급.

상공수(上供須) 도척에게 상등 매일 1말 3되, 중등 매일 1말, 하등 매일 7되

청공수 도척에게 상등 매일 1말 3되, 증등 매일 1말 2되, 하등 매일 1말

회계문서방에 삼등 매달 3말

비장청 매방(每房)에게 삼등 매달 각각 3말

사화(寫畵) 2인에게 3등 매달 각각 1섬

중영에 3등 매달 1석 9말[火炭과 灸炭]

심검 2인에게 삼등 매달 각각 1섬

남창별장에게 삼등 매달 3말

영리청에 삼등 매달 1섬

영리공사청에 삼등 매달 6말

공고(工庫) 소목장(小木匠)에게 삼등 매달 3말

도궁인(都弓人)에게 3등 매달 9말

별무도시 후에 좌우별장에게 나무 90속 예하.

## 겸제고(兼濟庫)

돈 응봉 1155냥 8전 4푼은 각 읍 둔전답 세전에서 가져옴.

211냥 3전은 해당 감영 색고(色庫)의 색락(色落)928)에서 지급함.

돈 944냥 5전 5푼에서 19냥 4푼은 청도 둔전세전에서 가져옴.

돈 756냥은 벼 840섬 매석 9전으로 급대작전(給代作錢)에서 가져옴.

돈 250냥은 방채전에서 사져옴, 산산창(蒜山倉)의 소금 이자.

돈 227냥 3전 7푼은 정미년 별비둔세조(別備屯稅租) 작전(作錢)에서 가져 옴.

도합 응봉전 2196냥 9전 5푼에서

220냥은 대구 민부(民夫)들이 납부한 소목가(燒木價)에서 방급(防給)929)함.

52냥은 모군(募軍) 20명에게 춘추에 예하

10냥은 모군이 쓰는 철물값으로 예하

385냥 5전은 교체할 때 신구 행하인(行下人) 노자

22냥은 절선과 세찬을 진봉하러 가는 하인 등의 노자

125냥은 대구의 초고(藁草)로 방급(防給)

3냥은 고사(庫舍) 수보(修補)할 때

109냥 3전 8푼은 청초 437단 반의 값으로 중군 이하 마료.

58냥 7푼은 윤년에 배분하여 더해 쓸 때 별고 보역전으로 옮겨줌.

250냥은 산산창 염리전 혁파 항목.

도합 응하 1234냥 9전 5푼.

돈 962냥은 정월부터 12달로 배분, 매달 80냥 1전 6푼, 윤년에는 별고 유치전 가운데 서 옮겨옴.

돈 180냥은 벼 150석, 매석 1냥 2전으로 작전에서 가져옴.

돈 180냥은 해당 색리의 교구(矯捄)에 예하.

#### 매달 삭하

감관 1인에게 돈 6냥, 색리 1인, 고자 1명에게 각각 돈 2냥,

차사(差使) 1명. 하전(下典) 3명에게 각각 돈 1냥.

모군(募軍) 20명에게 각각 돈 3냥,

편양암(鞭羊庵) 승도(僧徒)에게 돈 3냥, 둔탈전(屯頉錢) 2냥 7전 삭하.

<sup>928)</sup> 색락(色落):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간색(看色)이나 모자라는 쌀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던 곡식. 색모(色耗).

<sup>929)</sup> 방급(防給) : 중간에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

# 약계(藥契)

돈 응봉 480냥은 본국(本局)에 유치되어 있는 돈 1600냥의 3분의 1 이자에서 가져옴, 300냥은 경인년 정월에 해당 색리 등의 정소(呈訴)로 감하(減下)

돈 180냥에서 120냥은 방채전 가운데서 가져옴.

도합 300은 정월부터 12달로 나누어 배분, 매달 25냥, 윤년에는 매달 23냥 7푼.

## 절선소(節扇所)

돈 3269냥 4전 6푼은 벼 2724섬 8말 3되, 매섬 1냥 2전으로 원분정(元分定)의 대작전 (代作錢)에서 가져옴.

돈 1296냥은 1080섬, 매섬 1냥 2전으로 작전(作錢)에서 가져옴.

돈 367냥 8전 8푼은 벼 306섬 8말 5되, 매섬 1냥 2전으로 작전에서 가져옴.

돈 152냥 8전은 영고(營庫)에서 옮겨 옴.

돈 203냥 5전, 62냥은 공고(工庫)에서 옮겨 옴.

58냥은 지소(紙所)에서 옮겨 옴.

60냥은 방채전 가운데서 가져 옴.

73냥 7전은 군기(軍器)에서 옮겨 와 매달 나누어 줌.

14냥 8전 6푼은 매달 나누어 주고 남은 이자 가운데서 가져옴, 충보(充補)하기에 부족함.

도합 응봉전 5558냥 2전에서

438냥은 지소(紙所)에서 매달 배분하는데서 떼어 줌.

766냥은 해당 창고의 소속 급대작전(給代作錢)으로 예하

도합 1204냥.

돈 4354냥 2전은 원조(元造) 부채 15000자루 원본가(元本價)

#### 각양 예하

내의원(內醫院)에 연례(年例)로 바치는 미선(尾扇)은 춘추로 각각 10자루

이조 병조 관안(官案) 첨지(簽紙) 6랍(臘)은 두 달 관안 수정할 때 올려 보냄, 값은 본별회(本別會)에서 회감(會減)함, 각 읍에서 분정(分定)함.

여름에 백색지(白色紙) 황국지(黃菊紙) 도화지(桃花紙) 청화지(靑花紙) 각각 1속.

겨울에 황국지 청화지 각각 2속, 백색지 도화지 각각 1속[이조와 병조 동일]

진봉(進封) 후 부채 200자루는 해당 감관(監官)에게, 부채 100자루는 진봉하러 가는 색

리(色吏) 등에게 예하.

부채 1200자루, 원조선(元造扇) 15000자루 가운데 안에 부서진 화살대가 있으면 감해 줌.

## 진휼고(賑恤庫)

돈 응봉 520냥은 쌀 80섬[매섬 2냥 2전 5푼]과 벼 377섬[매섬 9전]으로 급대작전(給代作錢)에서 가져 옴.

돈 480냥은 영부(營府) 원도한(圓徒漢) 등에게 예하.

돈 40냥은 각 창고에서 매달 배분하거나 윤년에 배분할 때 별고(別庫) 보역전(補役錢)으로 옮김.

돈 1082냥 4전 7푼은 치계(雉鷄) 둔전답세(屯田畓稅) 조작(租作)에서 가져 옴.

297냥 9전, 200냥은 영고(營庫)의 배삭(排朔)으로 가져 감.

150냥은 보선고의 배삭으로 가져 감.

15냥 5전은 훈조소(燻造所)에 예하함.

419냥 7푼은 대구부와 진영에 출급함. 본부에서 쓰는 꿩과 닭 부수(夫數) 조목.

도합 1082냥 4전 7푼.

### 매삭 삭하 및 춘추 예하

감관 1인에게 매달 쌀 9말, 색리 2인에게 매달 각각 쌀 6말 지급[3말은 도하전(都下典)에게 옮겨 지급하고 3말은 둔차사(屯差使)에게 옮겨 지급함]

환상색(還上色) 1인, 고자(庫子) 1명에게 매달 가각 쌀 6말, 색리 2인에게 춘추로 쌀 각 각 12말 지급[봄에 1섬 9말, 가을에 1섬 9말]

# 수성창(修城倉)

돈 500냥은 무명 5동(同)으로 대신함, 군기(軍器)에서 옮겨옴.

600냥은 쌀 80섬[매섬 2냥 2전 5푼]과 벼 464섬[매섬 9전]으로 급대 작전에서 가져 옴. 도합 응봉전 1100냥에서 돈 81냥은 해당 창고에, 돈 1019냥은 성역(城役) 보수(修補)할때 예하함.

### 매삭 삭하 및 춘추 예하

감관 1인에게 쌀 9말, 무명 1필,

색리 2인, 고자 2명, 성문지기 6명에게 각각 쌀 6말,

도하전 2명에게 각각 쌀 3말을 본창(本倉) 환모미(還耗米)와 성역(城役) 무명 가운데서 지급함.

감관 1인에게 춘추에 각각 쌀 12말, 무명 2필, 겨울에 이엄채(耳掩債) 2필을,

색리 2인에게 춘추에 각각 쌀 12말, 무명 2필을,

육문(六門)지기에게 춘추에 각각 무명 1필을 본창 환모미와 성역 무명 가운데서 지급함.

# 산산창(蒜山倉)

돈 응봉 11200냥은 명도(鳴島)와 녹도(菉島) 두 섬의 염전세(鹽田稅)에서 가져옴.

4000냥은 염민(鹽民)에게 내어줌, 소금 200섬의 본가(本價).

500냥은 남영전(南營錢)으로 떼어 줌.

4000냥은 비공(婢貢)으로 상납함.

1500냥은 각 창고 배삭조(排朔條)로 방채전에 옮겨 줌,

1200냥은 육색고(肉色庫)에 이자없이 교구(矯捄)함[기묘년에 혁파하고 김해부로부터 직접 상납]

도합 응하 11200냥.

#### 매삭 삭하

별장에게 매달 쌀 2섬, 반찬값으로 쌀 1섬, 감관 1인에게 매달 쌀 1섬, 색리 2인에게 매달 각각 쌀 6말, 고자 1명에게 매달 쌀 6말, 담장 수리하는 품삯으로 쌀 5섬[매년 지급]을 본창(本倉) 별회미(別會米)로 지급.

본창 병방 2인에게 매달 각각 벼 1섬, 창예(倉隷) 10명에게 매달 각각 벼 10말, 취반비(炊飯婢) 1인에게 매달 벼 10말, 공사(公事)를 가지고 가는 자의 품삯으로 벼 10섬 10말[매년 지급]을 본창 모군세조(募軍稅租)를 방채에 이록(移錄)한 후 본창 방채조로 지급함. 임술년에 방채곡을 별회에 합록(合錄)한 후 본창 별회조로 지급.

# 남창(南倉)

무명 6동은 유황군 300명에게 각각 1필씩 신역으로 납부, 무명 10동은 각 읍 신사목(新射木)<sup>930)</sup> 가운데서 구별하여 가져 옴. 도합 응봉 무명 16동. 무명 16동은 본창의 군졸에게 지급

### 매삭 삭하 및 춘추 예하

무명 36필을 별장 삭포(朔布)로 매달 3필, 무명 36필을 가산별장 삭포 및 반찬값으로 매달 3필 삭하.

무명 8필을 별장에게 춘추로 각각 4필, 무명 16필을 가산별장에게 옷감으로 사등(四等)<sup>931)</sup>에 각각 4필, 48필을 수첩병(守堞兵) 장무(掌務) 4인에게 매달 각각 1필, 4필을 색리 2인에게 춘추에 각각 1필 예하. 2필을 총섭승(摠攝僧)의 소금값으로 예하.

4필을 수첩병 장무 4인에게 춘추로 각각 20척, 12필을 총섭승 삭포(朔布)로 매달 1필, 4필을 가산진 병교(兵校) 1인에게 춘추에 각각 2필 예하.

2필을 가산진 수배(隨陪) 1인에게 춘추에 각각 1필 예하,

1필을 가산진 통인 1명에게 춘추에 각각 20척 예하.

37필 13척을 장 담그는 소금 18섬 10말 값으로, 2필 20척을 장독에 장 담글 때 예하. 1필 14척을 잠 담그는 장독으로 봉할 때 예하.

15필은 방천(防川)할 때 품삯, 3동 12필을 창예(倉隸) 등 27명에게 각각 매달 20척, 2 필은 과녁[貫革] 4좌(坐)를 들여오는 값, 1동 4필을 통인 9명에게 각각 매달 20척, 40필 27척을 장 담그는 소금 첨가하는 값으로 예하[공염(公鹽) 혁파 후].

도합 무명 9동 49필 34척.

유황목(硫黃木)에 비해 3동 49필 34척을 더하여 신사목(新射木)으로 첨용(添用)할 때 내려 줌. 별장 1인에게 매달 쌀 3섬 6말 1되, 채소와 벼 매달 1석.

수첩병방 2인, 장무 2인에게 매달 각각 쌀 3말,

색리 2인, 장무(掌務) 기패관(旗牌官) 1인, 도고자(都庫子) 1인, 천주사(天柱寺) 군기주장 승(軍器主掌僧) 1인에게 매달 각각 쌀 6말,

군기고자(軍器庫子) 1인, 화약고자 1인, 성문지기 3인에게 매달 각각 쌀 5말,

암문(暗門)지기 2명에게 매달 각각 쌀 4말,

총섭승(摠攝僧) 1인, 대장승(隊長僧) 1인에게 매달 쌀 1섬 8말,

대포수(大砲手) 50명 도중(都中)에 매달 쌀 1섬,

炊飯婢 1명에게 매달 쌀 3말.

색리 2인에게 춘추에 각각 쌀 12말 예하.

손실의 경우에 쌀 매년 12섬 예하,

<sup>930)</sup> 신사목(新射木): 새로운 사부(射夫)에게 거두는 무명.

<sup>931)</sup> 사등(四等): 춘등(春等), 하등(夏等), 추등(秋等), 동등(冬等)을 말함. 계절별로 납부하는 세금.

북창사태(北倉射太) 24섬은 환록(還錄)하고 쌀 12섬으로 대신함[보성미(補城米) 지급 항목에서 본창(本倉)으로 이록(移錄)하고 대신 본창의 별회미(別會米)로 지급함], 연례의 침장염 및 쌀 운반비 매년 7말 5되, 총섭승의 장태(醬太) 매년 2섬.

# 각양(各樣) 잡례(雜例)

알성(謁聖)할 때 향교에 쌀 3섬, 벼 10섬[대구(大邱) 별회(別會)], 무지(貿紙) 5속, 백지(白紙) 5속, 황필(黃筆) 1단, 진묵(眞墨) 1동, 건삼어(乾三魚) 4속, 미역 20근,

양사재(養士齋)에 쌀 2섬, 벼 10섬[대구 별회], 무명 3필, 무지 2속, 백지 5속, 황필 5자루, 진묵 1동,

사마재(司馬齋)에 벼 2섬, 연경서원(硏經書院)에 벼 5섬, 표충서원(表忠書院)에 벼 10섬, 전직(殿直) 등에 벼 11섬, 객사 유생에게 벼 8섬 예하.

양사재에 벼 10섬을 연례(年例)로 지급[대구 별회],

장 담글 때 콩 3섬, 소금 2섬을 향교에, 콩 2섬, 소금 1섬을 양사재에 예하.

중군(中軍)에서 신연(新延)할 때 갖출 것으로 선문지(先文紙) 1장(丈), 유삼(油衫) 1벌, 입모(笠帽) 1사(事), 남소첩(男梳貼) 1부(部), 여소첩(女梳貼) 1부, 연지(年紙) 1속, 백지(白紙) 2속, 황필(黃筆) 2자루, 진묵(眞墨) 2정(丁), 황촉(黃燭) 2쌍, 마철(馬鐵) 2부, 간지(簡紙) 100폭(幅).

중영(中營)에서 도배할 때[신연(新延)할 때] 연지 2속, 후지 17속, 피지 8속, 가는 줄[細繩] 8동, 생마(生麻) 2근, 진말(眞末) 2말 예하.

제청하인(祭廳下人)에게 예하 : 제도색(祭都色) 1인, 제고자(祭庫子) 1인, 숙수(熟手) 1인, 조과비(造果婢) 2인, 병비(餠婢) 1인, 도척노(刀尺奴) 2인, 장비(醬婢) 1인, 과실비(果實婢) 2인, 수급비(水汲婢) 2인, 면비(糆婢) 1인에게, 도합 쌀 2섬 3말, 벼 6섬 5말, 무명 3필 20척 예하.

기제사 제수를 거행한 후 첩하(帖下)[待帖 入下].

회계 도록(都錄) 예하 : 영고 도록 연지(年紙) 5속, 공고 도록 연지 5속, 보선고 도록 연지 2속, 각 창고 도록 연지 1속 10장, 천지(泉紙) 6속 6장, 각 창고 편람 천지 1속, 황필 1자루, 백필 4자루, 무심필(無心筆) 4자루, 진묵 3정, 자물쇠를 갖춘 농(籠) 3부(部). 진상하러 가는 군교가 새재를 넘은 후 노자로 쌀 4말, 북어 4속, 미역 10냥, 장 4되, 돈 4냥. 전죽(箭竹)을 영납(領納)하러 가는 배지(陪持)932)에게 농 4부, 초석(草席) 12립, 조소(條所) 2거리, 연지 6장, 대구어(大口魚) 10미(尾) 예하.

신구 군뢰(軍牢) 복색(服色)에 단목(丹木) 4근 8냥, 白磻 1근, 호미(糊米) 4되, 소목(燒

<sup>932)</sup> 배지(陪持) : 지방관아(地方官衙)의 진상(進上) 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사람.

木) 3속을 춘추에 동일하게 예하.

중영 군뢰 복색에 단목 1근 12냥, 백반 5냥 2전을 춘추에 동일하게 예하.

여종의 앞치마를 기울 때 식모(食母) 2, 매물(每物) 2, 반상(飯床) 2에 각각 마포(麻布) 10척을 가을에 예하.

달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벼 10석을 달성에 행차할 때 계절을 한정해서 한 차례 대구별회에서 지급.

생신상 차려오는 부하인(府下人)에게 벼 6섬[대구 별회], 호도 2말, 대구(大口) 3미 지급.

연분(年分) 주리(籌吏)로 취재(取才)하는 2인에게 각각 벼 2섬, 마당(馬堂)에 고할 때 필요한 쌀 2말, 대구 1미, 북어 2속[곶감 2첩, 피율(皮栗) 3되, 피백자(皮栢子) 2되, 돈 1냥, 무명 1필, 백지 1속, 황촉 1쌍, 후유지 1장] 지급.

학루(鶴樓)에 고할 때 필요한 쌀 2말, 북어 1속, 대구 1미[곶감 5꿰미, 대조 1되, 황율 (黃栗) 1되, 백지 1속, 황촉 1상, 고기 2근] 지급.

후동(後洞) 당제(堂祭)에 필요한 쌀 2말, 북어 1속, 대구 1미, 황육(黃肉) 2근 지급[모두 봄에 지급]

## 방채전(防債錢) 응봉(應捧) 및 응하(應下)

돈 607냥 9전 5푼은 별고(別庫) 도작미조(都作米租) 값에서 가져옴.

2000냥은 남리전(南利錢)을 혁파하고 대신 군수고 무명 20동 값에서 가져옴

1719냥은 무녀(巫女) 복공조(復貢條)로 비공전(婢貢錢) 가운데서 가져옴

1500냥은 산산창 염리(鹽利) 가운데서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혁파하고 김해부로부터 바로 상납함

156냥은 각 창고의 부족분을 보충할 때 매달 작전(作錢)의 남은 이자 가운데서 가져옴. 도합 응봉전 5982냥 9전 5푼

1200냥, 90냥은 영고(營庫0, 530냥은 고마고(雇馬庫), 400냥은 보선고(補繕庫), 250냥은 겸제고(兼濟庫), 850냥은 낙육재(樂育齋)[기묘년에 혁파하고 김해부로부터 바로 상납], 60냥은 절선소(節扇所), 480냥은 육고(肉庫), 120냥은 약계(藥契)[도합 5146냥 7전 9푼, 각 창고 배삭조(排朔條)]에 내려줌.

84냥 2전 2푼은 낙육재 추획조(追劃條), 1082냥 5전 7푼은 지소(紙所), 100냥은 영고 (營庫) 하전(下典) 등, 50냥은 보선고 하전 등에 지급[옷감 및 무물(貿物) 노자]

45냥은 보선고 즙유(汁油) 품값

80냥은 중영(中營)의 반찬값으로 떼어줌.

60냥은 진영(鎭營)에 떼어줌.

80냥은 연분(年分) 도목(都目) 상납하는 짐값 421냥 1전 6푼은 각청 교구(矯捄)와 각 하인에게 예하. 도합 응하 5982냥 9전 5푼.